함께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443호
2017. 12. 28.(목)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6679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
제6680호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
제6681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5

[규 칙]

제4193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 11
제4194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 12

◈ 고 시

제2017-469호 구의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16
제2017-470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한국체육대학교) ····· 20
제2017-471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한양대학교) ····· 25
제2017-472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3
제2017-473호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37
제2017-474호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 고시 ····· 47
제2017-475호 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48
제2017-476호 강일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52
제2017-477호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지형도면 고시 ····· 53
제2017-478호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 138
제2017-479호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 및 지형도면 ····· 139
제2017-480호 문정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139
제2017-481호 신정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지형도면 고시 ····· 206
제2017-482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 225
제2017-483호 가락상아(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지형도면 고시 ····· 226
제2017-484호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235
제2017-48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237

제2017-486호 천왕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240
제2017-487호 도시관리계획(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및 이수지구중심 특별계획 구역2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48
제2017-488호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 269
제2017-489호 2018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 288
제2017-490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 288
제2017-492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04

◈ 공 고

제2017-253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내역 공고 ····· 311
제2017-2544호 전기사업(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 311
제2017-2549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313
제2017-2553호 2021년 수도권(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공고 ····· 315
제2017-2555호 동대문구 신설동 72-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315
제2017-2556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319
제2017-2559호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공고 ····· 321
제2017-2563호 정동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 열람 공고 ····· 324
제2017-256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324

◈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17-14호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고시 ····· 344

◈ 구 고 시

제2017-122호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중구) ····· 346
제2017-147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광진구) ····· 351
제2017-9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동대문구) ····· 352
제2017-18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폐지)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대문구) ····· 355
제2017-186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마포구) ····· 357
제2017-187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마포구) ····· 357
제2017-131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강서구) ·· 360
제2017-20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구로구) ····· 361

제2017-117호 도시계획시설(문화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금천구) ····· 364
제2017-168호 대치동구마을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강남구) ····· 366
제2017-169호 도시계획시설사업(세곡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강남구) ····· 371
제2017-170호 도시계획시설사업(봉은역사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 고시(강남구) ·· 372
제2017-22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강동구) ····· 373

◈ 구 공 고

제2017-1147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광진구) ····· 377
제2017-1544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성북구) ····· 377
제2017-1317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도봉구) ····· 388
제2017-1092호 도시계획시설사업(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활용홍보전시관 건립)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노원구) ····· 393
제2017-1096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노원구) ····· 397
제2017-1476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금천구) ····· 400
제2017-2341호 도시계획시설(봉은역사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열람 공고(강남구) ···· 402

◈ 사업소고시

제2017-22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409

자 치 법 규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6679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월정수당지급기준표(제3조 관련)

구 분	지 급 액
월정수당	3,815,000원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춰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3,764,160원”에서 “3,815,000원”으로 변경함 (〔별표 2〕).

◈ 서울특별시조례 제6680호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택시업계의 부담 경감 및 택시이용 시민의 카드결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2월 31일”로 되어있는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시에 등록·운행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선·후불 교통카드 등을 이용한 택시요금 소액(10,000원 이하)결제로 인해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 할 수 있는 조례의 유효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기간 연장함(안 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681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1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의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계획
2. 서울특별시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3. 교통약자의 특성을 감안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 계획
4. 저상버스 및 버스 운전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계획
5.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 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
6.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7. 노후화 등으로 교체되는 특별교통수단의 공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견청취 및 공청회) 시장은 이동편의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
2.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보행환경 실태
5.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 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장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9조(저상버스 도입 계획)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저상버스의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 연결해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일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 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①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및 처리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 심의
4.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및 상담, 교육
5.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 심의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서울시설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은 1년 365일, 일 24시간제로 운행하고, 즉시 신청과 예약 신청제로 운영하며, 장기 이용도 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이용자의 승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하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
2. 제1호 외의 교통약자 중 대중교통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자와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어려운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4.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 선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범위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공보 및 인터넷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차량대수는 법 제16조제1항과 법 시행규칙 제5조를 기준으로 이동편의증

진계획에서 정한다.

제17조(교육) ①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4.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운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하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이동편의시설의 점검정보) ① 교통사업자는 이동편의시설의 점검계획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와 「철도건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광역철도의 역사에 설치된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등이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앱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교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검사 등

제20조(이동편의시설의 검사)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사전검사: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검사
2. 사후검사: 대상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는 설계도면 검토 또는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1조(검사요원의 구성 및 직무 등) ① 시장은 제20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명 이내의 검사요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검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반의 인원은 검사 대상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그 밖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검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검사반은 검사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요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검사 결과 반영) ① 시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대상시설에 통보하여 검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검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 ① 시장은 제2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시설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외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로 한정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가. 교통약자를 위해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검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이동편의시설의 효용성을 높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나.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삭제된 조문과 중복된 조문을 정리하고, 상위법령 체계에 따라 조문을 재배열하는 등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전문을 총 25조로 하여 4개의 장(章)으로 구성함.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신설)

다. 다른 조문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의 일반적 체계에 맞추어 조문 전체를 수정함.(안 제14조)

라.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검사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0조 신설)

마. 이동편의시설 검사요원의 구성 및 직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1조 신설)

바. 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운영과 이동편의시설 검사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신설)

사. 법령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 외의 시설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 신설)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193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2월 28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산) 서울특별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의 자산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속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2. 건물
3. 관로 외 구축물
4. 하수관로 시설물
5. 중계펌프장 설치시설
6. 공구, 기구
7. 차량운반구
8. 준설기

9. 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
10.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11.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산

제3조(중요 자산의 취득 · 처분) ①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중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에 계상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그 취득·처분 결과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준용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이 규칙,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제21조의 위임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12조와 관련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의 종류와, 같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타 법령의 해당 사항에 대한 규정 준용을 규정함(안 제4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194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2월 28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시 본청(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관리 부서)
   가. 기업출납원: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운영·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나. 수입원: 수입업무담당사무관
   다.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
   라.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사무관
   마. 분임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주무관
   바. 일상경비출납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
   사. 분임일상경비출납원: 가목의 기업출납원이 지정한 일상경비업무담당주무관
   아.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을 포함한다)출납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
2. 위 1호의 부서를 제외한 시 본청 하수도업무부서, 사업소(물재생센터)
   가. 기업출납원: 하수도업무부서의 과장, 사업소의 장(물재생센터 소장)
   나. 수입원: 수입업무담당사무관
   다.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
   라.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사무관
   마. 분임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주무관
   바. 일상경비출납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
   사. 분임일상경비출납원: 가목의 기업출납원이 지정한 일상경비업무담당주무관
   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
3. 자치구
   가. 분임기업출납원: 각 자치구 하수도업무 담당부서의 과장
   나. 분임수입원: 각 자치구 하수도업무 담당부서의 수입업무담당팀장
   다. 분임지출원: 각 자치구 하수도업무 담당부서의 지출업무담당팀장
   라. 분임자산출납원: 각 자치구 하수도업무 담당부서의 하수도자산업무담당팀장
   마.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각 자치구 하수도업무 담당부서의 지출업무담당팀장

②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1항의 회계공무원은 계약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3조(직무의 대리) 제2조의 회계공무원이 휴가·출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4조(관리자의 업무위임 등)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호에 따른 관리자의 업무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수수료·점용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가격 5억원 이하의 공사, 1억원 이하의 용역·제조·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다만,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업소 기업출납원은 사업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4. 급여 등, 인건비·여비·일반운영비·직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 원리금 및 이자의 상환·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의 구매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의 회계 사무를 행하는 사항
7.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제2조제1항제1호의 시 본청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운영·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계약업무와 제2조제1항제2호 중 제1호의 부서를 제외한 시 본청 하수도업무부서의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1항제1호마목의 시 본청 재무관(재무국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다만, 대행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은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으로 계약 이관한다.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제2조제1항제2호 중 사업소(물재생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 본청 재무관(재무국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다만, 대행계약은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으로 계약 이관한다.

1.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결산 및 회계·재무사무에 관하여는 법 제6조, 「지방회계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74조에 따라 이 규칙과 법, 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0조의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직무의 대리를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지방공기업법」 제46조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타 법령의 준용을 규정함(안 제5조)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9호

구의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추진계획 승인

가.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 구의시장정비구역

나.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

구역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구의시장정비구역	광진구 구의동 66-25번지 일원	3,232.23㎡	-

다.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1) 성 명 : 구의시장 주식회사(시장정비사업법인) 대표자 박종환

2)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531-5(구의동)

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일 : 승인 고시일

마. 사업추진계획 승인 개요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	광진구 구의동 66-25번지	-	증)3,232.23	3,232.23	-

※ 결정사유 : 대상지는 전통시장으로서 건축한계선 지정 등 체계적·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함

2)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3,232.23	-	3,232.23	-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70 (105)	구의동 66-57	구의동 66-91	-	서고 제2010-381호 (2010.10.28.)	구역 내 편입도로 기부채납

※ ( )는 구역 내 연장임

◦ 시장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시장	전통 시장	광진구 구의동 66-25번지	2,484	감)2,484	-	서고 제114호 (72.8.2)	-

※ 폐지사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에 대하여 노후한 도시환경 저해시설 정비의 한계성 및 재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시장 폐지

4)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232.23	100.0	-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	2,805.03	86.8	-
도 로	427.20	13.2	-

5) 건축물의 주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사항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높이/층수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	68%이하	370%이하	16,778.68㎡이하 (매장면적 : 3,318.5㎡ 포함)	-전통시장 : 47m/13층 이하 - 인접지역 : 27m/7층 이하

6)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구분	계획 내용
배치	- 인근 지역과의 지역적 조화를 꾀하기 위해 주변에 전면공지 및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건물배치
형태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유도
색채	-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고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이 조성되도록 계획
건축선	- 서측 및 남측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4m 지정 - 동측 및 북측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2~3m 지정

7)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구 분	동 수	전용면적	임대주택 건립세대수	비 고
신규	1동	20㎡형	5세대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 상기 계획은 예시(안)이며, 각종 심의 및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바. 입점상인보호대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의한 입점상인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관계서류 참조

2. 사업추진계획 승인 사유

◦ 구의시장은 1971년 준공된 시장으로 건축물 노후화 및 유통환경 변화 등 이용객 및 매출 감소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위상 회복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발전하는 현대화 시장으로 재도약하고자 함

3. 관계서류 열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02-2133-4646)와 광진구 도시계획과(☎02-450-769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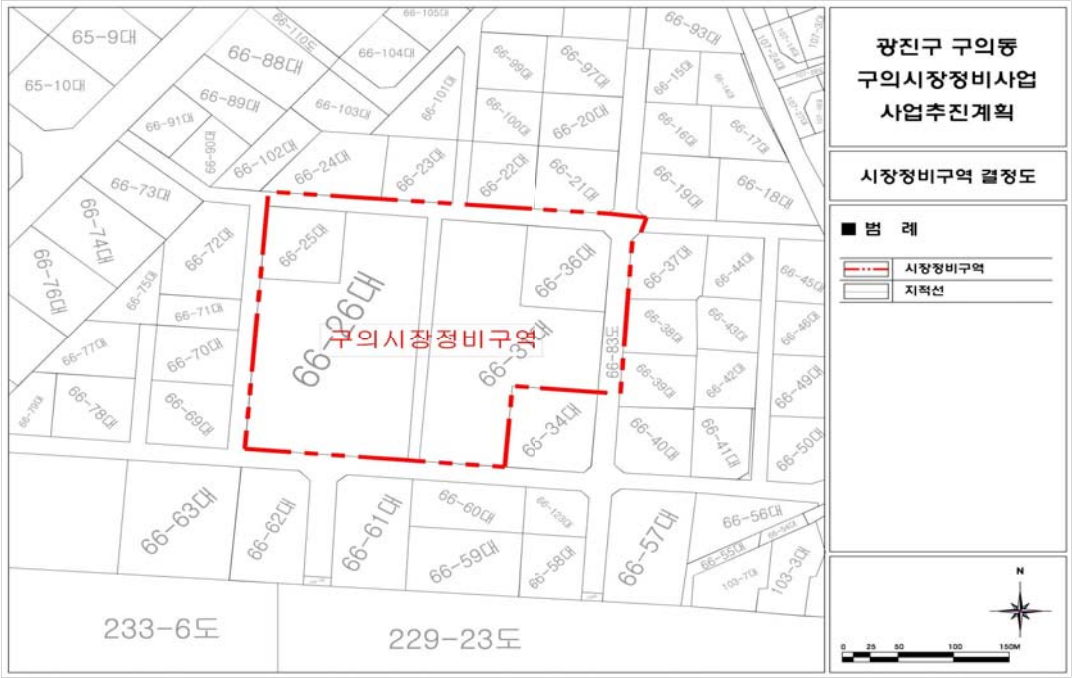
◦ 따로 붙임된 시장정비구역 결정도와 관계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4.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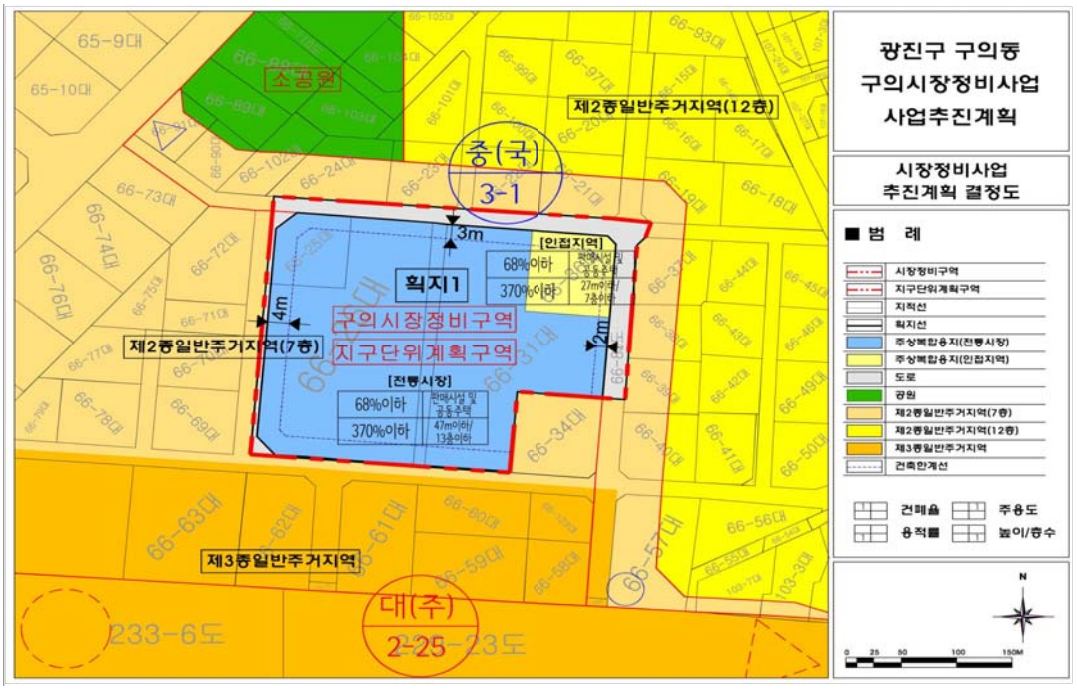
◦ 사업추진계획은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관계도면

[시장정비구역 결정도 : 신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결정도 : 신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70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 지형도면 고시

(한국체육대학교)

건고시 제326호(1984. 8. 25.)로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9호(2010. 3. 25.)로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15 일대 한국체육대학교에 대하여 제2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7. 12. 6.)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송파구 방이동 88-15 일대에 위치한 한국체육대학교에 대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통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구역구분, 밀도계획 등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변경 없음]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학 교	대 학 (한국체육대학교)	송파구 방이동 88-15 일대	111,902.30	-	111,902.30	1984. 8. 25. (건고시 제326호)	자연녹지지역

2)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구역계획

구역	구분	면적(㎡)
일반관리구역	①	29,528.00
	②	13,023.00
	③	30,522.30
소 계		73,073.30
외부활동구역	④	25,519.00
	⑤	7,636.00
소 계		33,155.00
녹지보존구역	⑥	5,674.00
소 계		5,674.00
합 계		111,902.3

(2) 밀도계획 (건폐율)

구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법정건폐율(%)		사용건폐율(%)		관리건폐율 (%)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자연녹지지역	111,902.3	20.00	25.00	19.90	21.22	25.00	밀도 산정시 제외면적 없음

※ 기정 사용 건폐율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09호(2010. 3. 25)의 변경(결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함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14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의 법정건폐율은 25%이하로 적용

(3) 구역별 밀도계획(용적률·높이)

구분	총면적(㎡)	밀도산정 기준면적(㎡)	법정용적률(%)		사용용적률(%)		관리용적률 (%)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자연녹지지역	111,902.3	111,902.3	60.00	82.00	57.75	65.94	82.00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5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의 법정용적률은 82%이하로 결정
※ 서고시 제2010-109호(2010.3.25.)에 의해 용적률 60%이하로 결정되었으나 금회 82%이하로 결정

구역 구분	용적률 (%)							높이(m)	비 고
	법정용적률		사용용적률		계획 용적률	이전 용적률	관리 용적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①	60.00	82.00	133.32	134.09	136.88	+56.00	138.00	○지표로부터 최대 8m~ 35m 이하	·4구역에서 16,537.00㎡ 용적 이전받음
②	60.00	82.00	132.58	133.31	133.31	+52.00	134.00	○지표로부터 최대 25m~ 40m 이하	·4구역에서 3,623.01㎡ 용적 이전받음 ·5구역에서 3,149.00㎡ 용적 이전받음
③	60.00	82.00	25.98	54.96	101.05	+24.00	106.00	○지표로부터 최대 5m~ 40m 이하	·5구역에서 2,730.72㎡ 용적 이전받음 ·6구역에서 4,596.00㎡ 용적 이전받음
④	60.00	82.00	0.24	0.24	0.24	-79.00	3.00	○지표로부터 최대 5m 이하	·1구역으로 16,537.00㎡ 용적 이전함 ·2구역으로 3,623.01㎡ 용적 이전함
⑤	60.00	82.00	-	-	-	-77.00	5.00	○지표로부터 최대 5m 이하	·2구역으로 3,149.00㎡ 용적 이전함 ·3구역으로 2,730.72㎡ 용적 이전함
⑥	60.00	82.00	-	-	-	-81.00	-	-	·3구역으로 4,596.00㎡ 용적 이전함

(4) 변경 건축물 조서

구분	건물명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지상층면적(㎡)		층수(지하)		비고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구역	승리관(B)동	3,052.47	3,052.47	8,257.83	8,429.87	8,167.83	8,339.87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4층	2013.8.9 지상4층으로증축
	후문수위실 → 기사대기실	37.44	46.80	37.44	93.60	37.44	93.60	지상1층	지상2층	2013.4.8 철거후신축
2구역	본관 및 연구실동	2,324.77	2,324.77	8,750.99	8,845.81	8,497.39	8,592.21	지하1층 지상4층	지하1층 지상6층	2013.4.8 연결계단 증축에 따른 층수 및 면적변경
	실내연습관D동 → 필승관	2,290.71	2,290.71	11,151.77	11,151.77	8,768.26	8,768.26	지하2층 지상6층	지하2층 지상6층	건물명 변경
3구역	도서관 및 학생회관	-	1,461.69	-	11,431.28	-	8,847.71	-	지하2층 지상8층	금회 신축
소계		7,705.39	9,176.44	28,198.03	39,952.33	25,470.92	34,64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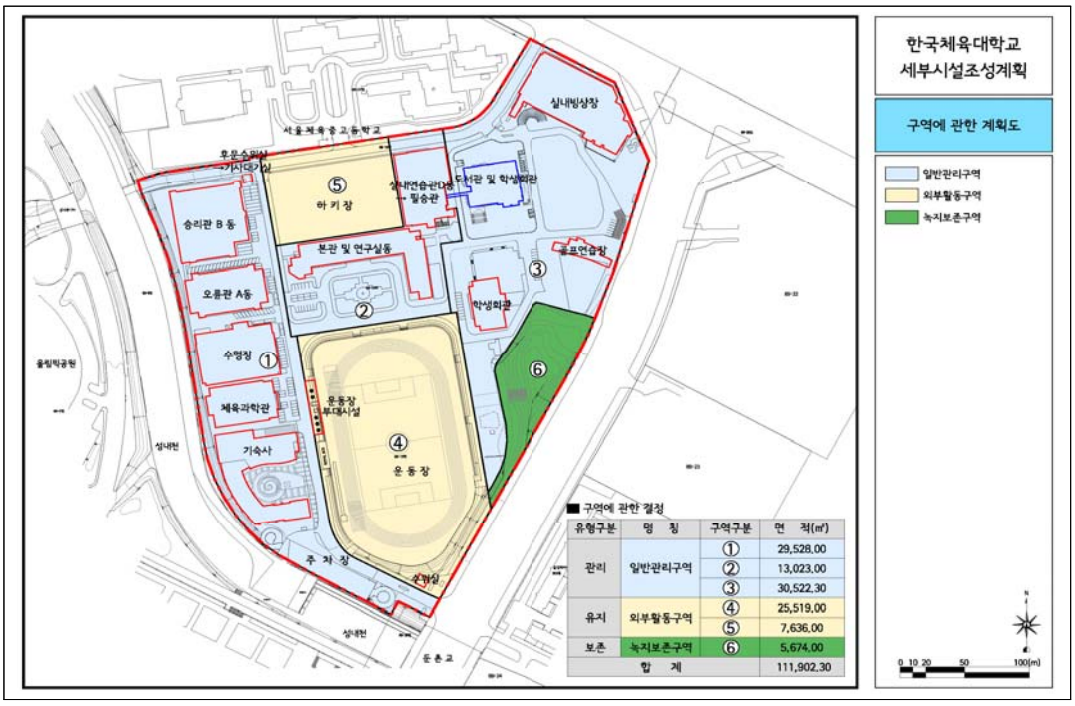
※ 건축물의 규모,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 상세내용은 고시도면(건축물 조서 포함)에 의함.

3.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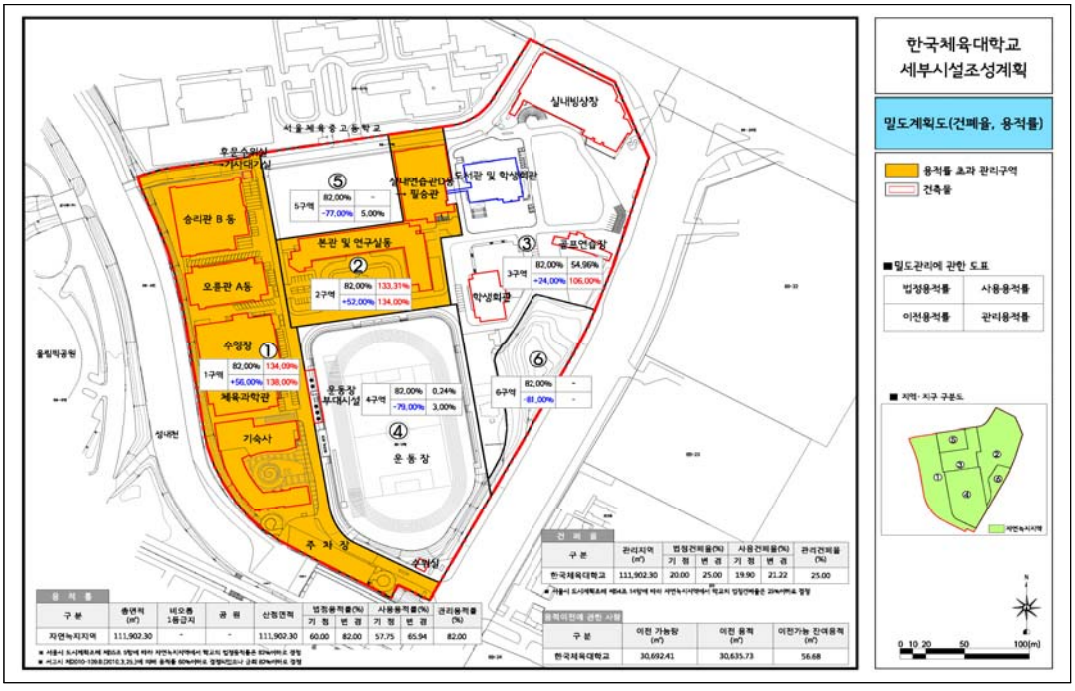
4.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13) 및 송파구 도시계획과(☏ 2147-2991)에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구역에 관한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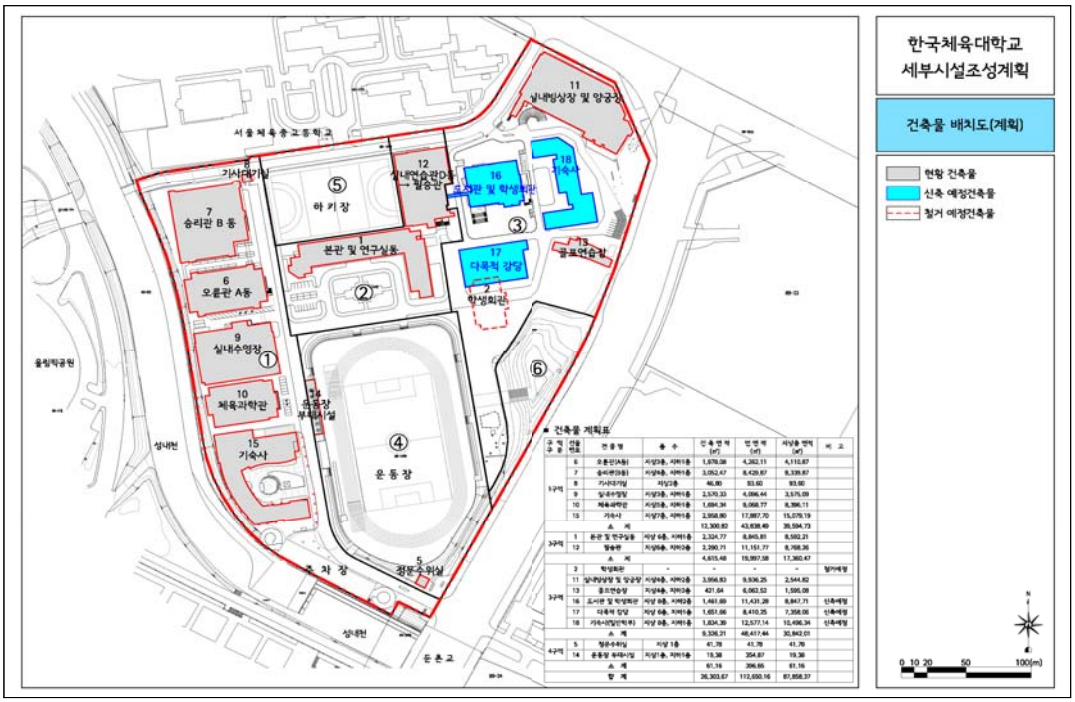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도(건폐율, 용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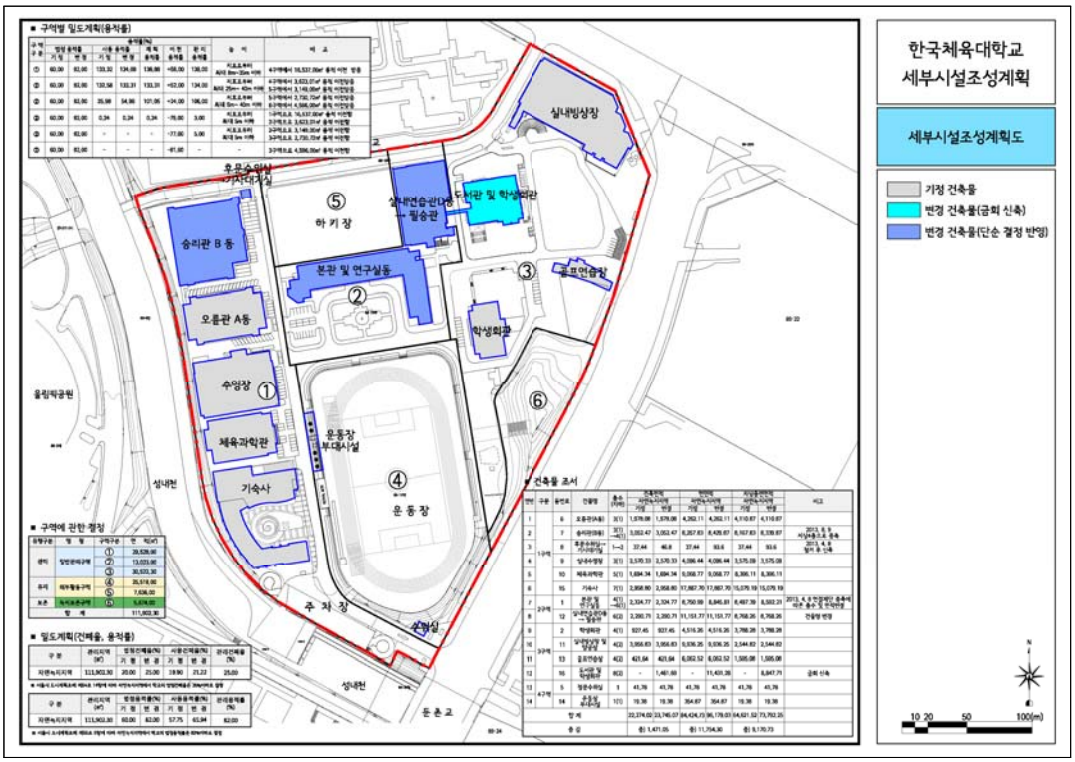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도(높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건축물 배치도(계획)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71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한양대학교)

서울특별시고시 제60호(1975.5.1.)로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최초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86호(2002.3.25.)로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96호(2010.11.11.) 및 2012-30호(2012.2.9.) 및 2014-124호(2014.4.3.)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변경)된 성동구 행당동 17일대 한양대학교에 대하여,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및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보고, 제2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결정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성동구 행당동 17일대에 위치한 한양대학교에 대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통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구역구분, 밀도계획 등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1)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변경)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학교	대학 (한양대학교)	제1 캠퍼스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일대	411,463	감 107	411,356	1975.5.1. (서고시 제60호)	면적정정
		제2 캠퍼스	성동구 사근동 223번지 일대	109,393	증 170	109,563		누락필지 편입
		합계		520,856	증 63	520,919		

♧ 기정면적은 서울시고시 제2014-124호(2014.4.3)로 결정된 사항임.

2)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1) 구역계획

구분	구역	구분	면적 (㎡)
1캠퍼스	일반관리구역	1	93,909
		2	39,929
		3	90,341
		4	70,610
		5	44,716
	상징경관구역	6	11,403
	외부활동구역	7	5,847
		8	20,241
		9	4,835
	녹지보존구역	10	13,988
		11	15,537
	소계		411,356
2캠퍼스	일반관리구역	12	13,068
		13	31,964
		14	25,468
	외부활동구역	15	9,090
	녹지보존구역	16	26,312
		17	3,661
	소계		109,563
합계			520,919

(2) 밀도계획(건폐율)

구분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7층이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캠퍼스	26이하	26이하	31이하	34이하	
2캠퍼스	5이하	5이하	13이하	16이하	

구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	법정 건폐율 (%)	사용 건폐율(%)			관리 건폐율 (%)	비고
				기정	변경	증감		
1캠퍼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235,059.0	30.00	28.68	29.81	증 1.13	35.00	· 비오톱 1등급지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내 11,588㎡ 지정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64,709.0	60.00					
	계	399,768.0	42.36					
2캠퍼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18,985.0	30.00	10.88	13.34	증 2.46	20.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90,578.0	60.00					
	계	109,563.0	54.80					

(3) 구역별 밀도계획(용적률·높이)

구분	구역 구분	용적률 (%)					높이(m)*	비고
		법정 용적률	사용용적률		이전 용적률	관리 용적률		
			기정	변경				
1 캠 퍼 스	1	177.49	179.36	203.26	+25.77	203.26	• 지표로부터 최대 12m~55m 이하	일반관리구역 : 6,7,8,9,10,11구역 용적률이전받음
	2	161.51	201.16	201.16	+39.65	201.16	• 지표로부터 최대 28m~35m 이하	
	3	158.44	174.42	169.65	+15.14	173.58	• 지표로부터 최대 12m~28m 이하	
	4	197.43	239.83	223.30	+25.87	223.30	• 지표로부터 최대 12m~45m 이하	
	5	154.06	181.08	178.92	+25.62	179.68	• 지표로부터 최대 20m~28m 이하	
	6	151.32	116.96	116.96	−34.36	116.96	• 지표로부터 최대 20m~28m 이하	상징경관구역
	7	150.00	8.03	8.03	−141.97	8.03	• 지표로부터 최대 20m 이하	외부활동구역
	8	163.91	7.56	7.99	−155.92	7.99	•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외부활동구역
	9	200.00	6.98	4.31	−195.69	4.31	•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외부활동구역
	10	150.00	0.00	0.00	−150.00	0.00	• 건축배치불가	녹지보존구역
	11	173.41	1.86	1.86	−171.55	1.86	• 건축배치불가*	녹지보존구역

구분	구역 구분	용적률 (%) 법정 용적률	사용용적률 기정	사용용적률 변경	이전 용적률	관리 용적률	높이(m)*	비고
2캠퍼스	12	195.48	197.54	197.54	+9.52	205.00	• 지표로부터 최대 28m~45m 이하	일반관리구역 : 16구역 용적률이전받음
	13	200.00	20.40	62.11	-	125.00	• 지표로부터 최대 28m 이하	일반관리구역
	14	199.32	117.87	103.86	-	115.00	• 지표로부터 최대 28m 이하	일반관리구역
	15	200.00	0.00	0.00	-	0.00	•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외부활동구역
	16	166.82	0.68	0.68	-2.85	0.68	• 건축배치불가*	녹지보존구역
	17	200.00	0.00	0.00	-	0.00	• 건축배치불가	녹지보존구역

상징경관구역, 외부활동구역에 부여된 여유 관리용적률은 해당 구역의 특성을 강화하거나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
*현황 건축물에 한해 유지

(4) 변경 건축물 조서

- 1캠퍼스

구분	번호	건물명	건축면적(㎡)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기정	건축면적(㎡)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변경	건축면적(㎡)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기정	건축면적(㎡)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변경	건축연면적(㎡)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기정	건축연면적(㎡)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변경	건축연면적(㎡)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기정	건축연면적(㎡)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변경	지상층면적(㎡)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기정	지상층면적(㎡)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변경	지상층면적(㎡)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기정	지상층면적(㎡)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변경	층수 (지하) 기정	층수 (지하) 변경	비고
1	11	대학원	1,995.35	1,967.12	0.00	0.00	13,862.60	13,665.17	0.00	0.00	13,240.16	13,042.73	0.00	0.00	7(1)	7(1)	사용승인반영
	78	자동차공학과실습실	120.00	119.97	0.00	0.00	240.00	180.00	0.00	0.00	240.00	180.00	0.00	0.00	2(0)	2(0)	사용승인반영
	80	엔지니어링하우스	2,543.52	2,527.56	7.16	7.16	12,917.76	12,644.32	80.71	80.71	9,482.65	9,455.33	26.71	26.71	5(1)	5(1)	사용승인반영
	85	전기실	30.50	25.53	0.00	0.00	500.10	486.03	0.00	0.00	29.40	25.53	0.00	0.00	1(1)	1(1)	사용승인반영
	116	체육관주차장 연구센터	0.00	0.00	0.00	2,281.22	0.00	0.00	0.00	26,024.42	0.00	0.00	0.00	22,729.25	-	12(2	금회신축
2	7	도서관	2,187.66	2,187.66	0.00	0.00	12,285.67	12,284.66	0.00	0.00	12,075.32	12,074.31	0.00	0.00	6(1)	6(1)	사용승인반영
3	16	학훈단	412.92	412.92	0.00	0.00	2,333.89	2,279.01	0.00	0.00	2,333.89	2,279.01	0.00	0.00	7(0)	7(0)	사용승인반영
	26	음악대학	1,574.85	1,327.73	0.00	0.00	5,333.37	5,114.00	0.00	0.00	4,741.01	4,586.57	0.00	0.00	5(1)	5(1)	사용승인반영
	35	자연대과학관	3,114.34	3,114.34	0.00	0.00	23,604.02	23,404.52	0.00	0.00	20,081.44	20,081.44	0.00	0.00	7(2)	7(2)	사용승인반영
	42	물탱크동	356.18	356.18	0.00	0.00	2,202.59	1,547.39	0.00	0.00	1,695.16	1,039.96	0.00	0.00	4(2)	4(2)	사용승인반영
	48	연구동	60.62	60.62	645.26	630.74	458.74	458.74	5,751.69	5,834.97	401.88	401.88	5,111.62	5,246.32	9(1)	9(1)	사용승인반영
	74	학술정보관편의점	243.90	199.50	0.00	0.00	498.75	321.20	0.00	0.00	399.00	221.45	0.00	0.00	2(1)	2(1)	사용승인반영
	89	경영관(2)	0.00	0.00	1,752.00	1,750.96	0.00	0.00	19,182.00	15,868.58	0.00	0.00	15,998.00	12,597.06	10(2	7(2)	사용승인반영
4	20	초등학교교사	0.00	0.00	2,834.18	5,460.50	0.00	0.00	9,766.90	10,010.43	0.00	0.00	9,483.40	9,726.93	6(1)	6(1)	사용승인반영
	24	계단교실	354.75	354.75	235.46	235.46	1,793.54	1,793.54	1,189.23	1,091.10	1,410.33	1,410.33	936.62	860.10	4(1)	4(1)	사용승인반영
	37	전문대	0.00	0.00	1,394.12	1,377.83	0.00	0.00	14,504.73	14,070.63	0.00	0.00	13,245.26	12,814.66	10(1)	10(1	사용승인반영
	40	전문대박물관(교수연구동)	0.00	0.00	1,176.30	1,228.89	0.00	0.00	10,794.32	10,912.66	0.00	0.00	10,331.01	10,449.35	10(1)	10(1	사용승인반영
	59	제4학생생활관 →교육연구시설	0.00	0.00	5,439.37	5,439.37	0.00	0.00	53,016.52	41,708.89	0.00	0.00	47,622.37	36,314.74	12(1)	9(1)	명칭변경 및 계획축소
	69	실험연구동	0.00	0.00	598.50	598.50	0.00	0.00	2,927.70	2,906.10	0.00	0.00	2,350.80	2,330.20	4(1)	4(1)	사용승인반영
	81	한양여대온실	0.00	0.00	128.40	112.32	0.00	0.00	128.40	112.32	0.00	0.00	128.40	112.32	1(0)	1(0)	사용승인반영
	86	한양여자대학기숙사 →한양여자대학 교육연구시설	0.00	0.00	1,533.68	1,533.68	0.00	0.00	11,702.26	11,702.26	0.00	0.00	8,807.98	8,807.98	12(2	12(2	명칭변경
	96	한양여대전산문전입통로-1	0.00	0.00	52.59	0.00	0.00	0.00	118.34	0.00	0.00	0.00	118.34	0.00	2(0)	-(-)	타건물편입
	97	한양여대전산문전입통로-2	0.00	0.00	62.44	0.00	0.00	0.00	62.44	0.00	0.00	0.00	62.44	0.00	1(0)	-(-)	계획취소
5	15	병원(본관)	3,485.50	3,466.34	0.00	0.00	40,654.20	39,888.80	0.00	0.00	34,366.17	33,600.77	0.00	0.00	18(3	18(3	사용승인반영
	29	병원(신관)	1,108.35	987.52	0.00	0.00	4,792.32	4,671.49	0.00	0.00	4,478.93	4,358.10	0.00	0.00	5(1)	5(1)	사용승인반영
	53	폐수처리장(병원)	124.74	124.74	0.00	0.00	0.00	124.74	0.00	0.00	0.00	0.00	0.00	0.00	1(0)	1(0)	사용승인반영
	68	중환자보호대기실	399.60	794.18	0.00	0.00	2,778.27	2,802.55	0.00	0.00	1,982.69	1,982.69	0.00	0.00	5(2)	5(2)	사용승인반영
	70	부속병원서관	1,780.29	1,780.29	0.00	0.00	11,027.94	10,948.87	0.00	0.00	9,637.01	9,557.94	0.00	0.00	7(2)	7(2)	사용승인반영
8	115	대운동장 지하주차장	0.00	0.00	0.00	86.84	0.00	0.00	0.00	28,064.47	0.00	0.00	0.00	86.84	-	1(2)	금회신축
9	102	한양여대지하개발	0.00	0.00	447.32	155.51	0.00	0.00	22,125.37	21,833.56	0.00	0.00	337.41	208.59	2(3)	2(3)	사용승인반영
			19,893.07	19,806.95	16,306.78	20,898.98	135,283.76	132,615.03	151,350.61	190,221.1	116,595.04	114,298.04	114,560.36	122,311.05			
			감 86.12		증 4,592.20		감 2,668.73		증 38,870.49		감 2,297.00		증 7,750.69				

※ 건축물의 규모,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 상세내용은 고시도면(건축물 조서 포함)에 의함.

- 2캠퍼스

구분	번호	건물명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지상층면적(㎡)				층수(지하)		비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자연경관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제1종 일반주거지역(자연경관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제1종 일반주거지역(자연경관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3	121	제7생활관	0.00	0.00	0.00	2,754.00	0.00	0.00	0.00	20,405.00	0.00	0.00	0.00	13,333.00	-	7(2)	금회신축
14	I	1관2관회장실	0.00	0.00	157.36	151.87	0.00	0.00	605.43	448.07	0.00	0.00	605.43	448.07	4(0)	4(0)	사용승인반영
	J	식당동	0.00	0.00	641.76	641.76	0.00	0.00	2,891.83	2,331.12	0.00	0.00	2,891.83	2,331.12	5(0)	5(0)	사용승인반영
	K	정보종합센타	0.00	0.00	1,514.64	1,514.64	0.00	0.00	7,543.10	6,171.97	0.00	0.00	6,804.86	5,433.73	5(1)	5(1)	사용승인반영
	L	다목적강당(체육관)	0.00	0.00	1,362.08	1,238.25	0.00	0.00	4,336.54	2,842.73	0.00	0.00	4,296.54	2,827.61	4(1)	4(1)	사용승인반영
	M	기계실	0.00	0.00	139.36	94.38	0.00	0.00	227.96	94.38	0.00	0.00	139.36	0.00	1(1)	1(1)	사용승인반영
	N	연결통로	0.00	0.00	0.00	116.28	0.00	0.00	0.00	129.22	0.00	0.00	0.00	129.22	-	2(0)	사용승인반영
			0.00	0.00	3,815.2	6,511.18	0.00	0.00	15,604.86	32,422.49	0.00	0.00	14,738.02	24,502.75			
			-		증 2,695.98		-		증 16,817.63		-		증 9,764.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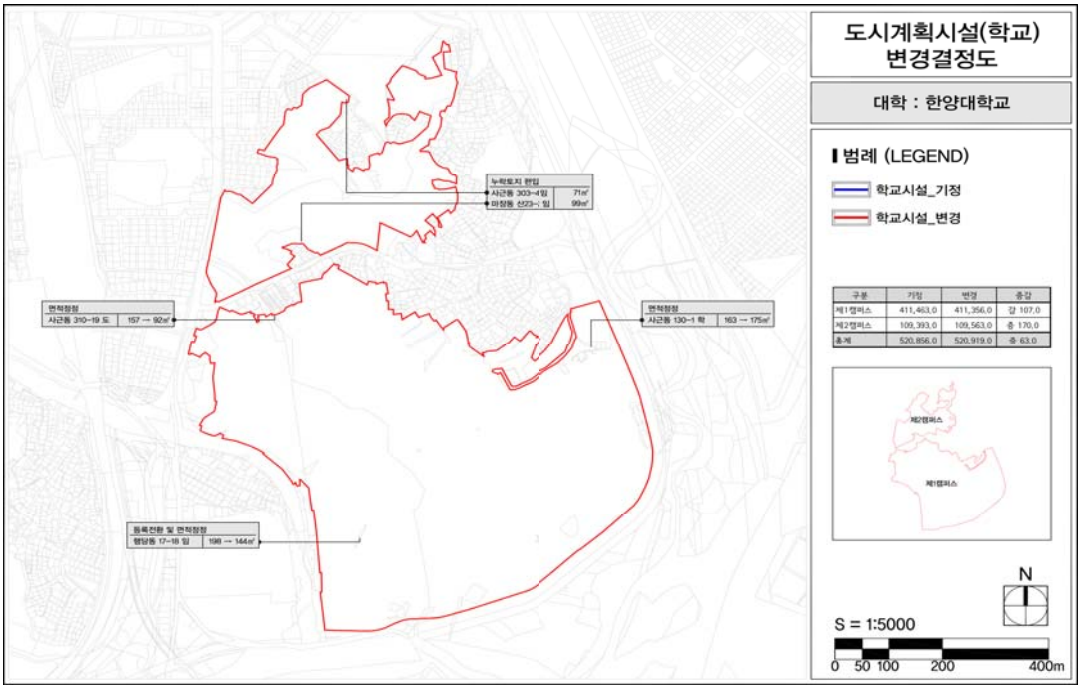
※ 건축물의 규모,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 상세내용은 고시도면(건축물 조서 포함)에 의함.
※ 주민개방이 필수적인 2캠퍼스 내 통과도로는 6,7생활관 계획시 통과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3.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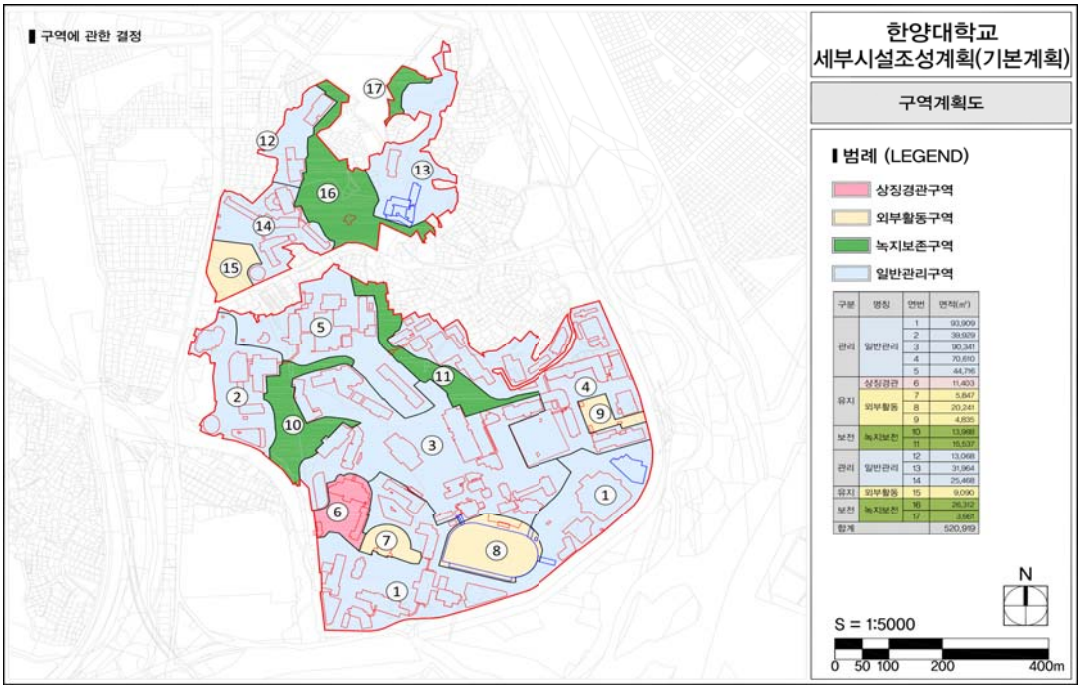
4.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13) 및 성동구 도시계획과(☏ 2286-5554)에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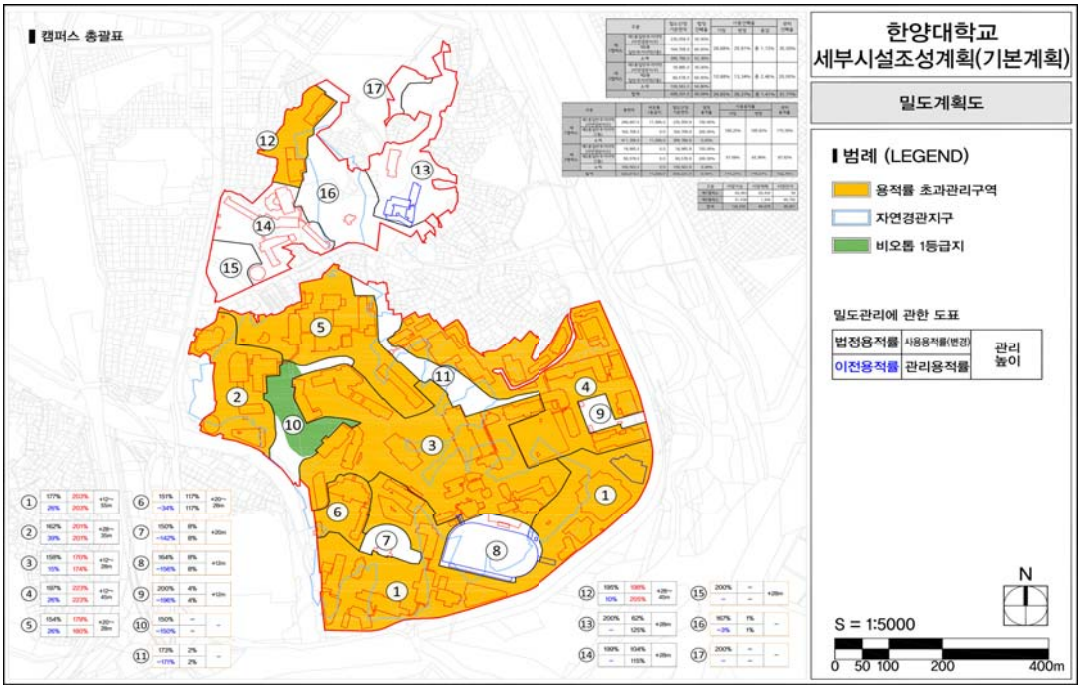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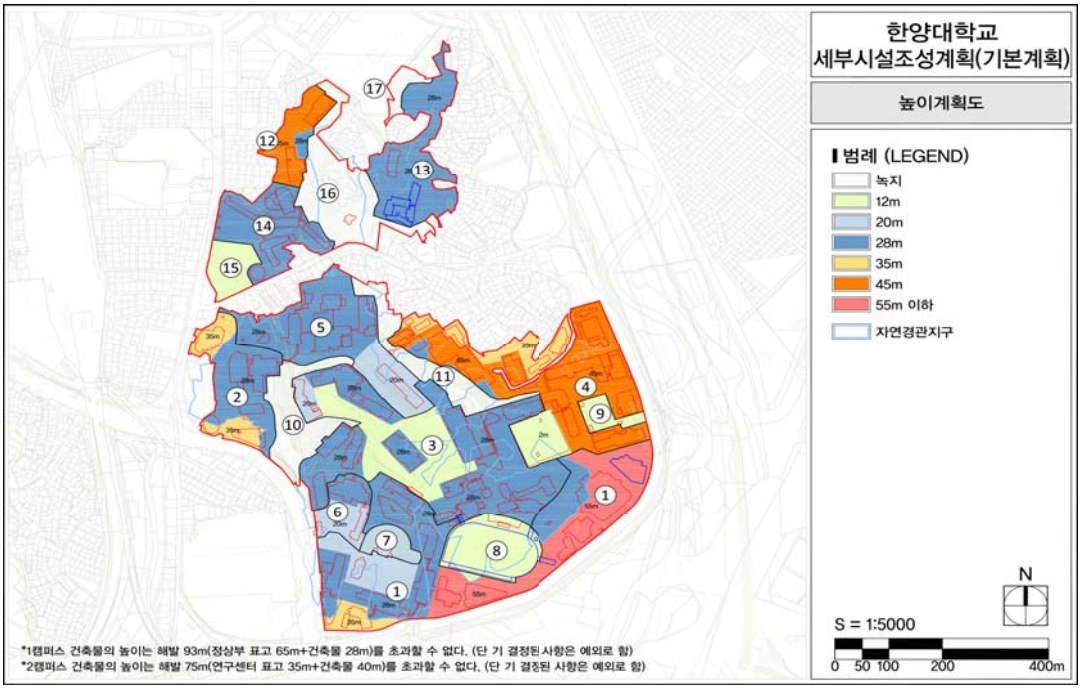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구역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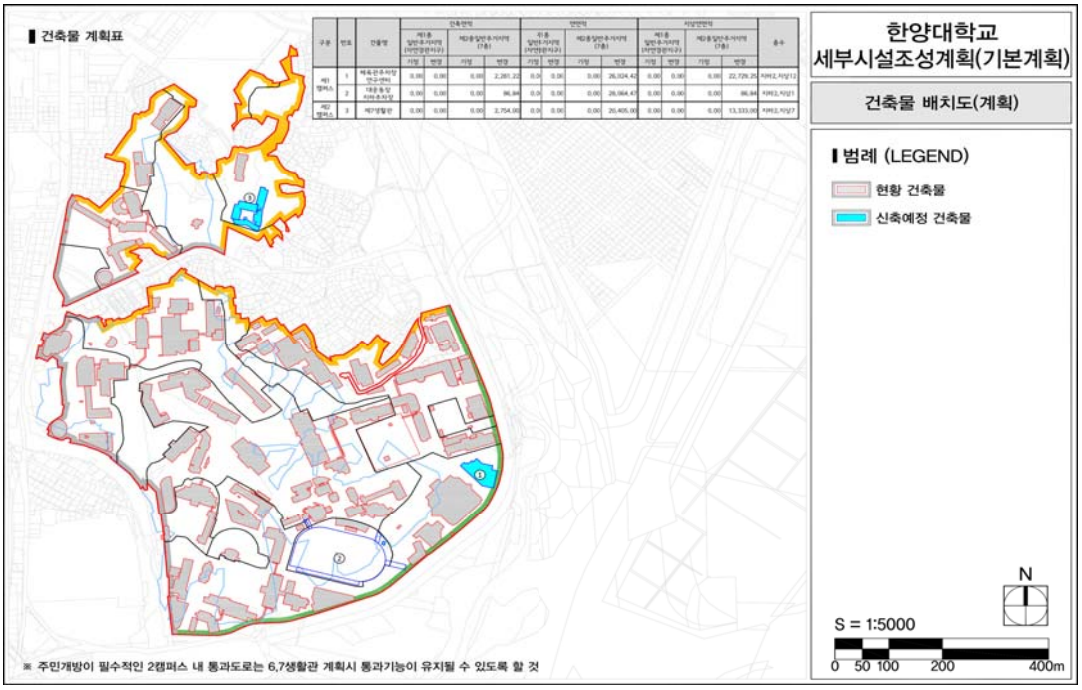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도(건폐율 · 용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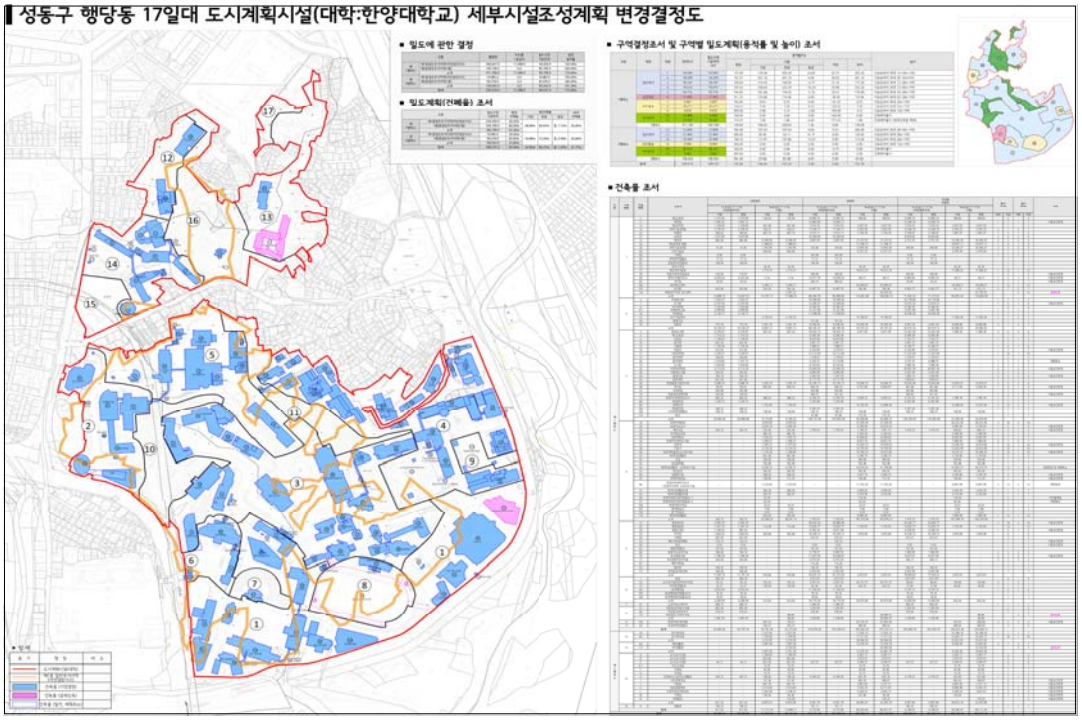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도(높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건축계획도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7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36호('08.04.17.)로 최초 결정되고 영등포구고시 제2008-46호('08.8.14.), 영등포구고시 제2009-41호('09.8.20.), 영등포구고시 제2011-73호('11.10.20.)로 변경 결정된 여의도역~SIFC간 지하공공보도와 지상부 현황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서 여의도역~서울국제금융센터(SIFC)까지 기 조성된 지하공공보도를 파크원까지 연장하여 보행자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하공공보도를 변경하고, 지하공공보도의 상부 및 출입구로 연결되는 현황도로에 대하여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1	467	20	집산도로	410	여의도동 26	여의도동 24-1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1	468	20	집산도로	107	여의도동 26-5	여의도동 26-1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2	517	15	집산도로	107	여의도동 25-6	여의도동 25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2	518	15	집산도로	107	여의도동 24-4	여의도동 24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2	1	16	특수도로	363	여의도동 2-6 (여의도역)	여의도동 23 (SIFC)	지하도로 (지하공공보도)	-	서고136호 ('08.04.17)	-
변경	중로	2	1	16 ~ 20	특수도로	581	여의도동 2-6 (여의도역)	여의도동 22 (파크원)	지하도로 (지하공공보도)	-		광로2-26, 광로3-27, 중로1-467, 중로1-468, 중로2-517, 중로2-518 지하도로 중복결정

○ 변경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1-467	• 도로신설(B=20m, L=410m)	• 기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황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함
-	중로1-468	• 도로신설(B=20m, L=107m)	
-	중로2-517	• 도로신설(B=15m, L=107m)	
-	중로2-518	• 도로신설(B=15m, L=107m)	
중로2-1	중로2-1	• 도로(지하도로)변경 - L = 363m → 581m(증 218m) - B = 16m → 16~20m • 면적 : 6,534㎡ → 10,699㎡(증 4,165㎡)	• 대중교통 이용객의 접근성 및 보행편의 제공을 위하여 여의도역 ~ SIFC까지 기 조성된 지하공공보도를 파크원까지 연장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와 중복결정하는 사항임

○ 세부시설계획 내용

구분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도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일대	길이 높이 폭 면적	• 지하공공보도시설 : 6,534㎡ - 지하보행로 : 3,095㎡ - 지하광장 : 380㎡ - 지하도상가 : 1,164㎡ - 지하도출입시설 : 611㎡ - 지하층연결로 : 287㎡ - 부대시설 : 1,209㎡ (중복 212㎡) • 입체적 결정범위 (A = 6,534㎡) - 수직적범위(높이) : 평균해수면기준 GL+12 ~ GL-8.4	• 지하공공보도시설 : 증) 4,165㎡ - 지하보행로 : 증) 1,856㎡ - 지하광장 : 증) 112㎡ - 지하도상가 : 증) 978㎡ - 지하도출입시설 : 증) 215㎡ - 지하층연결로 : 변경없음 - 부대시설 : 증) 1,004㎡ •입체적 결정범위 → 중복결정으로 변경	• 지하공공보도시설 : 10,699㎡ - 지하보행로 : 4,951㎡ - 지하광장 : 492㎡ - 지하도상가 : 2,142㎡ - 지하도출입시설 : 826㎡ - 지하층연결로 : 287㎡ - 부대시설 : 2,213㎡ (중복 212㎡)	서고136호 ('08.04.17)	

※ 세부시설내용은 추후 실시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나. 지형도면 : 붙임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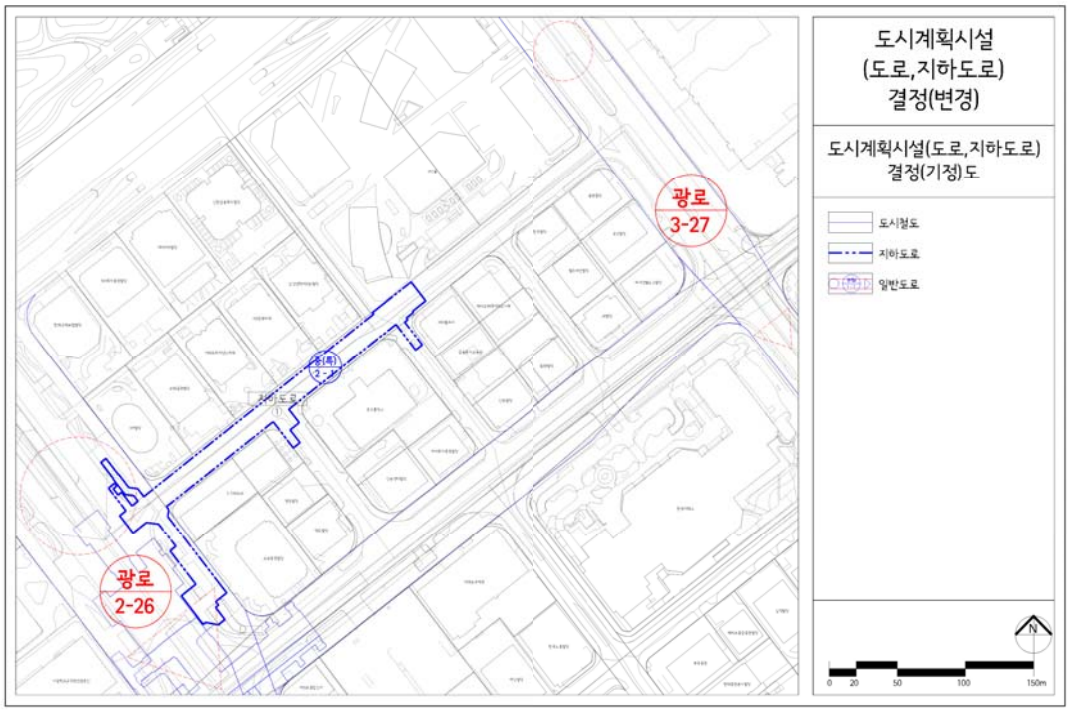
※ 붙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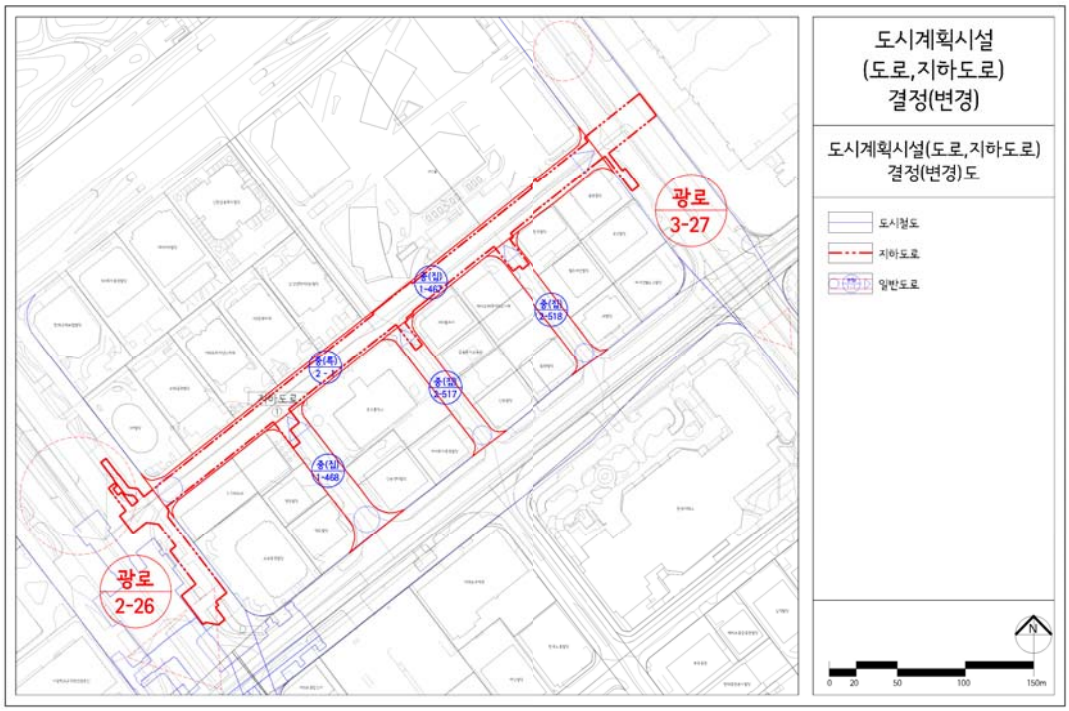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23) 및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2670-3550)에 각각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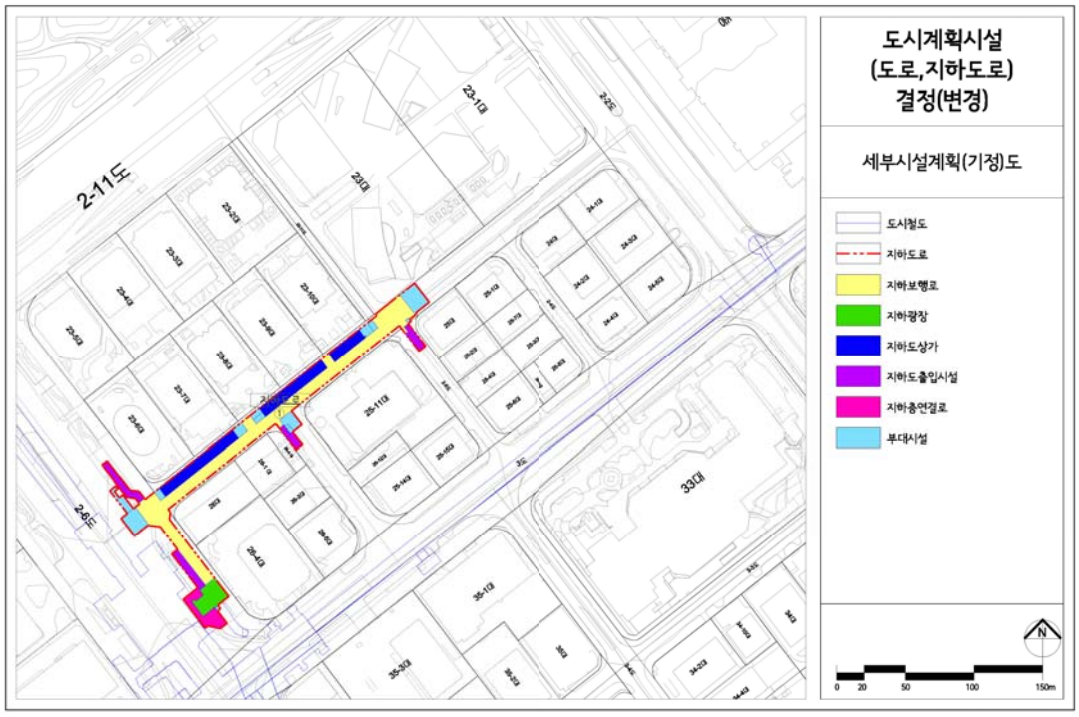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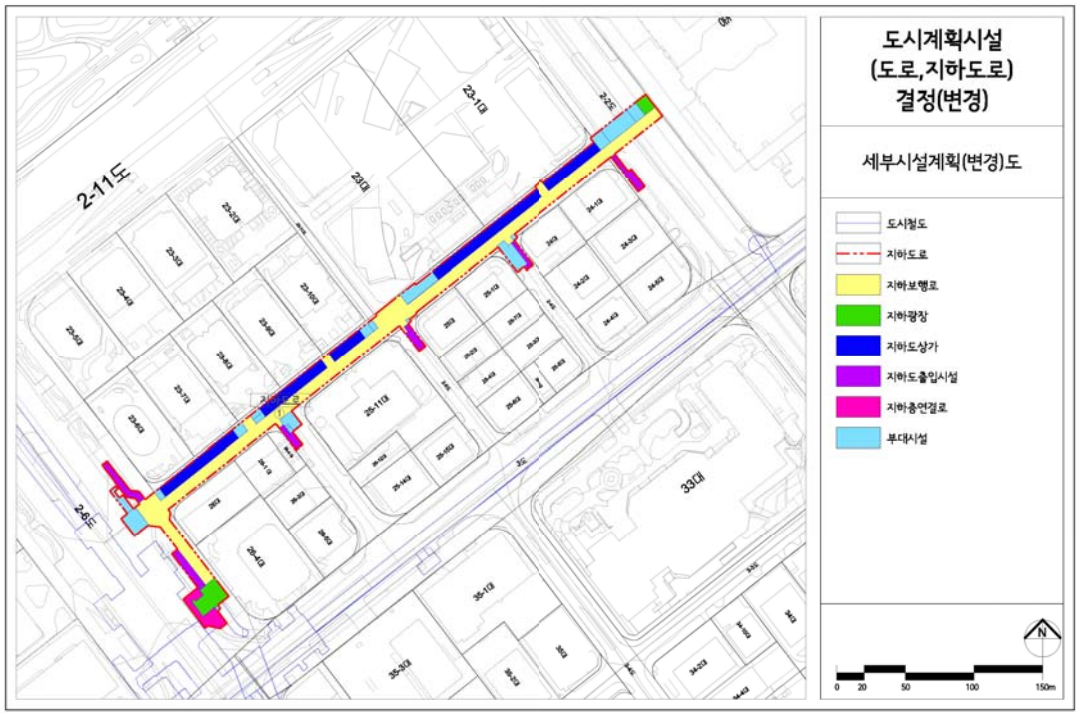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변경)



■ 세부시설계획도(기정)



■ 세부시설계획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73호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21호(2014.06.19)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강북구고시 제2015-274호(2015.11.06.)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6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3-111번지 일대	10,018.0	증) 144.0	10,162.0	구역계 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2. 정비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018.0	증) 144.0	10,162.0	100.0	
2종일반주거지역(7층)	10,018.0	증) 144.0	10,162.0	100.0	구역계 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 칭	면 적 (㎡)			비율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018.0	증) 144.0	10,162.0	100.0	-
정비기반시설	소 계	1,678.6	감) 555.6	1,123.0	11.0	-
	도 로	1,118.6	증) 4.4	1,123.0	11.0	기부채납
	공 원	560.0	감) 560.0	-	-	폐지
획지	소 계	8,339.4	증) 699.6	9,039.0	89.0	-
	획 지1	8,089.4	증) 557.6	8,647.0	85.1	공동주택용지
	획 지2	250.0	증) 142.0	392.0	3.9	사회복지시설 (건축물 설치후 기부채납)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	6	특수도로	21	미아동	미아동	보행자 전용 도로	-	14.06.19 (서울시고시 2014-221호)	-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19	미아동	미아동	일반 도로	-	14.06.19 (서울시고시 2014-221호)	-
기정	중로	2	117	12~15	집산도로	4,735 (166)	하월곡동	번동	일반 도로	-	63.12.24 (건고738호)	오패산로

※ ( )는 구역내 사항임

2)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공원	소공원	강북구 미아동 3-178일대	560.0	감) 560.0	-	14.06.19 (서울시고시 2014-221호)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원	폐지	·지형 단차에 의한 옹벽설치로 인해 접근성 및 공원으로서의 효율이 낮아 폐지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설치 미대상임

3)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사회복지시설	강북구 미아동 3-183일대	250.0	증) 142.0	392.0	14.06.19 (서울시고시 2014-221호)	건축물 설치후 기부채납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사회복지시설	·면적 변경 (250.0㎡ → 392.0㎡)	·공원 폐지에 따른 공원면적 일부 편입으로 면적 증가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부대 복리 시설	관리사무소	미아동 3-111	171.72	-	171.72	
	근린생활시설		766.99	감) 166.07	600.92	
공동 이용 시설	작은도서관		109.83	-	109.83	
	보육시설 (어린이집)		215.31	증) 30.63	245.94	
	경로당		138.41	-	138.41	
	어린이놀이터		67.00	-	67.00	
	입주자집회소		280.16	-	280.16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0,018.0	강북구 미아동 3-111번지 일대	69	-	-	69	-	-
변경		10,162.0							

2)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평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10,018.0	획지1	8,089.4	미아동 3-111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42% 이하	197.29% 이하	최고11층 이하 (평균10층이하)	-
			획지2	250.0	미아동 3-183번지 일대	사회복지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변경		10,162.0	획지1	8,647.0	미아동 3-111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42% 이하	197.29% 이하	최고11층 이하 (평균10층이하)	-
			획지2	392.0	미아동 3-183번지 일대	사회복지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정

○ 건립규모 및 비율

구 분		세 대 수	비 율(%)
계		162	100.00
전용면적 85㎡ 이하	54㎡-A	1	0.62
	54㎡-B	8	4.94
	59㎡-A	17	10.49
	59㎡-B	42	25.93
	79㎡	45	27.78
	84㎡-A	30	18.52
	84㎡-B	19	11.73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100.0%

변경

○ 건립규모 및 비율

구 분		세 대 수	비 율(%)
계		174	100.00
전용면적 85㎡ 이하	54㎡	6	3.45
	59㎡-A	21	12.07
	59㎡-B	38	21.84
	59㎡-c	25	14.37
	79㎡	40	22.99
	84㎡-A	22	12.64
	84㎡-B	22	12.64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100.0%

심의완화 사항	○ 종상향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층수완화 : 평균층수 10층이하, 최고층수 11층 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획지1 :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면부 3m 건축한계선 계획

❑ 개발가능용적률 등 산정

<table>
<tr><td colspan="2">구 분</td><td colspan="6">산 출 근 거</td></tr>
<tr><td rowspan="3">기정</td><td rowspan="2">토지이용계획</td><td>구역면적</td><td>획지1
(공동주택)</td><td>신설
정비기반시설
등</td><td>공공시설
설치환산
부지면적</td><td>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td><td>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td></tr>
<tr><td>10,018.0㎡</td><td>8,089.4㎡</td><td>1,928.6㎡</td><td>-</td><td>398.3㎡</td><td>-</td></tr>
<tr><td>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6">○ 순부담률 15.3% (1,530.3㎡)

○ 신설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 공공시설설치 환산부지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 1,928.6㎡ - 398.3㎡ = 1,530.3㎡</td></tr>
<tr><td>개발가능용적률 및 정비계획용적률 산정</td><td colspan="6">○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1+1.3α)
= 170%×(1+1.3×0.1892) = 211.81%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공공시설설치 환산부지면적)
= 1,530.3㎡ / 8,089.4㎡(대지면적) = 0.1892

○ 정비계획용적률 = 197.29% 이하</td></tr>
<tr><td rowspan="5">변경</td><td rowspan="2">토지이용계획</td><td>구역면적</td><td>획지1
(공동주택)</td><td>신설
정비기반시설
등</td><td>공공시설
설치환산
부지면적</td><td>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td><td>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td></tr>
<tr><td>10,162.0㎡</td><td>8,647.0㎡</td><td>1,515.0㎡</td><td>576.9㎡</td><td>398.0㎡</td><td>-</td></tr>
<tr><td>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6">○ 순부담률 = 16.7% (1,693.9㎡)

○ 신설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 공공시설설치 환산부지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 1,515.0㎡ + 576.9㎡ - 398.0㎡ = 1,693.9㎡</td></tr>
<tr><td>공공시설
설치환산
부지면적</td><td colspan="6">○ 설치비용 / 부지가액 = 1,551,332,640 / 2,689,088 = 576.9㎡
· 건축비 : 2,134,000 원/㎡ (2015년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
· 설치비용 : 1,551,332,640 원 (건축비 2,134,000 × 건축연면적 726.97)
· 부지가액 : 2,689,088 원/㎡ (개별공시지가 1,344,544 원/㎡ 의 2배)</td></tr>
<tr><td>개발가능용적률 및 정비계획용적률 산정</td><td colspan="6">○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1+1.3α)
= 170%×(1+1.3×0.2099) = 216.39%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공공시설설치 환산부지면적)
= 1,693.9㎡ / (8,647.0㎡(대지면적) - 576.9㎡(환산면적)) = 0.2099

○ 정비계획용적률 = 197.29% 이하</td></tr>
</table>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순부담 면적(인센티브 부여 면적) 에서 제외하여야 함

바.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기정	변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 후 4년이내	미아동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현황) 78세대 계획) 162세대 증) 84세대	현황) 78세대 계획) 174세대 증) 96세대	-

사. 재건축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3.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2017년 제18차)
○ 금회 상정안으로 수정가결
[조건사항]
▷ 향후 건축심의시 다음 사항 적정성 면밀 검토.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대상지 서측 도로(오패산로)변 가로활성화 및 대상지내 지형단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
- 대상지 북측 중정형으로 계획한 주동(101동)은 적정 주거환경 확보 측면에서 배치계획의 적정성 검토.
- 대상지 남측 사회복지시설(데이케어센터)의 drop-zone 관련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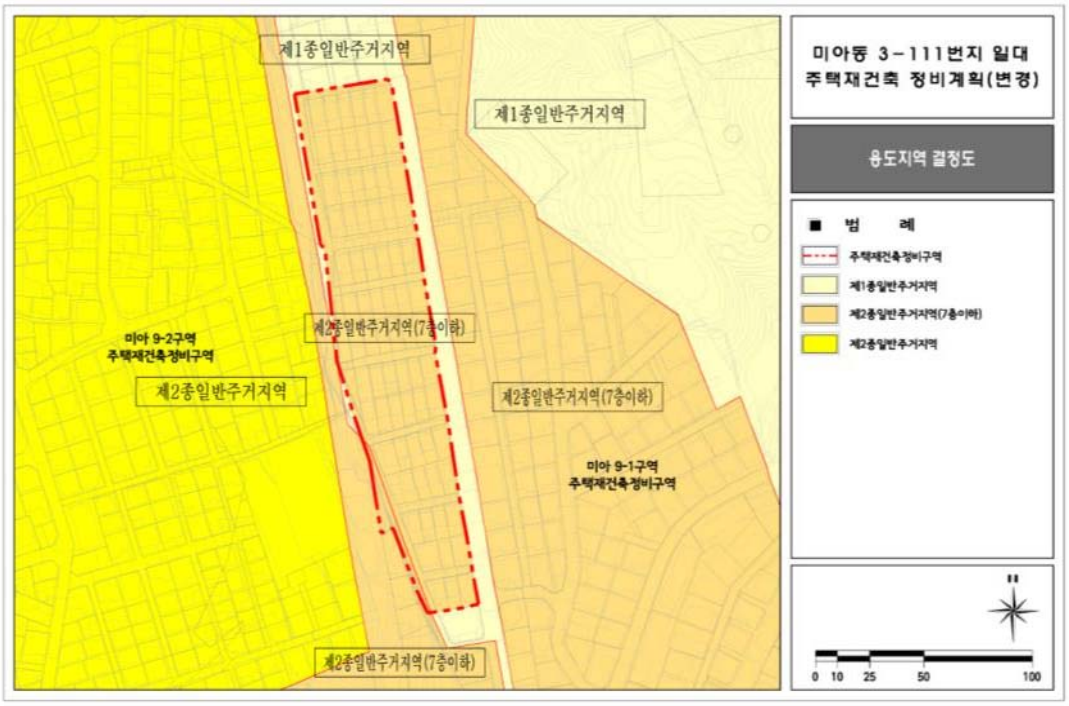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02-2133-7213) 및 강북구청 주택과(☎02-901-682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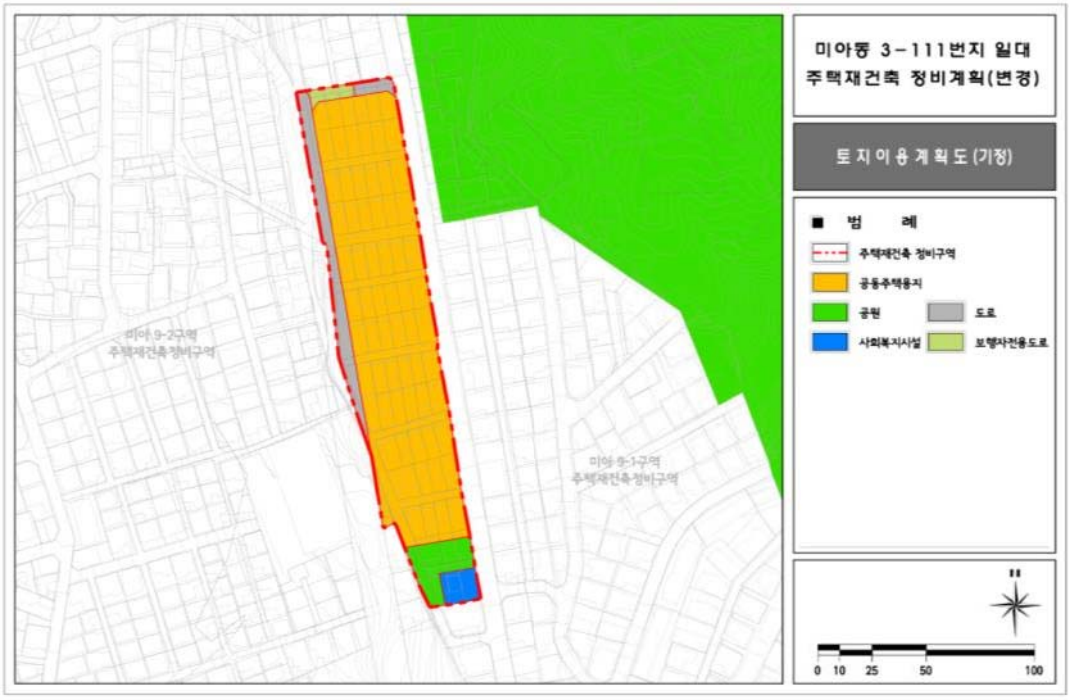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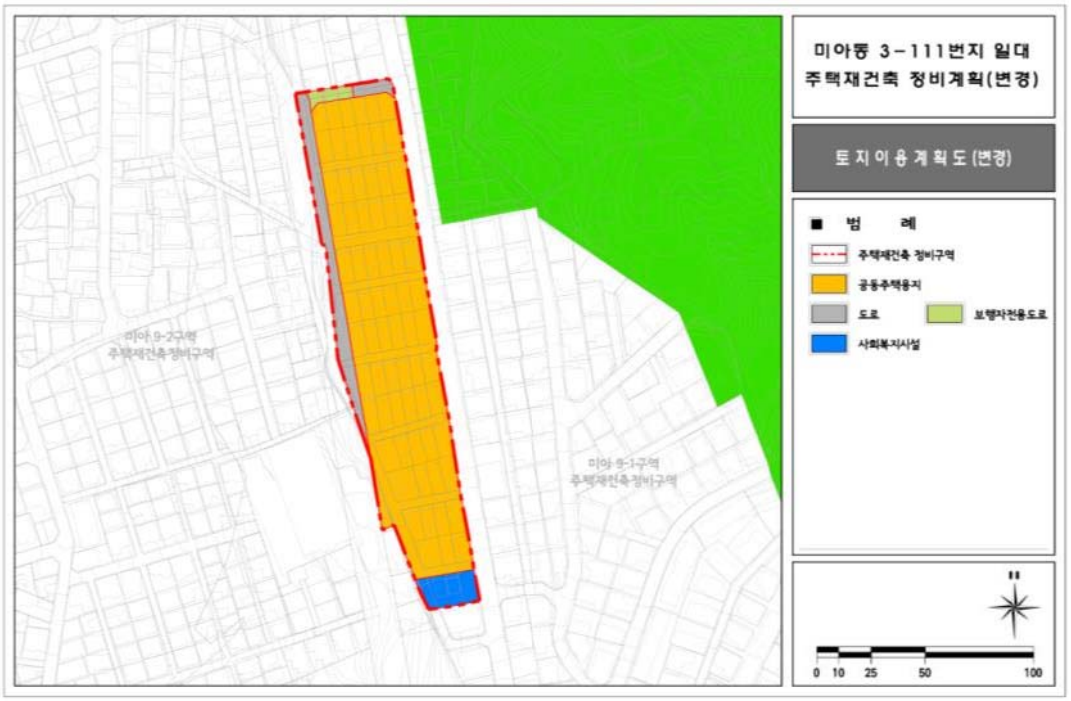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



■ 토지이용계획(기정)도



■ 토지이용계획(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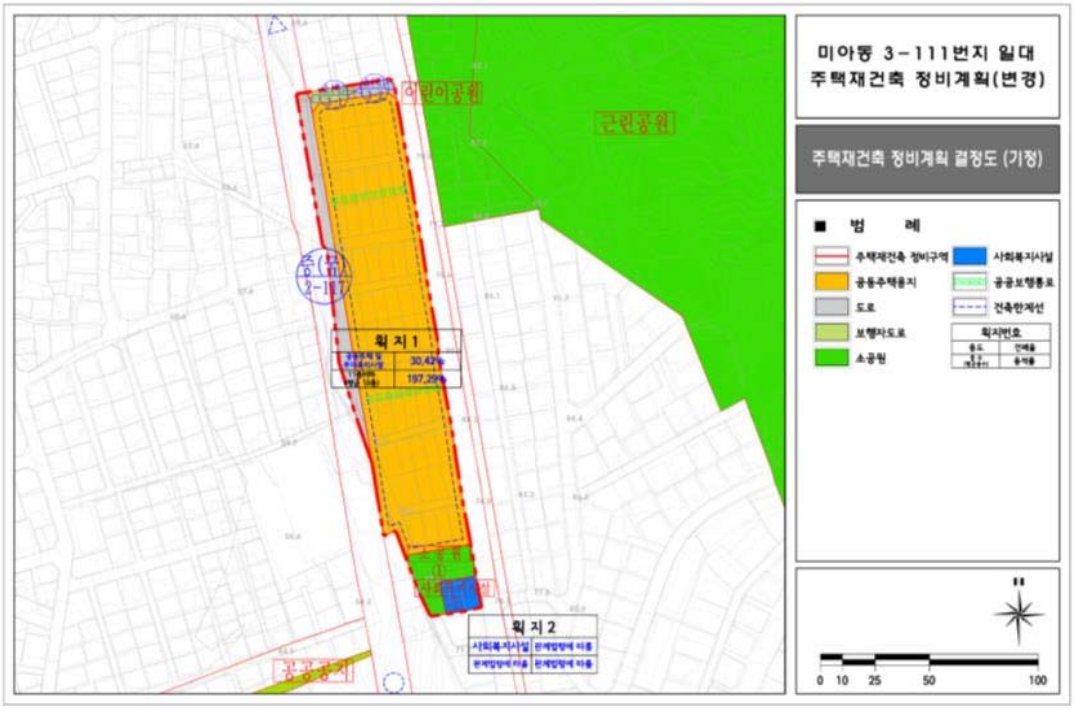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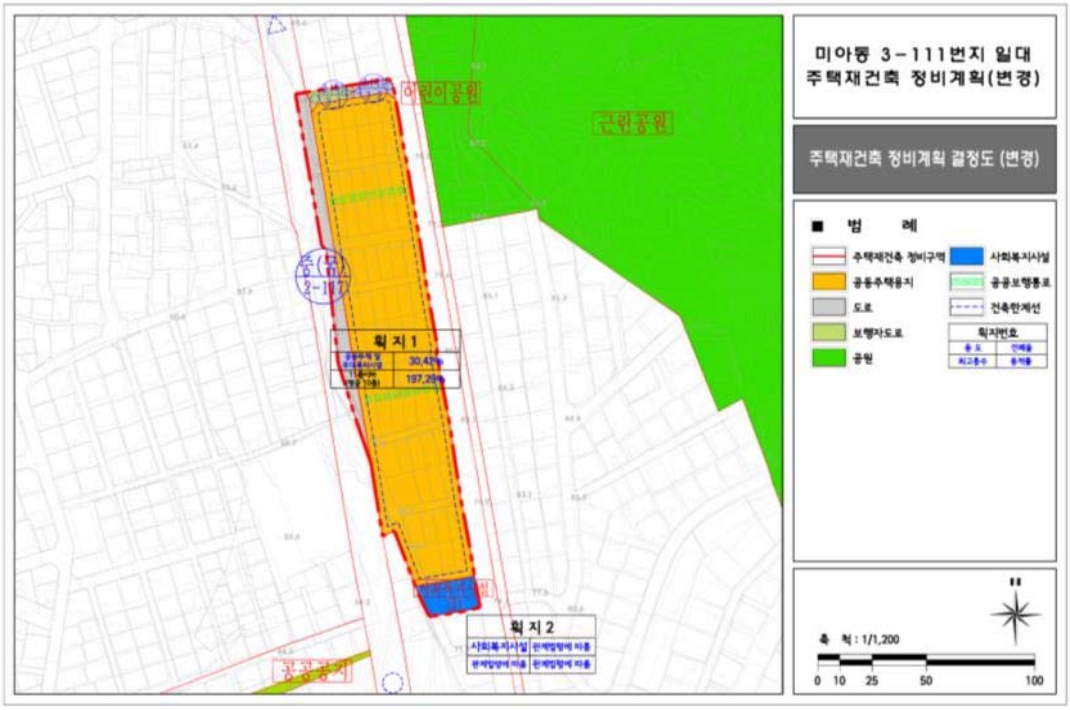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74호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 고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단위 : 천원)

연 번	회 계 별	예 산 액
계		31,814,065,232
1	일 반 회 계	22,466,451,303
2	기타특별회계	7,567,328,792
	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165,087,897
	⑵ 교통사업특별회계	1,344,488,237
	⑶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67,312,647
	⑷ 주택사업특별회계	1,568,621,730
	⑸ 도시개발특별회계	1,275,126,506
	⑹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96,258,338
	⑺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8,338,661
	⑻ 소방안전특별회계	822,094,776
3	공기업특별회계	1,780,285,137
	⑼ 수도사업특별회계	820,000,000
	⑽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960,285,137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75호

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2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정비구역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의3제7항에 따라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 1개 구역

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2호

구역해제 현황

□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

구분	동명	지번	면적(㏊)	계획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단계	주택유형	정비예정(변경)구역지정일(고시번호)
기정	독산동	958-32	10.5	190 이하	60 이하	평균 10층	2	단독	2010.11.25. (서고시 2010-425호)
변경	해 제								

□ 정비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 역 명	위 치	사업방식	면 적(㎡)	정비구역지정일(고시번호)
기정	독산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금천구 독산동 958-32일대	주택재건축	105,309	2010.11.25. (서고시 2010-425호)
변경	해제				

구역해제 현황

□ 정비계획 변경(해제)

○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 토지이용계획 : 폐지(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결정 구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합 계		105,309.0	100.0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27,217.0	25.8	
		도 로	15,627.0	14.8	
		어린이공원1 (지하주차장1)	5,358.0 (950.0)	5.1 (0.9)	
		어린이공원2	2,022.0	1.9	
		학 교	3,757.0	3.6	
		사회복지시설1	284.0	0.3	
		사회복지시설2	169.0	0.2	
	택 지 (획 지)	소 계	78,092.0	74.2	
		획지1	53,652.0	51.0	공독주택부지
		획지2	22,765.0	21.6	
		획지3	1,675.0	1.6	종교시설
변경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건축시설계획(폐지)

결정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비고
	명칭	면적(㎡)				정비 계획	예정법적 상한		
기정	획지1	53,652	금천구 독산동 970-4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	25 이하	249.26 이하	249.26 이하	80m이하 (평균18층이하)	
	획지2	22,765	금천구 독산동 958-32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					
	획지3	1,675	금천구 독산동 981-6번지 일대	종교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획지4	284	금천구 독산동 958-92번지 일대	사회복지시설1	관계법령에 따름				
	획지5	169	금천구 독산동 981-28번지 일대	사회복지시설2	관계법령에 따름				
	획지6	3,757	금천구 독산동 982번지 일대	학교	관계법령에 따름				
변경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

2. 지형도면(해제) : 첨부 도면과 같음

3. 구역 지정의 실효 사유와 실효일
   ○ 실효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에 의한 정비구역등 해제
   ○ 실 효 일 : 고시일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2133-7229)와 금천구 주택과(☎2627-161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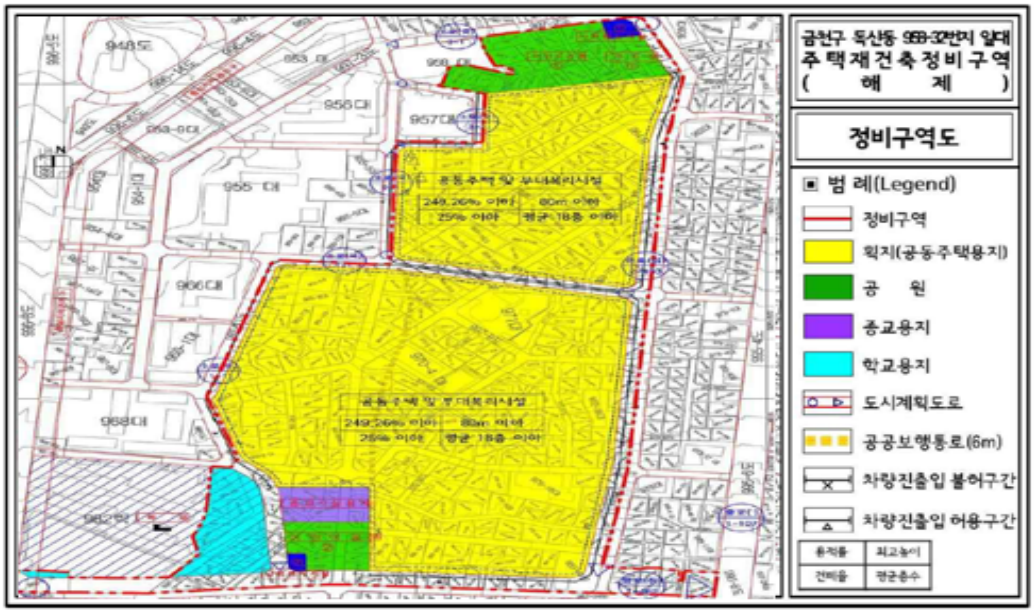
정비구역등 해제 도면

□ 독산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위치도(금천구 독산동 958-32번지 일대)



○ 정비구역도(해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76호

강일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41호(2003.11.10)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429호(2004.12.27)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0호(2006.12.27)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86호(2007.12.27)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08호(2008.6.19)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90호(2009.12.10)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02호(2010.11.11)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59호(2011.6.23)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32호(2012.12.13)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67호(2013.5.30)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63호(2013.12.26.)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03호(2014.03.20.)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65호(2014.12.26.)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51호(2015.05.28.)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04호(2015.12.24.)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20호(2016.12.29.)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7호(2017.06.29.)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7-337호(2017.09.21.)로 지형도면 고시된「강일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따로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강일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없음) : 생략
   나.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생략
   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생략
   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1) 사업시행 대표자(기정)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변경)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신범수
   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1) 사업시행 기간(기정) : 2003.11.10.~2017.12.31.
         (변경) : 2003.11.10.~2018.12.31.
      2) 사업시행 방식 : 변경없음
   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 생략
   사. 토지 등의 세목 및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생략
   아.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생략
   자. 도시관리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 변경(해제)결정(변경없음) : 생략

2. 강일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없음) : 생략

나.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생략

다.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생략

라. 시행자 (변경)

1) 사업시행 대표자(기정)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변경)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신범수

마. 시행기간 (변경)

1) 사업시행 기간(기정) : 2003.11.10. ~ 2017.12.31.

(변경) : 2003.11.10. ~ 2018.12.31.

바. 시행방식 (변경없음) : 생략

사. 수용인구 및 주택공급계획(변경없음) : 생략

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없음) : 생략

자.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관계기관(부서)과 사전 협의사항 이행 (변경없음) : 생략

차.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지형도면고시 도서의 열람장소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02)2133-4647)

-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02)3425-6024)

-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 02)3410-759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77호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52호(2010.12.1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2호(2013.03.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80호(2013.09.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7호(2013.10.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30호(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13호(2016.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2호(2017.03.30)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결정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지정 목적
			기 정	증 감	변 경	
홍제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서대문구 홍제동 330번지 일대	200,492	감) 95	200,397	최초지정일 (10.12.16)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변경	서대문구 홍제동 330번지 일대	· 면적감소 (감 95㎡) – 200,492㎡ → 200,397㎡	· 금회 제척하는 홍은동 217-31번지는 구역외 217-30, 223-7번지와 함께 기개발된 필지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촉진지구에서 제척함

나.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관리 결정(변경)

구분	사업 방식	구역명	위 치	면 적(㎡)			추진현황
				기정	변경	변경 후	
총 계				200,492	감) 95	200,397	–
촉진 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소 계		3,069	–	3,069	–
		홍제2구역	홍제동 294-50 일대	3,069	–	3,069	촉진계획 변경(2014.12)
존치 정비	도시환경 정비사업	소 계		7,769	–	7,769	–
		홍제3구역	홍제동 306-2번지 일대	7,769	–	7,769	구역지정신청(2014.1)
존치 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홍제동 251번지 일대	136,005	감) 95	135,910	–
촉진구역 해제		홍제1구역	홍제동 598-9 일대	42,085	–	42,085	촉진구역 해제(2017.1.18)
		홍은1구역	홍은동 48-159 일대	11,564	–	11,564	촉진구역 해제(2016.7.28)

주) 기정계획은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제2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30호)이며, 현재 절차 진행중인 홍제3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이 결정되어 존치관리구역이 변경(137,268㎡ ⇒ 136,005㎡)될 것을 전제로 작성하였음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1	홍제 지구단위 계획구역	서대문구 홍제동 251번지 일대	136,005	감) 95㎡	135,910	1997. 4. 29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136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변경	서대문구 홍제동 251번지 일대	· 면적감소 (감 95㎡) - 136,005㎡ → 135,910㎡	· 금회 제척하는 홍은동 217-31번지는 구역외 217-30, 223-7번지와 함께 기개발된 필지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촉진지구에서 제척함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36,005	감) 95	135,910	100.0	
주거 지역	소계	104,848	-	104,753	77.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27,971	감) 95	27,876	20.5	
	제3종일반주거지역	47,921	-	47,921	35.3	
	준주거지역	28,956	-	28,956	21.3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1,157	-	31,157	22.9	

주) 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 조성으로 인한 용도지역 면적 변경으로 실질적 용도지역 변경은 없음
주) ( )는 지구단위구역 내 포함되는 면적임

■ 용도지구 결정(변경)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1	미관 지구	일 반 미관지구	홍은동 217-3~ 홍은동 217-6	1,640 (1,596)	93 (70)	양측 12	'82.2.18 (서고 제73호)	연희로
기 정	3	미관 지구	일 반 미관지구	홍제동 172-11~ 홍제동 158-33	7,880 (7,880)	276 (276)	양측 15	'82.2.18 (서고 제73호)	통일로
기 정	4	미관 지구	중 심 지 미관지구	홍제동 294-4~ 홍제동 253-3	16,120 (13,338)	390 (390)	양측 20	'82.2.18 (서고 제73호)	통일로

주) 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 조성으로 인한 용도지역 면적 변경으로 실질적 용도지역 변경은 없음
주) ( )는 지구단위구역 내 포함되는 면적임

다.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교통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 도로 (변경)

■ 도로 결정(변경)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7	35~40	주간선 도로	3,600 (760)	서대문 광장 (홍제동158-33)	홍제동 (홍은동52-3)	일반 도로	'62.12.8 (건고제177호)	통일로
기정	대로	3	17	25	보조 간선도로	2,620 (95)	연희동 (홍은동271-16)	홍은동 226-2	일반 도로	'36.12.26 (총고제722호)	연희로
기정	대로	3	58	30~40	보조 간선도로	7680 (200)	성북구 (홍은동48-233)	홍은동 (홍은동217-27)	일반 도로	'36.12.26 (총고제722호)	세검정로
기정	대로	3	187	25	주간선 도로	(340)	-	-	-	-	내부 순환도로
기정	중로	2	(5)	15	집산 도로	232	대로 1-7	홍제동260-13	일반 도로	'10.5.20 (서고제188호)	-
기정	중로	2	(8)	18	집산 도로	75	홍제동260-13	홍제동266-105	일반 도로	'10.5.20 (서고제188호)	-
기정	중로	2	95	15	집산 도로	690 (95)	대로 1-7	홍제교 (홍제동217-27)	일반 도로	'70.9.1 (건고제424호)	-
기정	중로	2	481	10~15	국지 도로	548 (145)	홍제동266-295	홍제동161-12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3	2	12	집산 도로	460 (100)	대로 1-7	홍제동308-222 (홍제동308-249)	일반 도로	'74.8.1 (서고제106호)	-
기정	중로	3	(3)	9~12	집산 도로	89	소로2-(1)	중로2-95	일반 도로	'02.6.19 (서고제222호)	-
기정	소로	1	1	10~12	국지 도로	513 (7)	홍제동270-39 (홍제동234-4)	홍제동 372-1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59 (29)	대로1-7	중로3-(3)	일반 도로	'02.6.19 (서고제222호)	-
기정	소로	2	6	8	집산 도로	392 (108)	홍제동173-29	홍제동318-17 (홍제동315-42)	일반 도로	'74.8.1 (서고제106호)	-
기정	소로	2	20	8	국지 도로	45	홍제동330-117	홍제동330-169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21	8	국지 도로	105	홍제동330-117	홍제동330-116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22	8	국지 도로	100	홍제동330-89	홍제동330-78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23	8	국지 도로	35	홍제동330-238	홍제동330-241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24	8	국지 도로	80	대로 1-7	홍제동330-338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25	8	국지 도로	80	대로 1-7	홍제동330-226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5	소로 2-(1)	홍제동326-14	일반 도로	'14.12.18 (서고제430호)	-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	4~6	국지 도로	32	중로 2-95	홍제동294-86	일반 도로	'14.12.18 (서고제430호)	-
변경	소로	3	(2)	4~6	국지 도로	41	중로 2-95	대로 1-7	일반 도로	'14.12.18 (서고제430호)	-
기정	소로	3	7	6	국지 도로	254	홍제동174-19	홍제동136-14	일반 도로	'74.8.1 (서고제106호)	-
기정	소로	3	(7)	6	국지 도로	165	홍제동300-9	홍제동249-4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8	6	국지 도로	245	홍제동330-169	홍제동330-249	일반 도로	'74.8.1 (서고제106호)	-
기정	소로	3	15	6	국지 도로	142 (50)	홍제동315-21	홍제동167-24 (홍제동315-58)	일반 도로	'83.2.24 (서고제105호)	-
기정	소로	3	16	6	국지 도로	364 (18)	홍제동306-8	홍제동312-16 (홍제동314-11)	일반 도로	'74.8.1 (서고제106호)	-
기정	소로	3	16	6	국지 도로	262	홍제동167-29	홍제동158-7	일반 도로	'83.2.24 (서고제105호)	-
기정	소로	3	17	6	국지 도로	120	홍제동158-33	홍제동158-12	일반 도로	'83.2.24 (서고제105호)	-
기정	소로	3	17	6	국지 도로	109 (65)	홍제동161-14	홍제동136-3 (홍제동176-15)	일반 도로	'74.8.1 (서고제106호)	-
기정	소로	3	18	6	국지 도로	48	홍제동157-89	홍제동158-42	일반 도로	'83.2.24 (서고제105호)	-
기정	소로	3	22	5	국지 도로	77	홍제동304-87	홍제동305-4	일반 도로	'02.6.19 (서고제222호)	-
기정	소로	3	23	4	국지 도로	168	홍제동174-1	홍제동176-2	일반 도로	'02.6.19 (서고제222호)	-
변경	소로	3	23	4	국지 도로	83	홍제동174-7	홍제동176-2	일반 도로	'02.6.19 (서고제222호)	-
기정	소로	3	24	6	국지 도로	25	홍제동306-4	홍제동306-12	일반 도로	'02.6.19 (서고제222호)	-
신설	소로	3	25	3	특수 도로	108	소로 2-24	소로 2-20	보행자 우선도로	-	-
신설	소로	3	26	3	특수 도로	80	소로2-(1)	소로2-24	보행자 우선도로	-	-
신설	소로	3	27	3	특수 도로	99	소로 2-25	소로 2-24	보행자 우선도로	-	-
신설	소로	3	28	3~4	특수 도로	99	소로 2-24	소로 2-25	보행자 우선도로	-	-
신설	소로	3	29	3~4	특수 도로	23	소로 2-25	홍제동330-234	보행자 우선도로	-	-
신설	소로	3	30	3~4	특수 도로	16	대로 1-7	소로 3-23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31	4	국지 도로	53	홍제동174-26	홍제동174-49	일반 도로	-	-

주)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 및 가·종점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소로 3-23	소로 3-23	· 도로 축소 (L=168m ⇒ 83m)	· 종전 도시계획도로 구간 중 공공의 시설 설치가 곤란하여 통로로 전환하거나, 사유지를 중앙을 관통하여 시설폐지가 필요한 구간 축소
소로 3-(2)	소로 3-(2)	· 도로 연장 (L=32m ⇒ 41m)	· 홍제촉진2구역 내 기결정 된 도로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종전 보행자우선도로를 연결하여 시설 변경
-	소로 3-25	· 도로 신설	· 종전 지구단위계획상 보행자우선도로로 이용되던 국공유지를 도시계획시설(보행자우선도로)로 결정
-	소로 3-26	· 도로 신설	· 종전 지구단위계획상 보행자우선도로로 이용되던 국공유지를 도시계획시설(보행자우선도로)로 결정
-	소로 3-27	· 도로 신설	· 종전 지구단위계획상 보행자우선도로로 이용되던 국공유지를 도시계획시설(보행자우선도로)로 결정
-	소로 3-28	· 도로 신설	· 종전 지구단위계획상 보행자우선도로로 이용되던 국공유지를 도시계획시설(보행자우선도로)로 결정
-	소로 3-29	· 도로 신설	· 종전 지구단위계획상 보행자우선도로로 이용되던 국공유지를 도시계획시설(보행자우선도로)로 결정
-	소로 3-30	· 도로 신설	· 종전 지구단위계획상 보행자전용도로로 이용되던 국공유지 및 도로부지를 도시계획시설(보행자전용도로) 로 결정
-	소로 3-31	· 도로 신설	· 소로 3-23의 선형축소에 따른 대체(우회)도로 확보

○ 주차장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

구분	도면 표시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홍제동 복개주차장	서대문구 홍은동 334번지 일대	16,500 (3,016)	'84. 5. 25 (서고 제311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존치

주)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임

○ 고속철도 (변경없음)

■ 고속철도 결정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 장 (km)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지하철 3호선	고속 철도	벽제	양재동	-	10.906	-	'81. 3. 23 (서고 제78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존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 존치

○ 고가도로 (변경)

■ 고가도로 결정(변경)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폐지	1	홍은차도 육교	고가 도로			홍은동 사거리	375	15	'76. 12. 8 (서고 제331호)	-

■ 고가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	홍은차도육교	폐지	• 2012년 홍은고가도로가 철거됨에 따라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고가도로를 폐지

○ 고속철도 정차장 (변경없음)

■ 고속철도 정차장 결정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홍제역	서대문구 홍제동 161-1 일대	4,500	-	4,500	'81. 3. 29 (서고 제181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존 도시계획시설 (지하철 3호선 정차장) 존치

2) 공공문화시설 결정(변경)

○ 공공청사 (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건축물 계획		
					기정	변경	변경후	용적률	건폐율	높이
기정	1	서대문 세무서	공공 청사	홍제동 251	2,349	-	2,349	-	-	-
변경	1	서대문 세무서	공공 청사	홍제동 251	2,349	-	2,349	250% 이하	50% 이하	40m 이하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	서대문세무서	시설 조서 변경	•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장 제2조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에 따라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시설인 경우 건폐율 · 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함

3) 보건위생시설 결정 (변경없음)

○ 하수도

■ 하수도 결정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간선 하수도	홍은동 217-45	홍은동 171-5		470 (24)	2	'79. 5. 4 (서고 제183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존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존치

주)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포함 연장임

4) 방재시설 결정 (변경없음)

○ 하천

■ 하천 결정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하 천	준 용 하 천	평창동 65	성산동합류점		11,950	65-84	'78. 3. 9 (서고 제83호)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 최대개발규모

■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최대개발규모 적용 예외
		기 정(㎡)	변 경(㎡)	
일반상업지역		1,800	1,800	· 기존필지 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한 경우 · 특별계획구역 · 기공동개발 된 대지인 경우 · 모든 공동개발(지정)필지 면적의 합계가 최대 개발규모가 넘는 경우
준주거지역	간선부	1,000	1,200	
	이면부		1,000	
제2·3종일반주거지역		600	800	
			600	

주) 제2 · 3종일반주거지역은 6m이상 도시계획도로에 접도시 800㎡이고, 접하지 않을시 600㎡ 적용

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개발규모 10%범위 내 완화 가능

■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준주거지역 간선부	· 1,000㎡ ⇒ 1,200㎡	·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한 간선부 개발규모 완화
제2·3종일반주거지역	· 600㎡ ⇒ 800㎡ (6m 이상도시계획도로 접도시)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준용하여 재검토

○ 가구 및 획지계획

■ 가구 및 획지계획 기본방향(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계 획 내 용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계획	· 공동건축, 개별필지, 대지분할 필지에 대한 전면 지정	획지계획	· 전면해제
공동건축 (규제)	· 동일소유자의 필지 · 기 공동건축 필지 (개별소유자가 합의한 경우) ·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형 필지 · 간선도로와 블록내부에 위치한 필지로서 차량 진입이 곤란한 맹지형 필지의 경우	공동개발 (특별지정)	· 소규모 필지들을 개발하여 부족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 간선도로변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 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
		공동개발 (지정)	· 동일소유자(단, 기 공동개발지에 한함) · 건축 불가능한 맹지형 필지 · 차량진출입이 불가능한 필지
공동건축 (권장)	· 주변지역에 과소필지가 있는 경우 · 부정형 필지와 그 인접필지 · 적정개발규모 미달필지 · 간선가로변에 위치한 필지로서 신축시 주변건물과 전용폭의 차이가 심하여 경관상 문제가 될 경우	공동개발 (권장)	· 과소 및 부정형 · 세장형 필지 · 주변 대지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개발단위의 유도가 필요한 필지
자율적 공동건축	·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 운영 (용적률 인센티브 없음)	자율적 공동개발	· 인센티브 연계 적극 활용 · 부정형, 세장형 필지는 불허

○ 획지계획

■ 획지계획 결정(변경)

구 분	도면 번호	가구(획지) 번호	면적 (㎡)	획지계획(변경)		비 고
				위 치	면적(㎡)	
폐지	1~284	1~284	-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	· 대상지 내 모든 가구에 대하여 획지계획 결정 폐지

■ 획지계획 결정(폐지) 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 획지계획 폐지 (284획지)	· 소유자의 자발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건축물 성능 및 주거환경개선 등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획지계획 폐지

■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결정 변경 : 기정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비고
			위치	면적 (㎡)		
1	1	137	홍은동048-178	25	◦ 048-179 공동건축규제	구) 홍은1 재정비 촉진구역
			홍은동048-179	56	◦ 048-178, 048-180 공동건축규제	
			홍은동048-180	56	◦ 048-179 공동건축규제	
2	2	143	홍은동048-181	66	◦ 048-182 공동건축규제	
			홍은동048-182	77	◦ 048-181 공동건축규제	
3	3	307	홍은동048-185	307		
4	4	146	홍은동048-201	100	◦ 048-203 공동건축권장	
			홍은동048-203	46	◦ 048-201 공동건축권장	
5	5	235	홍은동048-195	3	◦ 048-199, 048-330 공동건축권장	
			홍은동048-196	7	◦ 048-197, 048-331 공동건축권장	
			홍은동048-197	4	◦ 048-196, 048-198, 048-332 공동건축권장	
			홍은동048-198	56	◦ 048-204 공동건축규제 ◦ 048-197 공동건축권장	
			홍은동048-199	46	◦ 048-200 공동건축규제 ◦ 048-195 공동건축권장	
			홍은동048-200	50	◦ 048-199, 048-204 공동건축규제	
			홍은동048-204	56	◦ 048-198, 048-200 공동건축규제	
			홍은동048-330	3	◦ 048-195 공동건축권장	
			홍은동048-331	5	◦ 048-196 공동건축권장	
			홍은동048-332	5	◦ 048-197 공동건축권장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비고
			위치	면적 (㎡)		
6	6	145	홍은동048-205	46	◦ 048-206 공동건축권장	구) 홍은1 재정비 촉진구역
			홍은동048-206	26	◦ 048-207, 048-269 공동건축규제 ◦ 048-205 공동건축권장	
			홍은동048-207	26	◦ 048-206, 048-312 공동건축규제	
			홍은동048-269	30	◦ 048-206 공동건축규제	
			홍은동048-312	17	◦ 048-207 공동건축규제	
7	7	49	홍은동048-211	9	◦ 048-268 공동건축규제	
			홍은동048-268	40	◦ 048-211 공동건축규제	
8	8	45	홍은동048-264	45		
9	9	252	홍은동048-212	45	◦ 048-213, 048-265 공동건축규제	
			홍은동048-213	54	◦ 048-212, 048-333 공동건축규제	
			홍은동048-214	3	◦ 048-334 공동건축권장	
			홍은동048-218	23	◦ 048-219 공동건축규제 ◦ 048-335 공동건축권장	
			홍은동048-219	23	◦ 048-218, 048-266 공동건축규제	
			홍은동048-265	50	◦ 048-212, 048-266 공동건축규제	
			홍은동048-266	23	◦ 048-219, 048-265 공동건축규제	
			홍은동048-333	2	◦ 048-213 공동건축규제 ◦ 048-334 공동건축권장	
			홍은동048-334	12	◦ 048-214, 048-333 공동건축권장	
			홍은동048-335	17	◦ 048-218 공동건축권장	
10	10	210	홍은동048-209	56	◦ 048-253, 048-262 공동건축권장	
			홍은동048-210	3	◦ 048-253 공동건축규제	
			홍은동048-253	46	◦ 048-210 공동건축규제 ◦ 048-209 공동건축권장	
			홍은동048-260	45	◦ 048-262 공동건축권장	
			홍은동048-262	60	◦ 048-209, 048-260 공동건축권장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비고
			위치	면적 (㎡)		
11	11	116	홍은동048-254	66	◦ 048-255 공동건축권장	구) 홍은1 재정비 촉진구역
			홍은동048-255	50	◦ 048-254 공동건축권장	
12	12	153	홍은동048-220	15	◦ 048-257 공동건축규제 ◦ 048-336 공동건축권장	
			홍은동048-221	6	◦ 048-336 공동건축권장	
			홍은동048-257	17	◦ 048-220, 048-258 공동건축규제	
			홍은동048-258	50	◦ 048-257, 048-259 공동건축규제	
			홍은동048-259	50	◦ 048-258 공동건축규제	
			홍은동048-336	15	◦ 048-220, 048-221 공동건축권장	
13	13	120	홍은동048-225	10	◦ 048-227, 048-256 공동건축권장	
			홍은동048-227	3	◦ 048-225, 048-237 공동건축권장	
			홍은동048-237	1	◦ 048-227, 048-337 공동건축권장	
			홍은동048-256	99	◦ 048-225, 048-337 공동건축권장	
			홍은동048-337	7	◦ 048-237, 048-256 공동건축권장	
14	14	225	홍은동048-238	165	◦ 048-250 공동건축권장	
			홍은동048-250	60	◦ 048-238 공동건축권장	
15	15	179	홍은동048-240	119	◦ 048-241 공동건축권장	
			홍은동048-241	60	◦ 048-240 공동건축권장	
16	16	99	홍은동048-248	46	◦ 048-249 공동건축규제	
			홍은동048-249	53	◦ 048-248 공동건축규제	
17	17	98	홍은동048-245	2	◦ 048-338 공동건축권장	
			홍은동048-246	73	◦ 048-338 공동건축규제	
			홍은동048-338	23	◦ 048-246 공동건축규제 ◦ 048-245 공동건축권장	
18	18	139	홍은동048-242	53	◦ 048-243 공동건축권장	
			홍은동048-243	53	◦ 048-244 공동건축규제 ◦ 048-242 공동건축권장	
			홍은동048-244	10	◦ 048-243, 048-362 공동건축규제	
			홍은동048-362	23	◦ 048-244 공동건축규제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비고
			위치	면적 (㎡)		
19	19	9,732	홍은동217-027	90	◦ 294-046 공동건축규제	구) 홍은1 재정비 촉진구역
			홍제동294-001	1,420	◦ 294-046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94-046	8,124	◦ 217-027, 294-001, 295-033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95-033	98	◦ 294-046 공동건축규제	
20	20	3,176	홍제동294-020	110	◦ 294-025, 294-040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94-025	112	◦ 249-020, 299-003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94-040	10	◦ 294-020, 294-045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94-045	2	◦ 294-040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98-009	2,907	◦ 299-003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99-003	35	◦ 294-025, 298-009 공동건축규제	
21	21	688	홍제동295-018	44	◦ 299-049, 300-010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99-019	145	◦ 299-049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99-049	438	◦ 299-019 공동건축규제 ◦ 295-018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00-008	4	◦ 300-010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00-010	57	◦ 295-018, 300-008 공동건축권장	
22	22	385	홍제동295-018	30	◦ 299-033, 300-010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99-033	175	◦ 295-018, 299-035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99-035	165	◦ 299-033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00-010	15	◦ 295-018 공동건축권장	
23	23	338	홍제동299-022	179	◦ 299-023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99-023	159	◦ 299-022 공동건축권장	
24	24	208	홍제동299-021	208		
25	25	609	홍제동161-001	9	◦ 161-009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61-009	18	◦ 161-001, 299-05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99-007	262	◦ 299-012, 299-042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99-012	307	◦ 299-007, 299-05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99-042	2	◦ 299-007, 299-043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99-043	10	◦ 299-042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99-051	1	◦ 161-009, 299-012 공동건축권장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비고
			위치	면적 (㎡)		
26	26	1,113	홍제동161-001	12	◦ 299-044, 301-015 공동건축권장	구) 홍제1 재정비 촉진구역
			홍제동299-002	66	◦ 299-052, 301-015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99-005	879	◦ 299-044, 299-052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99-044	83	◦ 299-005 공동건축규제 ◦ 161-00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99-052	37	◦ 299-002, 299-005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01-015	36	◦ 299-002 공동건축규제 ◦ 161-001 공동건축권장	
27	27	1,227	홍제동161-001	7	◦ 299-028, 299-039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94-004	261	◦ 294-007, 294-037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94-007	19	◦ 294-004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94-036	60	◦ 294-037, 299-003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94-037	136	◦ 294-036 공동건축규제 ◦ 294-004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94-046	5	◦ 299-028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98-009	35	◦ 299-003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99-003	441	◦ 294-036, 298-009, 299-015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99-015	241	◦ 299-003 공동건축규제 ◦ 299-039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99-028	12	◦ 161-001, 294-046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99-039	10	◦ 161-001, 299-015 공동건축권장	
28	28	4,599	홍제동295-005	96	◦ 295-006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95-006	89	◦ 295-005, 295-009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95-009	43	◦ 295-006, 295-010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95-010	63	◦ 295-009, 295-011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95-011	69	◦ 295-010, 295-018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95-018	66	◦ 295-011, 298-001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96-001	546	◦ 296-003, 296-005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96-002	734	◦ 296-005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96-003	122	◦ 296-001, 298-007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96-005	16	◦ 296-001, 296-002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98-001	152	◦ 295-018, 298-006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98-006	159	◦ 298-001, 298-007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98-007	2,444	◦ 296-003, 298-006 공동건축규제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비고
			위치	면적 (㎡)		
29	29	876	홍제동295-022	595	◦ 295-025, 297-012 공동건축규제	구) 홍제1 재정비 촉진구역
			홍제동295-025	271	◦ 295-022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97-012	10	◦ 295-022 공동건축규제	
30	30	333	홍제동264-007	26	◦ 264-010 공동건축규제 ◦ 264-008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64-008	19	◦ 264-007, 295-025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64-010	40	◦ 264-007, 264-011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64-011	200	◦ 264-010 공동건축규제	
					◦ 264-020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64-017	15	◦ 264-020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64-020	25	◦ 264-011, 264-017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95-025	8	◦ 264-008 공동건축권장	
31	31	151	홍제동264-004	148	◦ 264-017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64-017	3	◦ 264-004 공동건축권장	
32	32	179	홍제동261-014	2	◦ 264-006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63-004	3	◦ 264-006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64-005	96	◦ 264-006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64-006	66	◦ 261-014, 263-004, 264-005, 264-019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64-019	12	◦ 264-006 공동건축권장	
33	33	274	홍제동295-016	122	◦ 295-023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95-023	152	◦ 295-016 공동건축규제	
34	34	231	홍제동295-015	218	◦ 295-017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95-017	13	◦ 295-015 공동건축권장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비고
			위치	면적 (㎡)		
35	35	170	홍제동264-019	3	◦ 297-007 공동건축권장	구) 홍제1 재정비 촉진구역
			홍제동295-012	116	◦ 297-007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97-007	51	◦ 295-012 공동건축규제 ◦ 264-019 공동건축권장	
36	36	136	홍제동264-019	2	◦ 295-013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95-013	134	◦ 264-019 공동건축권장	
37	37	447	홍제동295-007	139	◦ 297-009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95-008	129	◦ 297-010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97-009	70	◦ 295-007 공동건축규제 ◦ 297-010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97-010	109	◦ 295-008 공동건축규제 ◦ 297-009 공동건축권장	
38	38	255	홍제동299-001	130	◦ 299-01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99-011	125	◦ 299-001 공동건축권장	
39	39	503	홍제동299-008	112	◦ 299-032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99-031	266	◦ 299-032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99-032	125	◦ 299-008, 299-031 공동건축권장	
40	40	368	홍제동300-006	92	◦ 300-016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00-008	5	◦ 300-015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00-015	109	◦ 300-008, 300-016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00-016	162	◦ 300-006, 300-015 공동건축권장	
41	41	132	홍제동300-004	65	◦ 300-005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00-005	67	◦ 300-004 공동건축규제	
42	42	243	홍제동300-002	127	◦ 300-003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00-003	116	◦ 300-002 공동건축권장	
43	43	216	홍제동300-018	216		
44	44	301	홍제동300-001	152	◦ 300-017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00-017	149	◦ 300-001 공동건축권장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비고
			위치	면적 (㎡)		
45	45	1,668	홍제동161-009	14	◦ 301-003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95-018	22	◦ 301-002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01-002	1,155	◦ 301-003, 301-005 공동건축규제 ◦ 295-018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01-003	336	◦ 301-002 공동건축규제	
					◦ 161-009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01-005	141	◦ 301-002 공동건축규제	
46	46	496	홍제동301-011	496		
47	47	1,321	홍제동302-001	76	◦ 303-001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03-001	730	◦ 302-001, 304-093 공동건축규제 ◦ 304-09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04-078	49	◦ 304-093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04-087	13	◦ 304-092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04-091	103	◦ 304-092 공동건축규제 ◦ 303-00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04-092	75	◦ 304-087, 304-091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04-093	275	◦ 303-001, 304-078 공동건축규제	
48	48	381	홍제동304-030	14	◦ 305-001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05-001	190	◦ 304-030, 305-002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05-002	175	◦ 305-001 공동건축규제 ◦ 305-01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05-011	2	◦ 305-002 공동건축권장	
49	49	378	홍제동161-001	31	◦ 305-003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04-047	1	◦ 305-004, 305-013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05-003	180	◦ 305-004 공동건축규제 ◦ 161-00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05-004	164	◦ 305-003 공동건축규제 ◦ 304-047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05-012	1	◦ 305-013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05-013	1	◦ 304-047, 305-012 공동건축권장	
50	50	231	홍제동304-011	231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비고
			위치	면적 (㎡)		
51	51	174	홍제동304-011	41	◦ 304-089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04-025	83	◦ 304-089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04-089	50	◦ 304-011, 304-025 공동건축규제	
52	52	146	홍제동304-065	146		
53	53	149	홍제동304-041	13	◦ 304-066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04-066	136	◦ 304-041 공동건축규제	
54	54	149	홍제동304-067	149		
55	55	92	홍제동304-068	89	◦ 304-086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04-086	3	◦ 304-068 공동건축규제	
56	56	82	홍제동304-029	16	◦ 304-076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04-076	66	◦ 304-029 공동건축규제	
57	57	116	홍제동304-030	30	◦ 304-031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04-031	86	◦ 304-030 공동건축규제	
58	58	117	홍제동304-030	8	◦ 304-032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04-032	109	◦ 304-030 공동건축규제	
59	59	76	홍제동304-030	8	◦ 304-035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04-035	68	◦ 304-030 공동건축규제	
60	60	99	홍제동304-033	83	◦ 304-047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04-047	13	◦ 304-033, 304-097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04-097	3	◦ 304-047 공동건축권장	
61	61	62	홍제동304-040	62		
62	62	184	홍제동304-009	122	◦ 304-034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04-034	46	◦ 304-097 공동건축규제	
					◦ 304-009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04-097	16	◦ 304-034 공동건축규제	
63	63	165	홍제동300-009	165		
64	64	210	홍제동300-012	96	◦ 300-013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00-013	114	◦ 300-012 공동건축권장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비고
			위치	면적 (㎡)		
65	65	2,791	홍제동295-018	58	◦ 301-006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01-006	2,610	◦ 304-069 공동건축규제 ◦ 295-018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04-069	123	◦ 301-006 공동건축규제	
66	66	221	홍제동304-002	112	◦ 304-109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04-109	109	◦ 304-002 공동건축권장	
67	67	149	홍제동304-104	149		
68	68	208	홍제동304-105	208		
69	69	241	홍제동304-094	241		
70	70	235	홍제동304-095	235		
71	71	421	홍제동161-011	33	◦ 253-005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53-004	179	◦ 253-005, 253-026 공동건축규제 ◦ 253-017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53-005	201	◦ 253-004 공동건축규제 ◦ 161-01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53-017	1	◦ 253-004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53-026	7	◦ 253-004 공동건축규제	
72	72	825	홍제동161-011	37	◦ 253-008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53-007	312	◦ 253-034 공동건축규제 ◦ 253-009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53-008	251	◦ 253-009 공동건축규제 ◦ 161-01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53-009	206	◦ 253-008 공동건축규제 ◦ 253-007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53-034	19	◦ 253-007 공동건축규제	
73	73	455	홍제동161-011	26	◦ 253-01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53-011	211	◦ 161-011, 253-012, 253-015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53-012	73	◦ 253-035 공동건축규제 ◦ 253-01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53-015	30	◦ 253-01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53-035	115	◦ 253-012 공동건축규제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비고
			위치	면적 (㎡)		
74	74	307	홍제동253-013	162	◦ 253-014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53-014	145	◦ 253-013 공동건축규제	
75	75	331	홍제동253-010	169	◦ 254-005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54-005	162	◦ 253-010 공동건축권장	
76	76	404	홍제동253-016	149	◦ 254-00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54-001	255	◦ 253-016 공동건축권장	
77	77	476	홍제동250-001	243	◦ 250-002, 250-004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50-002	232	◦ 250-00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50-004	1	◦ 250-001 공동건축권장	
78	78	2,349	홍제동251-000	2,349		
79	79	610	홍제동161-011	118	◦ 251-004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51-004	492	◦ 161-011 공동건축권장	
80	80	247	홍제동161-011	14	◦ 253-003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53-003	233	◦ 161-011 공동건축권장	
81	81	251	홍제동304-108	251		
82	82	175	홍제동304-111	175		
83	83	258	홍제동304-110	258		
84	84	224	홍제동304-102	112	◦ 304-112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04-112	112	◦ 304-102 공동건축권장	
85	85	231	홍제동257-003	112	◦ 257-023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57-017	20	◦ 257-023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57-023	99	◦ 257-003, 257-017 공동건축권장	
86	86	228	홍제동257-018	99	◦ 257-022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57-019	20	◦ 257-022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57-022	109	◦ 257-019 공동건축규제	
					◦ 257-018 공동건축권장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비고
			위치	면적 (㎡)		
87	87	204	홍제동257-020	102	◦ 257-02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57-021	102	◦ 257-020 공동건축권장	
88	88	237	홍제동257-001	6	◦ 257-013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57-013	231	◦ 257-001 공동건축권장	
89	89	149	홍제동304-037	149		
90	90	132	홍제동304-058	132		
91	91	119	홍제동304-057	119		
92	92	171	홍제동304-056	164	◦ 304-08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04-081	7	◦ 304-056 공동건축권장	
93	93	175	홍제동304-017	175		
94	94	427	홍제동304-015	69	◦ 304-016, 304-047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04-016	99	◦ 304-015, 304-018, 304-098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04-018	96	◦ 304-016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04-047	6	◦ 304-015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04-098	157	◦ 304-016 공동건축권장	
95	95	235	홍제동304-006	136	◦ 304-010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04-010	99	◦ 304-006 공동건축권장	
96	96	148	홍제동304-113	148		
97	97	184	홍제동304-008	184		
98	98	197	홍제동304-046	118	◦ 304-083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04-083	79	◦ 304-046 공동건축권장	
99	99	264	홍제동257-015	264		
100	100	146	홍제동257-002	132	◦ 257-004, 259-004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57-004	12	◦ 257-002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59-004	2	◦ 257-002 공동건축권장	
101	101	116	홍제동257-008	116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비고
			위치	면적 (㎡)		
102	102	397	홍제동258-005	397		
103	103	363	홍제동249-004	363		
104	104	235	홍제동258-002	197	◦ 259-009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59-009	38	◦ 258-002 공동건축권장	
105	105	132	홍제동257-009	132		
106	106	142	홍제동257-010	142		
107	107	331	홍제동257-011	149	◦ 258-004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58-004	182	◦ 257-011 공동건축권장	
108	108	188	홍제동256-005	188		
109	109	179	홍제동256-001	179		
110	110	219	홍제동256-003	122	◦ 256-006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56-004	7	◦ 256-006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56-006	90	◦ 256-003 공동건축규제 ◦ 256-004 공동건축권장	
111	111	318	홍제동255-002	126	◦ 255-004, 256-002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55-004	102	◦ 255-002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56-002	90	◦ 255-002 공동건축권장	
112	112	134	홍제동255-005	134		
113	113	433	홍제동174-001	184	◦ 174-003, 174-032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4-003	13	◦ 174-001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4-019	169	◦ 174-062 공동건축규제 ◦ 174-032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4-020	7	◦ 215-00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4-032	28	◦ 174-001 공동건축규제 ◦ 174-019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4-062	23	◦ 174-019 공동건축규제 ◦ 215-00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15-001	9	◦ 174-020, 174-062 공동건축권장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비고
			위치	면적 (㎡)		
114	114	265	홍제동174-021	185	◦ 174-033 공동건축규제 ◦ 174-034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4-033	7	◦ 174-021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4-034	73	◦ 174-021 공동건축권장	
115	115	328	홍제동174-032	163	◦ 174-035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4-035	165	◦ 174-032 공동건축권장	
116	116	401	홍제동174-002	401		
117	117	431	홍제동161-013	18	◦ 174-056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4-016	132	◦ 174-056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4-056	281	◦ 161-013, 174-016 공동건축권장	
118	118	456	홍제동161-013	14	◦ 174-005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4-005	442	◦ 161-013 공동건축권장	
119	119	402	홍제동161-013	27	◦ 174-055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4-017	186	◦ 174-028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4-018	45	◦ 174-037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4-028	76	◦ 174-017, 174-037, 174-055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4-037	45	◦ 174-018, 174-028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4-055	23	◦ 174-028 공동건축규제 ◦ 161-013 공동건축권장	
120	120	610	홍제동161-013	42	◦ 174-013, 174-014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4-013	132	◦ 174-046 공동건축규제 ◦ 161-013, 174-014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4-014	119	◦ 174-015 공동건축규제 ◦ 161-013, 174-013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4-015	163	◦ 174-014 공동건축규제 ◦ 174-066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4-046	152	◦ 174-013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4-066	2	◦ 174-015 공동건축권장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비고
			위치	면적 (㎡)		
121	121	412	홍제동161-013	11	◦ 176-004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6-004	401	◦ 161-013 공동건축권장	
122	122	273	홍제동176-006	273		
123	123	277	홍제동176-003	99	◦ 176-009, 176-005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6-005	92	◦ 176-003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6-009	86	◦ 176-003 공동건축권장	
124	124	412	홍제동175-013	10	◦ 176-002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6-001	291	◦ 176-002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6-002	111	◦ 175-013, 176-001 공동건축권장	
125	125	443	홍제동175-003	440	◦ 175-013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5-013	3	◦ 175-003 공동건축권장	
126	126	194	홍제동175-007	194		
127	127	142	홍제동175-006	142		
128	128	165	홍제동175-010	165		
129	129	175	홍제동175-011	175		
130	130	71	홍제동174-011	71		
131	131	151	홍제동174-009	151		
132	132	108	홍제동174-007	98	◦ 174-071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4-071	10	◦ 174-007 공동건축규제	
133	133	189	홍제동174-018	166	◦ 174-039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4-039	23	◦ 174-018 공동건축규제	
134	134	839	홍제동174-003	550	◦ 174-042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4-004	29	◦ 174-005, 174-042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4-005	34	◦ 174-004, 174-043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4-037	1	◦ 174-044 공동건축규제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비고
			위치	면적 (㎡)		
134	134	839	홍제동174-042	99	◦ 174-004 공동건축규제 ◦ 174-003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4-043	26	◦ 174-005, 174-060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4-044	96	◦ 174-037, 174-060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4-048	1	◦ 174-060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4-060	3	◦ 174-043, 174-044, 174-048 공동건축규제	
135	135	340	홍제동174-006	126	◦ 174-024, 174-040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4-024	159	◦ 174-057 공동건축규제	
					◦ 174-006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4-040	7	◦ 174-057 공동건축규제	
					◦ 174-006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4-057	7	◦ 174-040, 175-004, 174-024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5-002	16	◦ 175-004, 175-014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5-004	12	◦ 174-057, 175-002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5-014	13	◦ 175-002 공동건축규제	
136	136	169	홍제동175-001	169		
137	137	293	홍제동174-025	161	◦ 174-026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4-026	132	◦ 174-025 공동건축권장	
138	138	620	홍제동137-012	534	◦ 137-042, 370-008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37-042	6	◦ 137-012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61-006	32	◦ 370-008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70-008	48	◦ 137-012, 161-006 공동건축규제	
139	139	504	홍제동137-014	259	◦ 137-015, 137-04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37-015	236	◦ 137-014, 137-040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37-040	1	◦ 137-015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37-041	8	◦ 137-014 공동건축권장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비고
			위치	면적 (㎡)		
140	140	343	홍제동137-016	247	◦ 137-039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37-039	96	◦ 137-016 공동건축규제	
141	141	266	홍제동137-017	266		
142	142	778	홍제동137-023	228	◦ 137-024, 137-032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37-024	210	◦ 137-023, 137-025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37-025	210	◦ 137-024 공동건축규제	
					◦ 161-00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37-032	66	◦ 137-023, 137-034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37-034	33	◦ 137-032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61-001	31	◦ 137-025 공동건축권장	
143	143	233	홍제동137-011	195	◦ 370-004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70-004	38	◦ 137-011 공동건축규제	
144	144	298	홍제동137-001	272	◦ 370-001, 370-003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70-001	24	◦ 137-00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70-003	2	◦ 137-001 공동건축권장	
145	145	178	홍제동137-010	178		
146	146	183	홍제동137-009	183		
147	147	152	홍제동137-003	152		
148	148	357	홍제동137-005	185	◦ 137-006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37-006	172	◦ 137-005 공동건축권장	
149	149	355	홍제동137-008	263	◦ 137-026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37-026	92	◦ 137-008 공동건축권장	
150	150	254	홍제동137-002	254		
151	151	235	홍제동137-018	235		
152	152	357	홍제동137-019	217	◦ 137-020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37-020	140	◦ 137-019 공동건축권장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비고
			위치	면적 (㎡)		
153	153	431	홍제동161-001	17	◦ 301-019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61-010	8	◦ 301-020, 330-411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01-019	20	◦ 330-067 공동건축규제	
					◦ 161-00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01-020	10	◦ 161-010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30-066	99	◦ 330-349, 330-390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30-067	66	◦ 301-019, 330-246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30-069	66	◦ 330-246, 330-410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30-246	66	◦ 330-067, 330-069, 330-349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30-349	26	◦ 330-066, 330-246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30-390	13	◦ 330-066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30-410	23	◦ 330-069, 330-411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30-411	17	◦ 161-010, 330-410 공동건축규제	
154	154	546	홍제동330-070	69	◦ 330-071 공동건축규제 ◦ 330-362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071	63	◦ 330-070, 330-072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30-072	66	◦ 330-071, 330-379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30-073	50	◦ 330-074, 330-362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074	50	◦ 330-073, 330-076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076	198	◦ 330-074, 330-379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362	7	◦ 330-070, 330-073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379	43	◦ 330-072 공동건축규제 ◦ 330-076 공동건축권장	
155	155	238	홍제동330-238	238		
156	156	389	홍제동330-239	142	◦ 330-24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241	247	◦ 330-239 공동건축권장	
157	157	532	홍제동330-210	265	◦ 330-247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247	105	◦ 330-210, 330-249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248	112	◦ 330-249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30-249	50	◦ 330-248 공동건축규제 ◦ 330-247 공동건축권장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비고
			위치	면적 (㎡)		
158	158	4,728	홍제동173-036	99	◦ 253-024, 306-002 공동건축규제	현) 홍제3 존치정비구역
			홍제동253-024	33	◦ 173-036, 253-032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53-029	16	◦ 253-030, 306-014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53-030	17	◦ 253-029, 253-031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53-031	10	◦ 253-030, 253-032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53-032	1	◦ 253-024, 253-031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06-002	3,892	◦ 173-036, 306-016, ◦ 307-026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06-005	129	◦ 306-016, 306-017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06-006	140	◦ 307-027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06-014	32	◦ 253-029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06-016	131	◦ 306-002, 306-005, ◦ 307-027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06-017	60	◦ 306-005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07-026	15	◦ 306-002, 307-028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07-027	33	◦ 306-006, 306-016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07-028	120	◦ 307-026 공동건축규제	
159	159	689	홍제동173-001	63	◦ 173-002, 173-029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3-002	165	◦ 173-004 공동건축규제 ◦ 173-00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3-003	143	◦ 173-004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3-004	243	◦ 173-002 공동건축규제 ◦ 173-003, 173-029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3-029	75	◦ 173-001, 173-004 공동건축권장	
160	160	93	홍제동306-004	93		
161	161	123	홍제동306-011	123		
162	162	124	홍제동306-012	124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비고
			위치	면적 (㎡)		
163	163	404	홍제동306-019	404		현) 홍제3 존치정비구역
164	164	148	홍제동306-009	148		
165	165	811	홍제동306-008	786	◦ 314-019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14-019	25	◦ 306-008 공동건축권장	
166	166	193	홍제동315-056	18	◦ 315-057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15-057	175	◦ 315-056 공동건축권장	
167	167	200	홍제동156-468	6	◦ 315-056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15-001	176	◦ 315-056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15-056	18	◦ 156-468, 315-001 공동건축권장	
168	168	219	홍제동156-468	63	◦ 315-02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15-021	156	◦ 156-468 공동건축권장	
169	169	112	홍제동156-575	25	◦ 315-011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15-011	87	◦ 156-575 공동건축규제	
170	170	338	홍제동156-468	26	◦ 167-00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67-001	4	◦ 156-468, 173-006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67-003	31	◦ 167-027, 173-027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67-027	119	◦ 167-003, 173-006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3-006	82	◦ 167-001,167-027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3-027	76	◦ 167-003 공동건축권장	
171	171	241	홍제동156-468	3	◦ 167-001, 173-007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67-001	14	◦ 156-468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3-007	89	◦ 173-020 공동건축규제 ◦ 156-468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3-019	36	◦ 173-020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3-020	99	◦ 173-007, 173-019 공동건축규제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비고
			위치	면적 (㎡)		
172	172	333	홍제동167-004	87	◦ 173-034 공동건축규제 ◦ 167-060, 167-06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67-060	5	◦ 167-004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67-061	1	◦ 167-004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3-017	144	◦ 173-034 공동건축규제 ◦ 173-02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3-021	76	◦ 173-017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3-034	20	◦ 167-004, 173-017 공동건축규제	
173	173	275	홍제동156-468	1	◦ 172-002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2-002	2	◦ 156-468, 172-012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2-006	1	◦ 172-011, 172-018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2-008	43	◦ 172-012, 172-017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2-011	212	◦ 172-006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2-012	10	◦ 172-002, 172-008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2-017	3	◦ 172-008, 172-018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2-018	3	◦ 172-006, 172-017 공동건축권장	
174	174	510	홍제동156-468	3	◦ 167-001, 173-008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67-001	1	◦ 156-468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1-002	30	◦ 172-005, 173-039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2-005	116	◦ 171-002, 172-020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2-006	101	◦ 172-015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2-015	5	◦ 172-006, 172-031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2-016	24	◦ 172-031, 173-038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2-020	7	◦ 172-005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2-031	12	◦ 172-015, 172-016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3-008	197	◦ 173-038, 173-039 공동건축규제 ◦ 156-468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3-038	3	◦ 172-016, 173-008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3-039	11	◦ 171-002, 173-008 공동건축규제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비고
			위치	면적 (㎡)		
175	175	751	홍제동161-001	5	◦ 173-010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1-001	99	◦ 172-001, 173-009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1-003	60	◦ 171-004, 172-004,	
					◦ 173-009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1-004	20	◦ 171-003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2-001	17	◦ 171-001, 172-023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2-003	9	◦ 172-022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2-004	63	◦ 171-003, 172-021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2-021	3	◦ 172-004, 172-022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2-022	1	◦ 172-003, 172-021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2-023	3	◦ 172-001, 172-030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2-030	13	◦ 172-023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3-009	172	◦ 171-001, 171-003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3-010	76	◦ 173-015,173-024 공동건축규제	
					◦ 161-00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3-015	10	◦ 173-010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3-024	182	◦ 173-009, 173-010,	
					◦ 173-052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3-052	18	◦ 173-024 공동건축규제	
176	176	680	홍제동167-065	9	◦ 167-073, 173-016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67-073	6	◦ 167-065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69-003	17	◦ 173-012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3-011	43	◦ 173-016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3-012	63	◦ 169-003, 173-028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3-016	522	◦ 173-011, 173-028 공동건축규제 ◦ 167-065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3-028	20	◦ 173-012, 173-016 공동건축규제	
177	177	590	홍제동169-004	128	◦ 169-010, 173-016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69-010	122	◦ 169-004, 169-016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69-013	251	◦ 173-016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69-016	26	◦ 169-010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73-016	63	◦ 169-004, 169-013 공동건축규제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비고
			위치	면적 (㎡)		
178	178	894	홍제동169-005	179	◦ 169-012, 169-014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69-011	60	◦ 169-012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69-012	172	◦ 169-005, 169-011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69-014	99	◦ 169-005, 169-021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69-020	60	◦ 169-021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69-021	324	◦ 169-014, 169-020 공동건축규제	
179	179	242	홍제동167-007	170	◦ 173-023, 173-035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3-023	58	◦ 167-007, 173-035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73-035	14	◦ 167-007, 173-023 공동건축권장	
180	180	161	홍제동167-008	13	◦ 167-029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67-029	34	◦ 167-008, 167-030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67-030	114	◦ 167-029 공동건축권장	
181	181	717	홍제동167-012	24	◦ 167-048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67-013	233	◦ 167-014, 167-049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67-014	120	◦ 167-013, 167-047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67-015	104	◦ 167-047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67-047	98	◦ 167-014, 167-015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67-048	102	◦ 167-049 공동건축규제	
					◦ 167-012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67-049	36	◦ 167-013, 167-048 공동건축규제	
182	182	286	홍제동167-016	143	◦ 167-017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67-017	124	◦ 169-030, 169-031 공동건축규제 ◦ 167-016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69-022	6	◦ 169-031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69-030	11	◦ 167-017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69-031	2	◦ 167-017, 169-022 공동건축규제	
183	183	341	홍제동167-044	46	◦ 169-015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69-015	245	◦ 169-030 공동건축규제 ◦ 167-044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69-030	50	◦ 169-015 공동건축규제	
184	184	387	홍제동158-014	325	◦ 166-005, 167-019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66-005	2	◦ 158-014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67-019	60	◦ 158-014 공동건축권장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비고
			위치	면적 (㎡)		
185	185	340	홍제동158-015	340		
186	186	1,763	홍제동153-002	470	◦ 154-005, 158-033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54-005	23	◦ 153-002, 158-073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54-006	118	◦ 154-007, 158-036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54-007	17	◦ 154-006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58-033	407	◦ 153-002, 158-082, 158-090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58-035	355	◦ 158-065, 158-066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58-036	291	◦ 154-006, 158-073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58-065	16	◦ 158-033, 158-035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58-066	2	◦ 158-035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58-073	49	◦ 154-005 ,158-036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58-082	9	◦ 158-033, 158-065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58-090	6	◦ 158-033 공동건축규제	
187	187	373	홍제동158-037	123	◦ 158-038 공동건축규제 ◦ 158-077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58-038	244	◦ 158-037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58-077	6	◦ 158-037 공동건축권장	
188	188	229	홍제동158-039	229		
189	189	186	홍제동158-040	186		
190	190	190	홍제동158-042	190		
191	191	530	홍제동157-089	9	◦ 158-003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58-003	521	◦ 157-089 공동건축권장	
192	192	64	홍제동158-070	64		
193	193	1,043	홍제동158-022	239	◦ 158-023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58-023	287	◦ 158-022, 158-024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58-024	214	◦ 158-023, 158-025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58-025	303	◦ 158-024 공동건축규제	
194	194	240	홍제동158-021	240		
195	195	504	홍제동167-043	161	◦ 167-071, 168-002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67-071	27	◦ 167-043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68-002	316	◦ 167-043 공동건축규제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비고
			위치	면적 (㎡)		
196	196	754	홍제동163-002	109	◦ 165-002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65-002	324	◦ 163-002, 166-001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66-001	215	◦ 165-002, 166-003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66-003	106	◦ 166-001 공동건축규제	
197	197	635	홍제동158-002	410	◦ 162-002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62-002	218	◦ 158-002 공동건축규제 ◦ 163-005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63-005	7	◦ 162-002 공동건축권장	
198	198	367	홍제동158-013	357	◦ 158-086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58-086	10	◦ 158-013 공동건축권장	
199	199	256	홍제동158-012	255	◦ 158-086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58-086	1	◦ 158-012 공동건축권장	
200	200	299	홍제동158-009	324		
201	201	410	홍제동158-008	23	◦ 158-011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58-011	387	◦ 158-008 공동건축규제	
202	202	122	홍제동158-004	3	◦ 158-044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58-044	119	◦ 158-004 공동건축규제	
203	203	123	홍제동158-049	116	◦ 161-002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61-002	7	◦ 158-049 공동건축권장	
204	204	283	홍제동158-045	264	◦ 158-050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58-046	10	◦ 158-050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58-050	9	◦ 158-045, 158-046 공동건축권장	
205	205	314	홍제동158-030	295	◦ 158-072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58-072	19	◦ 158-030 공동건축권장	
206	206	436	홍제동158-029	183	◦ 158-031, 158-07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58-031	238	◦ 158-029 공동건축권장	
			홍제동158-071	15	◦ 158-029 공동건축권장	
207	207	340	홍제동158-028	221	◦ 159-002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59-002	119	◦ 158-028 공동건축규제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비고
			위치	면적 (㎡)		
208	208	135	홍제동159-003	129	◦ 159-004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59-004	6	◦ 159-003 공동건축규제	
209	209	199	홍제동159-005	199		
210	210	298	홍제동330-156	274	◦ 332-010 공동건축규제	
					◦ 330-395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395	7	◦ 330-156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2-010	17	◦ 330-156 공동건축규제	
211	211	1,125	홍은동217-005	512	◦ 217-006 공동건축규제 ◦ 217-044 공동건축권장	
			홍은동217-006	595	◦ 217-005 공동건축규제	
			홍은동217-044	18	◦ 217-005 공동건축권장	
212	212	70	홍은동217-031	70		
213	213	598	홍제동294-046	3	◦ 294-085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94-049	11	◦ 323-017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94-050	251	◦ 323-008, 323-017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94-085	25	◦ 294-046, 323-00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23-001	43	◦ 294-085, 323-014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23-008	99	◦ 294-050, 323-018 공동건축권장	일부 홍제2재정비 촉진구역 포함
			홍제동323-014	63	◦ 323-018 공동건축규제 ◦ 323-00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23-017	50	◦ 294-049, 294-050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23-018	53	◦ 323-014 공동건축규제 ◦ 323-008 공동건축권장	일부 홍제2재정비 촉진구역 포함
214	214	526	홍제동294-051	7	◦ 323-011,323-012 공동건축권장	현) 홍제2 재정비 촉진구역
			홍제동294-085	4	◦ 323-009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94-086	1	◦ 323-012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23-009	50	◦ 294-085,323-01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23-010	56	◦ 323-009, 331-006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23-011	232	◦ 294-051, 323-009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23-012	76	◦ 294-051, 294-086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1-006	100	◦ 323-010 공동건축권장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비고
			위치	면적 (㎡)		
215	215	552	홍제동294-058	109	◦ 294-065, 294-072 공동건축규제	현) 홍제2 재정비 촉진구역
			홍제동294-059	69	◦ 294-060, 294-064 공동건축규제 ◦ 294-062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94-060	46	◦ 294-059, 294-072 공동건축규제 ◦ 294-061, 331-006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94-061	7	◦ 294-060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94-062	7	◦ 294-059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94-063	3	◦ 294-064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94-064	60	◦ 294-059, 294-067 공동건축규제 ◦ 294-063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94-065	60	◦ 294-058, 294-066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94-066	60	◦ 294-065, 294-067 공동건축규제	일부 홍제2 재정비 촉진구역 포함
			홍제동294-067	69	◦ 294-064, 294-066 공동건축규제 ◦ 294-068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94-068	22	◦ 294-067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94-072	7	◦ 294-058, 294-060 공동건축규제	현) 홍제2 재정비 촉진구역
			홍제동331-006	33	◦ 294-060 공동건축권장	
216	216	178	홍제동294-068	4	◦ 294-069, 326-038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94-069	29	◦ 294-068 공동건축규제	
			홍제동294-070	25	◦ 326-038 공동건축규제 ◦ 294-086 공동건축권장	
			홍제동294-086	9	◦ 294-070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26-038	111	◦ 294-068, 294-070 공동건축규제	
217	217	617	홍제동161-008	27	◦ 326-008 공동건축권장	현) 홍제2 재정비 촉진구역
			홍제동326-001	89	◦ 326-003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26-003	203	◦ 326-001, 326-004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26-004	106	◦ 326-003, 326-005 공동건축규제	일부 홍제2재정비 촉진구역 포함
			홍제동326-005	36	◦ 326-004, 326-007 공동건축규제	현) 홍제2 재정비 촉진구역
			홍제동326-007	63	◦ 326-005, 326-008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26-008	40	◦ 326-007, 326-009 공동건축규제 ◦ 161-008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26-009	53	◦ 326-008 공동건축규제	일부 홍제2재정비 촉진구역 포함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비고
			위치	면적 (㎡)		
218	218	280	홍제동161-008	27	◦ 326-006 공동건축권장	현) 홍제2 재정비 촉진구역
			홍제동326-006	96	◦ 326-024, 161-008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26-024	79	◦ 326-025 공동건축규제 ◦ 326-006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26-025	63	◦ 326-024, 331-006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31-006	15	◦ 326-025 공동건축규제	
219	219	416	홍제동161-008	72	◦ 326-015 공동건축권장	현) 홍제2 재정비 촉진구역
			홍제동326-010	50	◦ 326-012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26-012	238	◦ 326-010, 326-014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26-014	23	◦ 326-012, 326-015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26-015	33	◦ 326-014 공동건축규제 ◦ 161-008 공동건축권장	현) 홍제2 재정비 촉진구역
220	220	432	홍제동161-008	109	◦ 326-020 공동건축권장	일부 홍제2 재정비 촉진구역 포함
			홍제동326-020	156	◦ 326-033, 326-034 공동건축규제 ◦ 161-008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26-033	32	◦ 326-020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26-034	106	◦ 326-020, 326-039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26-036	10	◦ 326-039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26-039	19	◦ 326-034,326-036 공동건축규제	
221	221	129	홍제동161-001	1	◦ 330-384 공동건축규제	
			홍제동161-008	109	◦ 330-389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30-384	1	◦ 161-001,330-398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30-389	14	◦ 161-008,330-398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30-398	4	◦ 330-384,330-389 공동건축규제	
222	222	416	홍제동330-048	23	◦ 330-049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30-049	52	◦ 330-048, 330-051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30-051	168	◦ 330-049 공동건축규제 ◦ 330-052,330-397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052	158	◦ 330-051, 330-400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397	8	◦ 330-05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399	4	◦ 330-400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400	3	◦ 330-052, 330-399 공동건축권장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비고
			위치	면적 (㎡)		
223	223	337	홍제동301-016	8	◦ 330-367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01-017	1	◦ 330-368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054	302	◦ 330-367,330-369, 330-40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367	1	◦ 301-016, 330-054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368	3	◦ 301-017, 330-369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369	8	◦ 330-054, 330-368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401	14	◦ 330-054 공동건축권장	
224	224	258	홍제동330-033	66	◦ 330-035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30-035	192	◦ 330-033 공동건축규제	
225	225	264	홍제동330-032	132	◦ 330-037, 330-038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037	66	◦ 330-032, 330-038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038	66	◦ 330-032, 330-037 공동건축권장	
226	226	484	홍제동330-280	96	◦ 330-281, 330-283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281	106	◦ 330-280, 330-282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282	126	◦ 330-281, 330-376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283	83	◦ 330-280, 330-376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376	73	◦ 330-282, 330-283 공동건축권장	
227	227	390	홍제동330-276	96	◦ 330-277, 330-278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277	93	◦ 330-279 공동건축규제	
					◦ 330-276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278	112	◦ 330-276,330-279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279	89	◦ 330-277 공동건축규제	
					◦ 330-278 공동건축권장	
228	228	399	홍제동330-021	96	◦ 330-022 공동건축규제 ◦ 330-220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022	66	◦ 330-021 공동건축규제 ◦ 330-275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023	69	◦ 330-274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30-220	9	◦ 330-02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274	66	◦ 330-023 공동건축규제 ◦ 330-275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275	93	◦ 330-022,330-274 공동건축권장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비고
			위치	면적 (㎡)		
229	229	77	홍제동161-008	77		현) 홍제2 재정비 촉진구역
230	230	215	홍제동330-117	106	◦ 330-292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30-292	56	◦ 330-117,330-293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30-293	53	◦ 330-292 공동건축규제	
231	231	93	홍제동330-294	93		
232	232	238	홍제동330-295	66	◦ 330-298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30-298	172	◦ 330-295 공동건축규제	
233	233	185	홍제동330-296	99	◦ 330-297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297	86	◦ 330-296 공동건축권장	
234	234	209	홍제동330-299	209		
235	235	169	홍제동330-300	86	◦ 330-30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301	83	◦ 330-300 공동건축권장	
236	236	96	홍제동330-303	96		
237	237	99	홍제동330-304	99		
238	238	126	홍제동330-306	126		
239	239	106	홍제동330-305	106		
240	240	128	홍제동330-308	128		
241	241	119	홍제동330-309	119		
242	242	122	홍제동330-116	122		
243	243	136	홍제동330-141	136		
244	244	116	홍제동330-245	116		
245	245	112	홍제동330-337	112		
246	246	119	홍제동330-334	119		
247	247	109	홍제동330-332	109		
248	248	116	홍제동330-330	116		
249	249	106	홍제동330-329	106		
250	250	135	홍제동330-326	135		
251	251	265	홍제동330-169	149	◦ 330-350,330-35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350	50	◦ 330-351 공동건축규제 ◦ 330-169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351	66	◦ 330-350 공동건축규제 ◦ 330-169 공동건축권장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비고
			위치	면적 (㎡)		
252	252	136	홍제동330-353	136		
253	253	132	홍제동330-328	132		
254	254	126	홍제동330-354	126		
255	255	112	홍제동330-355	112		
256	256	122	홍제동330-356	122		
257	257	136	홍제동330-336	136		
258	258	116	홍제동330-338	116		
259	259	335	홍제동301-018	4	◦ 330-372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30-057	89	◦ 330-058, 330-363, 330-371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30-058	70	◦ 330-057, 330-235, 330-372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30-060	10	◦ 330-235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30-235	66	◦ 330-058, 330-060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30-363	83	◦ 330-057, 330-370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30-370	6	◦ 330-363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30-371	5	◦ 330-057 공동건축규제	
			홍제동330-372	2	◦ 301-018, 330-058 공동건축규제	
260	260	264	홍제동330-060	264		
261	261	559	홍제동330-061	559		
262	262	250	홍제동330-078	250		
263	263	364	홍제동330-081	165	◦ 330-097, 330-099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097	53	◦ 330-081, 330-098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098	56	◦ 330-097, 330-099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099	90	◦ 330-081, 330-098 공동건축권장	
264	264	283	홍제동330-082	158	◦ 330-096, 330-236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096	69	◦ 330-082, 330-236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236	56	◦ 330-082, 330-096 공동건축권장	
265	265	296	홍제동330-084	79	◦ 330-085, 330-094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085	79	◦ 330-084, 330-094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094	138	◦ 330-084, 330-085 공동건축권장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비고
			위치	면적 (㎡)		
266	266	251	홍제동330-086	66	◦ 330-087,330-092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087	69	◦ 330-086, 330-092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092	116	◦ 330-086, 330-087 공동건축권장	
267	267	321	홍제동330-089	321		
268	268	179	홍제동330-113	83	◦ 330-29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291	96	◦ 330-113 공동건축권장	
269	269	198	홍제동330-111	66	◦ 330-112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112	132	◦ 330-111 공동건축권장	
270	270	198	홍제동330-145	132	◦ 330-357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357	66	◦ 330-145 공동건축권장	
271	271	224	홍제동330-105	112	◦ 330-284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284	112	◦ 330-105 공동건축권장	
272	272	166	홍제동330-244	83	◦ 330-285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285	83	◦ 330-244 공동건축권장	
273	273	103	홍제동330-287	103		
274	274	106	홍제동330-286	106		
275	275	261	홍제동330-288	162	◦ 330-289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289	99	◦ 330-288 공동건축권장	
276	276	66	홍제동330-153	66		
277	277	132	홍제동330-103	66	◦ 330-154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154	66	◦ 330-103 공동건축권장	
278	278	178	홍제동330-102	178		
279	279	243	홍제동330-226	243		
280	280	257	홍제동330-346	158	◦ 330-347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347	99	◦ 330-346 공동건축권장	
281	281	233	홍제동330-344	144	◦ 330-345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345	89	◦ 330-344 공동건축권장	
282	282	238	홍제동330-342	139	◦ 330-343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343	99	◦ 330-342 공동건축권장	
283	283	311	홍제동330-339	79	◦ 330-340, 330-34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340	79	◦ 330-339, 330-341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0-341	153	◦ 330-339, 330-340 공동건축권장	
284	284	200	홍제동330-221	198	◦ 332-010 공동건축권장	
			홍제동332-010	2	◦ 330-221공동건축권장	

■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결정 변경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공동개발	비고
			위치		면적(㎡)		
A1	A1	4,262	홍제동	330-116	122		
				330-117	106	· 공동개발지정 : 330-292⊕330-293 · 공동개발권장 : (330-292⊕330-293)⊖330-294⊖330-117	
				330-292	56		
				330-293	53		
				330-294	93		
				330-141	136		
				330-169	149		
				330-220	329		도로/국공유지
				330-245	116		
				330-296	99	· 공동개발권장 : 330-296⊖330-297	
				330-297	86		
				330-298	172		
				330-299	209		
				330-300	86	· 공동개발권장 : 330-300⊖330-301	
				330-301	83		
				330-303	96		
				330-304	99		
				330-305	106		
				330-306	126		
				330-308	128		
				330-309	119		
				330-326	135		
				330-328	132		
				330-329	106		
				330-330	11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위치	획지 면적(㎡)	공동개발	비고
A1	A1	4,262	홍제동 330-332	109		
			330-334	119		
			330-336	136		
			330-337	112		
			330-338	116		
			330-350	50	· 공동개발권장 : 330-350⊖330-351	
			330-351	66		
			330-353	136		
			330-354	126		
			330-355	112		
			330-356	122		
A2	A2	2,801	홍제동 301-16	8		도로/국공유지
			301-17	3		국공유지
			330-21	96	· 공동개발지정 : 330-21⊕330-22 · 공동개발권장 : (330-21⊕330-22)⊖330-275⊖330-23	
			330-22	66		
			330-23	135		
			330-275	93		
			330-32	132	· 공동개발권장 : 330-37⊖330-38⊖330-32	
			330-37	66		
			330-38	66		
			330-33	66	· 공동개발지정 : 330-33⊕330-35	
			330-35	192		
			330-48	23	· 공동개발지정 : 330-48⊕330-49 · 공동개발권장 : (330-48⊕330-49)⊖330-51	
			330-49	52		
			330-51	168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위치		획지 면적(㎡)	공동개발	비고
A2	A2	2,801	홍제동	330-52	158	· 공동개발권장 : 330-399∋330-52 ∋330-400	
				330-399	4		도로
				330-400	3		도로
				330-54	302	· 공동개발권장 : 330-54∋330-401	
				330-401	14		도로
				330-220	252		도로
				330-276	96	· 공동개발권장 : 330-276∋330-278	
				330-278	112		
				330-277	182		
				330-280	96	· 공동개발권장 : 330-280∋330-281 ∋330-282∋330-376 ∋330-283	
				330-281	106		
				330-282	126		
				330-283	83		
				330-376	73		
				330-367	1		국공유지
				330-368	10		국공유지
				330-369	9		국공유지
				330-397	8		국공유지
A3	A3	3,949	홍제동	330-102	178	· 공동개발권장 : 330-102∋330-103 ∋330-154	
				330-103	66		
				330-154	66		
				330-105	112		
				330-111	66	· 공동개발권장 : 330-111∋330-112	
				330-112	132		
				330-113	83	· 공동개발권장 : 330-113∋330-291	
				330-291	9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위치		획지 면적(㎡)	공동개발	비고
A3	A3	3,949	홍제동	330-145	132	· 공동개발권장 : 330-145⊖330-357	
				330-357	66		
				330-153	66	· 공동개발권장 : 330-153⊖330-289	
				330-289	99		
				330-156	274	· 공동개발지정 : 330-156⊕332-10 · 공동개발권장 : (330-156⊕332-10)⊖330-395	
				330-395	7		도로
				332-10	15		
				330-220	341		
				330-221	198		
				330-226	244		
				330-244	83	· 공동개발권장 : 330-244⊖330-285	
				330-285	83		
				330-284	112		
				330-286	106		
				330-287	103		
				330-288	162		
				330-339	79	· 공동개발권장 : 330-339⊖330-340	
				330-340	79		
				330-341	159		
				330-342	145		
				330-343	99		
				330-344	151	· 공동개발권장 : 330-345⊖330-344	
				330-345	89		
				330-346	159		
				330-347	99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위치	획지	획지 면적(㎡)	공동개발	비고
A4	A4	3,296	홍제동	301-18	4		국공유지
				330-57	89	· 공동개발지정 : 330-363⊕330-370, 330-57⊕330-371 · 공동개발권장 : (330-363⊕330-370)⊖(330-57⊕330-371)	
				330-363	83		
				330-370	6		
				330-371	6		
				330-58	70	· 공동개발지정 : 330-58⊕330-372 · 공동개발권장 : (330-58⊕330-372)⊖330-235	
				330-235	66		
				330-372	2		
				330-60	274		
				330-61	559		
				330-78	250		
				330-81	165		
				330-82	158	· 공동개발권장 : 330-82⊖330-96⊖330-236	
				330-96	69		
				330-236	56		
				330-84	79	· 공동개발권장 : 330-84⊖330-85⊖330-94	
				330-85	79		
				330-94	138		
				330-86	66	· 공동개발권장 : 330-86⊖330-87⊖330-92	
				330-87	69		
				330-92	116		
				330-89	321		
				330-97	53	· 공동개발권장 : 330-97⊖330-98⊖330-99	
				330-98	56		
				330-99	90		
				330-220	372		도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위치	획지 면적(㎡)	공동개발	비고
A5	A5	1,183	홍제동 330-210	265		
			330-238	238		
			330-239	142		
			330-241	255		
			330-247	114		
			330-248	112	· 공동개발권장 : 330-248⊖330-249	
			330-249	57		
A6	A6	1,090	홍제동 161-1	19		도로/국공유지
			161-10	8		도로/국공유지
			301-19	20	· 공동개발지정 : 301-20⊕301-19⊕330-67⊕330-390⊕330-66⊕330-349⊕330-246⊕330-69⊕330-410	
			301-20	9		
			330-66	99		
			330-67	66		
			330-69	66		
			330-246	66		
			330-349	26		
			330-390	13		
			330-410	23		
			330-70	69	· 공동개발지정 : 330-234⊕330-70⊕330-71	
			330-71	69		
			330-234	33		
			330-72	66	· 공동개발지정 : 330-72⊕330-379, 330-73⊕330-362 · 공동개발권장 : (330-72⊕330-379)⊖(330-73⊕330-362)	
			330-73	50		
			330-362	7		
			330-379	43		
			330-74	50	· 공동개발권장 : 330-74⊖330-76	
			330-76	198		
			330-220	76		도로/국공유지
			330-411	14		국공유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위치	획지	획지 면적(㎡)	공동개발	비고
B1	B1	732	홍제동	156-468	77		국공유지
				156-575	25	· 공동개발지정 : 156-575⊕315-11	
				315-11	87		
				315-1	176		
				315-21	156		
				315-56	36		도로/국공유지
				315-57	175		
B2	B2	2,951	홍제동	158-14	325	· 공동개발지정 : 168-14⊕167-19⊕313-28 · 공동개발권장 : (168-14⊕167-19⊕313-28)⊖166-5	
				166-5	2		국공유지
				167-19	60		국공유지
				313-28	22		국공유지
				158-15	340		
				167-7	170	· 공동개발지정 : 173-23⊕173-35⊕167-7⊕167-15⊕169-22 · 공동개발권장 : (173-23⊕173-35⊕167-7⊕167-15⊕169-22)⊖169-31	
				167-15	702		
				169-22	3		
				169-31	2		지목(전)
				173-23	58		
				173-35	14		
				167-8	13	· 공동개발권장 : 167-8⊖167-29⊖167-30	국공유지
				167-29	37		국공유지
				167-30	129		
				167-16	127	· 공동개발지정 : 167-16⊕167-74 · 공동개발권장 : (167-16⊕167-74)⊖167-12	
				167-12	21		국공유지
				167-74	18		
				167-44	46	· 공동개발권장 : 167-44⊖169-15	국공유지
				169-15	294		
				313-59	568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위치		획지 면적(㎡)	공동개발	비고
B3	B3	9,773	홍제동	156-468	33		국공유지
				158-2	638		
				158-8	23	· 공동개발지정 : 158-9⊕158-11⊕158-8⊕159-5⊕159-3⊕159-4	
				158-9	300		
				158-11	363		
				159-3	129		
				159-4	7		
				159-5	200		
				158-12	255		
				158-13	357		
				158-28	222	· 공동개발지정 : 158-28⊕159-2	
				159-2	119		
				158-29	183		
				158-30	295		
				158-31	238		
				158-44	119		
				158-45	264	· 공동개발권장 : 158-45⊖158-50	국공유지
				158-50	17		
				158-46	9		도로/국공유지
				158-49	116		
				158-71	15		도로/국공유지
				158-72	19		국공유지
				158-86	24		도로
				161-1	3		도로/국공유지
				161-2	7		국공유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위치	획지	획지 면적(㎡)	공동개발	비고
B3	B3	9,773	홍제동	163-2	109	· 공동개발지정 : 163-2⊕165-2⊕166-1⊕166-3	
				165-2	324		
				166-1	215		
				166-3	106		
				167-1	15		국공유지
				167-3	22	· 공동개발권장 : 173-6⊖167-27⊖167-76⊖167-3⊖173-27	국공유지
				167-27	119		
				167-76	3		
				173-6	82		
				173-27	76		
				167-4	87	· 공동개발지정 : 167-75⊕167-4⊕173-34⊕173-17	기개발
				167-75	10		
				173-17	144		
				173-34	20		
				167-43	161	· 공동개발지정 : 167-71⊕167-43⊕168-2	
				167-71	27		국공유지
				168-2	316		
				167-60	5		도로/국공유지
				167-61	1		도로/국공유지
				168-5	5		공공보행통로/국공유지
				169-4	128	· 공동개발지정 : (169-4⊕169-10⊕169-16)⊕169-13	
				169-10	122		
				169-13	251		
				169-16	31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위치	획지 면적(㎡)	공동개발	비고
B3	B3	9,773	홍제동	169-5	179	· 공동개발지정 : 169-11⊕169-12⊕169-5⊕169-14⊕169-21⊕169-20	
				169-11	60		
				169-12	172		
				169-14	99		
				169-20	60		
				169-21	324		
				171-1	299	· 공동개발지정 : 172-30⊕172-1⊕171-1⊕173-15⊕173-10	
				172-1	17		
				172-30	13		
				173-10	76		
				173-15	10		
				171-3	60	· 공동개발지정 : 172-4⊕172-3⊕171-4⊕171-3⊕173-9⊕173-21	
				171-4	20		
				172-3	9		
				172-4	63		
				173-9	172		
				173-21	76		
				172-2	3		도로/국공유지
				172-5	116	· 공동개발지정 : 172-5⊕173-8	
				173-8	277		
				172-6	102	· 공동개발지정 : 172-8⊕172-11⊕172-6⊕172-15	
				172-8	43		
				172-11	212		
				172-15	5		
				172-12	10		도로/국공유지
				172-17	3		도로/국공유지
				172-18	3		도로/국공유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위치		획지 면적(㎡)	공동개발	비고
B3	B3	9,773	홍제동	172-20	7		도로
				172-21	3		도로
				172-22	1		도로/국공유지
				172-23	3		도로/국공유지
				173-7	89	· 공동개발지정 : 173-7⊕173-20⊕173-19	
				173-19	36		국공유지
				173-20	99		
				173-16	653	· 공동개발지정 : 173-16⊕173-55	
				173-55	65		
B4	B4	1,331	홍제동	158-21	218		
				158-22	236	· 공동개발지정 : 158-22⊕158-23⊕158-24⊕158-25	
				158-23	291		
				158-24	220		
				158-25	299		
				158-70	67		공개공지/국공유지
B5	B5	1,525	홍제동	157-89	9		도로/국공유지
				157-120	2		도로/국공유지
				158-3	521		
				154-10	1	· 공동개발지정 : 154-10⊕158-77⊕158-37	
				158-37	139		
				158-77	16		
				158-38	201		
				158-39	237		
				158-40	192		
				158-42	190		
				158-87	17		국공유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공동개발	비고
			위치		면적(㎡)		
B6	B6	1,813	홍제동	158-33	1751	· 공동개발권장 : 158-33∋158-82	
				158-82	15		
				158-65	20		도로/국공유지
				158-66	20		도로/국공유지
				158-90	7		국공유지
C1	C1	8,790	홍제동	161-1	31		도로/국공유지
				161-9	10		도로/국공유지
				259-4	115		구/국공유지
				295-18	212		도로/국공유지
				300-9	165		
				300-12	99		
				300-13	129		
				301-2	1155	· 공동개발지정 : 301-5⊕301-2⊕301-3	
				301-3	336		
				301-5	142		
				301-6	2610		
				301-11	496		
				302-1	76	· 공동개발특별지정 : 302-1⊕303-1⊕304-93⊕304-91⊕304-92⊕304-87⊕304-78	
				303-1	750		
				304-78	57		
				304-87	14		
				304-92	78		
				304-91	103		
				304-93	29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위치	획지 면적(㎡)	공동개발	비고
C1	C1	8,790	홍제동	304-2	112		
				304-30	16	· 공동개발권장 : 304-30⊖305-1	
				305-1	188		
				304-69	129		
				304-94	241		
				304-95	235		
				304-104	149		
				304-105	208		
				304-109	109		
				305-2	177	· 공동개발지정 : 305-2⊕305-11	
				305-11	2		도로
				305-3	182	· 공동개발지정 : 305-12⊕305-3	
				305-12	2		도로
				305-4	167	· 공동개발지정 : 305-4⊕305-13 · 공동개발권장 : (305-4⊕305-13)⊖304-47	
				304-47	1		도로
				305-13	2		도로
C2	C2	1,679	홍제동	304-9	122	· 공동개발지정 : 304-34⊕304-97 · 공동개발권장 : (304-34⊕304-97)⊖304-9	
				304-34	46		
				304-97	20		
				304-11	231		
				304-25	83	· 공동개발지정 : 304-25⊕304-89⊕304-88	
				304-88	23		
				304-89	50		
				304-29	13	· 공동개발지정 : 304-29⊕304-76 · 공동개발권장 : (304-29⊕304-76)⊖304-68	
				304-68	85		
				304-76	58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위치	획지	획지 면적(㎡)	공동개발	비고
C2	C2	1,679	홍제동	304-30	42	· 공동개발지정 : 304-30⊕304-31⊕304-32	
				304-31	86		
				304-32	109		
				304-33	83	· 공동개발지정 : 304-33⊕304-40 · 공동개발권장 : (304-33⊕304-40)⊖304-35	
				304-35	63		
				304-40	57		
				304-41	13	· 공동개발지정 : 304-41⊕304-66	
				304-66	136		
				304-47	11		도로
				304-64	53	· 공동개발권장 : 304-64⊖304-65	
				304-65	146		
				304-67	149		
C3	C3	7,148	홍제동	249-4	363		
				255-2	126	· 공동개발지정 : 255-2⊕255-4	
				255-4	102		
				255-5	134		
				256-1	179		
				256-2	90		
				256-3	122	· 공동개발지정 : 256-3⊕256-6	
				256-6	90		
				256-4	63		보차혼용통로
				256-5	188		
				257-1	4		도로/국공유지
				257-2	132		도로
				257-4	9		도로/국공유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위치	획지	획지 면적(㎡)	공동개발	비고
C3	C3	7,148	홍제동	257-3	112	· 공동개발지정 : 257-17⊕257-23 · 공동개발권장 : (257-17⊕257-23)⊖257-3	
				257-17	20		
				257-23	99		
				257-8	132		
				257-9	132		
				257-10	142		
				257-11	149		
				257-13	231		
				257-15	264		
				257-18	99	· 공동개발지정 : 257-19⊕257-22 · 공동개발권장 : (257-19⊕257-22)⊖257-18	
				257-19	20		
				257-22	109		
				257-20	102	· 공동개발지정 : 257-20⊕257-21	
				257-21	102		
				258-2	225		
				258-3	36		보차혼용통로
				258-4	182		
				258-5	397		
				259-9	4		구/국공유지
				259-10	9		국공유지
				259-11	29		국공유지
				304-6	136	· 공동개발권장 : 304-6⊖304-10	
				304-10	99		
				304-8	184		
				304-15	69	· 공동개발지정 : 304-15⊕304-20 · 공동개발권장 : (304-15⊕304-20)⊖304-16	
				304-16	99		
				304-20	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위치		획지 면적(㎡)	공동개발	비고
C3	C3	7,148	홍제동	304-17	175		
				304-18	96		
				304-37	149		
				304-46	119	· 공동개발지정 : 304-46⊕304-83	
				304-83	86		
				304-47	61		도로/보차혼용통로
				304-56	165	· 공동개발지정 : 304-56⊕304-81⊕304-111	
				304-81	7		
				304-111	175		
				304-57	119		
				304-58	132		
				304-59	23		도로/보차혼용통로
				304-98	162		
				304-102	112		
				304-103	7		도로
				304-108	251		
				304-110	258		
				304-112	112		
				304-113	148		
				371-1	4		도로/국공유지
C4	C4	6,824	홍제동	161-11	243		도로/국공유지
				250-1	259		
				250-2	232		
				251	2383		
				251-4	492		
				253-3	23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위치	획지	획지 면적(㎡)	공동개발	비고
C4	C4	7,073	홍제동	253-4	430	· 공동개발지정 : 253-4⊕253-26	
				253-26	7		국공유지
				253-7	341	· 공동개발지정 : 253-7⊕253-34	
				253-34	19		
				253-8	251	· 공동개발지정 : 253-8⊕253-9	
				253-9	221		
				253-10	169		
				253-11	211	· 공동개발권장 : 253-11⊖253-15	
				253-15	261		
				253-12	73	· 공동개발권장 : 253-12⊖253-35	
				253-35	115		
				253-14	307		
				253-15	250		보차혼용통로
				253-16	149		
				254-1	255		
				254-3	10		보차혼용통로
				254-5	162		
D1	D1	6,797	홍제동	161-13	128		도로/국공유지
				174-1	183		
				174-2	410		
				174-3	1143	· 공동개발지정 : 174-43⊕174-3⊕174-26⊕174-60	
				174-26	37		
				174-43	26		도로
				174-60	5		도로
				174-3	54	· 공동개발지정 : 174-37⊕174-18⊕174-39 · 공동개발권장 : (174-37⊕174-18⊕174-39)⊖174-3	
				174-18	312		
				174-37	58		
				174-39	2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위치	획지	획지 면적(㎡)	공동개발	비고
D1	D1	6,797	홍제동	174-24	159	· 공동개발지정 : 174-24⊕174-57	
				174-57	7		
				174-5	503		
				174-6	126	· 공동개발지정 : 174-22⊕174-6⊕174-40	
				174-22	3		
				174-40	7		
				174-7	97	· 공동개발지정 : 174-7⊕174-71	
				174-71	10		
				174-9	133		
				174-11	59		
				174-13	132		
				174-14	119		
				174-15	163	· 공동개발권장 : 174-15⊖174-66	
				174-66	6		
				174-16	132		
				174-17	170	· 공동개발지정 : 174-17⊕174-28	
				174-28	99		
				174-19	169	· 공동개발지정 : 174-20⊕174-19⊕174-62	
				174-20	7		
				174-62	23		
				174-21	185	· 공동개발지정 : 174-21⊕174-33 · 공동개발권장 : (174-21⊕174-33)⊖174-34	
				174-33	7		
				174-34	7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위치		획지 면적(㎡)	공동개발	비고
D1	D1	6,797	홍제동	174-25	161		
				174-26	12	· 공동개발지정 : 175-1⊕175-14 · 공동개발권장 : 175-26⊖(175-1⊕175-14) ⊖175-2⊖175-4	
				175-1	169		
				175-14	13		도로
				175-2	16		
				175-4	13		
				174-46	152		
				174-48	1		도로
				174-49	40		도로/공공보행통로
				174-53	3		공공보행통로
				174-56	281		
				175-3	436		
				175-6	143		
				175-7	188		
				175-9	37		도로/보차혼용통로
				175-10	165		
				175-11	184		
				175-13	4		도로/국공유지
				215-1	11		도로/국공유지
D2	D2	1,283	홍제동	176-1	291		
				176-2	98		
				176-3	99	· 공동개발권장 : 176-3⊖176-9	
				176-9	86		
				176-4	369		
				176-5	80		
				176-6	26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공동개발	비고
			위치		면적(㎡)		
D3	D3	1,109	홍제동	137-12	534	· 공동개발지정 : 137-12⊕161-6⊕370-8	
				161-6	32		
				370-8	48		
				137-14	259		
				137-15	236		
D4	D4	1,030	홍제동	137-1	273		
				137-3	151		
				137-9	182		
				137-10	184		
				137-11	176	· 공동개발지정 : 137-11⊕370-4	
				370-4	38		
				370-1	24		구거/국공유지
				370-3	2		국공유지
D5	D5	1,333	홍제동	137-16	232		
				137-17	253		
				137-25	210		
				137-23	215	· 공동개발지정 : 137-23⊕137-32	
				137-32	66		
				137-24	197	· 공동개발지정 : 137-24⊕137-34	
				137-34	33		
				137-39	97		
				161-1	30		도로/국공유지
D6	D6	1,597	홍제동	137-2	265		
				137-5	185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공동개발	비고
			위치		면적(㎡)		
D6	D6	1,597	홍제동	137-6	170		
				137-8	268		
				137-18	245		
				137-19	227		
				137-20	144		
				137-26	93		
E1	E1	1,125	홍은동	217-5	512	· 공동개발지정 : 217-5⊕217-6 · 공동개발권장 : (217-5⊕217-6)⊖217-44	
				217-6	595		
				217-44	18		
E2	E2	392	홍제동	294-46	13		하천/국공유지
				294-49	12	· 공동개발지정 : 323-1⊕323-18⊕323-17 · 공동개발권장 : 294-49⊖(323-1⊕323-18 ⊕323-17)⊖294-50	국공유지
				294-50	217		
				323-1	43		
				323-17	50		
				323-18	22		
				294-85	35		하천/국공유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공동개발	비고
			위치		면적(㎡)		
E3	E3	1,210	홍제동	161-8	56	· 공동개발지정 : (161-8⊕326-34⊕326-39⊕326-36),(326-20⊕326-33) · 공동개발권장 : (161-8⊕326-34⊕326-39⊕326-36)⊖(326-20⊕326-33)	도로/국공유지
				326-20	153		
				326-33	32		
				326-34	106		
				326-36	10		
				326-39	49		
				294-66	23	· 공동개발지정 : 294-66⊕294-70⊕326-38⊕294-69⊕326-1⊕326-3 · 공동개발권장 : (294-66⊕294-70⊕326-38⊕294-69⊕326-1⊕326-3)⊖294-68	
				294-68	26		하천/국공유지
				294-69	34		국공유지
				294-70	25		
				326-1	89		
				326-3	203		
				326-38	116		
				326-10	50	· 공동개발지정 : 326-10⊕326-12	
				326-12	238		

마.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1) 건축물 용도 결정(변경)

■ 건축물 불허용도 결정(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전층 불허용도	1층 전면 불허용도	전층 불허용도	1층 전면 불허용도	
일반상업지역(A)	·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공공용시설 중 갱생, 보육, 교육, 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발전소	· 위락시설 중 무도장과 무도학원,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 업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발전소	· 위락시설 중 무도장과 무도학원 및 카지노 영업소 · 제1종 ·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단, ATM제외)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단, ATM제외)	해당 용도 지역상 법령(조례) 준수,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시 관련규정 준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22조)
준주거지역(B)	·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 운동시설 중 철탑이 있는 옥외 골프장 · 공장·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세차장 제외) · 공공용시설 중 갱생, 보육, 교육, 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발전소, · 안마시술소	–	·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 운동시설 중 철탑이 있는 옥외 골프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세차장 제외) · 발전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제2·3종 일반주거지역(C)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 운동시설 중 철탑이 있는 옥외 골프장 · 공장·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세차장제외) · 공공용시설 중 갱생, 보육, 교육, 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발전소	–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 운동시설 중 철탑이 있는 옥외 골프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제외)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는 시설 · 발전소	–	

■ 건축물 불허용도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서
· 일반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내 불허용도 중 '공공용시설 관련'사항 제척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종전에 열거된 '공공용시설 관련' 항목은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임
· 1층 전면불허용도 중 투전기업소 제척	· 투전기업소의 경우 현황 『건축법』상 없는 용도임
·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불허용도 추가	· 인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투기시설 불허

■ 건축물 권장용도 결정(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전층 권장용도	1층 전면 권장용도	전층 권장용도	1층 전면 권장용도
일반상업지역 (1)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업무시설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의약품 ·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소매점 · 판매시설 중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점 · 의료시설 중 병원	· 업무시설 중 사무소
준주거지역 (2)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의약품 ·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소매점 · 판매시설 중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점 · 의료시설 중 병원	–
제2 · 3종 일반주거지역 (3)	·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 문화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노유자시설

주) ①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연면적의 20%이상인 경우에 당해 용도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 (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

■ 건축물 권장용도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서
· 특성화 필요한 용도와 연계한 권장용도 지정 – 의료서비스 관련시설 권장	· 서대문 의료서비스 중심지역 육성을 위한 전략적 용도 제안을 위해 의료 관련 용도 권장용도 지정
· 업무시설 전체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전체 등 제외	· 시장논리에 의한 당연입지시설 제외
· 용도 명칭 변경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맞게 용도 명칭 변경

사.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변경)

1) 건폐율 결정(변경)

■ 건폐율 결정(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	60% 이하	
준주거지역	60% 이하	-	6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6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50% 이하	

2) 건축물 밀도(용적률) 결정(변경)

용도지역	기 정			변 경			적 용 구 역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유 형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일반상업지역	GC-1a	500이하	700이하	유형1-1	500이하	700이하	· 통일로변 종전 일반상업지역
	GC-1b	300이하	630이하	유형1-2	300이하	630이하	·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변경지역
	GC-2	300이하	500이하	- 유형 1-1 구역에 포함 -			· 홍제2구역 포함 · 홍제2구역 미포함 지역은 유형 1-1 및 1-3에 포함시킴
				- 유형 1-3 구역에 포함 -			
	GC-3	300이하	450이하	유형1-3	300이하	450이하	· 이면부 일반상업지역 블록
준주거지역	SD-1	300이하	360이하	- 구역외 -			· 홍제3구역 포함
	SD-2	300이하	360이하	- 구역외 -			· 홍제1구역 포함(해제구역)
	SR-1	300이하	360이하	유형2-1	300이하	360이하	· 준주거지역
	SR-2	300이하	360이하				
제2·3종 일반주거지역	R-1·2	230이하	250이하	유형3-1	230이하	250이하	· 제3종 일반주거지역
	R-3·4	150이하	200이하	유형3-2	180이하	200이하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주) 1. 상한용적률 :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2 및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적용

2. 건축물의 대지가 종전의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걸치는 경우, 각 필지별 용적률은 과반이 넘는 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며, 공동개발시 용적률은 아래 산정식을 적용한다.

$$\text{※용적률 산정식} = \frac{(\text{종전일반상업지역용적률} \times \text{종전일반상업지역면적}) + (\text{변경일반상업지역용적률} \times \text{변경일반상업지역면적})}{\text{전체개발면적}}$$

■ 건축물 밀도(용적률)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서
· 재정비촉진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을 고려한 조정 - SD-1, SD-2 ⇒ 구역외 지역(홍제1, 홍제3) - GC-2 ⇒ 구역외 지역(홍제2), 홍제2에 미포함 지역만 유형 1-1 및 1-2구역에 일부 편입 포함 ·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 상향	·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정비구역은 구역결정시 홍제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되는 사항으로 제척·변경함 - SD-1, SD-2는 촉진구역에 포함되어 제척 - GC-2지역은 일부 홍제2재정비촉진구역에 포함되어 제척 후 잔여지역에 대하여 종전 일반상업지역인 지역은 GC-1a와 동일 적용, 잔여지역은 GC-1b적용 · 허용용적률 달성 가능한 수준의 기준용적률 적용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인접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형평성 유지)

3) 인센티브 운영계획 결정(변경)

○ 용적률 인센티브(기정)

■ 허용용적률(기정)

항 목	내 용	완 화 조 건	완화내용(%) (인센티브)
A. 대지에 관한 사항	① 공동건축(규제)	준 수 시	기준용적률×0.1
	② 공동건축(권장)	준 수 시	기준용적률×0.07
	③ 대지교환	준 수 시	10
B. 용도에 관한 사항	① 용도 권장 (전층 및 1층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	{(권장용도면적÷건축연면적)×0.2×기준용적률}
C.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① 전면공지	조 성 시	(조성면적÷대지면적)×기준용적률
	② 공개공지	조 성 시	{(조성면적-설치의무면적,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 ÷대지면적)}×기준용적률
	③ 쌈지형 공지	조 성 시	(조성면적÷대지면적)×0.5×기준용적률
	④ 침상형 공지	조 성 시	(조성면적÷대지면적)×0.8×기준용적률
	⑤ 대지내통로	보차혼용·공공보행통로/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면적÷대지면적)×0.2×기준용적률 (상한선 30%)
D. 건축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① 탑상형 건축물	준수시(5층이상건폐율 45%이하)	30
	② 1층접지부 건폐율	준수시(1층부 건폐율 40%이하)	20
	③ 건축물 색채 / 조명	준 수 시	색채 : 20 / 조명 : 20
	④ 경사형 지붕 (5층이하건물만 적용)	준 수 시	10
E. 주차 및 차량 동선에 관한 사항	① 공동주차통로	설 치 시	20
F. 환경친화적인 건축물	① 중수도 시스템	설 치 시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관련법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할 경우)	20
	② 옥상조경	조 성 시	{(조성면적-설치의무면적)÷옥상면적)}× 기준용적률
	③ 비건폐지표면처리	투수성 재료 사용시	(조성면적÷대지면적)× 기준용적률

※ 1. 허용용적률의 산출 : 기준용적률 +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중 ①~④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2.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상의 설치의무 면적 이상을 확보할 경우에 적용(미관지구안의 건축선 후퇴부분 및 공개공지 의무설치 면적은 완화적용 제외)

3. 동일소유자간의 필지 및 기공동건축 된 필지는 공동건축에 의한 인센티브는 주어지지 않는다.

4. 공동건축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은 획지 간 공동건축시에는 공동건축에 의한 인센티브는 주어지지 않는다.

■ 상한용적률(기정)

내 용	산출방법(%)	비 고
· 건축주가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등의 공지로 기부채납하거나 또는 설치·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0.3α) / (1-α)] ※ α=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기전의 대지면적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부칙 제3조준용

○ 용적률 인센티브(변경)

■ 용적률 인센티브 기본방향(변경)

1. 용적률 인센티브는 크게 친환경, 계획유도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운영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이내	친환경 계획 준수시 (30%이상)	유도 및 규제항목 준수시 (70%이내)	공동개발(특별지정)시 공공시설 또는 부지 제공시

2.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 중 친환경 인센티브는 해당 인센티브량(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 의 100분의 30이상, 계획유도형 인센티브 합은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70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3. 친환경 인센티브는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을 의무적으로 계획하고 100분의 30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인센티브량을 계획유도 항목으로 대체 불가. 반면, 친환경 인센티브를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계획한 경우에는 계획유도 인센티브 미달량에 대하여 친환경 인센티브로 대체하여 적용 가능하다.
   단, 연면적 5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으로 총 인센티브량의 30/100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획유도 항목으로 대체 가능하다.
   (주) 소규모 건축물 기준 500㎡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상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및 사업계획 승인대상 기준임)

■ 공통사항(친환경 인센티브) (변경)

완 화 항 목			완 화 기 준		비 고
환경친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그린1등급)	기준용적률 x 0.06	세기준 모두 1등급 만족시 : 기준용적률 X 0.4이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준용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대상 준수
		우수(그린2등급)	기준용적률 x 0.04		
		우량(그린1등급)	기준용적률 x 0.02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1등급	기준용적률 x 0.04		
		2등급	기준용적률 x 0.03		
		3등급	기준용적률 x 0.02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1등급	기준용적률 x 0.06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준용 -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별표1) ※공급률로 등급판정 대체 가능
		2등급	기준용적률 x 0.05		
		3등급	기준용적률 x 0.04		
		4등급	기준용적률 x 0.03		
		5등급	기준용적률 x 0.02		
	중수도 시설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x 0.04		• 총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 시설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x 0.04		• 빗물저류 · 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x(녹화면적/대지면적)x0.1		• 법적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 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x(보존면적/대지면적)x0.2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 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x(설치면적/대지면적)x0.2		• 기준용적률 x 0.05 이내

■ 상한용적률 (변경)

<table>
<tr><th>구 분</th><th>인센티브</th></tr>
<tr><td>공공시설 부지 제공(기부채납)</td><td>○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이내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 부지의 용적률 비율
α: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이 변경된 경우 그에 따름</td></tr>
<tr><td>공공시설 등 설치 제공 (부지 제공 제외)</td><td>○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부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
※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에 따름</td></tr>
<tr><td>공동개발 (특별지정)</td><td>
<table>
<tr><th>공동개발 필지수</th><th>상한용적률 인센티브</th><th>비고</th></tr>
<tr><td>2필지</td><td>10%</td><td>-</td></tr>
<tr><td>3필지</td><td>20%</td><td>-</td></tr>
<tr><td>4필지</td><td>30%</td><td>-</td></tr>
<tr><td>5필지</td><td>40%</td><td>-</td></tr>
<tr><td>6필지 이상</td><td>50%</td><td>제3종 일반주거 이상 지역</td></tr>
</table>
※ 공동개발(특별지정) 준수에 따라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경우에는 공동개발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등은 별도로 적용
※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등 관련규정상 의무사항은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에서 성격이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는 없음</td></tr>
</table>

■ 유형 1-1 (계획유도 인센티브)(변경)

<table>
<tr><th>항목</th><th>세분</th><th>완화조건</th><th>세부계획기준</th><th>비고</th></tr>
<tr><td rowspan="2">공동 개발</td><td>공동개발 (지정,권장)</td><td>준수시</td><td>기준용적률× α</td><td>· 2필지 α=0.03
· 3필지 α=0.05
· 4필지이상 α=0.07</td></tr>
<tr><td>자율적 공동개발</td><td>준수시</td><td>기준용적률× α</td><td>· 1필지(지정/권장 병행시)α=0.02
· 2필지 α=0.02
· 3필지 α=0.03
· 4필지이상 α=0.04</td></tr>
<tr><td rowspan="6">대지내 공지</td><td>공개공지</td><td rowspan="3">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td><td rowspan="3">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α</td><td>· α=1</td></tr>
<tr><td>쌈지형공지</td><td>· α=0.5</td></tr>
<tr><td>침상형공지</td><td>· α=0.8</td></tr>
<tr><td>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td><td>준수시</td><td>기준용적률 × {(조성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α</td><td>· α=0.5</td></tr>
<tr><td>공공보행통로 및 보차혼용통로</td><td>준수시</td><td>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α</td><td>· α=0.2 (필로티 및 개방형구조)</td></tr>
<tr><td rowspan="2">건축물 용도</td><td>권장용도</td><td>준수시</td><td>기준용적률 × (지정·권장용도 / 연면적) × α</td><td>· α=0.5 (건축연면적 20%이상 수용시 인정)</td></tr>
<tr><td>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td><td>준수시</td><td>기준용적률 × α</td><td>· α=0.1 (가로활성화 상업용도 등 별도로 결정한 경우 /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0이상 설치시)</td></tr>
</table>

■ 유형 1-2 (계획유도 인센티브)(변경)

항목	세분	완화조건	세부계획기준	비고
공동개발	공동개발 (지정,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2필지 α=0.17 · 3필지 α=0.28 · 4필지이상 α=0.4
	자율적 공동개발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1필지(지정/권장병행시)α=0.09 · 2필지 α=0.09 · 3필지 α=0.14 · 4필지이상 α=0.2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α	· α=1.0
	쌈지형공지			· α=0.5
	침상형공지			· α=0.8
	건축한계선	준수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α	· α=3.0
	건축지정선			
	벽면한계선			
	공공보행통로 및 보차혼용통로	조성 및 준수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α	· α=0.2 (필로티 및 개방형구조)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 × (지정·권장용도 / 연면적) × α	· α=1.0 (건축연면적 20%이상 수용시 인정)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 × α	· α=0.1 (가로활성화 상업용도 등 별도로 결정한 경우 /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 이상 설치시)

■ 유형 1-3 (계획유도 인센티브)(변경)

항목	세분	완화조건	세부계획기준	비고
공동개발	공동개발 (지정,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2필지 α=0.06 · 3필지 α=0.10 · 4필지이상 α=0.14
	자율적 공동개발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1필지(지정/권장병행시)α=0.03 · 2필지 α=0.03 · 3필지 α=0.05 · 4필지이상 α=0.07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α	· α=1.0
	쌈지형공지			· α=0.5
	침상형공지			· α=0.8
	건축한계선	준수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α	· α=1.5
	건축지정선			
	벽면한계선			
	공공보행통로 및 보차혼용통로	준수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α	· α=0.2 (필로티 및 개방형구조)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 × (지정·권장용도 / 연면적) × α	· α=0.2 (건축연면적 20%이상 수용시 인정)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 × α	· α=0.1 (가로활성화 상업용도 등 별도로 결정한 경우 /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이상 설치시)
주차계획	공동주차통로 및 공동주차장	조성 및 준수시	기준용적률 × α	· α=0.07

■ 유형 2-1 (계획유도 인센티브)(변경)

항목	세분	완화조건	세부계획기준	비고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2필지 α=0.06 · 3필지 α=0.10 · 4필지이상 α=0.14
	자율적 공동개발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1필지(지정/권장병행시)α=0.03 · 2필지 α=0.03 · 3필지 α=0.05 · 4필지이상 α=0.07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α	· α=1.0
	쌈지형공지			· α=0.5
	침상형공지			· α=0.8
	건축한계선	준수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α	· α=0.5
	건축지정선			
	벽면한계선			
	공공보행통로 및 보차혼용통로	준수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α	· α=0.2 (필로티 및 개방형구조)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 × (지정·권장용도 / 연면적) × α	· α=0.1 (건축연면적 20%이상 수용시 인정)
주차계획	공동주차통로 및 공동주차장	조성 및 준수시	기준용적률 × α	· α=0.07

■ 유형 3-1 (계획유도 인센티브)(변경)

항목	세분	완화조건	세부계획기준	비고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2필지 α=0.03 · 3필지 α=0.05 · 4필지이상 α=0.07
	자율적 공동개발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1필지(지정/권장병행시)α=0.02 · 2필지 α=0.02 · 3필지 α=0.03 · 4필지이상 α=0.04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α	· α=1.0
	쌈지형공지			· α=0.5
	침상형공지			· α=0.8
	건축한계선	준수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α	· α=0.5
	건축지정선			
	벽면한계선			
	공공보행통로 및 보차혼용통로	준수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α	· α=0.2 (필로티 및 개방형구조)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 × (지정·권장용도 / 연면적) × α	· α=0.1 (건축연면적 20%이상 수용시 인정)
주차계획	공동주차통로 및 공동주차장	조성 및 준수시	기준용적률 × α	· α=0.09

■ 유형 3-2 (계획유도 인센티브)(변경)

항목	세분	완화조건	세부계획기준	비고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2필지 α=0.03 · 3필지 α=0.05 · 4필지이상 α=0.07
	자율적 공동개발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1필지(지정/권장병행시)α=0.02 · 2필지 α=0.02 · 3필지 α=0.03 · 4필지이상 α=0.04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α	· α=1.0
	쌈지형공지			· α=0.5
	침상형공지			· α=0.8
	건축한계선	준수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α	· α=0.5
	건축지정선			
	벽면한계선			
	공공보행통로 및 보차혼용통로	준수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α	· α=0.2 (필로티 및 개방형구조)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 × (지정·권장용도 / 연면적) × α	· α=0.1 (건축연면적 20%이상 수용시 인정)

4) 건축물 밀도(최고높이) (변경)

■ 건축물 밀도(최고높이) 결정(변경)

구 분	기 정			구 분	변 경		
	블록 획지별	최고높이 (규제), (m)	비 고		블록 획지별	최고높이 (규제), (m)	비 고
일 반 상 업 지 역	GC - 1	50	· 전구역에 건축법 제51조 제③항 규정에 의거하여 수 평 거 리 1.5H를 적용	일 반 상 업 지 역	간선부	60	· 사선제한 배제
	GC - 2	40			이면부	40	
	GC - 3	40					
준주거 지 역	SD - 1	50		준주거 지 역	간선부	40	
	SD - 2	50					
	SR - 1	40					
	SR - 2	30			이면부	30	
제3종 일반주거 지역	R - 1	30		일반 주거지역	이면부	20	
	R - 2	20			서대문 세무서 부지	40	
제2종 일반주거 지역	R - 3	25			간선부	25	
	R - 4	20			이면부	20	

주) ① 기정 SD-1(홍제3 존치정비구역), SD-2(홍제1 재정비촉진구역), R-1·R-2(홍은1 재정비촉진해제지역)
② 상이한 높이규제를 받는 대지는 민간시행지침에 따라 적용함

■ 건축물 밀도(최고높이)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서
· 서대문세무서 부지 최고높이 완화 · 용도지역별 높이규제 단순화 ·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최고높이 완화	·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계획(2005.5)을 반영하여 세무서 부지 높이 완화 · 촉진구역 포함지역 제척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유형 단순화 필요 · 일반상업지역 간선부는 개발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최고높이 10m 완화

아.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건축물 배치 결정(변경)

■ 건축물의 배치 결정(기정)

구 분	위치 및 목적	적 용 기 준	적 용 구 역
건축 지정선	· 가로경관의 형상 – 간선도로변의 일정경관유지 · 가로경관의 연속성 확보 – 보도제공, 녹지조성등	· 중심지미관지구 : 3m · 일반미관지구 : 3m	· 간선도로변
건축 한계선	· 유효한 전면공지확보 – 보도제공 및 녹지조성 · 보행 및 차량공간의 확보	· 간선부 : 3m · 이면부 : 0.5 ~ 2m	· 간선도로변 · 이면부
벽면 한계선	· 불합리한 보행동선 개선 · 이면부 주차통로확보	· 1m~2m : 보행공간확보	· 간선도로변 · 이면부

■ 건축물의 배치 결정(변경)

구 분	위치 및 목적	적 용 기 준	적 용 구 역
건축 지정선	· 가로경관의 형상 – 간선도로변의 일정경관유지 · 가로경관의 연속성 확보 – 보도제공, 녹지조성등	· 중심지미관지구 : 3m · 일반미관지구 : 3m	· 간선도로변
건축 한계선	· 유효한 전면공지확보 – 보도제공 및 녹지조성 · 보행 및 차량공간의 확보	· 간선부 : 3m · 이면부 : 0.5~ 2m	· 간선도로변 · 이면부
벽면 한계선	· 불합리한 보행동선 개선 · 이면부 주차통로확보 · 보차혼용통로 및 차량 회차공간 확보	· 1m~2m : 보행공간확보	· 간선도로변 · 이면부
벽면 지정선	· 가로경관의 연속성 확보 – 보도제공, 녹지조성등 · 폭이 좁은 상업가로의 합리적 토지이용	· 중심지미관지구 : 3m – 건축물 유효높이 6m이상 확보	· 간선도로변 (통일로 서측 상업지역)

■ 건축물의 배치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서
· 건축지정선을 벽면지정선으로 일부 변경	· 연속된 가로경관을 유지하는 동시에 필지폭이 좁은 통일로 서측 일반상업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변경
· 벽면한계선을 통한 보차혼용통로 확보	· 지구단위계획상 보행자우선도로를 해제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확보가 곤란한 지역에 보차혼용통로를 지정하여, 맹지의 해소 및 이면부 주거지의 차량 진출입 공간 확보

2) 건축물 형태·색체 결정(변경)

■ 건축물의 형태·색채 계획 결정(기정)

구 분	계획내용	
형 태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1~37조 참조)	· 탑상형, 1층접지부 건폐율형 권장	
	제31조 (층고 및 바닥높이)	① 1층 바닥높이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되는 상업용도건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 10㎝ 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다.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쪽을 기준으로 한다. ② 기존건물과 조화 : 연접대지에 기존건물이 있을 경우 신축건물의 층고 특히 1층 개구부의 높이는 기존 건물과 일치시켜야 하며, 신축건물이 연접대지의 기존 건물과 같은 층수일 경우에는 난간벽(파라펫)의 높이도 기존건물과 일치시켜야 한다. 좌우 양측 건물의 층고, 1층 개구부의 높이, 난간벽 (파라펫)높이가 서로 다를 때에는 두 건물중 전면길이가 긴쪽을 기준으로 한다.
	제32조 (건축물의 외벽)	① 외벽면의 통일성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은 모든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경관과 조화있고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중 외벽면의 70%이상이 유리로 마감된 경우에는 나머지 벽면은 ①항의 규정을 받지 아니한다. ③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든 벽에 유사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일부 벽면에 시멘트 벽돌이나 콘크리트 블록을 페인트 마감만 한채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④ 개구부 없는 외벽면의 처리 : 폭 20m 이상의 도로 및 폭 6m이상 도로의 교차로에 접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도로에 노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벽면에 조경, 벽화등 장식적 처리를 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투시벽 :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1층 전면 벽면 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 투시형 셔터의 사용 :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측면 이격공지의 차폐 1.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조경식재를 권장한다. 2. 이때 담, 문, 지하층출입구 등은 건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3조 (간판, 옥외 및 기타구조물의 처리)	① 지하층 출입구의 설치 :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규정된 측면 이격공지 차폐목적 이외의 지하층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출입구에는 지붕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34조 (건축물의 1층 외부형태와 야간조명)	① 폭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신축되는 건물은 쇼윈도를 설치하는 등 가로의 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는 건축물의 형태 및 조명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② 폭 20m이상 도로에 접하는 대지에 10층 이상 신축 또는 재건축되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야간조명등 설치를 권장한다. ③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의 설치를 권장한다.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계획내용</th></tr>
<tr><td rowspan="3">형 태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1~37조 참조)</td><td>제35조
(건축물의 형태)</td><td>①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 형태가 탑상형으로 권장된 대지에서는 탑상형건축형태를 권장한다.</td></tr>
<tr><td>제36조
(1층 접지부 건폐율)</td><td>①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1층 접지부 건폐율이 지정된 대지에서의 건축시 1층의 건폐율이 50%이하로 건축할 것을 권장한다.</td></tr>
<tr><td>제37조
(경사형 지붕)</td><td>① 이면부 5층이하 건축물의 경우 경사형 지붕으로 처리할 것을 권장한다.
② 건축물의 경사지붕은 구배 10분의 4이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③ 경사지붕의 색채는 외벽의 색상과 어울리는 따뜻한 색으로 채도가 낮은 색으로 하며 원색계통의 색은 금한다. (건축물의 외벽색채기준 동 시행지침 제32조를 준용한다.)</td></tr>
<tr><td>색 채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2조 참조)</td><td>제32조
(건축물의 외부채색기준)</td><td>
<table>
<tr><th>주 조 색</th><th>보 조 색</th><th>강 조 색</th></tr>
<tr><td>·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으로 한다.
· 원색에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 색) 사용은 금지</td><td>·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한다.
·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존재한 경우에는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한다.</td><td>· 상징성이 요구되는 지점(교차로 등)에는 때에 따라 원색계통의 순도 높은 색을 사용할 수 있다.</td></tr>
</table>
</td></tr>
</table>

■ 건축물 형태·색채 계획 결정(변경)

구 분		적용목표	적용대상	비고
건축물 형태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1층 전면 벽면적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셔터 설치시 투시형을 사용 ·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통일로변	규제
	1층 바닥높이	·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함 ·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 기준	구역 전체	규제
	개구부	· 연접 대지에 기존 건축물들이 있을 경우 신축건물의 1층 개구부 높이는 기존 건축물들의 1층 개구부 높이와 조화 필요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주 벽면을 도로에 노출 불가 · 다만, 벽면에 조명, 벽화 등 장식적 처리를 하여 구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구역 전체	규제

구 분		적용목표	적용대상	비고
건축물 색채 및 외관	외벽면의 통일성	·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	구역 전체	권장
	측면공지 차폐	·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조경식재, 담장, 문 등으로 차폐 · 이때 담, 문, 지하층 출입구 등은 건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 및 색채를 사용	구역 전체	권장
	야간경관 조명	· 쇼윈도 및 건축물 외부에서 1층 전면을 투시하는 야간조명 등의 설치를 권장 · 간선가로변에 10층 이상 건축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 옥외 설치 미술 장식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설치할 것을 권장	구역 전체	권장
	건출설비의 노출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옥탑, 냉각탑, 에어컨 실외기 등의 건축설비가 도로변에 노출 불가 · 보행로에 면한 건축물의 외벽면은 기계 환기설비 및 쓰레기통 등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구역 전체	권장
	미관지구 건축물 전면부	· 미관지구가 지정된 대지의 건축물 전면부에는 차면시설 · 세탁물 · 건조대 · 장독대 · 철조망 · 굴뚝 · 환기시설 · 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단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들을 설치하지 금지	통일로변 연희로변	권장
	탑상형 건축물	· 폭 20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형태는 탑상형 권장 · 탑상형 건축물은 건축물의 장변에 대한 단변의 비율이 4분의 1이상이고, 건폐율 40%이하로 건축할 것을 권장 ·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6층 이상의 부분에 대해 건축물의 장변과 단변의 비율이 4분의 1이상이고 그 부분의 건폐율이 40% 이하로 건축할 것을 권장한다.	통일로변	권장
기타	옥외 광고물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서울특별시 및 서대문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건축물과 옥외광고물 연계시스템 개선방안 등 관련규정 준수	구역 전체	규제
	담장 및 옹벽 처리	· 6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사고 예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생울타리 조성 또는 투시형 휀스를 설치하고 차폐식재를 권장 · 지하주차장 옹벽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전면부에 최소 20㎝~30㎝ 정도의 선형 식재공간을 확보하여 벽면 녹화를 권장	구역 전체	권장

■ 건축물의 형태·색채 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서
· 건축물 형태·색체계획 등의 전면적 변경	· 홍제지구단위계획의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을 고려하여, 최근 건축물 형태 및 외관계획 추세에 맞게 기존 변경

자.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1) 대지 내 공지 및 통로계획 결정(변경)

■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계획 결정(기정)

구 분		적 용 기 준	적 용 구 역
전 면 공 지		· 보도와 일체조성(보도가 있는 경우) · Set-Back부분 : 주차장, 보행장애시설 설치금지	· 건축한계선으로 제어되는 필지 · 미관지구 내 건축후퇴선적용 구간
공 개 공 지	공개공지 (규제사항)	· 전면공지와의 조화유도	· 간선가로 및 이면부 도로 · 6개소 위치지정
	쌈지형공지 (권장사항)	· 위치 및 조성면적 : 폭5m이상 확보 · 조성계획기준 : 최소 45㎡	· 간선가로변 및 특별계획구역 · 전구역 필지 및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

■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계획 결정(변경)

구 분		계획 내용	
		적 용 기 준	적 용 대 상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 가각부 주변 일정규모 이상 · 인접 공개공지와 조화 유도	5개소 위치지정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보도와 차도 일체 조성 · 주차장, 보행장애시설 설치 금지	간선부 3m 이면부 0.5~2m
	침상형 공지	· 지하철연결 및 휴식공간 제공	홍제역 지하철 출입구 (공동개발 특별지정 적용시)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 통로	· 벽면한계선 병행 결정 · 일반인 상시 개방 원칙	통일로변 3개소 (폭원 4m ~ 6m)
	보차혼용 통로	· 벽면한계선 병행 결정 · 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 금지	이면부 8개소 위치지정 (폭원 4m ~ 6m)

■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서
· 공개공지 및 쌈지형공지 폐지 · 침상형공지 추가 지정(권장)	· 설치곤란하거나, 구역에서 제척된 공개공지 및 쌈지형공지 폐지 · 공동개발(특별지정)이행시 지하철 출입구 이전부지에 침상형공지 지정
· 공공보행통로 및 보차혼용통로 지정	· 현재 보행자우선(전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 통행연결성 확보 및 주민 보행편의를 위한 대지 내 통로로 활용

차. 차량 동선 및 주차 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1) 대지 내 공지 및 통로계획 결정(변경)

■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결정(기정)

구 분	계획 내용		
	적 용 목 표	적 용 기 준	적 용 대 상
차량 출입 금지 구간	· 차량흐름의 방해 최소화 · 보행단절 및 침해 최소화	· 간선도로변 및 가각부에서 일정 구간 차량출입금지 구간 지정	· 의주로변 연희로변 · 인왕시장 진입로
공동 주차 통 로	· 간선도로변에서 진입최소화	· 벽면한계선 양측1m · 공동주차통로 3.0m+3.0m = 6.0m통로지정	· 주변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공동출입구 (공동)		· 주차출입구 최소화	· 이면부

■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결정(변경)

구 분	계획 내용		
	적 용 목 표	적 용 기 준	적 용 대 상
차량출입 금지구간	· 간선도로변 원활한 차량소통 및 가로변 보행활동 연속성 확보	· 주 간선가로에서의 차량출입 원칙적 금지	· 통일로변, 연희로변
공동주차통로	· 효율적인 차량 접근 유도	· 담장, 계단, 화단 등 기타 차량 진·출입에 지장을 주는 일체 장애물 설치 금지	· 자율적 공동개발유도를 위해 공동주차 통로 및 출입구간 전구간 해제
공동주차 출입구간	· 효율적인 차량 접근 유도	· 이면부 도로 내 주차출입구 최소화	

■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서
· 차량출입금지구간 일부 해제	· 현재 차량 통행이 가능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2곳 해제
· 공동주차통로 전구간 해제	· 자율적 공동개발유도를 위해 공동주차 통로 및 출입구간 전 구간 해제
· 공동주차 출입구간 전구간 해제	

카.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용지 확보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용지 확보계획(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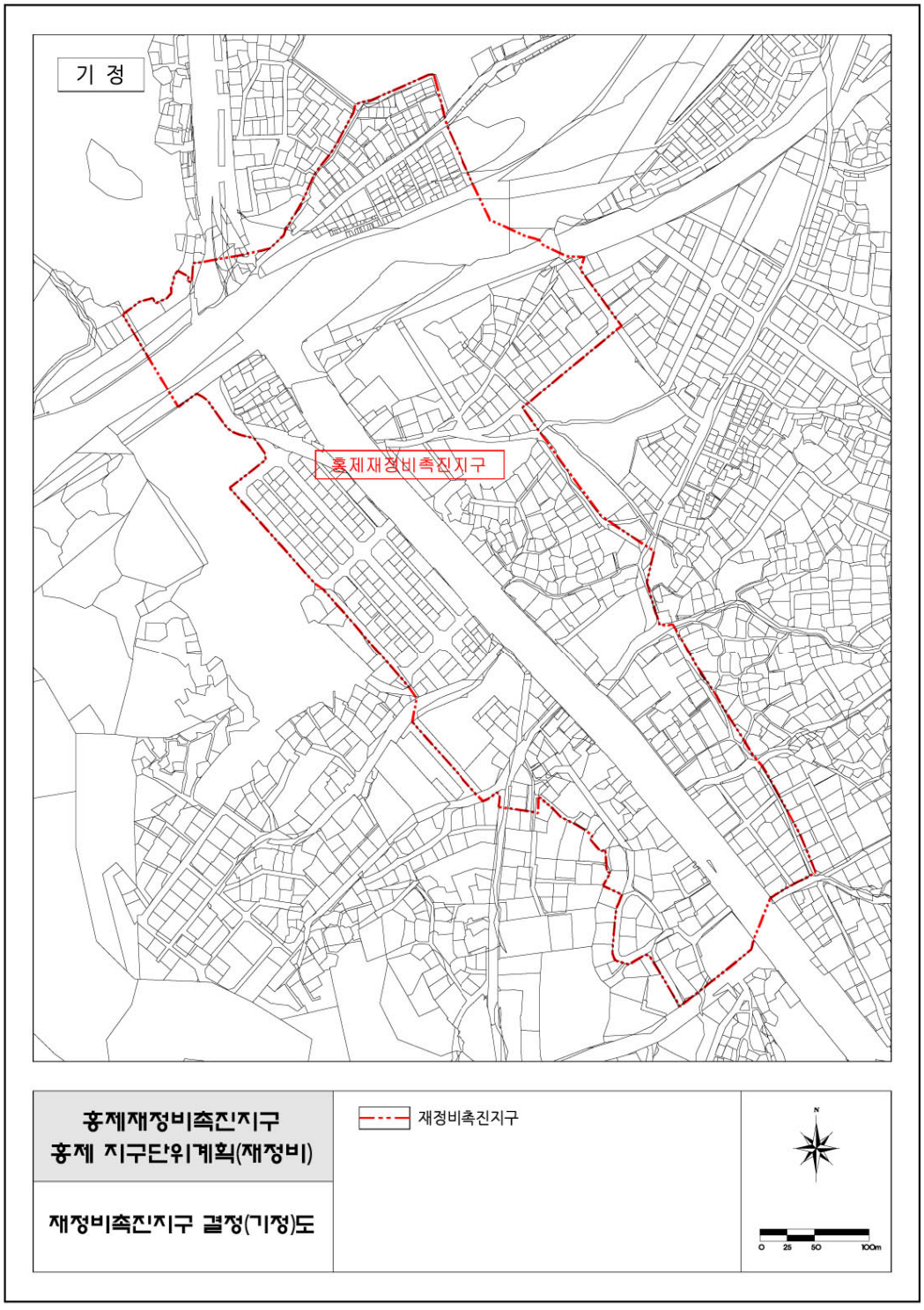
■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결정(기정)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적용 획지 번호	공공용지 부담기준	적용 필지	공공용지 부담기준	
용도지역 2단계 상승획지 중 대형획지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45, 47	대지면적의 10% 이상 (획지 내 공공시설 조성)	홍제동 301-5⊕301-2⊕301-3 홍제동 302-1⊕303-1⊕304-93 ⊕304-91⊕304-92 ⊕304-87⊕304-78	대지면적의 10% 수준 공공기여 제공 (기반시설 부지, 공공시설 설치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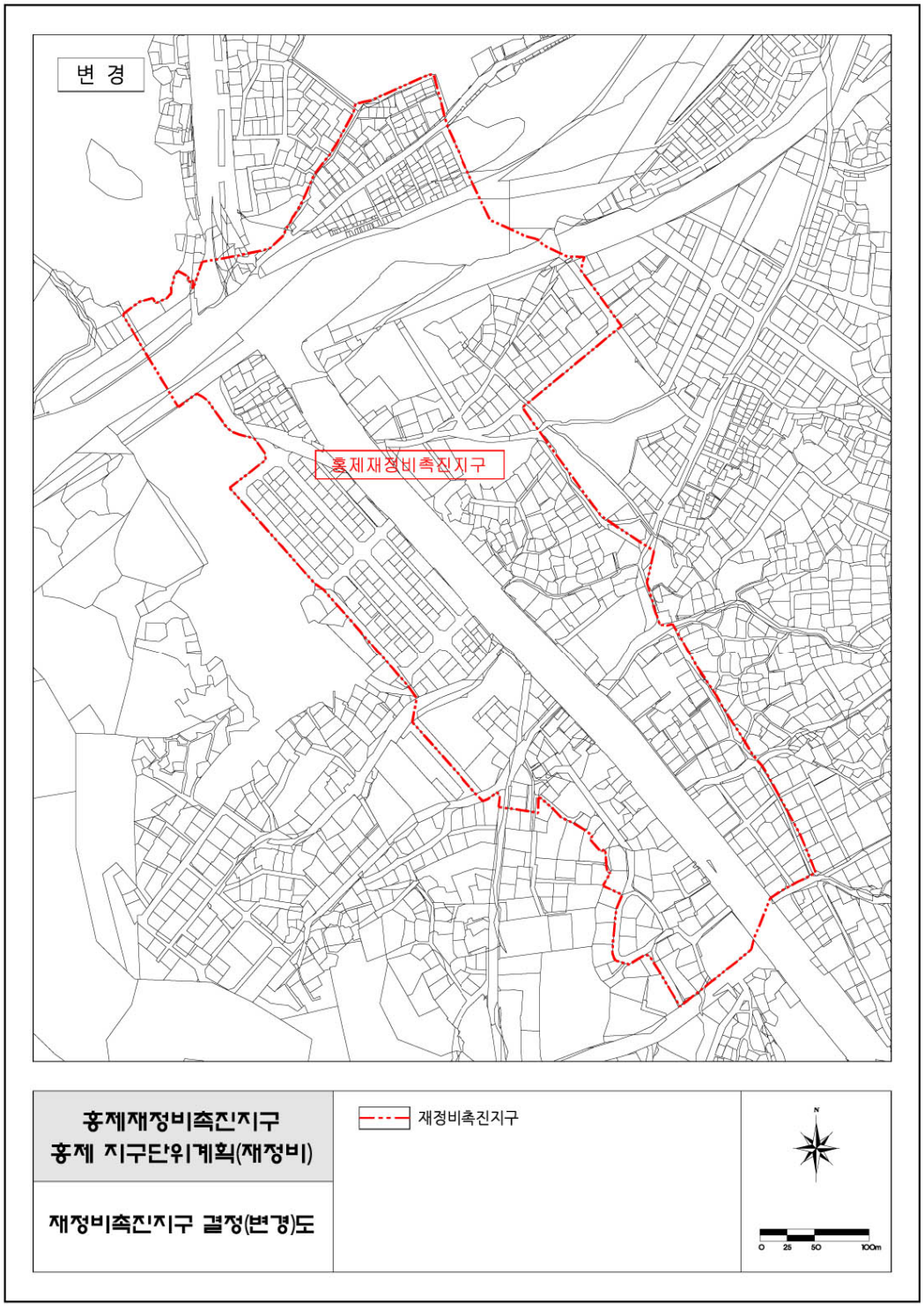
주) 단, 건축계획시 공공용지 기부채납을 대체하는 별도의 공공기여방안이 제시될 경우 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 결정, 현재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정비구역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홍제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공용지 확보계획에 대하여 각 구역별 관리방안을 따름

3. 시민의 공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18) 및 서대문구 도시관리과(☏ 02-330-1937)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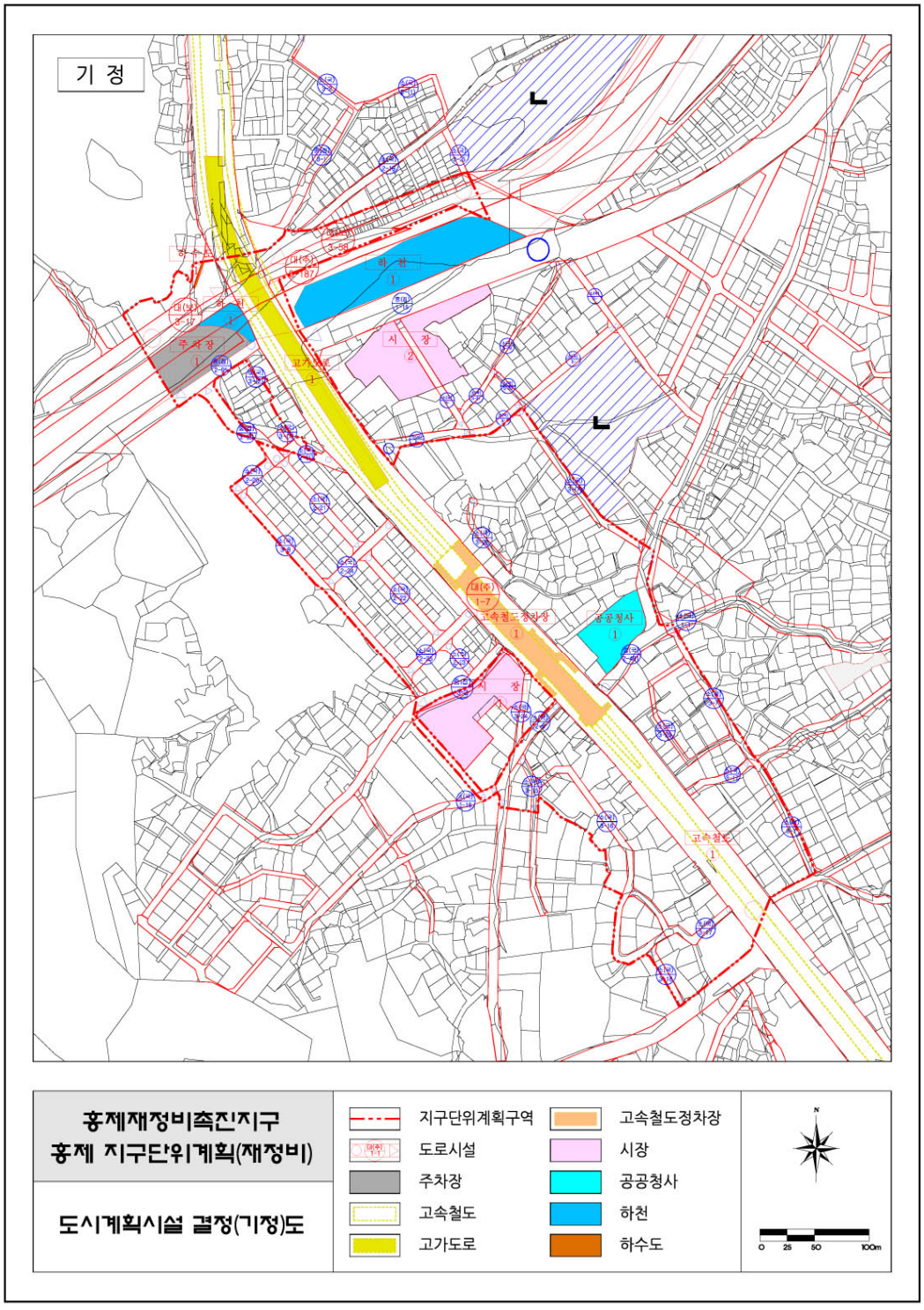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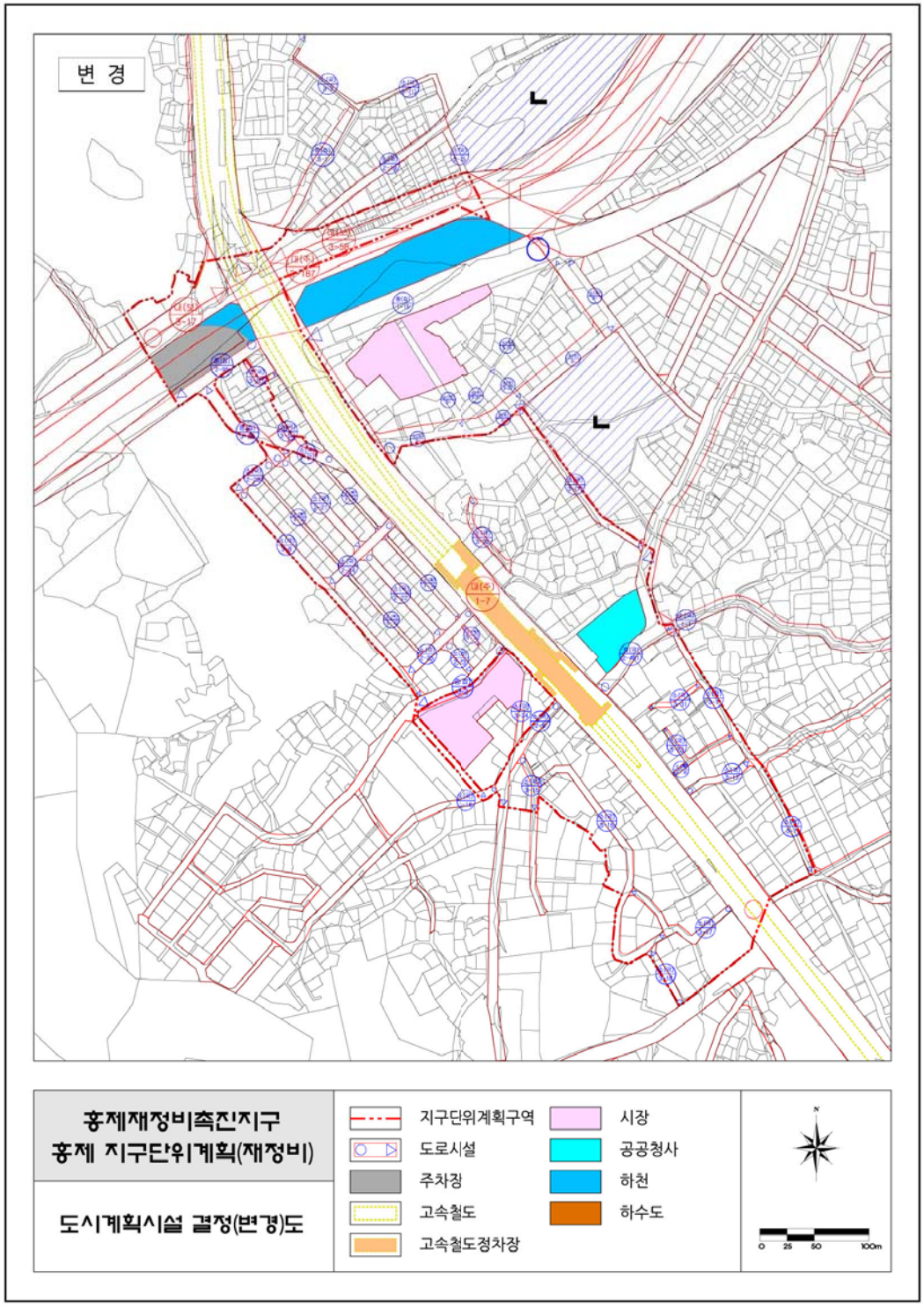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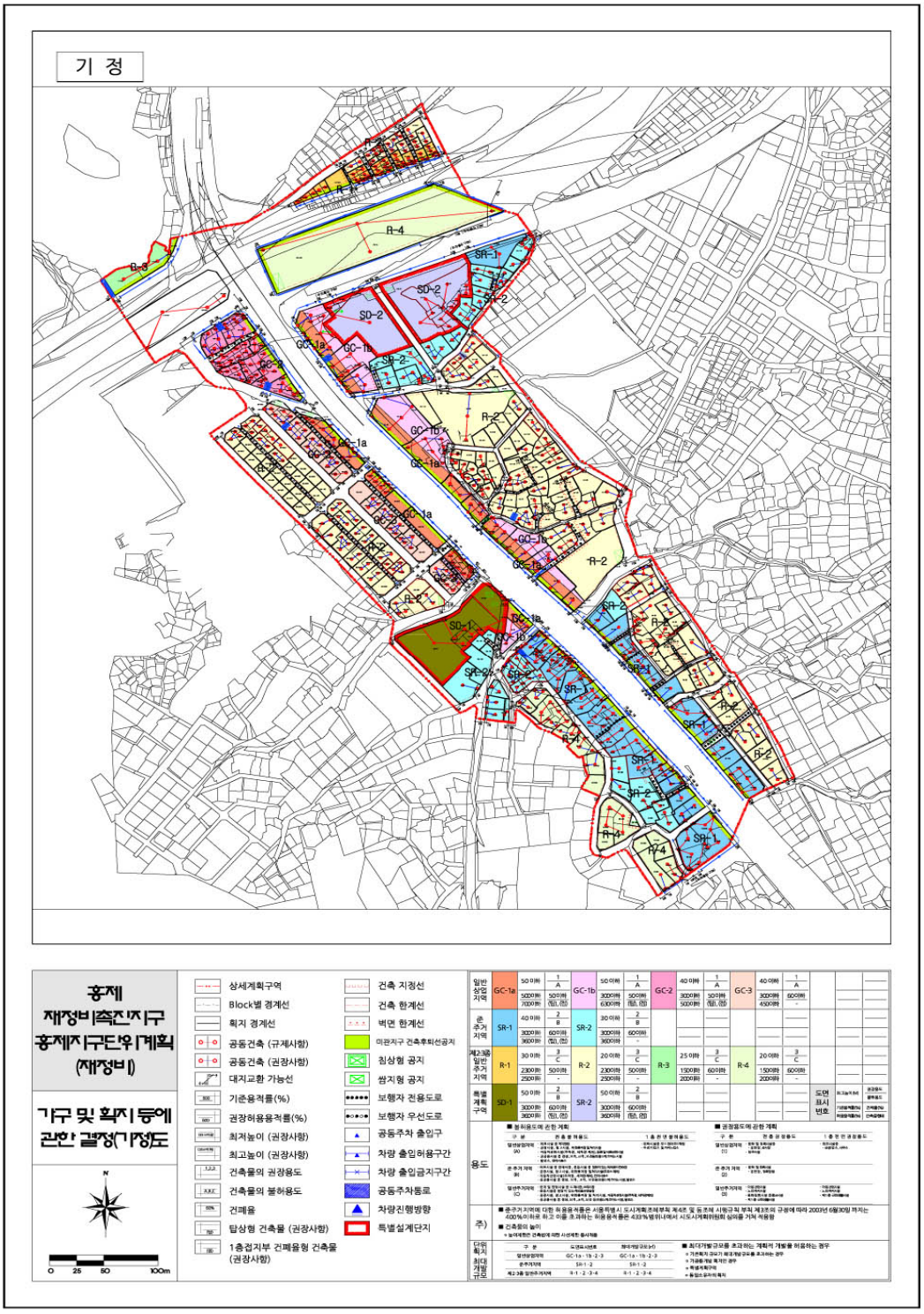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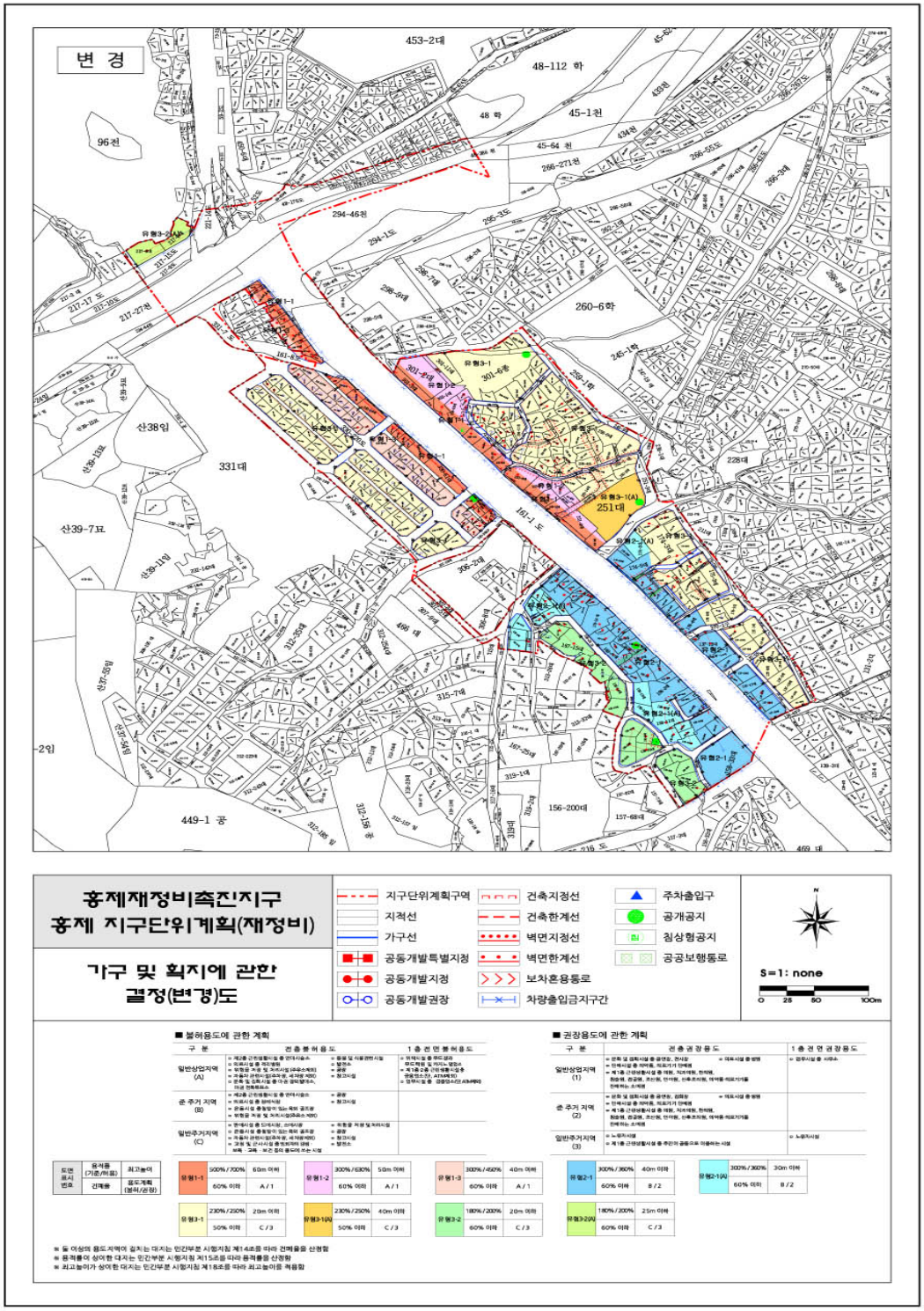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78호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의 수처리공법 변경에 따른 시설용량 변경내용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2. 사업 목적
   ○ 난지물재생센터의 가변형수처리공법(MLE↔A2O가변형)을 생물학적 인제거 가능한 A2O 공법으로 상시 운영함으로서 방류수중 총인을 최대한 저감하여 방류수역의 수질환경 보전 및 공중보건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변경사항 없음)
   ○ 면 적 : 929,000㎡(변경사항 없음)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구분	시설의 종류	명 칭	시설용량	처리공법	비 고
당초	공공하수 처리시설	난 지 물재생센터	860,000㎥/일	고도처리 (MLE↔A2O가변형)	-
변경	(위와 같음)	(위와 같음)	690,000㎥/일	고도처리 (A2O)	수처리공법 변경에 따른 시설용량 축소

※ 순환식질산화탈질법(MLE) : 생물학적 질소제거공정 처리법
※ 혐기무산조호기조합법(A2O) : 생물학적 인제거공정과 생물학적 질소제거공정을 조합시킨 처리법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
   ○ 배수구역 : 창릉, 불광, 홍제, 망원, 마포, 욱천, 용산
   ○ 하수처리구역 : 마포·용산·은평·서대문 전역과 종로·중구·성동 및 고양시 일부
6.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7. 사업시행기간 : 해당없음.
8.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 금회 변경사항 없음(생략)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금회 변경사항 없음(생략)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79호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313-1일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조서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진관동 313-1번지 일대	69,144.5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나. 결정 취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승인(취락지구 지정가능 집단취락)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를 지정하고자 함.

다. 관계도면 : 게재생략(서울시 도시계획과 및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비치도면과 같음).

라. 열람장소 :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2133-8331),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351-7405),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351-8022)에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80호

문정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07호(2007.6.28.)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0호(2008.12.26.)로 개발계획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95호(2009.5.14.)로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18호(2009.5.28.)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42호(2011.6.2.)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1호(2012.10.11.)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56호(2013.8.1.)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97호(2013.11.28.)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64호(2013.12.26.)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4-104호(2014.3.20.)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07호(2014.3.20.)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78호(2014.5.8.)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12호(2014.6.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35호(2014.9.25.)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69호(2015.6.18.)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19호(2015.10.15.)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07호(2015.12.24.)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417호(2016.12.22.)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문정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신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문정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문정도시개발구역(변경없음)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9번지 일원
- 면적 : 548,239.0㎡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문정지역 주변의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익성이 전제된 친환경적 도시개발 도모
- 신성장동력산업 및 공공행정 지원시설을 계획적으로 유치하여 서울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 조성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 사무소 소재지 : 강남구 개포로 621(강남구 개포동 14-5)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 시행기간(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행기간	2007.06.28 ~ 2017.12.31	2007.06.28 ~ 2018.12.31	

- 변경사유 : 개발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준공을 위한 공사기간 부족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서고시 2016-417호)	증감	변경	1단계(준공)	2단계				
					기정	증감	변경		
계	548,239.0	-	548,239.0	149,005.5	399,233.5	-	399,233.5	100.0	
업무용지	151,572.8	-	151,572.8	0.0	151,572.8	-	151,572.8	27.7	
상업용지	19,814.4	-	19,814.4	0.0	19,814.4	-	19,814.4	3.6	
공공지원 용지	12,294.7	-	12,294.7	6,610.0	5,684.7	-	5,684.7	2.2	
도시기반시설용지	355,522.3	-	355,522.3	142,395.5	213,126.8	-	213,126.8	64.9	
공공청사	111,167.2	-	111,167.2	111,167.2	0.0	-	0.0	20.3	
법원/등기소	29,765.2	-	29,765.2	29,765.2	0.0	-	0.0	5.4	
검찰청	26,678.9	-	26,678.9	26,678.9	0.0	-	0.0	4.9	
구치소/보호관찰소	36,367.7	-	36,367.7	36,367.7	0.0	-	0.0	6.6	
경찰기동대	13,065.1	-	13,065.1	13,065.1	0.0	-	0.0	2.4	
법무부 부속시설	5,290.3	-	5,290.3	5,290.3	0.0	-	0.0	1.0	
소계	244,355.1	-	244,355.1	31,228.3	213,126.8	-	213,126.8	44.6	
광장	17,054.3 (18,772.3)	-	17,054.3 (18,772.3)	0.0	17,054.3 (18,772.3)	-	17,054.3 (18,772.3)	3.1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도로 : 1,718㎡
공원/녹지	116,215.7	감)3,702.9	112,512.8	21,226.6	94,989.1	감)3,702.9	91,286.2	21.2	13개소
근린공원	57,985.1	감)490.6	57,494.5	0	57,985.1	감)490.6	57,494.5	10.6	2개소
연결녹지	53,780.6	감)3,212.3	50,568.3	16,776.6	37,004.0	감)3,212.3	33,791.7	9.8	8개소
완충녹지	4,450.0	-	4,450.0	4,450.0	0.0	-	0.0	0.8	3개소
유수지(저류시설)	(5,398.5)	-	(5,398.5)	0.0	(5,398.5)	-	(5,398.5)	(1.0)	도시계획시설(공원) 중복 결정
주차장	3,292.4	-	3,292.4	0.0	3,292.4	-	3,292.4	0.6	2개소
도로	107,792.7	증)3,702.9	111,495.6	10,001.7	97,791.0	증)3,702.9	101,493.9	19.7	
유보지	9,034.8	-	9,034.8	0.0	9,034.8	-	9,043.8	1.6	

※ 변경된 면적은 2단계(미준공) 부분에 한함

■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문정도시 개발구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9 일원	548,239.0	-	548,239.0	서울시고시 제2007-207호 ('07.06.28)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문정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9 일원	548,239.0	-	548,239.0	서울시고시 제2007-207호 ('07.06.28)	

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 도 지 역 별	면 적(㎡)			구 성 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48,239	-	548,239	100.0	
일반상업지역	285,030	-	285,030	52.0	
3종일반주거지역	263,209	-	263,209	48.0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미관 지구	일반 미관지구	석촌동 ~ 장지동	110,477 (5,342)	4,603.5 (473.5)	12	서울시고시 제164호 ('82.04.22)	()는 구역내 사항임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① 도로(변경)

- 도로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22	15,839	107,792.7	6	3,509	29,854.0	9	9,719	31,671.3	7	2,611	46,267.4
	변경	22	15,829	111,495.6	6	3,504	33,717.0	9	9,719	31,671.3	7	2,606	46,107.3
광로	기정	2	8,715	3,706.1	–	–	–	1	8,000	2,382.8	1	715	1,323.3
대로	기정	4	3,947	46,129.7	2	2,775	11,625.6	–	–	–	2	1,172	34,504.1
	변경	4	3,942	49,983.6	2	2,775	15,639.6	–	–	–	2	1,167	34,344.0
중로	기정	13	3,053	56,927.4	3	724	18,109.2	6	1,605	28,378.2	4	724	10,440.0
	변경	13	3,048	56,776.4	3	719	17,958.2	6	1,605	28,378.2	4	724	10,440.0
소로	변경	3	124	1,029.5	1	10	119.2	2	114	910.3	–	–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2	29	50~55	주간선도로	8,000	잠실대교	성남시계	일반도로	건고시 제198호 ('71.04.07)	
기정	광로	3	1	40~43	보조간선도로	715	문정동 310-3	문정동 392-14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기정	대로	1	74	25~60	보조간선도로	1,960	문정동 150-14	장지동 233-10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6-172호 ('06.05.11)	
기정	대로	1	181	35	보조간선도로	815	대로1-74	대로2-29	일반도로	건고시 제415호 ('86.09.23)	
변경	대로	1	181	35~40	보조간선도로	815	대로1-74	대로2-29	일반도로	건고시 제415호 ('86.09.23)	선형변경 및 노폭확장
기정	대로	3	3	29	보조간선도로	700	광로3-3	대로1-181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변경	대로	3	3	29	집산도로	695	광로3-3	대로1-181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연장축소
기정	대로	3	4	27	집산도로	472	대로3-3	문정동 638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기정	중로	1	3	22	집산도로	140	문정동 652-2	대로3-3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4	24	집산도로	446	대로3-3	광로3-1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기정	중로	1	6	24~30	집산도로	138	대로3-4	대로1-181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중로	1	6	24~30	집산도로	133	대로3-4	대로1-181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연장축소
기정	중로	2	1	15	국지도로	219	중로2-1	중로2-2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기정	중로	2	2	15	국지도로	681	대로3-3	대로3-3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기정	중로	2	3	19	국지도로	153	중로2-2	대로3-4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기정	중로	2	4	15	국지도로	265	중로2-2	대로3-4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기정	중로	2	5	17.5~24	국지도로	201	광로2-29	대로3-3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기정	중로	2	7	15	국지도로	86	대로3-4	문정동 641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4-104호 ('14.03.20)	
기정	중로	3	1	13	국지도로	187	대로3-3	중로1-3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2-271호 ('12.10.11)	
기정	중로	3	2	13	국지도로	215	대로3-3	중로1-3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2-271호 ('12.10.11)	
기정	중로	3	3	14.5	국지도로	155	대로3-4	중로1-6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2-271호 ('12.10.11)	
기정	중로	3	4	14.5	국지도로	167	대로3-4	중로1-6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4-104호 ('14.03.20)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0	대로1-74	문정동 654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4-104호 ('14.03.20)	
기정	소로	2	3	8	특수도로	55	광로2-29	중로1-3	보행자도로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기정	소로	2	4	8	특수도로	59	광로2-29	중로3-2	보행자도로	서울시고시 제2012-271호 ('12.10.11)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181	대로1-181	도로 선형조정 및 노폭확장 -연장 : 815m, -폭원 : 35m→35~40m(증0~5m)	동남로 북측 훼미리아파트 민원해결을 위한 연결녹지 축소 및 교통영향평가·개선대책 심의결과 반영
대로3-3	대로3-3	도로연장축소 -기능 : 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연장 : 695m→690m(감5m)	동남로 북측 훼미리아파트 민원해결을 위한 연결녹지 축소 및 교통영향평가·개선대책 심의결과 반영
중로1-6	중로1-6	도로연장축소 -연장 : 138m→133m(감5m)	동남로 북측 훼미리아파트 민원해결을 위한 연결녹지 축소 및 교통영향평가·개선대책 심의결과 반영

② 주차장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문정동 652-1	2,151.5	-	2,151.5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8BL
기정	②	주차장	문정동 640-9	1,140.9	-	1,140.9	서울시고시 제2012-271호 ('12.10.11)	5BL

2) 공간시설(변경)

① 광장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광장	근린 광장	문정동 643일원	18,772.3		18,772.3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 09.05.28)	- 기존 중복결정 (도로 1,718㎡)

② 공원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근린 공원	문정동 653	36,638.3	-	36,638.3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②	공원	근린 공원	문정동 638	21,346.8	감)490.6	20,856.2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5,398.5㎡ :도시계획시설 (유수지) 중복 결정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공원	면적 변경 A=21,346.8㎡ → 20,856.2㎡ (감490.6㎡)	동남로 북측 훼미리아파트 민원해결을 위한 연결녹지 축소 및 교통영향평가 · 개선대책 심의결과 반영

③ 녹지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완충 녹지	문정동 647-1	877.4	-	877.4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기정	②	녹지	완충 녹지	문정동 648-1	2,631.0	-	2,631.0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기정	③	녹지	완충 녹지	문정동 654-2	941.6	-	941.6	서울시고시 제2014-104호 ('14.03.20)	
기정	①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640-2	4,944.8	-	4,944.8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기정	②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644-1	5,115.7	-	5,115.7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기정	③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647-2	9,283.7	-	9,283.7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기정	④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650-1	7,492.9	-	7,492.9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⑤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642-1	7,120.7	감) 984.8	6,135.9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⑥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640-1	11,615.9	감) 1,630.2	9,985.7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⑦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639-1	4,339.5	감) 597.3	3,742.2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기정	⑧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647-4	3,867.4	-	3,867.4	서울시고시 제2014-104호 ('14.03.20)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⑤	연결녹지	면적 축소 A=7,120.7㎡ → 6,135.9㎡ (감984.8㎡)	동남로 북측 훼미리아파트 민원해결을 위한 연결녹지 축소 및 교통영향평가 · 개선대책 심의결과 반영
⑥	연결녹지	면적 축소 A=11,615.9㎡ → 9,985.7㎡ (감1,630.2㎡)	동남로 북측 훼미리아파트 민원해결을 위한 연결녹지 축소 및 교통영향평가 · 개선대책 심의결과 반영
⑦	연결녹지	면적 축소 A=4,339.5 → 3,742.2㎡ (감597.3㎡)	동남로 북측 훼미리아파트 민원해결을 위한 연결녹지 축소 및 교통영향평가 · 개선대책 심의결과 반영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 청사	법원/ 등기소	문정동 650	29,765.2	-	29,765.2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기정	②	공공 청사	검찰청	문정동 649	26,678.9	-	26,678.9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기정	③	공공 청사	구치소/ 보호관찰소	문정동 648	36,367.7	-	36,367.7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기정	④	공공 청사	경찰 기동대	문정동 654	13,065.1	-	13,065.1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기정	⑤	공공 청사	법무부 부속시설	문정동 647	5,290.3	-	5,290.3	서울시고시 제2014-104호 ('14.03.20)	

4) 방재시설(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유수지	저류 시설	문정동 638-1	5,398.5	-	5,398.5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도시계획시설 (공원) 중복 결정

5)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하수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	하수도	문정동 119-4	문정동 421	대로 3-4	893	7,321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 기존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 공원 : 707㎡ - 광장 : 541㎡ - 도로 : 5,418㎡

7. 토지등의 세목 및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신설)

- 사업시행지 위치 : 대로1-181호선(문정동 150-14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와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사업의 명칭 : 대로 1-181호선 확장공사
- 사업의 규모
  - 연장 : 855m, 폭원 : 35~40m
  - 면적 : 구역밖 20,652㎡(구역내 : 12,203㎡)
-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업착공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8년 12월 31일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대로 1-181호선(문정동 150-14번지)
- 사업비

구 분	사업비 계	공사비			보상비	각종부담금	비 고
		조경	토목	이설비			
동남로 확장	58억원	22억원	20억원	16억원	-	-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구역지정의 고시일로부터 3년(변경없음)

10.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사항 중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과 동일

11.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 02)2133-4641)
  - 송파구청 도시전략과 (☎ 02)2147-2171)
  -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 (☎ 02)3410-7594)

Ⅱ. 문정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1. 사업의 명칭 : 문정도시개발구역(변경없음)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문정지역 주변의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익성이 전제된 친환경적 도시개발 도모
- 신성장동력산업 및 공공행정 지원시설을 계획적으로 유치하여 서울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9번지 일원
- 면적 : 548,239.0㎡

4. 시행자(변경없음)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5. 시행기간(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행기간	2007.06.28 ~ 2017.12.31	2007.06.28 ~ 2018.12.31	

- 변경사유 : 개발계획 변경 등 사업준공을 위한 사업기간 부족

6. 시행방식 (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 내용(변경)

1)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①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문정도시 개발구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9 일원	548,239.0	-	548,239.0	서울시고시 제2007-207호 ('07.06.28)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문정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9 일원	548,239.0	-	548,239.0	서울시고시 제2007-207호 ('07.06.28)	

3)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48,239	-	548,239	100.0	
일반상업지역	285,030	-	285,030	52.0	
3종일반주거지역	263,209	-	263,209	48.0	

②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석촌동 ~ 장지동	110,477 (5,342)	4,603.5 (473.5)	12	서울시고시 제164호 ('82.04.22)	()는 구역내 사항임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①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도로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22	15,839	107,792.7	6	3,509	29,854.0	9	9,719	31,671.3	7	2,611	46,267.4
	변경	22	15,829	111,495.6	6	3,504	33,717.0	9	9,719	31,671.3	7	2,606	46,107.3
광로	기정	2	8,715	3,706.1	-	-	-	1	8,000	2,382.8	1	715	1,323.3
대로	기정	4	3,947	46,129.7	2	2,775	11,625.6	-	-	-	2	1,172	34,504.1
	변경	4	3,942	49,983.6	2	2,775	15,639.6	-	-	-	2	1,167	34,344.0
중로	기정	13	3,053	56,927.4	3	724	18,109.2	6	1,605	28,378.2	4	724	10,440.0
	변경	13	3,048	56,776.4	3	719	17,958.2	6	1,605	28,378.2	4	724	10,440.0
소로	변경	3	124	1,029.5	1	10	119.2	2	114	910.3	-	-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2	29	50~55	주간선도로	8,000	잠실대교	성남시계	일반도로	건고시 제198호 ('71.04.07)	
기정	광로	3	1	40~43	보조간선도로	715	문정동 310-3	문정동 392-14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기정	대로	1	74	25~60	보조간선도로	1,960	문정동 150-14	장지동 233-10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6-172호 ('06.05.11)	
기정	대로	1	181	35	보조간선도로	815	대로1-74	대로2-29	일반도로	건고시 제415호 ('86.09.23)	
변경	대로	1	181	35~40	보조간선도로	815	대로1-74	대로2-29	일반도로	건고시 제415호 ('86.09.23)	선형변경 및 노폭확장
기정	대로	3	3	29	보조간선도로	700	광로3-3	대로1-181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변경	대로	3	3	29	집산도로	695	광로3-3	대로1-181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연장축소
기정	대로	3	4	27	집산도로	472	대로3-3	문정동 638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기정	중로	1	3	22	집산도로	140	문정동 652-2	대로3-3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기정	중로	1	4	24	집산도로	446	대로3-3	광로3-1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기정	중로	1	6	24~30	집산도로	138	대로3-4	대로1-181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중로	1	6	24~30	집산도로	133	대로3-4	대로1-181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연장축소
기정	중로	2	1	15	국지도로	219	중로2-1	중로2-2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기정	중로	2	2	15	국지도로	681	대로3-3	대로3-3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기정	중로	2	3	19	국지도로	153	중로2-2	대로3-4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기정	중로	2	4	15	국지도로	265	중로2-2	대로3-4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5	17.5~24	국지도로	201	광로2-29	대로3-3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기정	중로	2	7	15	국지도로	86	대로3-4	문정동 641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4-104호 ('14.03.20)	
기정	중로	3	1	13	국지도로	187	대로3-3	중로1-3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2-271호 ('12.10.11)	
기정	중로	3	2	13	국지도로	215	대로3-3	중로1-3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2-271호 ('12.10.11)	
기정	중로	3	3	14.5	국지도로	155	대로3-4	중로1-6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2-271호 ('12.10.11)	
기정	중로	3	4	14.5	국지도로	167	대로3-4	중로1-6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4-104호 ('14.03.20)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0	대로1-74	문정동 654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4-104호 ('14.03.20)	
기정	소로	2	3	8	특수도로	55	광로2-29	중로1-3	보행자도로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기정	소로	2	4	8	특수도로	59	광로2-29	중로3-2	보행자도로	서울시고시 제2012-271호 ('12.10.11)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181	대로1-181	도로 선형조정 및 노폭확장 -연장=815m, -폭원=35m→35~40m(증0~5m)	동남로 북측 훼미리아파트 민원해결을 위한 연결녹지 축소 및 교통영향평가 · 개선대책 심의결과 반영
대로3-3	대로3-3	도로연장축소 -연장=695m→690m(감5m)	동남로 북측 훼미리아파트 민원해결을 위한 연결녹지 축소 및 교통영향평가 · 개선대책 심의결과 반영
중로1-6	중로1-6	도로연장축소 -연장=138m→133m(감5m)	동남로 북측 훼미리아파트 민원해결을 위한 연결녹지 축소 및 교통영향평가 · 개선대책 심의결과 반영

(2)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문정동 652-1	2,151.5	-	2,151.5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8BL
기정	②	주차장	문정동 640-9	1,140.9	-	1,140.9	서울시고시 제2012-271호 ('12.10.11)	5BL

② 공간시설(변경)

(1) 광장(변경없음)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광장	근린 광장	문정동 643일원	18,772.3		18,772.3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 기존 중복결정 (도로 1,718㎡)

(2)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근린 공원	문정동 653	36,638.3	-	36,638.3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②	공원	근린 공원	문정동 638	21,346.8	감)490.6	20,856.2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5,398.5㎡ :도시계획시설 (유수지) 중복 결정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공원	면적 변경 A=21,346.8㎡ → 20,856.2㎡ (감490.6㎡)	동남로 북측 훼미리아파트 민원해결을 위한 연결녹지 축소 및 교통영향평가·개선대책 심의결과 반영

(3)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완충 녹지	문정동 647-1	877.4	-	877.4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기정	②	녹지	완충 녹지	문정동 648-1	2,631.0	-	2,631.0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기정	③	녹지	완충 녹지	문정동 654-2	941.6	-	941.6	서울시고시 제2014-104호 ('14.03.20)	
기정	①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640-2	4,944.8	-	4,944.8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기정	②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644-1	5,115.7	-	5,115.7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기정	③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647-2	9,283.7	-	9,283.7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기정	④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650-1	7,492.9	-	7,492.9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⑤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642-1	7,120.7	감) 984.8	6,135.9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⑥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640-1	11,615.9	감) 1,630.2	9,985.7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⑦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639-1	4,339.5	감) 597.3	3,742.2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기정	⑧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647-4	3,867.4	-	3,867.4	서울시고시 제2014-104호 ('14.03.20)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⑤	연결녹지	면적 축소 A=7,120.7㎡ → 6,135.9㎡ (감984.8㎡)	동남로 북측 훼미리아파트 민원해결을 위한 연결녹지 축소 및 교통영향평가 · 개선대책 심의결과 반영
⑥	연결녹지	면적 축소 A=11,615.9㎡ → 9,985.7㎡ (감1,630.2㎡)	동남로 북측 훼미리아파트 민원해결을 위한 연결녹지 축소 및 교통영향평가 · 개선대책 심의결과 반영
⑦	연결녹지	면적 축소 A=4,339.5 → 3,742.2㎡ (감597.3㎡)	동남로 북측 훼미리아파트 민원해결을 위한 연결녹지 축소 및 교통영향평가 · 개선대책 심의결과 반영

③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청사	법원/등기소	문정동 650	29,765.2	-	29,765.2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기정	②	공공청사	검찰청	문정동 649	26,678.9	-	26,678.9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기정	③	공공청사	구치소/보호관찰소	문정동 648	36,367.7	-	36,367.7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기정	④	공공청사	경찰기동대	문정동 654	13,065.1	-	13,065.1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기정	⑤	공공청사	법무부 부속시설	문정동 647	5,290.3	-	5,290.3	서울시고시 제2014-104호 ('14.03.20)	

④ 방재시설(변경없음)

(1) 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유수지	저류시설	문정동 638-1	5,398.5	-	5,398.5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도시계획시설(공원) 중복결정

⑤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하수도(변경)

■ 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	하수도	문정동 119-4	문정동 421	대로 3-4	893	7,321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 기존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 공원 : 707㎡ - 광장 : 541㎡ - 도로 : 5,418㎡

5)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가구 번호	면적(㎡)	구분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기정	1-1BL	14,921.2	1-1	문정동 642	14,921.2	2개획지로 분할(1-1, 1-2)
기정	1-2BL	14,688.7	1-2	문정동 642-3	14,688.7	
기정	2BL	16,357.2	-	문정동 643-1	16,357.2	특별계획구역2
기정	3BL	35,969.6	3-1	문정동 651	17,310.7	특별계획구역3
			3-2	문정동 651-3	938.2	
			3-3	문정동 651-4	915.7	
			3-4	문정동 651-5	963.3	
			3-5	문정동 651-6	1,937.9	
			3-6	문정동 651-8	2,431.9	공동개발(권장)
			3-7	문정동 651-9	2,092.2	
			3-8	문정동 651-10	1,554.3	
			3-9	문정동 651-11	1,579.9	공동개발(권장) ※공개공지 45㎡ 추가확보 : 공동개발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의한 기준면적 이외에 45㎡이상 추가확보
			3-10	문정동 651-12	1,554.5	
			3-11	문정동 651-15	1,555.6	
			3-12	문정동 651-14	1,580.1	
			3-13	문정동 651-13	1,555.3	
기정	4BL	19,983.8	4-1	문정동 641	5,684.7	공공지원용지
			4-2	문정동 641-3	3,780.3	특별계획구역4 (개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2개획지로 분할)
			4-3	문정동 641-4	6,499.8	
			4-4	문정동 641-11	4,019.0	
기정	5BL	11,635.2	5-1	문정동 640	1,032.8	
			5-2	문정동 640-3	980.3	공동개발(권장) ※공개공지 45㎡ 추가확보 : 공동개발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의한 기준면적 이외에 45㎡이상 추가확보 ※연결통로 조성 : 5-2, 5-3BL 대지내 연결통로 조성
			5-3	문정동 640-4	980.3	
			5-4	문정동 640-5	2,171.2	
			5-5	문정동 640-6	980.0	
			5-6	문정동 640-7	1,095.2	
			5-7	문정동 640-8	1,120.7	
			5-8	문정동 640-9	1,140.9	주차장
			5-9	문정동 640-11	1,037.4	
			5-10	문정동 640-10	1,096.4	

구분	가구 번호	면적(㎡)	구분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기정	6BL	17,665.4	6-1	문정동 644	9,045.4	특별계획구역6 (2개획지로 분할)
			6-2	문정동 644-2	8,620.0	
기정	7BL	17,718.0	7-1	문정동 645	8,801.2	특별계획구역7 (2개획지로 분할)
			7-2	문정동 645-2	8,916.8	
기정	8BL	21,965.9	8-1	문정동 652	4,033.9	
			8-2	문정동 652-2	3,321.2	공동개발(권장)
			8-3	문정동 652-3	3,811.4	
			8-4	문정동 652-4	3,927.2	공동개발(권장)
			8-5	문정동 652-5	4,720.7	
			8-6	문정동 652-1	2,151.5	주차장
기정	9BL	56,444.1	9-1	문정동 649	26,678.9	검찰청
			9-2	문정동 650	29,765.2	법원/등기소
기정	10BL	14,749.6	10-1	문정동 639	1,513.0	
			10-2	문정동 639-3	1,332.2	
			10-3	문정동 639-4	1,324.0	
			10-4	문정동 639-5	1,378.5	
			10-5	문정동 639-6	1,401.9	공동개발(권장) ※공공보행통로(폭4m) 지정 : 공동개발시 공공보행통로 폭원 4m이상 지정
			10-6	문정동 639-8	1,258.2	
			10-7	문정동 639-7	1,251.5	
			10-8	문정동 647	5,290.3	법무부 부속시설
기정	11BL	15,644.8	11-1	문정동 646-2	6,610.0	공공지원용지
			11-2	문정동 646	9,034.8	유보지
기정	12BL	49,432.8	12-1	문정동 648	36,367.7	구치소/보호관찰소
			12-2	문정동 654	13,065.1	경찰기동대

※ 공동개발시 공공기여방안 붙임 예시(안) 참조

6)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① 공공지원시설 용지(변경)

■ 기정

가구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4BL	4-1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바닥면적의 합계 1천㎡ 미만)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 사무소 · 출판사 (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 연구소 · 도서관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배치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색채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건축선	◦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11BL	11-1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바닥면적의 합계 1천㎡ 미만)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 사무소 · 출판사 (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 연구소 · 도서관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배치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색채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건축선	◦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공공보행통로	◦ 11-1BL과 11-2BL사이에 폭 4m의 공공보행통로 조성(각 2m)

■ 변경

가구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4BL	4-1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바닥면적의 합계 1천㎡ 미만)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 사무소 · 출판사 (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 연구소 · 도서관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600% 이하
		높이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배치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색채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건축선	◦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공공보행통로	◦ 4-1BL과 4-4BL사이에 폭 4m의 공공보행통로 조성(각 2m)
11BL	11-1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바닥면적의 합계 1천㎡ 미만)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 사무소 · 출판사 (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 연구소 · 도서관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배치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색채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건축선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공공보행통로	◦11-1BL과 11-2BL사이에 폭 4m의 공공보행통로 조성(각 2m)

② 공공청사 용지(변경없음)

가구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9BL 12BL	9-1 9-2 12-2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공공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배치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색채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연접도로 변 2m - 사업지 서측(탄천 우안도로) 완충녹지 변 2m
10BL	10-8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공공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배치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색채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연접도로 변 2m - 사업지 서측(탄천 우안도로) 완충녹지 변 2m

가구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12BL	12-1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공공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이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배치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색채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연접도로 변 2m - 사업지 서측(탄천 우안도로) 완충녹지 변 2m

③ 유보지(변경없음)

가구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11BL	11-2	용도	◦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용도계획 수립시까지 용도 미정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배치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m
		공공보행통로	◦ 11-1BL과 11-2BL사이에 폭 4m의 공공보행통로 조성(각 2m)

④ 주차장 용지(변경없음)

가구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5BL	5-8	용도	◦ 허용용도 : 노외주차장과 그 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 및 주차전용건축물 내 자동차 관련시설[주1)] ◦ 지상층 연면적의 70%이상을 주차시설로 지상층에 확보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600% 이하
		높이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준용
		배치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5BL 업무용지변 : 2m
8BL	8-6	용도	◦ 허용용도 : 노외주차장과 그 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 및 주차전용건축물 내 자동차 관련시설주1)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600% 이하
		높이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준용
		배치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8BL 상업용지변 : 3m

주1) 주차장 시설내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거 1·2종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시설을 30%미만으로 설치 할 수 있음

⑤ 미래형업무 용지(변경)

■ 기정

【3BL】

가구번호	위치(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3BL	3-2 3-3 3-4 3-5 3-6 3-7 3-8 3-9 3-10 3-11 3-12 3-13	용도	지정용도	◦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업무용도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상 입지
			권장용도	◦ 신성장동력산업 및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업무용도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방송통신시설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지상층 연면적의 40%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 운수시설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미래형 업무시설의 부대시설로 설치되며, 그 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될 경우 허용)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지정용도 외 일반상업지역내에서 입지 가능한 용도 중 불허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600% 이하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 연간 1차에너지 소비총량을 280kWh/㎡·y 이하로 계획하여야 하며, 권장용도 40% 수용시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 ※수용면적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적용
		높이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 구역 높이제한 적용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준용	
		배치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색채		–	

가구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3BL	3-2 3-3 3-4 3-5 3-6 3-7 3-8 3-9 3-10 3-11 3-12 3-13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송파대로변 : 14m - 대로 3-3호선변 : 5m - 단지내도로변 : 3m	
		지하 연결통로	◦광장(컬쳐밸리)와 8BL을 연계한 연결통로 조성하여 계획적이며 일체적인 지하공간 개발 도모(폭원6m이상) - 3-5, 3-6, 3-7BL 송파대로변 공개공지 지하 활용	

【4BL】

가구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4BL	4-4	용도	지정 용도	◦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업무용도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블록별 핵심(앵커)시설과 관련된 업무용도 (지상층 연면적의 2%이상 입지)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상 입지 (핵심시설 포함)
			권장 용도	◦ 신성장동력산업 및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업무 용도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방송통신시설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지상층 연면적의 40%
			불허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 안마시술소 - 운수시설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지상층 연면적 20%미만 가능)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미래형 업무시설의 부대시설로 설치되며, 그 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될 경우 허용)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지정용도 외 일반상업 지역내에서 입지 가능한 용도 중 불허용도
		건폐율		◦ 60% 이하	

가구번호	위치(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4BL	4-4	용적률	◦ 기준용적률 : 600% 이하	·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 연간 1차에너지 소비 총량을 280kWh/㎡•y 이하로 계획하여야 하며, 권장용도 40% 수용시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 ※수용면적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적용
		높이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 비행 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 (H≤1.5D)을 적용하지 않음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준용	
		배치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단지내도로변 : 2m	

【5BL】

가구번호	위치(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5BL	5-1 5-2 5-3 5-4 5-5 5-6 5-7 5-9 5-10	용도	지정용도	◦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업무용도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상 입지
			권장용도	◦ 신성장동력산업 및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업무용도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방송통신시설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 지상층 연면적의 40%

가구번호	위치(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5BL	5-1 5-2 5-3 5-4 5-5 5-6 5-7 5-9 5-10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 운수시설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지상층 연면적의 20%미만 가능)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미래형 업무시설의 부대시설로 설치되며, 그 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될 경우 허용)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지정용도 외 일반상업 지역내에서 입지 가능한 용도 중 불허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600% 이하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 연간 1차에너지 소비 총량을 280kWh/㎡•y 이하로 계획하여야 하며, 권장용도 40% 수용시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 ※수용면적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적용
		높이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 비행 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준용	
		배치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단지내도로변 : 2m	

【10BL】

가구번호	위치(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10BL	10-1 10-2 10-3 10-4 10-5 10-6 10-7	용도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 운수시설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지상층 연면적의 50%미만 가능)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미래형 업무시설의 부대시설로 설치되며, 그 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될 경우 허용)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지정용도 외 일반상업 지역내에서 입지 가능한 용도 중 불허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600% 이하	
		높이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 구역 높이제한 적용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준용	
		배치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단지내도로변 : 2m	

■ 변경

【3BL】

가구번호	위치(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3BL	3-2 3-3 3-4 3-5 3-6 3-7 3-8 3-9 3-10 3-11 3-12 3-13	용도	지정용도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업무용도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상 입지
			권장용도	◦ 신성장동력산업 및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업무용도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방송통신시설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지상층 연면적의 40%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 운수시설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미래형 업무시설의 부대시설로 설치되며, 그 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될 경우 허용)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지정용도 외 일반상업지역내에서 입지 가능한 용도 중 불허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600% 이하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 연간 1차에너지 소비 총량을 280kWh/㎡•y 이하로 계획하여야 하며, 권장용도 40% 수용시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 ※수용면적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적용
		높이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준용	
		배치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색채		–	

가구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3BL	3-2 3-3 3-4 3-5 3-6 3-7 3-8 3-9 3-10 3-11 3-12 3-13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송파대로변 : 14m - 대로 3-3호선변 : 5m - 단지내도로변 : 3m	
		지하 연결통로	◦ 광장(컬쳐밸리)와 8BL을 연계한 연결통로 조성하여 계획적이며 일체적인 지하공간 개발 도모(폭원6m이상) - 3-5, 3-6, 3-7BL 송파대로변 공개공지 지하 활용 ◦ 지하연결통로와 진출입구의 개방시간은 문정 지하철역의 운행시간을 고려하여 개방	
		공공보행 통로	◦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각각의 대지는 폭3m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조성(단 3-4, 3-5BL의 경우 폭2m이상으로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조성)	

【4BL】

가구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4BL	4-4	용도	지정 용도	◦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업무용도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블록별 핵심(앵커)시설과 관련된 업무용도(지상층 연면적의 2%이상 입지)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상 입지 (핵심시설 포함)
			권장 용도	◦신성장동력산업 및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업무용도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방송통신시설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지상층 연면적의 40%
			불허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 안마시술소 - 운수시설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지상층 연면적 20%미만 가능)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미래형 업무시설의 부대시설로 설치되며, 그 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될 경우 허용)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지정용도 외 일반상업 지역내에서 입지 가능한 용도 중 불허용도
		건폐율		◦60% 이하	

가구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4BL	4-4	용적률	◦ 기준용적률 : 600% 이하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 연간 1차에너지 소비 총량을 280kWh/㎡•y 이하로 계획하여야 하며, 권장용도 40% 수용시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 ※수용면적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적용
		높이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 비행 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준용	
		배치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단지내도로변 : 2m	
		공공보행통로	◦ 4-1BL과 4-4BL사이에 폭 4m의 공공보행통로 조성(각 2m)	

【5BL】

가구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5BL	5-1 5-2 5-3 5-4 5-5 5-6 5-7 5-9 5-10	용도	지정 용도	◦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업무용도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상 입지
			권장 용도	◦ 신성장동력산업 및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업무용도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방송통신시설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지상층 연면적의 40%

가구번호	위치(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5BL	5-1 5-2 5-3 5-4 5-5 5-6 5-7 5-9 5-10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 운수시설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지상층 연면적의 20%미만 가능)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미래형 업무시설의 부대시설로 설치되며, 그 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될 경우 허용)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지정용도 외 일반상업지역내에서 입지가능한 용도 중 불허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600% 이하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 연간 1차에너지 소비 총량을 280kWh/㎡•y 이하로 계획하여야 하며, 권장용도 40% 수용시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 ※수용면적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적용
		높이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 비행 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준용	
		배치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단지내도로변 : 2m	
		연결녹지와 블록간 연결통로		◦ 연결녹지와 블록간 연결통로로 지정된 대지는 연결녹지에서 보행자의 진입을 위해 폭1.2m이상의 통로로 조성	

【10BL】

가구번호	위치(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10BL	10-1 10-2 10-3 10-4 10-5 10-6 10-7	용도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 운수시설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지상층 연면적의 50%미만 가능)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미래형 업무시설의 부대시설로 설치되며, 그 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될 경우 허용)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지정용도 외 일반상업 지역내에서 입지 가능한 용도 중 불허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600% 이하	
		높이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 구역 높이제한 적용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준용	
		배치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단지내도로변 : 2m	
		연결녹지와 블록간 연결통로		◦ 연결녹지와 블록간 연결통로로 지정된 대지는 연결녹지에서 보행자의 진입을 위해 폭1.2m이상의 통로로 조성	

⑥ 상업 용지

■ 기정

가구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8BL	8-1 8-2 8-3 8-4 8-5	용도	◦ 불허용도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지상 1~3층에만 해당) - 운수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창고시설/발전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장례식장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600% 이하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 연간 1차에너지 소비 총량을 280kWh/㎡•y 이하로 계획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
		높이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적용 ◦「건축법」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주차장법 시행령」제3조의2 준용	
		배치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색채	-	
		건축선	◦ 송파대로변 14m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공개공지 조성
			◦ 대로3-3변 5m	
		지하 연결통로	◦ 광장(컬쳐밸리)와 3BL을 연계한 연결통로 조성하여 계획적이며 일체적인 지하공간 개발 도모(폭원6m이상) - 송파대로변 공개공지 지하 활용	

■ 변경

가구번호	위치(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8BL	8-1 8-2 8-3 8-4 8-5	용도	◦ 불허용도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지상 1~3층에만 해당) - 운수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창고시설/발전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장례식장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600% 이하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 연간 1차에너지 소비 총량을 280kWh/㎡•y 이하로 계획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
		높이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적용 ◦「건축법」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주차장법 시행령」제3조의2 준용	
		배치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색채	-	
		건축선	◦ 송파대로변 14m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공개공지 조성
			◦ 대로3-3변 5m	
		지하 연결통로	◦ 광장(컬쳐밸리)와 3BL을 연계한 연결통로 조성하여 계획적이며 일체적인 지하공간 개발 도모(폭원6m이상) - 송파대로변 공개공지 지하 활용 ◦ 지하연결통로와 진출입구의 개방시간은 문정 지하철역의 운행시간을 고려하여 개방	
		공공보행통로	◦ 8-3BL과 8-4BL사이에 폭 4m의 공공보행통로 조성(각 2m)	

7)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①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도변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① 공개공지 · 건축법 제43조에 의한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 · 대상 건축물 및 면적, 설치방식 등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서울시 건축조례」 제22조의 공개공지 등의 확보규정 준용 · 조성위치는 당해 대지와 도로중 가장 넓은 도로변 또는 당해도로 가각부, 보행결절점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타 시설물의 설치등 관련사항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② 대지내조경 · 대지내 조경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및 면적 등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20조에 따른다. · 대지내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 기준은 「서울시 건축조례」 제21조에 따른다.	

②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도변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① 차량출입불허구간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을 불허함. 다만, 법무시설은 비상시에 한하여 시설의 성격 상 필요한 비상차량 진출입을 허용 한다. ※ 법무시설 ; 법원, 검찰청, 구치소, 경찰기동대, 법무부 부속시설 ② 차량동선 · 단지 내부 및 진출입차량 동선은 최소 5m 이상의 회전반경 확보해야 함 ③ 주차장 · 노외주차장외 해당필지에서 지하주차를 권장하며, 지하주차장 조성시 선큰을 통한 자연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지상주차장 조성시 친환경적인 녹색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늘주차 방식으로 계획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다. · 기타 관련사항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③ 환경친화 등에 관한 계획

<table>
<tr><th>도변
번호</th><th>위치</th><th>계획내용</th><th>비고</th></tr>
<tr><td>–</td><td>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주차장 제외)</td><td>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기준(서울특별시 예규 제705호)」, 「국토해양부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6호)」 및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정도시개발구역” 내 모든 신축 공공·민간건축물은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기준’에 대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공건축물(신축, 증축, 개보수 포함)
– 건축물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 10% 이상
– 건축물 연간 1차 에너지소비총량 : 270kWh/㎡•y이하로 계획하여야하나 250kWh/㎡•y이하를 권장
· 민간건축물(신축, 증축, 개보수 포함)
– 건축물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 5% 이상
– 건축물 연간 1차 에너지소비총량
⇒ 특별계획구역 1, 3-1, 7BL : 250kWh/㎡•y이하
⇒ 특별계획구역 4-2, 4-3BL : 240kWh/㎡•y이하
⇒ 특별계획구역 2, 6BL : 280kWh/㎡•y이하로 계획하여야 하나 250kWh/㎡•y이하를 권장
⇒ 특별계획구역 외 필지 : 280kWh/㎡•y이하
※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법령·조례·지침 등의 제·개정으로 서로 다를 경우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② 인센티브
· ‘친환경건축기준’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의 달성 정도에 따라 서울특별시 친환경건축물 및 국토해양부의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을 부여하며, 그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공공건축물(신축, 증축, 개보수 포함)
<table>
<tr><th>구분</th><th>인센티브 내용</th></tr>
<tr><td rowspan="2">공공
건축물</td><td>·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시행에 의한 건물관리비용 절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예산절감실적으로 인정한다.</td></tr>
<tr><td>· 공공 건축물 건설 사업 추진시 친환경 설계 요소 적용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 대행 및 수수료 등을 사업 예산 책정시 반영 한다.</td></tr>
</table>
· 민간건축물(신축, 증축, 개보수 포함)
<table>
<tr><th>구분</th><th>인센티브 내용</th></tr>
<tr><td rowspan="6">민간
건축물</td><td>·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건축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td></tr>
<tr><td>·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시공사설계사에 대한 서울시 사업 참가시 가점 부여</td></tr>
<tr><td>·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td></tr>
<tr><td>·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일부 지원</td></tr>
<tr><td>·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표지 부착</td></tr>
<tr><td>· 그 밖에 민간부문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td></tr>
</table>
③ 기타 관련사항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td><td></td></tr>
</table>

④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관리계획

도변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미래형 업무단지	① 지정 및 권장용도(신성장동력산업) 관리계획(사업시행자 SH공사) · 업종배치 – 건물내 신성장동력산업을 층단위로 집중배치 (예 : 15층중 3개층) ※ 신성장동력산업의 세부 허용업종, 배치계획 등은 SH공사 내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문정지구 입지업종 선정위원회„ 를 통해 계획적으로 관리 · 입주관리 – SH공사내 산업분야 전문가로 (가칭) "문정지구 입지업종 선정위원회„ 를 구성하여 적합 업종 선별 입주 – 신성장동력산업 동의 건물관리자는 이용현황을 종합하여 분기별 1회이상 SH공사에 신고 – 사무실 이용의 변동시(임대 또는 매매) 입주(예정)기업은 계약체결후 10일 이내에 SH공사에 신고하고 확인 · 유지관리 – SH공사에서는 년 1회 이용실태 조사 및 변동상황 확인 ※ 지정 및 권장업종에 대한 현황신고 및 이에 대한 실태조사용역 실시 – 신성장동력 산업지대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5년간 집중관리	

※ 구체적인 개발행위(허가, 사용승인 등) 발생 시 승인(허가)권자 및 사업시행자(SH공사)의 협의를 받아야함.

⑤ 시설물 설치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시설물 설치	구분	시설물	설치기준	※공간확보 불가능 등으로 부득이 공공시설 내 설치할 경우 관련기관(부서)과 협의하여 지하에 매설식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한전 지상기기	변압기, 개폐기 등	· 지상기기는 사유지 내 설치하고, 도로 ·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내 설치 금지	
	지주형 시설물	가로등주, 한전주, 통신주, 신호등주, 안내표지판 등	· 지주형 시설물은 최대한 통합하고 단순화 · 기초는 부속물이 지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하여 설치	

8)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구분	명칭	면적(㎡)	위치	지정목적
기정	특별계획구역1-1	14,921.2	문정동 642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업무 용도의 체계적·계획적 입지를 유도하고, 문정역세권과 연계한 지하공간의 진취적이며 창의적인 개발을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기정	특별계획구역1-2	14,688.7	문정동 642-3	
기정	특별계획구역2	16,357.2	문정동 643-1	
기정	특별계획구역3	17,310.7	문정동 651	
기정	특별계획구역4	10,280.1	문정동 641-3 일원	
기정	특별계획구역6	17,665.4	문정동 644 일원	
기정	특별계획구역7	17,718.0	문정동 645 일원	

(2)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

- 구체적인 개발행위의 발생 시 사업시행자(SH공사)를 통해 세부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별도의 결정 과정을 거쳐 본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함.
- 특별계획구역내 세부개발계획 수립(변경)시 기반시설에 대한 변경(신설 포함)을 수반할 경우, 해당 시행자는 그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 변경을 수립해야 함.

② 특별계획구역 1(변경)

(1) 구역결정에 관한 계획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특별계획구역1-1	문정동 642	14,921.2	
특별계획구역1-2	문정동 642-3	14,688.7	

(2) 가구 및 획지조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명	가구 번호	획지계획		비고
			위치	면적(㎡)	
기정	특별계획구역1-1	1-1	문정동 642	14,921.2	
		1-2	문정동 642-3	14,688.7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용도	지정 용도	◦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업무용도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블록별 핵심(앵커)시설과 관련된 업무용도 ※ 핵심시설은 지상층 전용면적 기준으로 산정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상 입지(핵심시설 포함)
	권장 용도	◦ 신성장동력산업 및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업무 용도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방송통신시설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 지상층 연면적의 40%

구분		내용	비고
용도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안마시술소 – 운수시설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단, 미래형 업무시설의 부대시설로 설치되며, 그 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될 경우 허용)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지정용도 외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입지 가능한 용도 중 불허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600% 이하	·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 연간 1차에너지 소비 총량을 250kWh/㎡•y 이하로 계획하여야 하며, 권장용도 40% 수용시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 ※ 수용면적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적용
높이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 (H≤1.5D)을 적용하지 않음	

(4)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 등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 송파대로변 14m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공개공지 조성
	◦ 이면도로변 5m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 대지내 공지

- 기정

구분	내용	비고
공개공지	◦ 송파대로변으로 공개공지 지정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 14m	
공공보행통로	◦ 획지분할가능선에 의해 획지별로 개발 할 경우 각각의 대지는 폭 3m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인접대지와 공동 조성	
	◦ 획지1-1과 1-2를 연결하는 폭 4m이상의 남북간 공공보행통로 조성	

- 변경

구분	내용	비고
공개공지	◦ 송파대로변으로 공개공지 지정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 14m	
공공보행통로	◦ 획지분할가능선에 의해 획지별로 개발 할 경우 각각의 대지는 폭 3m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인접대지와 공동 조성	
	◦ 획지1-1과 1-2를 연결하는 폭 4m이상의 남북간 공공보행통로 조성	
지하연결통로	◦ 1-1BL~1-2BL~광장(컬쳐밸리)을 연계한 연결통로를 조성하여 계획적이며 일체적인 지하공간 개발 도모(폭원4m이상) ◦ 지하연결통로와 진출입구의 개방시간은 문정 지하철역의 운행시간을 고려하여 개방	

■ 교통처리계획

구분	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송파대로변에서 대지내 직접진출입 배제 ◦ 교통 흐름을 감안한 일부구간 차량출입불허	

■ 환경친화 등에 관한 계획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h>비고</th></tr>
<tr><td>친환경
건축기준</td><td>① 「서울특별시 친환경건축기준(서울특별시 예규 제705호)」 및 「국토해양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6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정도시개발구역” 내 모든 신축 민간건축물은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기준’에 대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건축물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 · 재생에너지 공급비율 : 5% 이상
· 건축물 연간 1차 에너지소비 총량 : 250kWh/㎡•y이하
※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법령 · 조례 · 지침 등의 제 · 개정으로 서로 다를 경우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② 인센티브
· ‘친환경건축기준’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의 달성 정도에 따라 서울특별시 친환경건축물 및 국토해양부의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을 부여하며, 그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table>
<tr><th>구분</th><th>인센티브 내용</th></tr>
<tr><td rowspan="6">민간
건축물</td><td>·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건축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td></tr>
<tr><td>·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시공사설계사에 대한 서울시 사업 참가시 가점 부여</td></tr>
<tr><td>·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td></tr>
<tr><td>·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일부 지원</td></tr>
<tr><td>·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표지 부착</td></tr>
<tr><td>· 그 밖에 민간부문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td></tr>
</table>
③기타 관련사항은 시행지침에 따른다.</td><td></td></tr>
</table>

■ 시설물 설치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시설물 설치	구분	시설물	설치기준	※공간확보 불가능 등으로 부득이 공공시설 내 설치할 경우 관련기관(부서)과 협의하여 지하에 매설식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한전 지상기기	변압기, 개폐기 등	· 지상기기는 사유지 내 설치하고, 도로 ·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내 설치 금지	
	지주형 시설물	가로등주, 한전주, 통신주, 신호등주, 안내표지판 등	· 지주형 시설물은 최대한 통합하고 단순화 · 기초는 부속물이 지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하여 설치	

③ 특별계획구역 2(변경없음)

(1) 구역결정에 관한 계획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특별계획구역2	문정동 643-1	16,357.2	-

(2) 가구 및 획지조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명	가구 번호	획지계획		비고
			위치	면적(㎡)	
기정	특별계획구역2	2	문정동 643-1	16,357.2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용도	지정 용도	◦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업무용도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블록별 핵심(앵커)시설과 관련된 업무용도(지상층 연면적의 2%이상 입지)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상 입지 (핵심시설 포함)
	권장 용도	◦ 신성장동력산업 및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업무용도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방송통신시설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지상층 연면적의 40%

구분		내용	비고
용도	불허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안마시술소 – 운수시설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지상층 연면적 30%미만 가능)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미래형 업무시설의 부대시설로 설치되며, 그 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될 경우 허용)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1호의 – 대형마트	· 지정용도 외 일반 상업지역 내에서 입지 가능한 용도 중 불허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600% 이하	· 권장용도 40% 수용 및 건축물 연간 1차 에너지 소비 총량을 250kWh/㎡•y 이하로 계획시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 ※수용면적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적용
높이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 (H≤1.5D)을 적용하지 않음	

(4)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 등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이면도로변 5m	–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교통처리계획

구분	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교통 흐름을 감안한 일부구간 차량출입불허	
지하연결 통로	◦ 광장(컬쳐밸리)를 연계한 연결통로 조성하여 계획적이며 일체적인 지하공간 개발 도모	

■ 환경친화 등에 관한 계획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h>비고</th></tr>
<tr><td>친
환경
건축
기준</td><td>
① 「서울특별시 친환경건축기준(서울특별시 예규 제705호)」 및 「국토해양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6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정도시개발구역” 내 모든 신축 민간건축물은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기준’에 대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건축물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 · 재생에너지 공급비율 : 5% 이상(신 · 재생에너지 공급비율 5%중 30%이상을 BIPV시스템 도입)
– 태양광 에너지 생산설비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인증한 에너지원을 사용
· 건축물 연간 1차 에너지소비 총량 : 280kWh/㎡•y이하로 계획 하여야 하나
250kWh/㎡•y이하를 권장
※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법령 · 조례 · 지침 등의 제 · 개정으로 서로 다를 경우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② 인센티브
· ‘친환경건축기준’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의 달성 정도에 따라 서울특별시 친환경건축물 및 국토해양부의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을 부여하며, 그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table>
<tr><th>구분</th><th>인센티브 내용</th></tr>
<tr><td rowspan="6">민간
건축물</td><td>·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건축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td></tr>
<tr><td>·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시공사설계사에 대한 서울시 사업 참가시 가점 부여</td></tr>
<tr><td>·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td></tr>
<tr><td>·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일부 지원</td></tr>
<tr><td>·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표지 부착</td></tr>
<tr><td>· 그 밖에 민간부문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td></tr>
</table>
③기타 관련사항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td><td></td></tr>
</table>

■ 시설물 설치에 관한 계획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내용</th><th>비고</th></tr>
<tr><td rowspan="3">시설물
설치</td><td>구분</td><td>시설물</td><td>설치기준</td><td rowspan="3">※공간확보 불가능 등으로 부득이 공공시설 내 설치할 경우 관련기관(부서)과 협의하여 지하에 매설식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td></tr>
<tr><td>한전
지상기기</td><td>변압기, 개폐기 등</td><td>· 지상기기는 사유지 내 설치하고, 도로 ·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내 설치 금지</td></tr>
<tr><td>지주형
시설물</td><td>가로등주, 한전주, 통신주, 신호등주, 안내표지판 등</td><td>· 지주형 시설물은 최대한 통합하고 단순화
· 기초는 부속물이 지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하여 설치</td></tr>
</table>

④ 특별계획구역 3(변경)

(1) 구역결정에 관한 계획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특별계획구역3	문정동 651	17,310.7	

(2) 가구 및 획지조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명	가구 번호	획지계획		비고
			위치	면적(㎡)	
기정	특별계획구역3	3-1	문정동 651	17,310.7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용도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안마시술소 - 운수시설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미래형 업무시설의 부대시설로 설치되며, 그 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될 경우 허용)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일반상업지역내에서 입지 가능한 용도 중 불허용도

구분	내용	비고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600% 이하	·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 연간 1차에너지 소비 총량을 250kWh/㎡•y 이하로 계획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
높이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4)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 등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송파대로변 14m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공개공지 조성
	이면도로변 5m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 대지내 공지

구분	내용	비고
공개공지	◦ 송파대로변으로 공개공지 지정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 14m	
공공보행통로	◦ 남북방향 연계를 위해 폭 6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	

■ 교통처리계획(변경)

– 기정

구분	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 송파대로변에서 대지내 직접진출입 배제 ◦ 교통 흐름을 감안한 일부구간 차량출입불허	
지하연결통로	◦ 광장(컬쳐밸리)와 8BL을 연계한 연결통로 조성하여 계획적이며 일체적인 지하공간 개발 도모(폭원6m이상) – 송파대로변 공개공지 지하 활용 ◦ 컬처밸리 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2BL과 연계되는 지하연결통로 조성	

- 변경

구분	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 송파대로변에서 대지내 직접진출입 배제 ◦ 교통 흐름을 감안한 일부구간 차량출입불허	
지하연결통로	◦ 광장(컬쳐밸리)와 8BL을 연계한 연결통로 조성하여 계획적이며 일체적인 지하공간 개발 도모(폭원6m이상) ◦ 컬처밸리 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2BL과 연계되는 지하연결통로 조성 ◦ 지하연결통로와 진출입구의 개방시간은 문정 지하철역의 운행시간을 고려하여 개방	

■ 환경친화 등에 관한 계획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h>비고</th></tr>
<tr><td>친환경
건축기준</td><td>①「서울특별시 친환경건축기준(서울특별시 예규 제705호)」 및 「국토해양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6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정도시개발구역” 내 모든 신축 민간건축물은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기준’에 대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건축물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 · 재생에너지 공급비율 : 5% 이상
· 건축물 연간 1차 에너지소비 총량 : 250kWh/㎡•y이하
※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법령 · 조례 · 지침 등의 제 · 개정으로 서로 다를 경우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② 인센티브
· ‘친환경건축기준’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의 달성 정도에 따라 서울특별시 친환경건축물 및 국토해양부의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을 부여하며, 그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table>
<tr><th>구분</th><th>인센티브 내용</th></tr>
<tr><td rowspan="6">민간
건축물</td><td>·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건축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td></tr>
<tr><td>·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시공사·설계사에 대한 서울시 사업 참가시 가점 부여</td></tr>
<tr><td>·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td></tr>
<tr><td>·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일부 지원</td></tr>
<tr><td>·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표지 부착</td></tr>
<tr><td>· 그 밖에 민간부문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td></tr>
</table>
③기타 관련사항은 시행지침에 따른다.</td><td></td></tr>
</table>

■ 시설물 설치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시설물 설치	구분	시설물	설치기준	※공간확보 불가능 등으로 부득이 공공시설 내 설치할 경우 관련기관(부서)과 협의하여 지하에 매설식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한전 지상기기	변압기, 개폐기 등	· 지상기기는 사유지 내 설치하고,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내 설치 금지	
	지주형 시설물	가로등주, 한전주, 통신주, 신호등주, 안내표지판 등	· 지주형 시설물은 최대한 통합하고 단순화 · 기초는 부속물이 지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하여 설치	

⑤ 특별계획구역 4(변경없음)

(1) 구역결정에 관한 계획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특별계획구역4	문정동 641-3 일원	10,280.1	-	10,280.1	

(2) 가구 및 획지조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명	가구 번호	획지계획		비고
			위치	면적(㎡)	
기정	특별계획구역4	4-2	문정동 641-3	3,780.3	
		4-3	문정동 641-4	6,499.8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용도	지정 용도	◦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업무용도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획지별 지상층 연면적의 30%이상(핵심시설 포함)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상 입지 (핵심시설 포함)
	권장 용도	◦ 신성장동력산업 및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업무용도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방송통신시설 ◦ 획지별 지상층 연면적의 40%이상(핵심시설 포함)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 지상층 연면적의 40%

구분		내용	비고
용도	불허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안마시술소 – 운수시설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지상층 연면적 20%미만 가능)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1등급 이상, 300실 이상 제외) – 위락시설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미래형 업무시설의 부대시설로 설치되며, 그 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될 경우 허용)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지정용도 외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입지 가능한 용도 중 불허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600% 이하	·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 연간 1차에너지 소비총량을 240kWh/㎡·y 이하로 계획하여야 하며, 권장용도 40% 수용시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 ※수용면적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적용
높이		◦비행안전구역 높이제안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건축물 높이계획 수립 ◦건축물 최고 높이 – 4-2획지 : 69m 이하 – 4-3획지 : 67m 이하	

(4)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 등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이면도로변 2m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대지내 공지

구분	내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 획지분할가능선에 의해 획지별로 개발 할 경우 각각의 대지는 폭 3m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인접대지와 공동 조성	

■ 교통처리계획

구분	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교통 흐름을 감안한 일부구간 차량출입불허	

■ 환경친화 등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친환경 건축기준	①「서울특별시 친환경건축기준(서울특별시 예규 제705호)」 및 「국토해양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6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준수 · 건축물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 · 재생에너지 공급비율 : 5% 이상(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5%중 35%이상을 PV시스템 도입) -태양광 에너지 생산설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한 에너지원을 사용 · 건축물 연간 1차 에너지소비 총량 : 240kWh/㎡•y이하 ※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법령 · 조례 · 지침 등의 제 · 개정으로 서로 다를 경우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② 기타 관련사항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 시설물 설치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시설물 설치	구분	시설물	설치기준	※공간확보 불가능 등으로 부득이 공공시설 내 설치할 경우 관련기관(부서)과 협의하여 지하에 매설식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한전 지상기기	변압기, 개폐기 등	· 지상기기는 사유지 내 설치하고, 도로 ·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내 설치 금지	
	지주형 시설물	가로등주, 한전주, 통신주, 신호등주, 안내표지판 등	· 지주형 시설물은 최대한 통합하고 단순화 · 기초는 부속물이 지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하여 설치	

⑥ 특별계획구역 6(변경)

(1) 구역결정에 관한 계획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특별계획구역6	문정동 644 일원	17,665.4	-

(2) 가구 및 획지조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명	가구 번호	획지계획		비고
			위치	면적(㎡)	
기정	특별계획구역6	6-1	문정동 644	9,045.4	
		6-2	문정동 644-2	8,620.0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용도	지정 용도	◦ 신선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업무용도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블록별 핵심(앵커)시설과 관련된 업무용도 (지상층 연면적의 2%이상 입지) ◦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상 입지(핵심시설 포함)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권장 용도	◦ 신성장동력산업 및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업무용도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방송통신시설 ◦ 지상층 연면적의 40%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구분		내용	비고
용도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안마시술소 – 운수시설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지상층 연면적 50%미만 가능)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미래형 업무시설의 부대시설로 설치되며, 그 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될 경우 허용)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지정용도 외 일반상업지역내에서 입지 가능한 용도 중 불허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600% 이하 ◦ 권장용도 40% 수용 및 건축물 연간 1차에너지 소비 총량을 250kWh/㎡•y 이하로 계획시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 ※ 수용면적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적용	
높이		◦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층고를 최대한 확보하여 건축물 높이계획을 수립 ◦ 건축물 최고높이 66m 이하	해발고도 86m 이하

(4)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 등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건축지정선	◦ 광장(컬쳐밸리)에 연접한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 북측도로(대로3-4)변 2m ◦ 동측도로(대로3-3)변 5m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 대지내 공지

구분	내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 획지분할가능선에 의해 획지별로 개발 할 경우 각각의 대지는 폭 3m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인접대지와 공동 조성	

■ 교통처리계획(변경)

- 기정

구분	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교통 흐름을 감안한 일부구간 차량출입불허	

- 변경

구분	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 교통 흐름을 감안한 일부구간 차량출입불허	
지하연결통로	◦ 광장(컬쳐밸리)와 연계한 연결통로를 조성하여 계획적이며 일체적인 지하공간 개발 도모(폭원47m이하) ◦ 지하연결통로와 진출입구의 개방시간은 문정 지하철역의 운행시간을 고려하여 개방	

■ 환경친화 등에 관한 계획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h>비고</th></tr>
<tr><td>친환경건축기준</td><td>
① 「서울특별시 친환경건축기준(서울특별시 예규 제705호)」 및 「국토해양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6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정도시개발구역” 내 모든 신축 민간건축물은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기준’에 대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건축물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 · 재생에너지 공급비율 : 5% 이상(신 · 재생에너지 공급비율 5%중 30%이상을 BIPV시스템 도입)
– 태양광 에너지 생산설비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인증한 에너지원을 사용
· 건축물 연간 1차 에너지소비 총량 : 280kWh/㎡•y이하로 하여야 하나 250kWh/㎡•y 이하를 권장
※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법령 · 조례 · 지침 등의 제 · 개정으로 서로 다를 경우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② 인센티브
· ‘친환경건축기준’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의 달성 정도에 따라 서울특별시 친환경건축물 및 국토해양부의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을 부여하며, 그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table>
<tr><th>구분</th><th>인센티브 내용</th></tr>
<tr><td rowspan="6">민간 건축물</td><td>·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건축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td></tr>
<tr><td>·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시공사설계사에 대한 서울시 사업 참가시 가점 부여</td></tr>
<tr><td>· 용적률 인센티브 5%지원</td></tr>
<tr><td>·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일부 지원</td></tr>
<tr><td>·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표지 부착</td></tr>
<tr><td>· 그 밖에 민간부문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td></tr>
</table>
③기타 관련사항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td><td></td></tr>
</table>

■ 시설물 설치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시설물 설치	구분	시설물	설치기준	※공간확보 불가능 등으로 부득이 공공시설 내 설치할 경우 관련기관(부서)과 협의하여 지하에 매설식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한전 지상기기	변압기, 개폐기 등	· 지상기기는 사유지 내 설치하고,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내 설치 금지	
	지주형 시설물	가로등주, 한전주, 통신주, 신호등주, 안내표지판 등	· 지주형 시설물은 최대한 통합하고 단순화 · 기초는 부속물이 지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하여 설치	

⑦ 특별계획구역 7(변경없음)

(1) 구역결정에 관한 계획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특별계획구역7	문정동 645일원	17,718.0	-

(2) 가구 및 획지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구역명	가구 번호	획지계획		비고
			위치	면적(㎡)	
기정	특별계획구역7	7-1	문정동 645	8,801.2	
		7-2	문정동 645-2	8,916.8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용도	지정 용도	◦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업무용도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블록별 핵심(앵커)시설과 관련된 업무용도 (지상층 연면적의 2%이상 입지)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상 입지(핵심시설 포함)
	권장 용도	◦ 신성장동력산업 및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업무용도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방송통신시설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 지상층 연면적의 40%

구분		내용	비고
용도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안마시술소 – 운수시설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지상층 연면적 50%미만 가능)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미래형 업무시설의 부대시설로 설치되며, 그 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될 경우 허용)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지정용도 외 일반상업지역내에서 입지 가능한 용도 중 불허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600% 이하	·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 연간 1차 에너지 소비 총량을 250kWh/㎡•y 이하로 계획하여야 하며, 권장용도 40% 수용시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 ※수용면적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적용
높이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4)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 등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건축지정선	연결녹지에 연접한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그 외 도로변 2m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대지내 공지

구분	내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 획지분할가능선에 의해 획지별로 개발 할 경우 각각의 대지는 폭 3m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인접대지와 공동 조성	

■ 교통처리계획

구분	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 교통 흐름을 감안한 일부구간 차량출입불허	

■ 환경친화 등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친환경 건축기준	① 「서울특별시 친환경건축기준(서울특별시 예규 제705호)」 및 「국토해양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6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정도시개발구역" 내 모든 신축 민간건축물은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기준'에 대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건축물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 · 재생에너지 공급비율 : 5% 이상 · 건축물 연간 1차 에너지소비 총량 : 250kWh/㎡•y이하 ※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법령 · 조례 · 지침 등의 제 · 개정으로 서로 다를 경우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② 인센티브 · '친환경건축기준'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의 달성 정도에 따라 서울특별시 친환경건축물 및 국토해양부의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을 부여하며, 그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구분	인센티브 내용
민간 건축물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건축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시공사설계사에 대한 서울시 사업 참가시 가점 부여
	·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
	·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일부 지원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표지 부착
	· 그 밖에 민간부문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

③기타 관련사항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 시설물 설치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시설물 설치	구분	시설물	설치기준	※공간확보 불가능 등으로 부득이 공공시설 내 설치할 경우 관련기관(부서)과 협의하여 지하에 매설식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한전 지상기기	변압기, 개폐기 등	· 지상기기는 사유지 내 설치하고, 도로 ·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내 설치 금지	
	지주형 시설물	가로등주, 한전주, 통신주, 신호등주, 안내표지판 등	· 지주형 시설물은 최대한 통합하고 단순화 · 기초는 부속물이 지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하여 설치	

※ 별첨) 문정지구 내 유치산업 업종분류표(변경없음)

1) 신성장동력산업

신성장 동력산업	산업분류	내용	지정(CORE) (30%)	권장용도 (40%)
IT 융합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J60	방송업		○
	J612	전기통신업	○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J63	정보서비스업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바이오메디컬 산업	C201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C16229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	
	C212	의약품 제조업	○	
	M731	수의업	○	
		고부가 식품업	○	○
		글로벌헬스케어(의료관광)	○	○
녹색 산업	E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E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그린카, LED, 신재생에너지	○	○
		고도물처리	○	○
		첨단그린도시융합산업	○	○
비즈니스 & 연구	M70	연구개발업	○	
	M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	
	M71531	경영컨설팅업	○	
	M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M713	광고업	○	
	M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	
	M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M739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P8565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
	M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콘텐츠 산업	J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	
	J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	
	J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J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금융업	K64	금융업		○
	K661	금융지원 서비스업	○	
	K65	보험 및 연금업		○
MICE 관광 산업	L69	임대업;부동산 제외		○
	N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	○	
		컨퍼런스(회의장), 컨벤션(집회장)	○	
디자인 & 패션산업	M732	전문디자인업	○	
	C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331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	
지역특화산업	G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
	F	건설업		○

※ 지정 및 권장용도 구분 및 세부업종 적합여부는 SH공사 내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문정지구 입지업종 선정위원회„ 를 통해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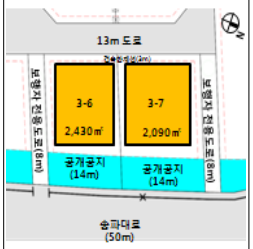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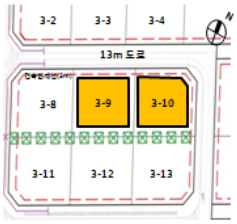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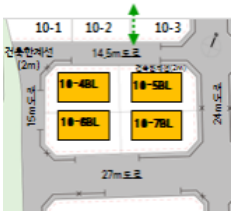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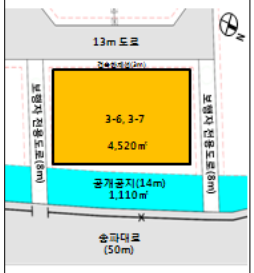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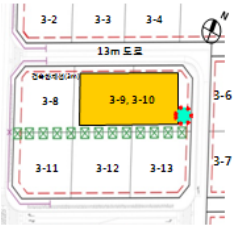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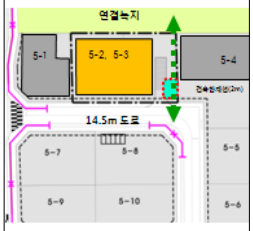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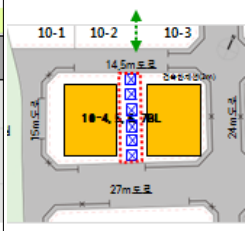
2) 블록별 핵심(앵커)시설

특성화기능		지정용도
산업 교육센타	· 직장인 교육, 산업 주제별 교육, 창업교육 등 교육전용 공간을 통해 산업간 교류 및 가치창출 · 미래산업 지향의 상설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교육 관련 대실 공간도 실비로 제공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R&D 허브센타	· 중소기업간 협동 R&D센타로서 각 산업 분야간 교류, 융합이 가능한 공동의 센터, 집단화 · 산업혁신 지원 R&D분야의 교류 관련 산업협회와 연계하고, 비즈니스 컨설팅 등이 결합되도록 함 · 지경부 등의 공공혁신지원센타 등이 결합하고, 지식산업허브로서 특성화, 중심화를 강화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도서관 – 업무시설중 사무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
국제 회의장	· 국제회의가 가능한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상설 대형 회의장, 세미나장의 확보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전시장
산업 컨벤션	· 산업교류, 기술 세미나, 전시 행사, 이벤트 등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이 필요하며, 산업전시, 박람회, 과학관, 산업컨벤션, 문화컨벤션 등이 가능한 멀티 컨벤션 공간 제공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전시장
스마트 시티 관련 업무시설	· 전국 및 경기 동남권 서울 동남 출장소로서 업체간 교류를 위해 기업의 비상근 공동 근무 시스템 · 주 근무처가 수도권에서 멀거나 지방인 경우 때때로 서울에서 원격근무가 가능토록하며, 기업간 교류를 위한 공동근무(합사)가 가능하고, 산업간 융합을 위한 공동근무체계를 마련함 · 동남권 신산업허브로서 문정업무지구의 세미나 또는 미팅이 있는 경우 임시 근무처 기능 등 활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도서관 – 업무시설중 사무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

※ 자율적으로 5개 앵커시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면적 2% 범위 내에서 조성

붙임 : 공동개발(권장)시 공공기여방안(예시)안(변경없음)

▪ 위원회 결과 : 공동개발(권장)시 공공기여는 향후 건축계획 수립시 위치 등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

구분	3-6, 3-7BL	3-9, 3-10BL	5-2, 5-3BL	10-4, 10-5, 10-6, 10-7BL
기정				
변경 (예시안)				
공공기여 방안	• 송파대로변 전면부 공개공지(14m) 확보 – 법적기준 : 450㎡ – 지정면적 : 1,110㎡ (2.5배)	• 공개공지 기준면적 이외 45㎡이상 추가확보 – 당초 : 220㎡ (대지면적의 7%) – 변경 : 265㎡(추가확보)	• 공개공지 기준면적 이외 45㎡이상 추가확보 및 연결통로 조성 – 당초 : 0㎡ (지식산업센터) – 변경 : 45㎡(추가확보)	• 공공보행통로 4m 확보 • 공개공지 법적기준 초과 설치 – 당초 : 379㎡ (대지면적의 7%) – 변경 : 529㎡ (대지면적의 10%)

	공공보행통로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표시
	공공보행통로(공동개발 권장)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표시
	공개공지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표시가 아닌 예시안 임

■ 별첨 도면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3,000)

8.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변경)

가. 국공유지 무상양여 현황(변경없음)

1)총괄표(변경없음)

구분			계	전	도	구	잡	천
합계		필지수	59	12	13	18	13	3
		면적(㎡)	97,553	4,761	3,952	7,692	79,394	1,754
국유지	소계	필지수	2	–	2	–	–	–
		면적(㎡)	534	–	534	–	–	–
	국토해양부	필지수	2	–	2	–	–	–
		면적(㎡)	534	–	534	–	–	–
공유지	소계	필지수	57	12	11	18	13	3
		면적(㎡)	97,019	4,761	3,418	7,692	79,394	1,754
	서울시	필지수	42	10	4	14	13	1
		면적(㎡)	90,290	3,626	835	6,109	79,394	326
	송파구	필지수	15	2	7	4	–	2
		면적(㎡)	6,729	1,135	2,583	1,583	–	1,428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변경없음)

1) 무상귀속분 총괄표 (공공시설 및 사업시행자소유)

구분			계	전	도	구	잡	천
합계		필지수	44	10	9	14	8	3
		면적(㎡)	12,122	1,135	1,312	3,709	5,091	875
국유지	소계	필지수	2	–	2	–	–	–
		면적(㎡)	87	–	87	–	–	–
	국토해양부	필지수	2	–	2	–	–	–
		면적(㎡)	87	–	87	–	–	–
공유지	소계	필지수	42	10	7	14	8	3
		면적(㎡)	12,035	1,135	1,225	3,709	5,091	875
	서울시	필지수	32	10	2	11	8	1
		면적(㎡)	10,409	1,135	364	3,493	5,091	326
	송파구	필지수	10	–	5	3	–	2
		면적(㎡)	1,626	–	861	216	–	549

2) 유상귀속분 총괄표 (공공시설 외)

구분			계	전	도	구	잡	천
합계		필지수	54	12	10	18	12	2
		면적(㎡)	85,431	3,626	2,640	3,983	74,303	879
국유지	소계	필지수	1	–	1	–	–	–
		면적(㎡)	447	–	447	–	–	–
	국토해양부	필지수	1	–	1	–	–	–
		면적(㎡)	447	–	447	–	–	–
공유지	소계	필지수	53	12	9	18	12	2
		면적(㎡)	84,984	3,626	2,193	3,983	74,303	879
	서울시	필지수	39	10	3	14	12	–
		면적(㎡)	79,881	2,491	471	2,616	74,303	–
	송파구	필지수	14	2	6	4	–	2
		면적(㎡)	5,103	1,135	1,722	1,367	–	879

3) 소관청별 토지조서(변경없음)

■ 국유지 : 국토해양부(변경없음)

① 송파구 재무과 / 시설관리과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관리청	실제이용현황(㎡)		측량결과	비고
		동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공공시설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외 (유상귀속분)		
1	기정	문정동	381-1	도	521	521	송파구 시설관리과	74	447	도:74 전:447	
2	기정	문정동	381-7	도	297	13	송파구 시설관리과	13	-		
합계					818	534		87	447		

■ 시유지 : 서울특별시(변경없음)

① 서울시 도로행정 담당관 (도로재산팀)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관리청	실제이용현황(㎡)		측량결과	비고
		동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공공시설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외 (유상귀속분)		
1	기정	문정동	119-4	도	17,983	62	서울시 도로행정 담당관	62	-		
2	기정	문정동	379-2	도	651	651	서울시 도로행정 담당관	302	349	도:302 전:349	
3	기정	문정동	426-4	도	73	70	서울시 도로행정 담당관	-	70	전:70	
4	기정	문정동	475	도	54	52	서울시 도로행정 담당관	-	52	전:52	
합계					18,761	835		364	471		

② 서울시 하천관리과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관리청	실제이용현황(㎡)		측량결과	비고
		동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공공시설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외 (유상귀속분)		
1	기정	문정동	150-16	천	326	326	서울시 하천관리과	326	-		
2	기정	문정동	191-5	구	502	502	서울시 하천관리과	169	333	도:169 전:333	
3	기정	문정동	205-4	구	254	254	서울시 하천관리과	81	173	도:81 전:173	
4	기정	문정동	205-5	구	301	301	서울시 하천관리과	234	67	도:234 전:67	
5	기정	문정동	206-5	구	113	113	서울시 하천관리과	52	61	도:52 전:61	
6	기정	문정동	206-6	구	169	169	서울시 하천관리과	88	81	도:88 전:81	
7	기정	문정동	207-3	구	125	125	서울시 하천관리과	104	21	도:104 전:21	
8	기정	문정동	207-4	전	161	161	서울시 하천관리과	107	54	도:107 전:54	
9	기정	문정동	208-1	전	64	64	서울시 하천관리과	34	30	도:34 전:30	
10	기정	문정동	210-4	전	867	867	서울시 하천관리과	553	314	도:553 전:314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관리청	실제이용현황(㎡)		측량결과	비고
		동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공공시설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외 (유상귀속분)		
11	기정	문정동	210-6	구	24	24	서울시 하천관리과	-	24	전:24	
12	기정	문정동	210-7	전	87	87	서울시 하천관리과	10	77	도:10 전:77	
13	기정	문정동	217-1	구	80	80	서울시 하천관리과	14	66	도:14 전:66	
14	기정	문정동	221-2	구	1,067	1,067	서울시 하천관리과	806	261	도:806 전:261	
15	기정	문정동	221-4	구	9	9	서울시 하천관리과	-	9	전:9	
16	기정	문정동	222-4	구	156	156	서울시 하천관리과	-	156	전:156	
17	기정	문정동	223-4	구	1,499	1,499	서울시 하천관리과	841	658	도:841 전:658	
18	기정	문정동	341-2	구	78	78	서울시 하천관리과	38	40	구:38 전:40	
19	기정	문정동	368-2	구	1,732	1,732	서울시 하천관리과	1,066	666	구:1,066 전:666	
20	기정	문정동	463	잡	399	399	서울시 하천관리과	-	399	전:399	
21	기정	문정동	466	잡	840	840	서울시 하천관리과	-	840	전:840	
22	기정	문정동	468	잡	6	6	서울시 하천관리과	-	6	전:6	
23	기정	문정동	485	전	580	580	서울시 하천관리과	61	519	도:61 전:519	
24	기정	문정동	488	전	21	21	서울시 하천관리과	4	17	도:4 전:17	
25	기정	문정동	490	전	784	784	서울시 하천관리과	62	722	도:62 전:722	
26	기정	문정동	499	잡	527	527	서울시 하천관리과	106	421	도:106 전:421	
27	기정	문정동	504	전	302	302	서울시 하천관리과	79	223	도:79 전:223	
28	기정	문정동	507	전	346	346	서울시 하천관리과	86	260	도:86 전:260	
29	기정	문정동	510	전	414	414	서울시 하천관리과	139	275	도:139 전:275	
합계					11,833	11,833		5,060	6,773		

③ 서울시 재무과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관리청	실제이용현황(㎡)		측량결과	비고
		동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공공시설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외 (유상귀속분)		
1	기정	문정동	191-6	잡	6,657	6,657	서울시 재무과	1,576	5,081	도:592 구:984 전:5,081	
2	기정	문정동	191-8	잡	3,679	3,679	서울시 재무과	-	3,679	전:3,679	
3	기정	문정동	368-4	잡	1,081	1,081	서울시 재무과	110	971	구:110 전:971	
4	기정	문정동	379-1	잡	20,333	20,117	서울시 재무과	413	19,704	도:413 전:9,773 잡:9,931	
5	기정	문정동	379-6	잡	2,466	8	서울시 재무과	-	8		
6	기정	문정동	418	잡	5,175	3,115	서울시 재무과	-	3,115	잡:3,115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관리청	실제이용현황(㎡)		측량결과	비고
		동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공공시설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외 (유상귀속분)		
7	기정	문정동	493	잡	17,177	17,177	서울시 재무과	1,389	15,788	도:1,389 전:9,171 잡:6,617	
8	기정	문정동	512	잡	14,430	14,430	서울시 재무과	238	14,192	도:238 전:14,192	
9	기정	문정동	513	잡	11,358	11,358	서울시 재무과	1,259	10,099	도:1,259 전:10,099	
합계					82,356	77,622		4,985	72,637		

■ 구유지 : 송파구(변경없음)

① 송파구 재무과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관리청	실제이용현황(㎡)		측량결과	비고
	동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공공시설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외 (유상귀속분)		
1	문정동	130-12	구	260	260	송파구 재무과	33	227	도:33 전:11 학원:216	
2	문정동	186-2	천	423	423	송파구 재무과	27	396	도:27 전:396	
3	문정동	191-3	구	499	499	송파구 재무과	110	389	도:72 구:38 전:389	
4	문정동	191-9	천	1,005	1,005	송파구 재무과	522	483	도:76 구:446 전:483	
5	문정동	191-10	전	1,053	1,053	송파구 재무과	-	1,053	전:1,053	
6	문정동	191-11	도	66	66	송파구 재무과	66	-	도:66	
7	문정동	191-12	도	1,074	1,074	송파구 재무과	176	898	도:59 구:117 전:898	
8	문정동	250-7	전	82	82	송파구 재무과	-	82	전:82	
9	문정동	317-1	도	393	393	송파구 재무과	8	385	도:8 전:385	
10	문정동	327-1	도	207	207	송파구 재무과	-	207	전:207	
11	문정동	341-1	구	660	660	송파구 재무과	73	587	도:67 구:6 전:587	
12	문정동	341-3	구	164	164	송파구 재무과	-	164	전:164	
13	문정동	358-1	도	182	182	송파구 재무과	-	182	전:182	
14	문정동	368-1	도	562	562	송파구 재무과	526	36	도:432 구:94 전:36	
15	문정동	368-3	도	99	99	송파구 재무과	85	14	도:85 전:14	
합계				6,729	6,729		1,626	5,103		

■ 지방자치단체 귀속분(변경)

① 도로(변경)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22	15,839	107,792.7	6	3,509	29,854.0	9	9,719	31,671.3	7	2,611	46,267.4
	변경	22	15,829	111,495.6	6	3,504	33,717.0	9	9,719	31,671.3	7	2,606	46,107.3
광로	기정	2	8,715	3,706.1	-	-	-	1	8,000	2,382.8	1	715	1,323.3
대로	기정	4	3,947	46,129.7	2	2,775	11,625.6	-	-	-	2	1,172	34,504.1
	변경	4	3,942	49,983.6	2	2,775	15,639.6	-	-	-	2	1,167	34,344.0
중로	기정	13	3,053	56,927.4	3	724	18,109.2	6	1,605	28,378.2	4	724	10,440.0
	변경	13	3,048	56,776.4	3	719	17,958.2	6	1,605	28,378.2	4	724	10,440.0
소로	기정	3	124	1,029.5	1	10	119.2	2	114	910.3	-	-	-

② 광장(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광장	근린 광장	문정동 643일원	18,772.3	-	18,772.3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 5.28)	중복결정 (도로 1,718㎡) 확정측량 결과반영

③ 공원(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근린 공원	문정동 653	36,638.3	-	36,638.3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 5.28)	
변경	②	공원	근린 공원	문정동 638	21,346.8	감)490.6	20,856.2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 5.28)	5,398.5㎡ : 유수지와 도시계획 시설 중복 결정

④ 녹지(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⑤	녹지	연결녹지	문정동 642-1	7,120.7	감) 984.8	6,135.9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⑥	녹지	연결녹지	문정동 640-1	11,615.9	감) 1,630.2	9,985.7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⑦	녹지	연결녹지	문정동 639-1	4,339.5	감) 597.3	3,742.2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기정	①	녹지	완충녹지	문정동 647-1	877.4	-	877.4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기정	②	녹지	완충녹지	문정동 648-1	2,631.0	-	2,631.0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기정	③	녹지	완충녹지	문정동 654-2	941.6	-	941.6	서울시고시 제2014-104호 ('14.03.20)	
기정	①	녹지	연결녹지	문정동 640-2	4,944.8	-	4,944.8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기정	②	녹지	연결녹지	문정동 644-1	5,115.7	-	5,115.7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기정	③	녹지	연결녹지	문정동 647-2	9,283.7	-	9,283.7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기정	④	녹지	연결녹지	문정동 650-1	7,492.9	-	7,492.9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기정	⑧	녹지	연결녹지	문정동 647-4	3,867.4	-	3,867.4	서울시고시 제2014-104호 ('14.03.20)	

9.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 02)2133-4641)
  - 송파구청 도시전략과 (☎ 02)2147-2171)
  -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 (☎ 02)3410-7594)

※ SH공사로 명기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로 갈음함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81호

신정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02호(2012.11.08)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2호(2014.06.26)로 개발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된 신정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도시개발사업의 개요

1. 도시개발구역 및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신정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71-61번지 일대
   - 면적 : 33,844㎡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노후주택 및 영세공장이 밀집된 신정 지역은 다년간 미개발지로 남아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도시미관 및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임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기 정	·시행자 :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이종수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강남구 개포동 14-5)
변 경	·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신범수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강남구 개포동 14-5)

■ 변경사유 : 시행자 사명 및 대표 변경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사업시행방식
   - 시행기간 (변경)

구 분	시행기간
기 정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2017.12월 예정)
변 경	실시계획인가일(2014.06.26.)~환지처분일(2019.12.31)

■ 변경사유 : 선행공종(토지소유자 공동주택사업 등) 지연에 따른 후속사업절차 이행 순연

- 사업 시행방식 : 환지방식(집단환지) (변경없음)

Ⅱ.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주요 내용

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기정	신정 도시개발구역	양천구 신정동 171-61번지 일대	33,844	-	33,844	서울시고시 제2012-302호 ('12.11.08)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기정	신정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양천구 신정동 171-61번지 일대	33,844	-	33,844	서울시고시 제2012-302호 ('12.11.08)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서울 목동 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양천구 목동, 신정동 일원	4,368,463	-	4,368,463	건고 제201호 (1983.06.28)	신정 구역 일부 제척

주) 구역면적은 사업시행단계에서 지적측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용도지역 ·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①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3,844	-	33,844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3,844	-	33,844	100.0

②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① 교통시설

(1) 도로 (변경)

■ 도로총괄표

유별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6 (5)	1,490 (737)	(4,374)	1 (1)	740 (208)	(686)	3 (2)	511 (356)	(2,403)	2 (2)	239 (173)	(1,285)
	변경	6 (5)	1,490 (737)	(4,386)	1 (1)	740 (208)	(686)	3 (2)	511 (356)	(2,415)	2 (2)	239 (173)	(1,285)
중로	기정	(1)	95 (95)	(1,165)	–	–	–	–	–	–	1 (1)	95 (95)	(1,165)
소로	기정	5 (4)	1,395 (642)	(3,209)	1 (1)	740 (208)	(686)	3 (2)	511 (356)	(2,403)	1 (1)	144 (78)	(120)
	변경	5 (4)	1,395 (642)	(3,221)	1 (1)	740 (208)	(686)	3 (2)	511 (356)	(2,415)	1 (1)	144 (78)	(120)

주) ( ) : 대상지 내 포함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95 [95]	소로1-16	소로2-2	일반도로	–	서고 제2014-242호 (2014.06.26.)	
기정	소로	1	16	12	국지도로	740 [208]	목동 272-1	신정동 201-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2 (1972.01.07.)	
기정	소로	2	1	8~10	국지도로	75 [75]	소로1-16	소로3-55	일반도로	–	서고 제2014-242호 (2014.06.26.)	
변경	소로	2	1	8~10	국지도로	75 [75]	소로1-16	소로3-55	일반도로	–	서고 제2014-242호 (2014.06.26.)	가각부 조정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281 [281]	신정동 산74-3	신정동 337-14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2 (1972.01.07.)	
기정	소로	2	85	8	국지도로	155 [0]	대로3-1	소로1-16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2 (1972.01.07.)	구역외
기정	소로	3	55	6~8	국지도로	144 [78]	신정동 337-13	신정동 337-11	일반도로	–	서고 92-50 (92.02.21.)	

주1) [ ]는 대상지 구간임

주2) 도로의 폭원 및 연장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1	소로 2-1	• 선형 변경(폭원, 연장 변경없음) – 가각부 조정 : 가각길이 3m → 6m – 면적 : 769㎡ → 781㎡ (증 12㎡)	• 가각부 조정에 따른 변경

(2) 주차장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신정동 163-65일원	210	-	210	서고 제2014-242호 (2014.06.26.)	

② 공간시설

(1) 공원 (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근린 공원	신정동 산75-21일대	139,576 (1,415)	-	139,576 (1,415)	건교부고시 465 (1971.08.06.)	갈산 공원
기정	②	공원	소공원	신정동 330-25일대	2,553	-	2,553	서고 제2014-242호 (2014.06.26.)	

주) ( )는 대상지내 편입

(2) 녹지 (변경없음)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녹지	완충 녹지	신정동 330-17	342	-	342	건고 1993-371 (93.9.27)	대상지 외부

(3) 공공공지 (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공 공지	(-)	신정동 171-31	195	감) 12	183	서고 제2014-242호 (2014.06.26.)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 면적 변경 - 면적 : 195㎡ → 183㎡ (감 12㎡)	• 도로 가각부 조정(가각길이 3m → 6m)에 따른 변경

2. 개발계획 (변경)

1) 인구수용계획 (변경)

①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구 분	대지면적(㎡)	세대수(호)		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3,597	437	476	1,155	1,157	
공동주택	20,067	355	356	938	940	
임대주택	3,530	82	120	217	217	

② 공동주택용지계획

- (기정) 총 437호 : 일반분양 355호, 임대주택(국임임대) 82호
- (변경) 총 476호 : 일반분양 356호, 임대주택(행복주택) 120호

블록	구분	대지면적(㎡)	평균주택 규모(㎡)		수용호수 (호)		구성비 (%)		수용인구 (인)		용적률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23,597	-	-	437	476	100.0	100.0	1,155	1,157	-	
공동주택		20,067	-	-	355	356	81.2	74.8	938	940	-	일반분양
B1	60㎡이하	-	59	-	71	-	16.2	-	188	-	200	
	60~85㎡	-	84	84	215	347	49.2	72.9	567	916	200	
	85㎡초과	-	114	114	69	9	15.8	1.9	183	24	200	
임대주택		3,530	59	29/39	82	120	18.8	25.2	217	217	-	공공임대
B2	60㎡이하	3,530	59	29/39	82	120	18.8	25.2	217	217	170	

■ 변경사유

- B1블록(일반분양) : 주택건설사업계획 반영
- B2블록(공공임대) : 국민임대주택 → 행복주택 전환에 따른 평형 조정 및 수용호수 변경

2)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계		33,844	-	33,844	100.0	100.0	서고2014-242
주거용지	소 계	20,067	-	20,067	59.3	59.3	
	공동주택용지	20,067	-	20,067	59.3	59.3	체비지 포함(3,015.6㎡)
도시기반 시설용지	소 계	8,747	-	8,747	25.8	25.8	
	도 로	4,374	증) 12	4,386	12.9	13.0	
	공 원	3,968	-	3,968	11.7	11.6	
	주차장	210	-	210	0.6	0.6	
	공공공지	195	감) 12	183	0.6	0.5	
기타시설 용 지	소 계	5,030	-	5,030	14.9	14.9	
	임대주택용지	3,530	-	3,530	10.5	10.5	
	문화복합시설용지	1,500	-	1,500	4.4	4.4	

주) 공공기여시설용지(도시기반시설용지 + 기타시설용지) : 13,777.0㎡(40.7%)
주) 체비지는 감정평가하여 기매각된 사항으로 사업 정산에 따라 변경 가능

■ 변경사유 : 소로2-1호선 가각부 조정(3m → 6m)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3) 기반시설계획 : 도시계획 결정사항 등을 따름

4) 환지계획 : 구체적인 사항은 2017년 4월 변경인가된 환지계획을 따르며, 사업정산 및 환지처분에 따라 변경 가능

5)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계획

①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변경)

[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4	2015	2016	2017	
계	15,418	1,174	9,232	2,253	2,759	
조사비	214	214	-	-	-	
설계비	615	300	315	-	-	
보상비	7,504	-	2,998	2,253	2,253	
공사비	2,708	660	1,542	-	506	
기타	4,377	-	4,377	-	-	

주) 본 사업비는 개괄적 추정금으로 실제 집행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사업 준공후 정산처리할 예정임

[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6	2017	2018	2019	
계	10,457	1,130	1,013	4,289	4,025	
조사비	598	214	-	-	384	
설계비	615	300	315	-	-	
보상비	1,000	-	-	-	1,000	
공사비	5,065		329	3,723	1,013	
기타	3,179	616	369	566	1,628	

주) 본 사업비는 개괄적 추정금으로 실제 집행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사업 준공후 정산처리할 예정임

■ 변경사유 : 사업 순연에 따른 자금투자계획 변경

②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 자체자금
- 본 사업지는 전면환지 방식으로 사업비는 체비지를 매각하여 충당할 예정임

6) 국토교통부령(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토지명세 (변경) : 별첨 1

3. 실시계획 (변경)

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① 개략 사업비 (변경)

항 목	세 항 목	금액(천원)		비고
		기정	변경	
조사비	측량비, 기타조사비	214,000	597,986	
설계비	설계비	615,000	615,000	
보상비	소 계	7,503,700	1,000,000	
	토지매입비	-	-	
	지장물보상비	1,462,016	-	
	권리보상비	3,125,950	-	
	이주대책비	104,000	-	
	기타 보상비	2,811,734	1,000,000	
공사비	소 계	2,707,530	5,065,024	
	재료비	1,267,597	1,967,918	타지구 실적기준 공사비 현실화 - 109,164원/㎡×사업면적
	노무비	561,850	872,260	
	경비	271,068	420,827	
	일반관리비	129,604	201,207	
	이윤	153,166	237,787	
	기타경비	324,245	1,365,024	이설비, 환경관리비, 감리비 등
기타	소 계	4,377,394	3,179,080	
	제세공과금 (세금,공과금,법정부담금)	2,475,423	1,768,274	세부항목별 추정 - 생태보전협력금, 산지복구비 외 7개소
	이자(시행기간자본비용)	554,900	-	체비지 기매각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
	부대비용 (일반관리비, 영향평가비, 감리비, 건설공사 보험료, 재원조달 금융부대비용, 기타 비용)	338,441	338,441	영향평가비 : 설계비 포함 감리비 : 공사비에 포함 사업타당성분석 : 체비지로 충당 건설공사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업법에 따름 일반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름
	위탁수수료	1,008,630	1,072,365	사업비(현금청산 포함) × 7.0%
합 계		15,417,624	10,457,090	

주) 본 사업비는 개괄적 추정금으로 실제 집행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사업 준공후 정산처리할 예정임

■ 변경사유 : 주민 자진이주에 따른 폐기물 처리 및 철거 비용 감소, 단지조성 공사비용 현실화

②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변경) : 개발계획 중 “연차별 자금투자계획”과 같음

③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 개발계획 중 “재원조달계획”과 같음

2)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①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②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공동주택용지(임대주택용지 포함) (변경)

[기정]

<table>
<tr><th>가구</th><th>획지번호</th><th col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내용</th></tr>
<tr><td rowspan="9">B</td><td rowspan="9">B-1
B-2</td><td rowspan="2">용도</td><td></td><td>허용용도</td><td>◦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로서 불허용도외의 용도</td></tr>
<tr><td></td><td>불허용도</td><td>◦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에 따른 금지시설</td></tr>
<tr><td colspan="2">건폐율</td><td colspan="2">◦ 20% 이하</td></tr>
<tr><td rowspan="2">용적률</td><td>B-1</td><td colspan="2">◦ 200% 이하</td></tr>
<tr><td>B-2</td><td colspan="2">◦ 170% 이하</td></tr>
<tr><td rowspan="2">높이</td><td>B-1</td><td colspan="2">◦ 평균 14층(최고 15층) (도로 사선제한 배제)</td></tr>
<tr><td>B-2</td><td colspan="2">◦ 평균 9층</td></tr>
<tr><td colspan="2">배치</td><td colspan="2">◦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주동 배치
◦ 공동주택용지 내 설치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의 진입부에 배치하며 타 부대복리시설은 주요보행결정점에 배치</td></tr>
<tr><td colspan="2">형태</td><td colspan="2">◦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td></tr>
<tr><td colspan="2">색채</td><td colspan="2">◦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td></tr>
<tr><td colspan="2">건축선</td><td colspan="2">◦ 도로 인접부분 6m</td></tr>
</table>

[변경]

가구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B	B-1 B-2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로서 불허용도외의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금지시설
		건폐율	B-1	◦ 20% 이하	
			B-2	◦ 40% 이하	
		용적률	B-1	◦ 200% 이하	
			B-2	◦ 170% 이하	
		높이	B-1	◦ 평균 14층(최고 15층) (도로 사선제한 배제)	
			B-2	◦ 평균 9층	
		배치		◦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주동 배치 ◦ 공동주택용지 내 설치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의 진입부에 배치하며 타 부대복리시설은 주요보행결정점에 배치	
		형태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색채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건축선		◦ 도로 인접부분 6m	

■ 변경사유 : 행복주택 도입에 따른 평형 조정 등 주택건설계획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임대주택용지 건폐율 변경

(2) 문화복합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③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Ⅲ. 구역내 토지명세 및 공람 등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 : 해당사항 없음

2.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고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

3.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산지관리법」제14조,제15조에 다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등

4. 조건부여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인가된 실시계획 및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다음의 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고시한 날로부터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공람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 (☎ 02)2133-4640)
     - 양천구청 균형개발과 (☎ 02)2620-3521)
     -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사업부 (☎ 02)3410-7345)

6. 관계도면 : 별첨 2
   - 지형도면 개재생략(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 양천구 균형개발과, SH공사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별첨 1 : 토지 명세

구분	연번	지 번	지목	전체 토지면적 (㎡)	전체 토지 중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면적 (㎡)	토지 소유자 성명	비 고
기정	1	양천구 신정동 163-11	대	225.0	225.0	김재헌 외 4인	
변경	1	양천구 신정동 163-11	대	225.0	225.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2	양천구 신정동 163-14	대	205.0	205.0	김재헌 외 2인	
변경	2	양천구 신정동 163-14	대	205.0	205.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3	양천구 신정동 163-16	대	23.0	23.0	재무부	
변경	3	양천구 신정동 163-16	대	23.0	23.0	국(기획재정부)	소유자 명칭 정정
기정	4	양천구 신정동 163-17	대	261.0	261.0	김정희 외 2인	
변경	4	양천구 신정동 163-17	대	261.0	261.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5	양천구 신정동 163-19	대	73.0	73.0	김진수	
변경	5	양천구 신정동 163-19	대	73.0	73.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6	양천구 신정동 163-20	대	248.0	248.0	이희재	
변경	6	양천구 신정동 163-20	대	248.0	248.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7	양천구 신정동 163-21	대	357.0	357.0	김춘애 외 2인	
변경	7	양천구 신정동 163-21	대	357.0	357.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8	양천구 신정동 163-22	대	324.0	324.0	김용이	
변경	8	양천구 신정동 163-22	대	324.0	324.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9	양천구 신정동 163-23	대	1,913.0	1,913.0	김소연 외 3인	
변경	9	양천구 신정동 163-23	대	1,913.0	1,913.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10	양천구 신정동 163-27	도로	40.0	40.0	건설교통	
변경	10	양천구 신정동 163-27	도로	40.0	40.0	국(국토교통부)	소유자 명칭 정정
기정	11	양천구 신정동 163-28	대	588.0	588.0	이재옥 외 6인	
변경	11	양천구 신정동 163-28	대	588.0	588.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12	양천구 신정동 163-29	대	20.0	20.0	재무부	
변경	12	양천구 신정동 163-29	대	20.0	20.0	SH공사	소유자 변경
기정	13	양천구 신정동 163-3	도로	40.0	40.0	건설교통	
변경	13	양천구 신정동 163-3	도로	40.0	40.0	국(국토교통부)	소유자 명칭 정정
기정	14	양천구 신정동 163-30	대	271.0	271.0	김영남 외 1인	
변경	14	양천구 신정동 163-30	대	271.0	271.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15	양천구 신정동 163-31	대	53.0	53.0	재무부	
변경	15	양천구 신정동 163-31	대	53.0	53.0	SH공사	소유자 변경
기정	16	양천구 신정동 163-32	대	344.0	344.0	이상영	
변경	16	양천구 신정동 163-32	대	344.0	344.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17	양천구 신정동 163-33	대	165.0	165.0	이승현	
변경	17	양천구 신정동 163-33	대	165.0	165.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18	양천구 신정동 163-34	대	17.0	17.0	재무부	
변경	18	양천구 신정동 163-34	대	17.0	17.0	국(기획재정부)	소유자 명칭 정정
기정	19	양천구 신정동 163-36	대	395.0	395.0	김진수 외 1인	
변경	19	양천구 신정동 163-36	대	395.0	395.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20	양천구 신정동 163-37	대	810.0	810.0	황규영 외 8인	
변경	20	양천구 신정동 163-37	대	810.0	810.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21	양천구 신정동 163-40	대	76.0	76.0	박선용	
변경	21	양천구 신정동 163-40	대	76.0	76.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22	양천구 신정동 163-42	대	36.0	36.0	김소연 외 1인	

구분	연번	지 번	지목	전체 토지면적 (㎡)	전체 토지 중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면적 (㎡)	토지 소유자 성명	비 고
변경	22	양천구 신정동 163-42	대	36.0	36.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23	양천구 신정동 163-43	대	212.0	212.0	김진수	
변경	23	양천구 신정동 163-43	대	212.0	212.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24	양천구 신정동 163-44	대	112.0	112.0	김재성	
변경	24	양천구 신정동 163-44	대	112.0	112.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25	양천구 신정동 163-45	대	116.0	116.0	김진수	
변경	25	양천구 신정동 163-45	대	116.0	116.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26	양천구 신정동 163-46	대	66.0	66.0	박태희	
변경	26	양천구 신정동 163-46	대	66.0	66.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27	양천구 신정동 163-47	대	118.0	118.0	김진성 외 3인	
변경	27	양천구 신정동 163-47	대	118.0	118.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28	양천구 신정동 163-48	대	23.0	23.0	윤재근	
변경	28	양천구 신정동 163-48	대	23.0	23.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29	양천구 신정동 163-5	대	575.0	575.0	김광옥	
변경	29	양천구 신정동 163-5	대	575.0	575.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30	양천구 신정동 163-50	대	150.0	150.0	김소연 외 3인	
변경	30	양천구 신정동 163-50	대	150.0	150.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31	양천구 신정동 163-52	임야	115.0	115.0	서울특별시	
변경	31	양천구 신정동 163-52	공원	115.0	115.0	SH공사	지목 변경, 소유자 변경
기정	32	양천구 신정동 163-53	임야	797.0	109.0	서울특별시	
기정	33	양천구 신정동 163-54	임야	114.0	114.0	서울특별시	
변경	33	양천구 신정동 163-54	공원	114.0	114.0	SH공사	지목 변경, 소유자 변경
기정	34	양천구 신정동 163-58	임야	448.0	448.0	김진수 외 3인	
변경	34	양천구 신정동 163-58	임야	448.0	448.0	SH공사 외 3인	소유자 변경
기정	35	양천구 신정동 163-59	임야	78.0	78.0	김진수 외 3인	
변경	35	양천구 신정동 163-59	임야	78.0	78.0	SH공사 외 3인	소유자 변경
기정	36	양천구 신정동 163-60	임야	83.0	83.0	김진수 외 3인	
변경	36	양천구 신정동 163-60	임야	83.0	83.0	SH공사 외 4인	소유자 변경
기정	37	양천구 신정동 163-61	임야	30.0	30.0	김진수 외 3인	
변경	37	양천구 신정동 163-61	임야	30.0	30.0	SH공사 외 3인	소유자 변경
기정	38	양천구 신정동 163-64	임야	51.0	51.0	김진수	
변경	38	양천구 신정동 163-64	임야	51.0	51.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39	양천구 신정동 163-65	임야	327.0	327.0	김진수 외 3인	
변경	39	양천구 신정동 163-65	임야	327.0	327.0	SH공사 외 3인	소유자 변경
기정	40	양천구 신정동 163-8	대	1,184.0	1,184.0	김진성 외 3인	
변경	40	양천구 신정동 163-8	대	1,184.0	1,184.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41	양천구 신정동 170	전	1,335.0	1,335.0	문용환 외 6인	
변경	41	양천구 신정동 170	전	1,335.0	1,335.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42	양천구 신정동 170-1	전	1,264.0	1,264.0	문용환 외 6인	
변경	42	양천구 신정동 170-1	전	1,264.0	1,264.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43	양천구 신정동 170-10	대	109.0	109.0	김옥희	
변경	43	양천구 신정동 170-10	대	109.0	109.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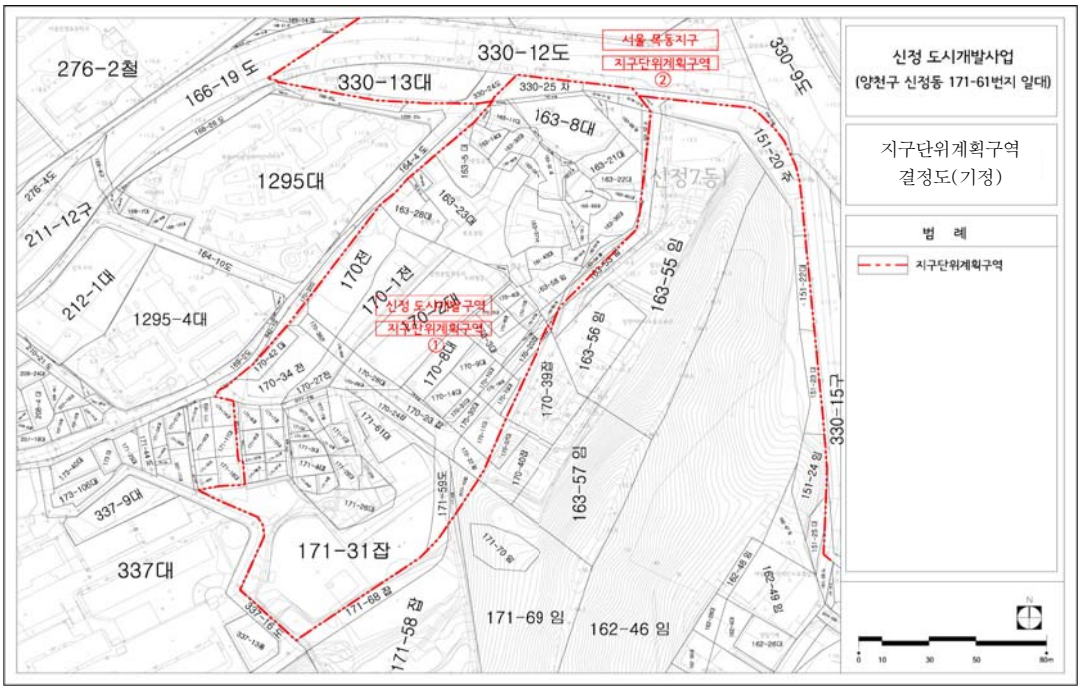
구분	연번	지 번	지목	전체 토지면적 (㎡)	전체 토지 중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면적 (㎡)	토지 소유자 성명	비 고
기정	44	양천구 신정동 170-11	대	342.0	342.0	김금란	
변경	44	양천구 신정동 170-11	대	342.0	342.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45	양천구 신정동 170-14	대	298.0	298.0	김진수	
변경	45	양천구 신정동 170-14	대	298.0	298.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46	양천구 신정동 170-16	잡종지	76.0	76.0	김진성 외 1인	
변경	46	양천구 신정동 170-16	잡종지	76.0	76.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47	양천구 신정동 170-17	대	66.0	66.0	김진수	
변경	47	양천구 신정동 170-17	대	66.0	66.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48	양천구 신정동 170-18	대	136.0	136.0	권우상 외 13인	
변경	48	양천구 신정동 170-18	대	136.0	136.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49	양천구 신정동 170-19	대	129.0	129.0	권필상 외 13인	
변경	49	양천구 신정동 170-19	대	129.0	129.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50	양천구 신정동 170-2	대	2,332.0	2,332.0	김진성	
변경	50	양천구 신정동 170-2	대	2,332.0	2,332.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51	양천구 신정동 170-20	잡종지	210.0	210.0	김진성	
변경	51	양천구 신정동 170-20	잡종지	210.0	210.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52	양천구 신정동 170-21	잡종지	109.0	109.0	김진성	
변경	52	양천구 신정동 170-21	잡종지	109.0	109.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53	양천구 신정동 170-22	잡종지	223.0	223.0	김진수	
변경	53	양천구 신정동 170-22	잡종지	223.0	223.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54	양천구 신정동 170-23	잡종지	443.0	443.0	김진성	
변경	54	양천구 신정동 170-23	잡종지	443.0	443.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55	양천구 신정동 170-24	잡종지	344.0	344.0	김진성	
변경	55	양천구 신정동 170-24	잡종지	344.0	344.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56	양천구 신정동 170-25	잡종지	36.0	36.0	김용환	
변경	56	양천구 신정동 170-25	잡종지	36.0	36.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57	양천구 신정동 170-26	전	99.0	99.0	문용환 외 6인	
변경	57	양천구 신정동 170-26	전	99.0	99.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58	양천구 신정동 170-27	전	330.0	330.0	문용환 외 6인	
변경	58	양천구 신정동 170-27	전	330.0	330.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59	양천구 신정동 170-28	대	219.0	219.0	김금란	
변경	59	양천구 신정동 170-28	대	219.0	219.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60	양천구 신정동 170-29	대	171.0	171.0	김금란	
변경	60	양천구 신정동 170-29	대	171.0	171.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61	양천구 신정동 170-3	대	469.0	469.0	정인중	
변경	61	양천구 신정동 170-3	대	469.0	469.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62	양천구 신정동 170-30	대	185.0	185.0	김금란	
변경	62	양천구 신정동 170-30	대	185.0	185.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63	양천구 신정동 170-31	대	113.0	113.0	김금란	
변경	63	양천구 신정동 170-31	대	113.0	113.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64	양천구 신정동 170-33	도로	473.0	87.0	양천구	-
기정	65	양천구 신정동 170-34	전	994.0	944.0	문용환 외 6인	-
변경	65	양천구 신정동 170-34	전	944.0	944.0	㈜하나자산신탁	공부면적 오기 정정, 소유자 변경

구분	연번	지 번	지목	전체 토지면적 (㎡)	전체 토지 중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면적 (㎡)	토지 소유자 성명	비 고
기정	66	양천구 신정동 170-36	전	150.0	150.0	문용환 외 6인	
변경	66	양천구 신정동 170-36	전	150.0	150.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67	양천구 신정동 170-4	대	122.0	122.0	김진성	
변경	67	양천구 신정동 170-4	대	122.0	122.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68	양천구 신정동 170-42	대	283.0	283.0	문용환 외 6인	
변경	68	양천구 신정동 170-42	대	283.0	283.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69	양천구 신정동 170-5	대	106.0	106.0	정인중	
변경	69	양천구 신정동 170-5	대	106.0	106.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70	양천구 신정동 170-6	대	122.0	122.0	정인중	
변경	70	양천구 신정동 170-6	대	122.0	122.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71	양천구 신정동 170-7	대	139.0	139.0	김진성	
변경	71	양천구 신정동 170-7	대	139.0	139.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72	양천구 신정동 170-8	대	582.0	582.0	정인중	
변경	72	양천구 신정동 170-8	대	582.0	582.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73	양천구 신정동 170-9	대	291.0	291.0	정인중	
변경	73	양천구 신정동 170-9	대	291.0	291.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74	양천구 신정동 171	대	63.0	63.0	오병국	
변경	74	양천구 신정동 171	대	63.0	63.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75	양천구 신정동 171-1	대	142.0	142.0	이정순 외 1인	
변경	75	양천구 신정동 171-1	대	142.0	142.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76	양천구 신정동 171-10	대	142.0	142.0	상지은	
변경	76	양천구 신정동 171-10	대	142.0	142.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77	양천구 신정동 171-11	대	66.0	66.0	허기준	
변경	77	양천구 신정동 171-11	대	66.0	66.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78	양천구 신정동 171-12	대	53.0	53.0	오무웅	
변경	78	양천구 신정동 171-12	대	53.0	53.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79	양천구 신정동 171-13	전	60.0	60.0	안광호	
변경	79	양천구 신정동 171-13	전	60.0	60.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80	양천구 신정동 171-2	전	122.0	122.0	김주년 외 5인	
변경	80	양천구 신정동 171-2	전	122.0	122.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81	양천구 신정동 171-26	대	671.0	671.0	김주년 외 5인	
변경	81	양천구 신정동 171-26	대	671.0	671.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82	양천구 신정동 171-29	대	255.0	255.0	박정미 외 1인	
변경	82	양천구 신정동 171-29	대	255.0	255.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83	양천구 신정동 171-3	대	154.0	154.0	최원규	
변경	83	양천구 신정동 171-3	대	154.0	154.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84	양천구 신정동 171-31	잡종지	6,143.0	6,143.0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변경	84	양천구 신정동 171-31	잡종지	6,143.0	6,143.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85	양천구 신정동 171-34	대	96.0	96.0	강동구	
변경	85	양천구 신정동 171-34	대	96.0	96.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86	양천구 신정동 171-35	대	112.0	112.0	이영숙	
변경	86	양천구 신정동 171-35	대	112.0	112.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87	양천구 신정동 171-37	대	89.0	89.0	곽만심	
변경	87	양천구 신정동 171-37	대	89.0	89.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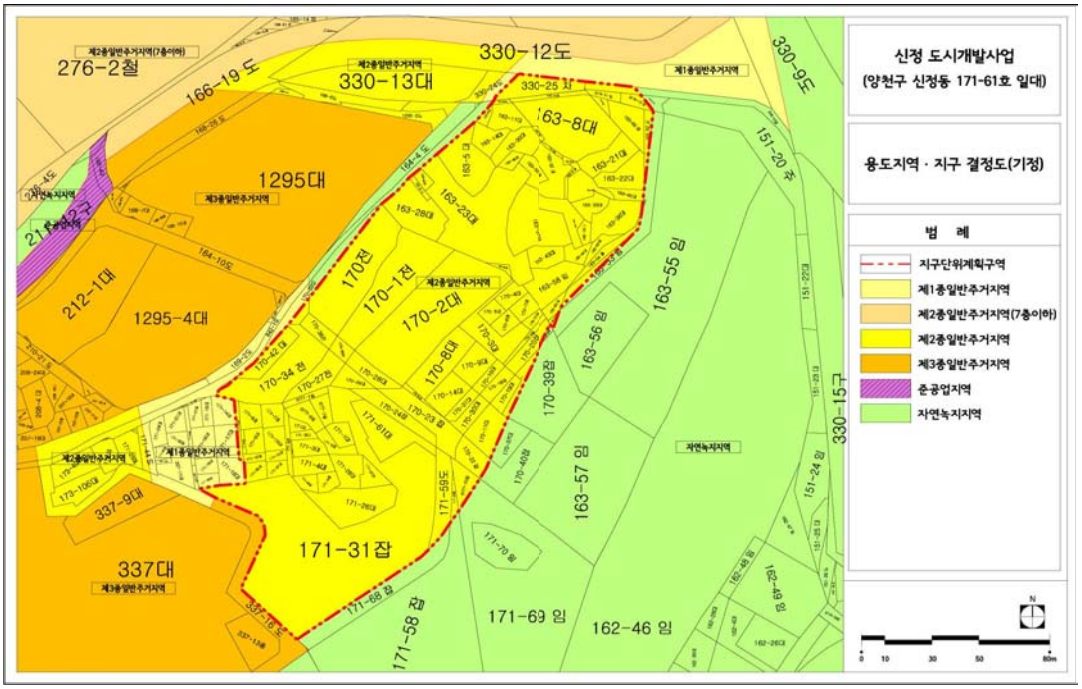
구분	연번	지 번	지목	전체 토지면적 (㎡)	전체 토지 중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면적 (㎡)	토지 소유자 성명	비 고
기정	88	양천구 신정동 171-38	대	69.0	69.0	차춘자	
변경	88	양천구 신정동 171-38	대	69.0	69.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89	양천구 신정동 171-4	대	198.0	198.0	박덕술 외 1인	
변경	89	양천구 신정동 171-4	대	198.0	198.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90	양천구 신정동 171-43	도로	20.0	20.0	최경분	
변경	90	양천구 신정동 171-43	도로	20.0	20.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91	양천구 신정동 171-45	도로	8.0	8.0	최원규	
변경	91	양천구 신정동 171-45	도로	8.0	8.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92	양천구 신정동 171-5	전	99.0	99.0	김부년	
변경	92	양천구 신정동 171-5	전	99.0	99.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93	양천구 신정동 171-57	대	142.0	142.0	허곤	
변경	93	양천구 신정동 171-57	대	142.0	142.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94	양천구 신정동 171-59	도로	376.0	376.0	서울특별시(양천구청)	
변경	94	양천구 신정동 171-59	도로	376.0	376.0	SH공사	소유자 변경
기정	95	양천구 신정동 171-6	전	76.0	76.0	안광호	
변경	95	양천구 신정동 171-6	전	76.0	76.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96	양천구 신정동 171-60	잡종지	47.0	47.0	이희수	
변경	96	양천구 신정동 171-60	잡종지	47.0	47.0	SH공사	소유자 변경
기정	97	양천구 신정동 171-61	대	600.0	600.0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변경	97	양천구 신정동 171-61	대	600.0	600.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98	양천구 신정동 171-7	대	145.0	145.0	최원용 외 1인	
변경	98	양천구 신정동 171-7	대	145.0	145.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99	양천구 신정동 171-8	대	159.0	159.0	정동선	
변경	99	양천구 신정동 171-8	대	159.0	159.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100	양천구 신정동 171-9	대	139.0	139.0	김판도	
변경	100	양천구 신정동 171-9	대	139.0	139.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101	양천구 신정동 330-17	잡종지	448.6	159.0	양천구	-
기정	102	양천구 신정동 330-25	주차장	393.5	394.0	양천구	-
변경	102	양천구 신정동 330-25	주차장	393.5	394.0	SH공사	소유자 변경
기정	103	양천구 신정동 산74-12	임야	99.0	99.0	최성만	
변경	103	양천구 신정동 산74-12	임야	99.0	99.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104	양천구 신정동 산74-21	임야	99.0	99.0	최미화	
변경	104	양천구 신정동 산74-21	임야	99.0	99.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105	양천구 신정동 산77-1	임야	99.0	99.0	김금란	
변경	105	양천구 신정동 산77-1	임야	99.0	99.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106	양천구 신정동 산77-10	임야	192.0	192.0	이희수	
변경	106	양천구 신정동 산77-10	임야	192.0	192.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107	양천구 신정동 산77-7	임야	99.0	99.0	이용분	
변경	107	양천구 신정동 산77-7	임야	99.0	99.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108	양천구 신정동 산77-8	임야	198.0	198.0	박용희	
변경	108	양천구 신정동 산77-8	임야	198.0	198.0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기정	합계	-	-	-	33,844.0	-	-
변경	합계	-	-	-	33,844.0	-	-

■ 별첨 2 : 관계도면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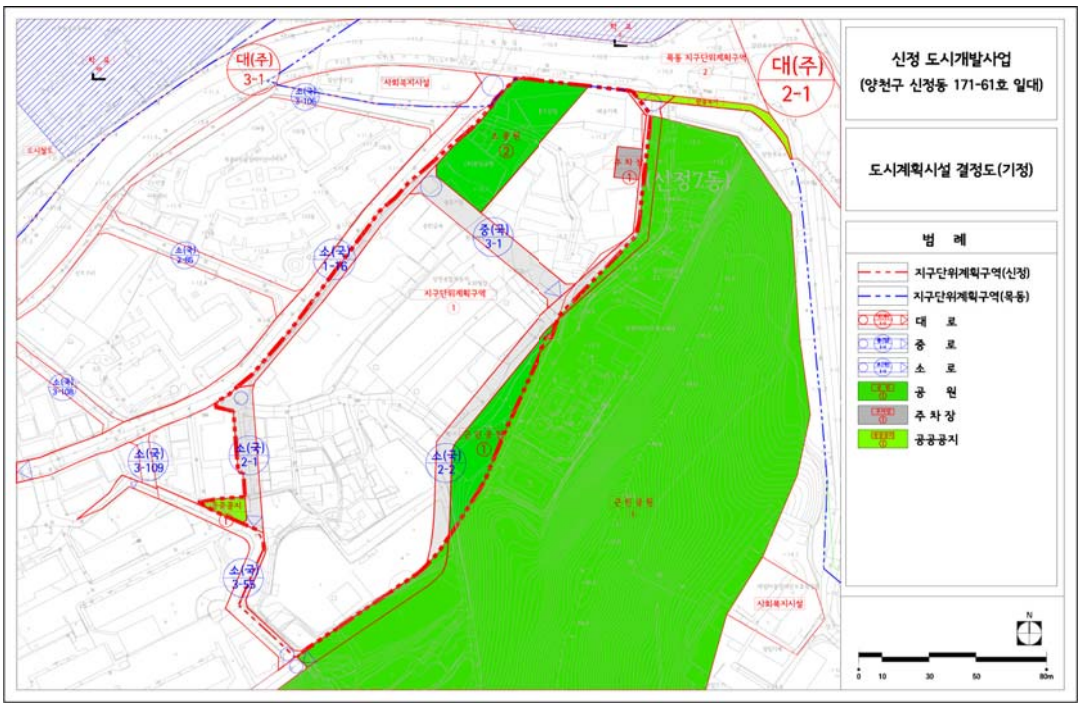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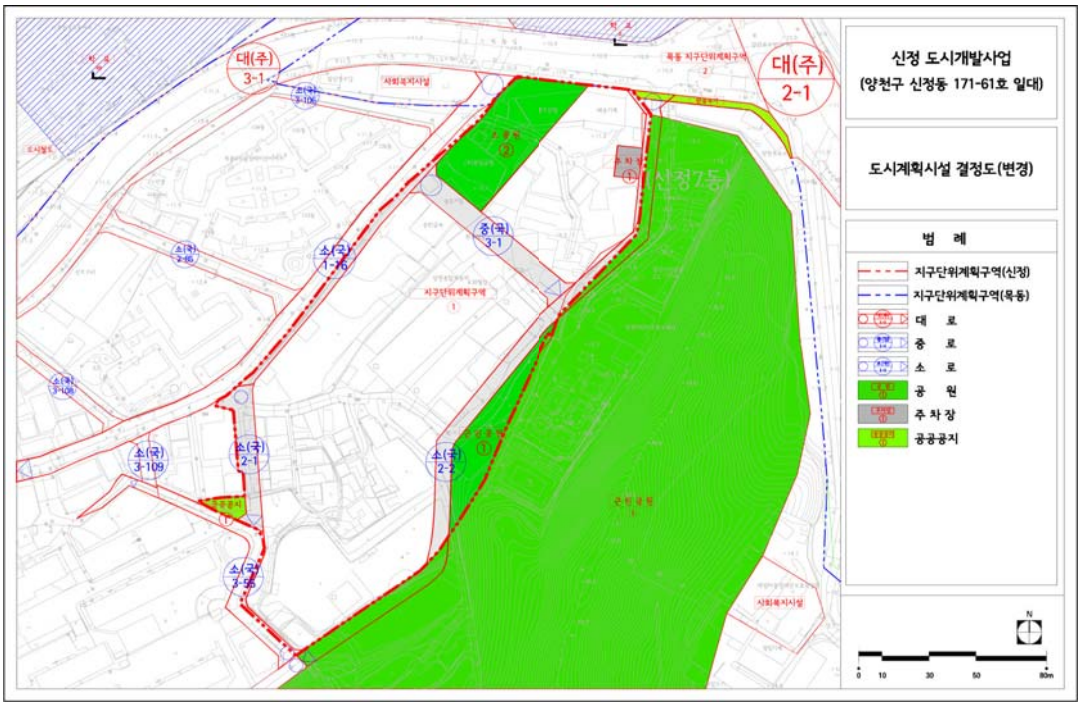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변경)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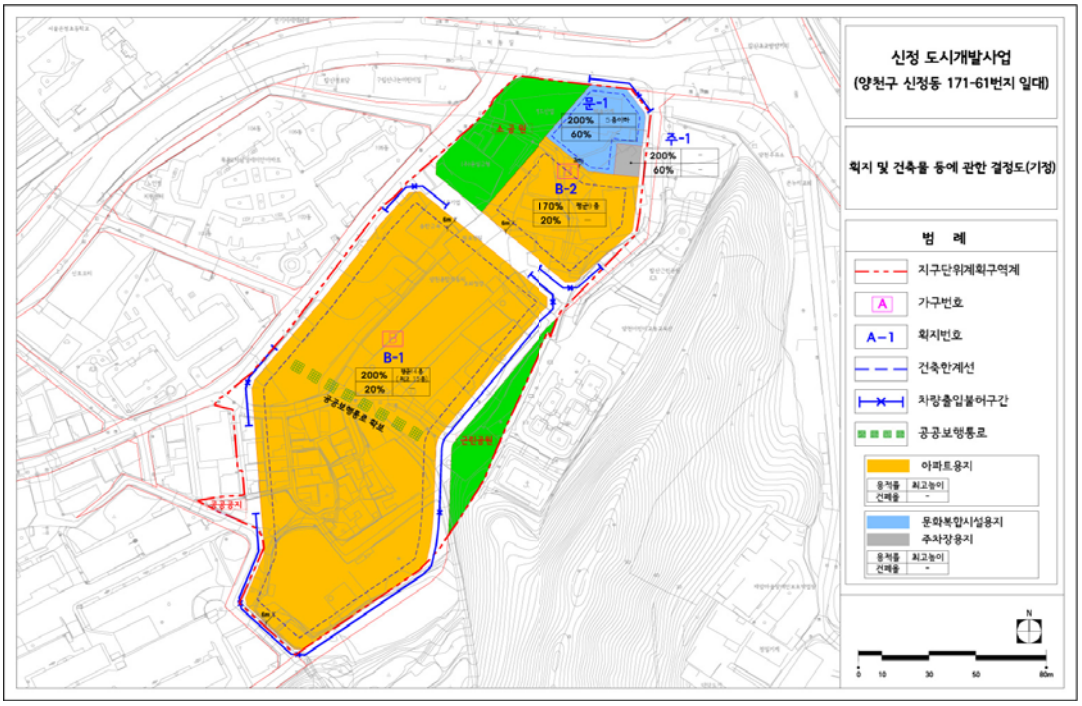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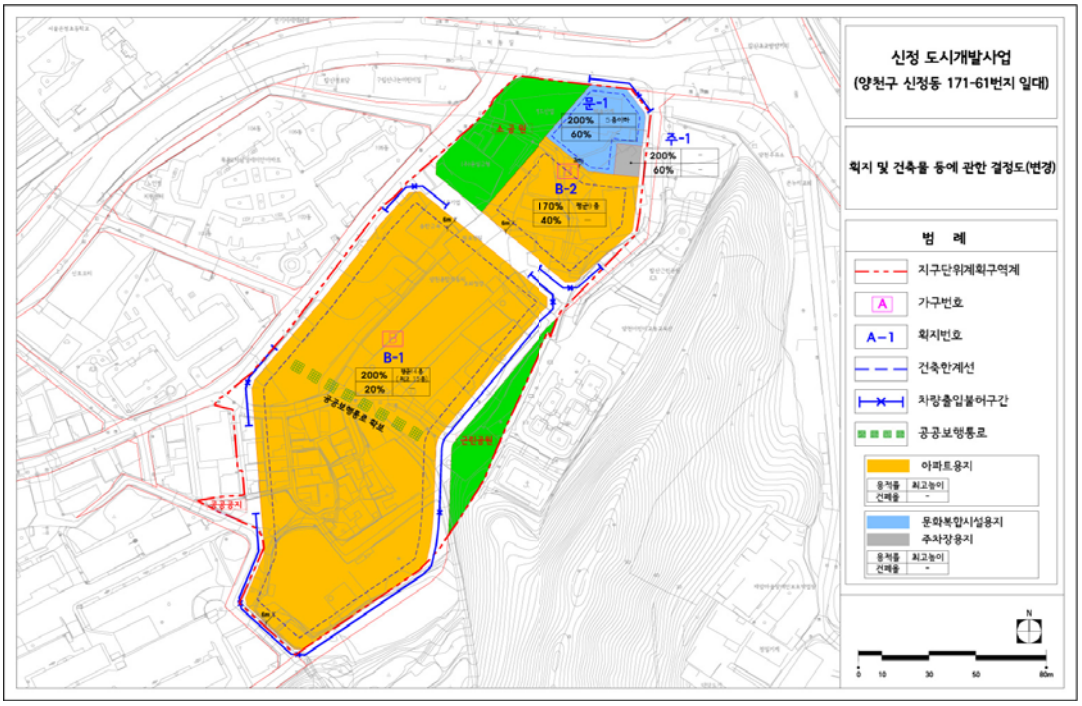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변경)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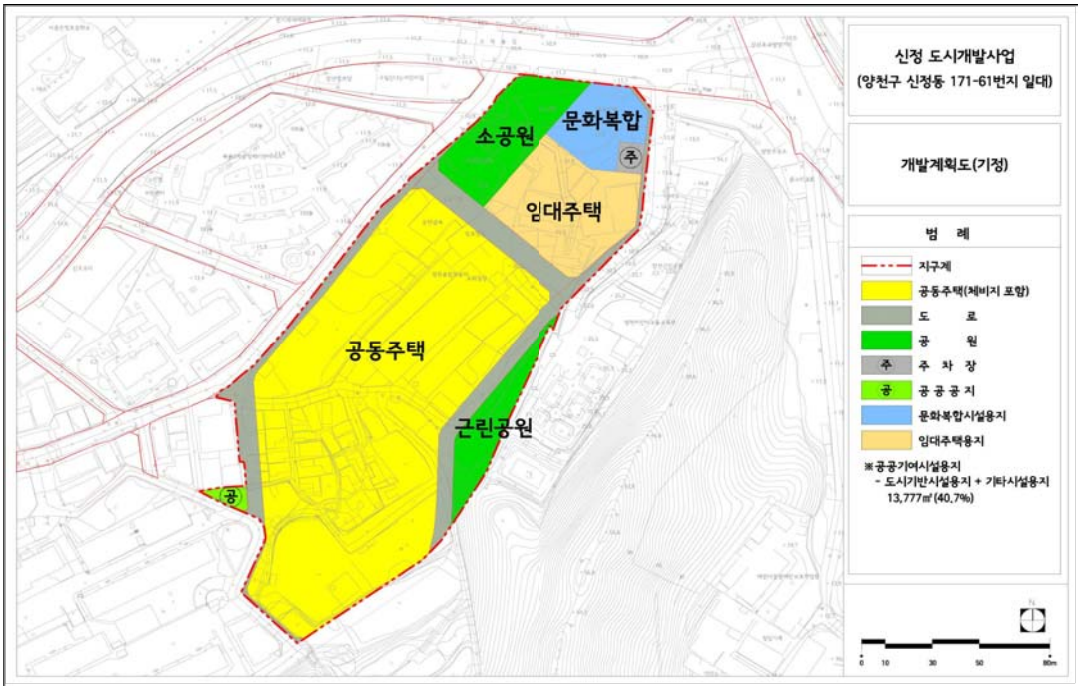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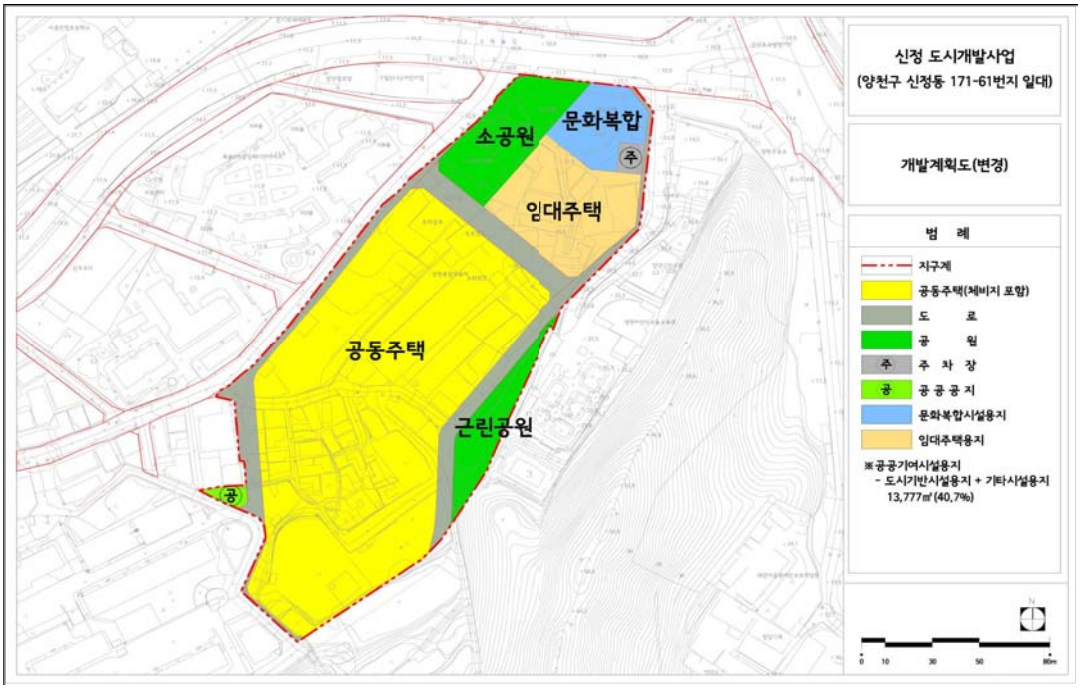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 (변경)

[기정]



[변경]



※ 붙임도면은 참고용이며,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서울 목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구역 전체에 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활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82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34호(2017.4.20.)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같은법 제90조에 의거 열람공고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1 외 1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 사업의 명칭 :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다.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2,829.8㎡
○ 건축규모 : 지상 3~5층 5개동, 연면적 10,624.97㎡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00
○ 성 명 :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8. 01. 01.
○ 준공예정일 : 2019.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박물관과(☎2133-4191, 담당 이상구)로 문의하시기 바람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사업의 명칭 :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안국동 175-2	학교 용지	11,874.8	11,874.8	-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00	-	-	-	-
2	안국동 175-102	학교 용지	979.6	979.6	-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00	-	-	-	-
총 2필지			12,829.8	12,829.8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83호

가락상아(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부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66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가. 가락상아(1차)아파트 정비기본계획 조서(변경없음)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ha)	계획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단계	주택유형	비 고
9	송파구	오금동	166	1.35	210	50	-	2	공동	가락상아1차아파트

2.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가락상아(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지정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규	가락상아(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송파구 오금동 166번지 일대	-	증) 13,580	13,580	-

3. 정비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용 도 지 역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합 계	13,580	-	13,580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3,580	-	13,580	100.0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3,580	100.0	
획지	획 지1	13,450	99.0	공동주택
정비기반시설 등	도 로	130	1.0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	10	국지도로	-	-	-	일반도로	-	-	
변경	소로	1	-	10~11.5	국지도로	- (86m)	-	-	일반도로	-	-	일부확폭

주) ( )은 구역 내 연장임.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 (동남로22길)	소로1 (동남로22길)	■북측 인접도로 일부 확폭 - 폭 : 10m ⇒ 10~11.5m - 연장 : 변경없음	■차량 주진출입로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도로확폭을 통한 1개 차로 추가확보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법정기준	법정면적(㎡)	계획면적(㎡)	비 고
계		-	-	2,305.0	
관리사무소		• 10㎡+(총세대수-50)×0.05㎡ 이상	27.5	150.0	
주민 공동 시설	계	• 100세대 이상 - (총세대×2.5㎡)×1.25 이상	1,250.0	1,655.0	
	경로당	• 300~500세대 미만 : 155㎡ 이상	155.0	155.0	
	어린이놀이터	• 300~1,000세대 미만 : 200㎡+(총세대수×1.0) 이상	600.0	700.0	
	어린이집	• 300~500세대 미만 : 198㎡ 이상	198.0	250.0	
	작은도서관	• 300~500세대 미만 : 108㎡ 이상	108.0	150.0	
	주민운동시설	-	-	400.0	옥외 : 200㎡ 옥내 : 200㎡
근린생활시설		-	-	500.0	

주) 향후 사업승인시 시설설치면적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 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신설	가락상아(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3,580	송파구 오금동 166번지 일대	3	-	-	3	-	

2) 건축시설계획

구 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예정 법정상한	
신설	가락상아 (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3,580	획지1	13,450	오금동 166 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30% 이하	232.63% 이하	299.75% 이하	최고 30층이하 (87m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구 분				세대수(세대)	비율(%)	비 고
합 계				400	100.0	
공동주택	임대	60㎡이하	44㎡형	71	17.7	
	분양	60㎡이하	44㎡형	4	1.0	
			59㎡형	88	22.0	
		60~85㎡이하	84㎡형	212	53.0	
		85㎡이상	114㎡형	25	6.3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93.7%

심의 완화사항

• 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
- 정비계획용적률(232.63%이하) → 예정법적상한용적률(229.75%)적용
• 지속가능형 건축구조(무량판구조) 적용에 따라 7% 완화적용
•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적용에 따라 8% 완화적용
• 지능형 건축물(4등급) 적용에 따라 6% 완화적용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계획목표
획지 및 도로 연접	경계선에서 3m	개방감 확보 및 도로·보행환경 개선

주) 향후 사업승인시 시설설치면적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table>
<tr><td>구 분</td><td colspan="4">산 정 내 용</td></tr>
<tr><td rowspan="2">토지이용계획</td><td>계(구역면적)</td><td>택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td><td>정비기반시설 등</td><td>비고</td></tr>
<tr><td>13,580㎡</td><td>13,450㎡</td><td>130㎡</td><td>-</td></tr>
<tr><td>허용용적률
적용기준</td><td colspan="4">•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준
<table>
<tr><th>구 분</th><th>인센티브(용적률) 적용</th><th>비고</th></tr>
<tr><td>우수디자인</td><td>-</td><td></td></tr>
<tr><td>지속가능형 건축구조</td><td>7%</td><td>무량판구조</td></tr>
<tr><td>장수명주택</td><td>-</td><td></td></tr>
<tr><td>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td><td>8%</td><td>에너지효율인증1등급,
녹색건축인증우수등급</td></tr>
<tr><td>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등급</td><td>-</td><td></td></tr>
<tr><td>지능형 건축물</td><td>6%</td><td>4등급</td></tr>
<tr><td>환경친화계획</td><td>-</td><td></td></tr>
<tr><td>역사문화보전</td><td>-</td><td></td></tr>
<tr><td>합계</td><td>21%</td><td>최대 20%적용</td></tr>
</table>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210%)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20%) = 230%</td></tr>
<tr><td>정비계획용적률</td><td colspan="4">• 정비계획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 × α
= 230.00% + (210.00% × 1.3 × 0.00966) = 232.63%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30 / 13,450 = 0.00966</td></tr>
<tr><td>예정 법적
상한용적률</td><td colspan="4">• 법적상한용적률 = 299.75% 이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결정된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됨</td></tr>
<tr><td>소형주택
건립용적률</td><td colspan="4">• 소형주택(60㎡이하) 의무건립 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0.5 이상
= (299.75% - 232.63%) × 0.5
= 33.56% 이상</td></tr>
</table>

주) 상기 허용용적률인센티브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

바.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획지 번호	가구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신설	획지1	-	13,450	오금동 166번지 일대	13,450	공동주택용지

사.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		비고
					전용	공급	
신설	획지1	13,450㎡	3	71세대	44.92	63.73	지상층 연면적 4524.83㎡

주) 소형주택 건설계획의 동수 및 세대수는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관리처분계획시 변경가능

-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 분		주 요 내 용				
정비계획용적률		232.63%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75% 이하				
재건축 소형 주택	용적률 증가분(%)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299.75 - 232.63 = 67.12				
	건립용적률(%)	67.12 × 0.5 = 33.56				
	의무 연면적 (지상층)	13,450㎡ × 33.56% = 4,513.82㎡이상				
재건축 소형주택 확보계획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지상층 연면적(㎡)	비고
		44.92	63.73	71	4,524.83	지상층 의무연면적 : 4,513.82㎡

아.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경관	• 근경, 원경에 대한 도시경관 형성 • 단지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준제시 • 판상형과 탑상형 혼합배치 • 인근지역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도시경관 유도	
환경보전	•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 녹지율 최대한 확보 •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재난방지	화재	•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수해	• 자연토양유지 및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교통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교육시설은 없으며 반경 200m 이내에 보인중·고교, 오주중학교가 위치해 있음.	•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소음·진동저감대책,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등의 교육환경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송파교육지원청과 협의하였음 • 추후 세부사항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반영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 등을 최소화하여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	

차.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가락상아(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기정 : 226세대 • 변경 : 400세대 • 증가 : 174세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구분	심의 결과	심의의견	비 고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 (2017.10.27)	수정 가결	※ 금회 상정으로 수정가결 ▸ 수정사항 – 높이계획 : 최고 30층 이하, 오금공원 연접부 25층 이하 – 용 적 률 : 정비계획 232.63%, 법적상한 299.75% – 정비기반시설 : 도로(130㎡) ※ 순부담율 1% – 세 대 수 : 전체 400세대 (소형임대 71세대)	

4. 관련도면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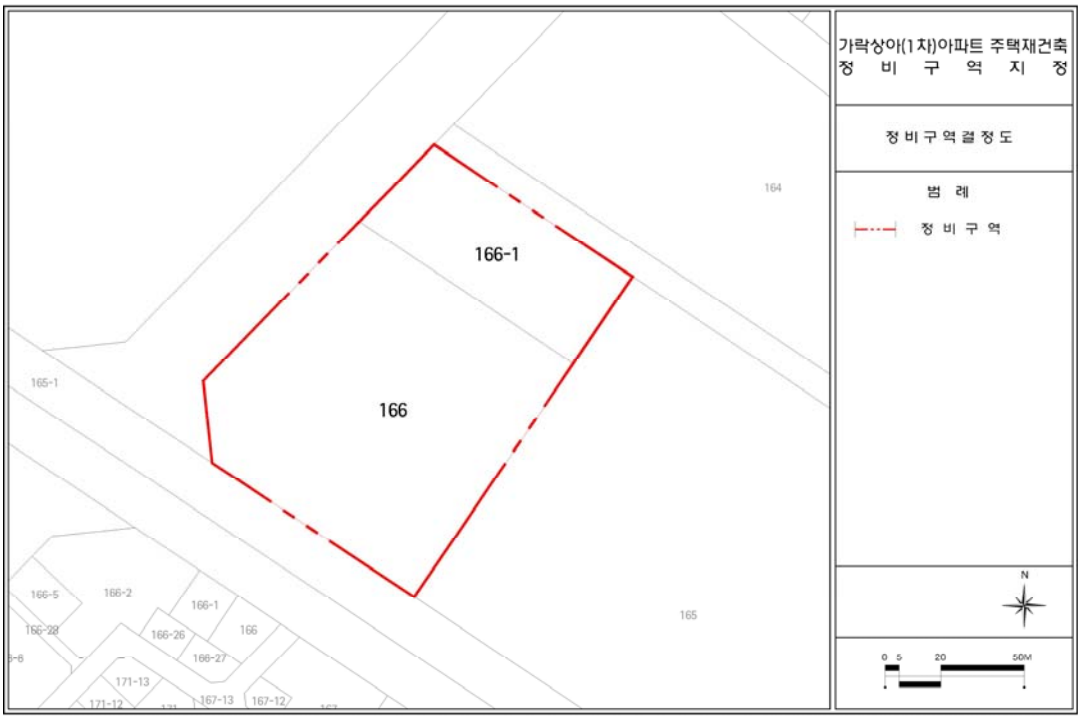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서 참조

5.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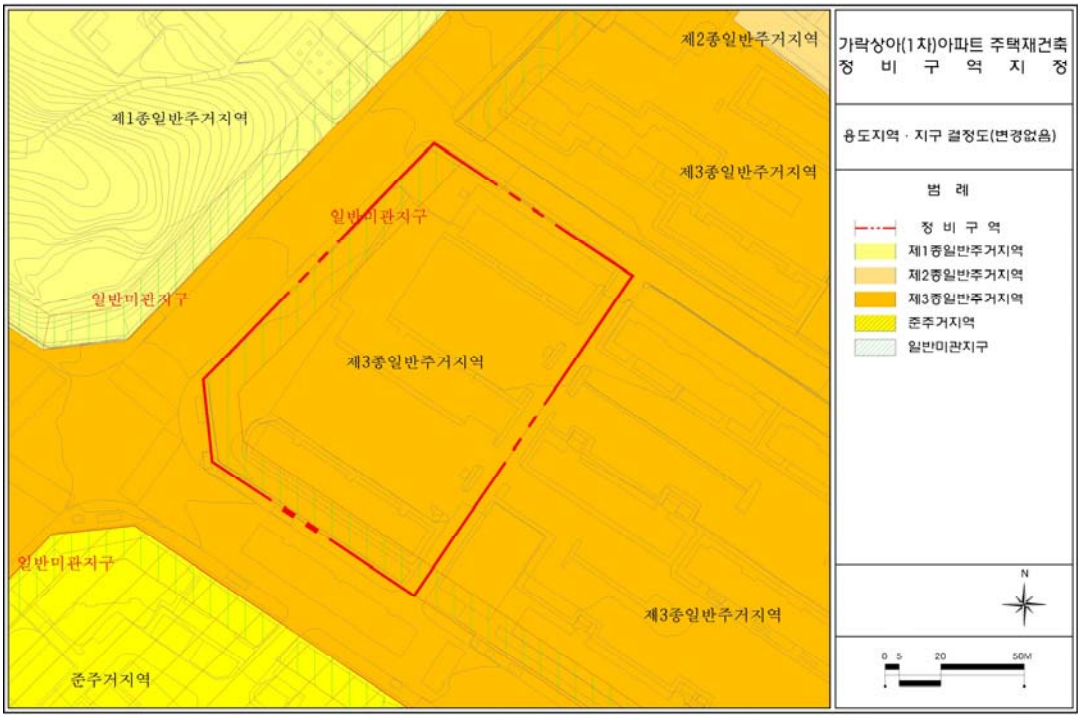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02-2133-7142) 및 송파구 주거재생과(☎ 02-2147-2896)에 관련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구역 결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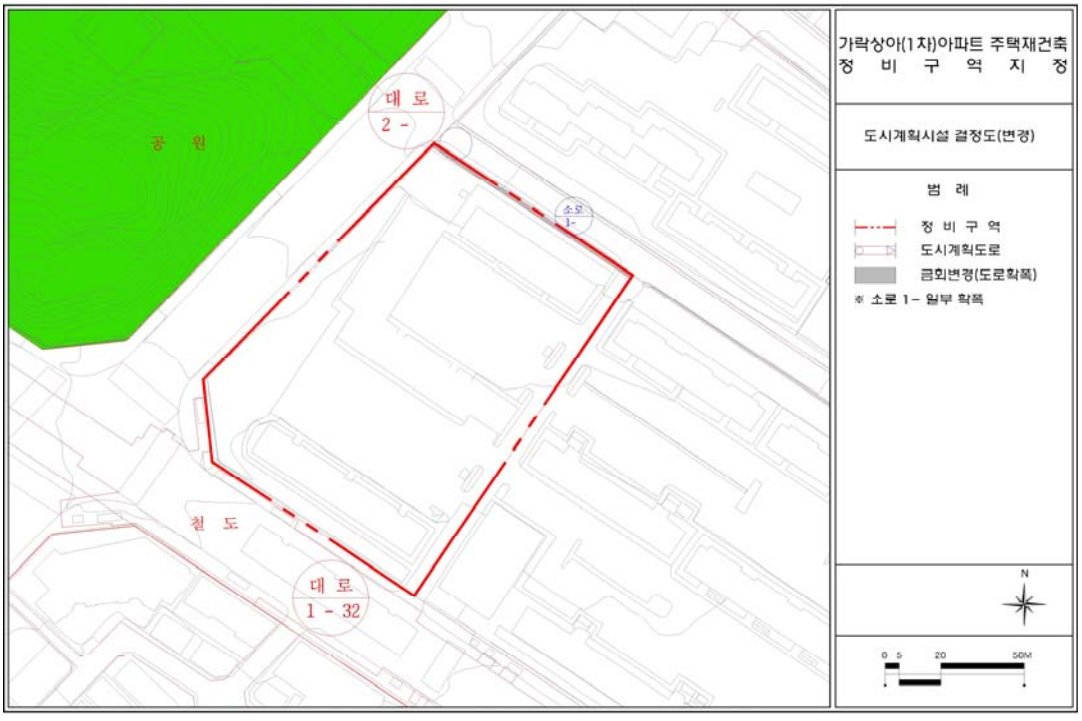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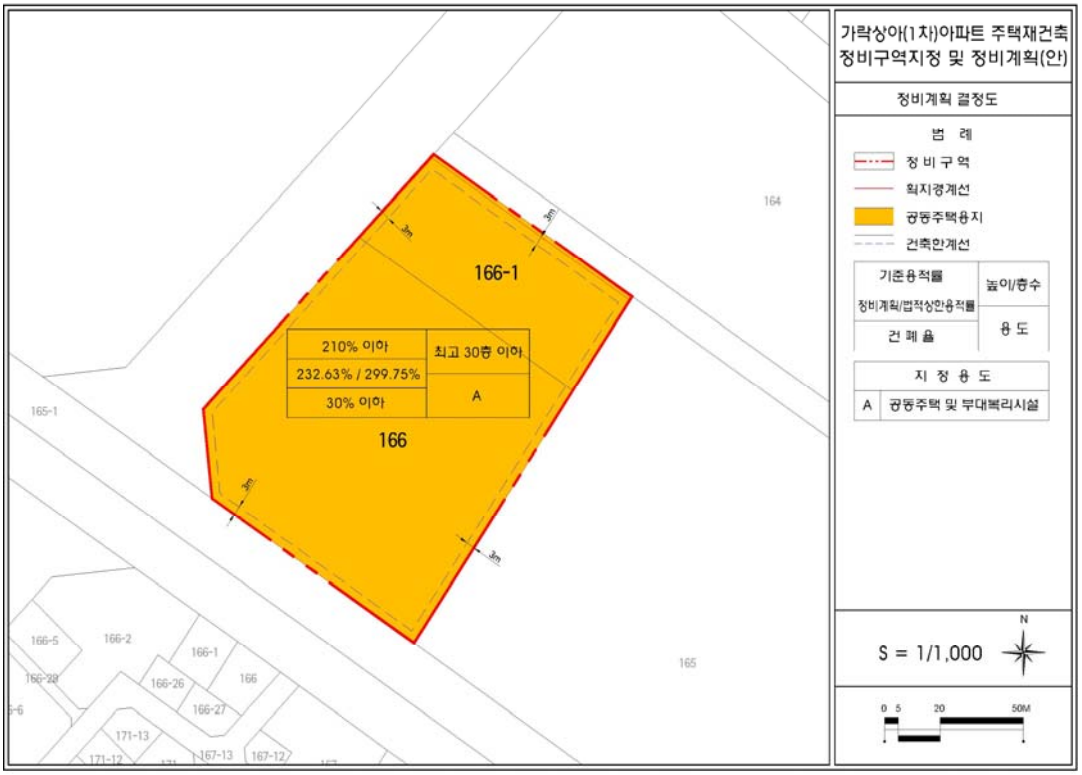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 정비계획 결정도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84호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58호(2004.2.25.)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48호(2005.12.30.)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1·2지구 실시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22호(2017.09.0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2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며,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의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없음)
   - 명 칭 :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 유 형 : 주거지형(시범 뉴타운지구)
   - 위 치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일원
   - 면 적 : 3,492,650.9㎡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변경)
   - 재정비촉진사업 : 도시개발사업 (수용 또는 사용방식)
   - 시행기간
     - 당초 : 2004.02.25. ~ 2017.12.31.
     - 변경 : 2004.02.25. ~ 2018.12.31.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 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 개요(변경 없음)

5. 관계도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 관련도서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전화 : 02-2133-7217) 및 은평구청 도시계획과(전화:351-7406), 서울주택도시공사 토목기술부(전화:02-3410-758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개발제한구역 내 낙후지역 시가지를 개발·정비하여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임대 및 분양주택의 건립을 통해 서민주거생활 안정에 기여
   -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서울시 서북권역의 관문도시로서 새로운 지구중심 창출
   - 지역특성을 고려한 녹지보전방안의 제시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건전한 도시개발이 되도록 유도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일원
   - 면 적 : 3,492,650.9㎡

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시행자

- 당초 :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변창흠)
- 변경 :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신범수 직무대행)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길 621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1지구 : 당초 2004.02.25. ~ 2017.12.31.(변경 없음)
   • 2지구 : 당초 2005.12.30. ~ 2017.12.31.
   변경 2005.12.30. ~ 2018.12.31.
   • 3지구 : 당초 2006.12.28. ~ 2017.12.31.
   변경 2006.12.28. ~ 2018.12.31.

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변경 없음)
   • 수용 및 사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변경 없음)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전화 : 02-2133-7217), 은평구 도시계획과(전화 : 02-351-7406)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토목기술부(전화 : 02-3410-7583)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8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양주 별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11-61호(2011.12.0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3호(2015.02.26.)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65호(2017.03.02.) 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남양주 별내지구 주변도로(서울시구간-화랑로) 확장 및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428호(2017.12.07.)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시행하였기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며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6-84 일원 (변경없음)

○ 시점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6-69 (가스충전소)
○ 종점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6-84 (서울시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남양주 별내지구 주변도로(서울시구간-화랑로) 확장 및 지하차도 설치공사

다. 사업시행 규모 (변경없음)
○ 폭 38→42m, 연장 323m, 면적 18,215㎡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장(LH공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변경)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2015. 02. 26.) ~ 2017. 12. 31. (당 초)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2015. 02. 26.) ~ 2018. 06. 30. (변 경)

바. 자금조달방안 : 붙임 (변경)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변경없음)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함. 단, 사업시행자는 준공 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하여 시설물 관리청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관리청에 인수인계 전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유지관리 시행함. (변경없음)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남양주사업단(☎031-528-5474),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8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용 지 조 서

대로 1-13호선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및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1	노원구 공릉동	26-95	주	13	13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2	노원구 공릉동	26-96	잡	15	15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노원구 공릉동	26-98	대	56	56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4	노원구 공릉동	26-97	잡	1,354	1,35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5	노원구 공릉동	26-93	도	12,544	12,544	서울시	서울시	
6	노원구 공릉동	26-94	학	4,233	4,233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6필지	18,215			

자금조달방안

□ 단계별 집행계획 (당초)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비 고
계	96	20	21	-	-	-	20	35	
용 지 비	41	20	21	-	-	-	-	-	
공 사 비	55 (110)	-	-	-	-	-	20 (50)	35 (60)	서울시구간 (담터1 전체)

□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 고
계	96	20	21	-	-	-	20	25	10	
용 지 비	41	20	21	-	-	-	-	-		
공 사 비	55 (110)	-	-	-	-	-	20 (50)	25 (40)	10 (20)	서울시구간 (담터1 전체)

※ 재원조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예산으로 집행함(공사여건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86호

천왕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372호(2004.11.20)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20호(2005.12.29)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54호(2006.12.28)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69호(2007.12.20)로 도시개발구역 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36호(2008.12.04)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7호(2011.1.6)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52호(2011.12.1)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31호(2012.08.30)로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39호(2012.12.20)로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66호(2013.12.26)로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09호(2014.11.27)로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66호(2014.12.26.)로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06호(2015.12.25.)로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13호(2016.12.22.)고시된 천왕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천왕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없음) : 천왕 도시개발구역

나.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천왕도시개발사업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오류동 일원	484,477.1	

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낙후된 취락지역을 개발·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서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

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명 칭 : 서울도시주택공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번지)
- 대표자의 성명 : 기정- 변 창 흠
  변경- 직무대행 신 범 수

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 (변경)

- 사업 시행기간 : 기정-2004.11.20 ~ 2017.12.31.
  변경-2004.11.20 ~ 2018.12.31
- 사업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바.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구 분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	비고
합 계		484,477.1		484,477.1	100.0	
주거용지	계	220,915.8		220,915.8	45.6	
	공동주택(도시)	10,325.5		10,325.5	2.1	
	공동주택(연립)	4,248.2		4,248.2	0.9	
	공동주택	199,143.8		199,143.8	41.1	
	근린생활시설	7,198.3		7,198.3	1.5	
도시기반시설용지 등	계	263,561.3		263,561.3	54.4	
	도로	79,746.4	증) 136.3	79,882.7	16.4	
	주차장	3,113.0		3,113.0	0.6	주차장 3
	광장	671.1		671.1	0.1	교통광장 2
	공원	87,128.0		87,128.0	18.0	근린공원 2(유수지 6,400㎡포함) 어린이공원 2, 소공원 1
	녹지	44,278.7	증) 9.2	44,287.9	9.2	경관녹지 3, 완충녹지 4 [완충녹지1내도시가스 정압기 9㎡점용]
	학교	22,409.2		22,409.2	4.6	유1, 초1, 중1
	공공청사	5,556.6	감) 1,532.1	4,024.5	0.8	우체국
	교육시설	15,409.9		15,409.9	3.2	신용보증기금(존치시설)
	사회복지시설	2,658.6		2,658.6	0.6	
	종교시설	2,589.8		2,589.8	0.5	종교시설 4
	문화시설	-	증) 1,386.6	1,386.6	0.3	문화시설1, 2

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생략

아.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1) 기반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로(총괄)

(가) 도로 총괄조서(변경없음)

(2) 주차장(변경없음)

(3) 광장(변경없음)

(4) 녹지(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	-	-	-	44,278.7	증) 9.2	44,287.7	-	
계	-	-	-	-	18,030.0	-	18,030.0	-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천왕동 산15-4 일원	1,440.3	-	1,440.3	'05.12.29 서고 제2005-420호	완충녹지1내 도시가스 정압기 9㎡ 점용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천왕동 86 일원	7,506.3	-	7,506.3	'05.12.29 서고 제2005-420호	지방도 397호선 좌측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천왕동 79-6 일원	7,910.7	-	7,910.7	'05.12.29 서고 제2005-420호	지방도 397호선 우측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천왕동 138 일원	1,172.7	-	1,172.7	'11.1.6 서고 제2011-7호	
계	-	-	-	-	26,248.7	증) 9.2	26,257.9	-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오류동 산39-33 일원	2,843.3	-	2,843.3	'05.12.29 서고 제2005-420호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오류동 산36-8 일원	7,396.1	-	7,396.1	'05.12.29 서고 제2005-420호	
변경	3	녹지	경관녹지	천왕동 산25-10 일원	16,009.3	증) 9.2	16,018.5	'05.12.29 서고 제2005-420호	

(5) 공원(변경없음)

(6) 학교(변경없음)

(7) 공공청사(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	-	-	-	5,556.6	감) 1,532.1	4,024.5	-	
폐지	1	공공청사	-	천왕동 14 일원	1,532.1	감) 1,532.1	-	'05.12.29 서고 제2005-420호	
기정	2	공공청사	-	천왕동 산21-1 일원	4,024.5	-	4,024.5	'05.12.29 서고 제2005-420호	

(8) 문화시설(신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	-	-	-	-	증) 1,386.6	1,386.6	-	
신설	1	문화시설	-	천왕동 14 일원	-	증) 1,000.0	1,000.0	-	
신설	2	문화시설	-	천왕동 14 일원	-	증) 386.6	386.6	-	

(9)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10) 방재시설(변경없음)

2. 천왕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천왕도시개발구역

나.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낙후된 취락지역을 개발·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서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

다.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천왕도시개발사업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오류동 일원	484,477.1	

라. 시행자 (변경)

- 명 칭 : 서울도시주택공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번지)
- 대표자의 성명 : 기정- 변 창 흠
  변경- 직무대행 신 범 수

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 (변경)

- 사업 시행기간 : 기정-2004.11.20 ~ 2017.12.31.
  변경-2004.11.20 ~ 2018.12.31
- 사업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로(총괄)

(가) 도로 총괄조서(변경없음)

(2) 주차장(변경없음)

(3) 광장(변경없음)

(4) 녹지(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	-	-	-	44,278.7	증) 9.2	44,287.7	-	
계	-	-	-	-	18,030.0	-	18,030.0	-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천왕동 산15-4 일원	1,440.3	-	1,440.3	'05.12.29 서고 제2005-420호	완충녹지1내 (도시가스 정압기 9㎡)점용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천왕동 86 일원	7,506.3	-	7,506.3	'05.12.29 서고 제2005-420호	지방도 397호선 좌측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천왕동 79-6 일원	7,910.7	-	7,910.7	'05.12.29 서고 제2005-420호	지방도 397호선 우측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천왕동 138 일원	1,172.7	-	1,172.7	'11.1.6 서고 제2011-7호	
계	-	-	-	-	26,248.7	증) 9.2	26,257.9	-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오류동 산39-33 일원	2,843.3	-	2,843.3	'05.12.29 서고 제2005-420호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오류동 산36-8 일원	7,396.1	-	7,396.1	'05.12.29 서고 제2005-420호	
변경	3	녹지	경관녹지	천왕동 산25-10 일원	16,009.3	증) 9.2	16,018.5	'05.12.29 서고 제2005-420호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경관녹지	변경 면적 : 16,009.3㎡ → 16,018.5㎡ 증) 9.2㎡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위한 경관녹지 변경

(5) 공원(변경없음)

(6) 학교(변경없음)

(7) 공공청사(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	-	-	-	5,556.6	감) 1,532.1	4,024.5	-	
폐지	1	공공청사	-	천왕동 14 일원	1,532.1	감) 1,532.1	-	'05.12.29 서고 제2005-420호	
기정	2	공공청사	-	천왕동 산21-1 일원	4,024.5	-	4,024.5	'05.12.29 서고 제2005-420호	

■ 건축범위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고
공공청사 ②	60%이하	200%이하	5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청사	폐지 면적 : 1,532.1㎡ → 0㎡ 감) 1,532.1㎡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위한 공공청사 폐지

(8) 문화시설(신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	-	-	-	-	증) 1,386.6	1,386.6	-	
신설	1	문화시설	-	천왕동 14 일원	-	증) 1,000.0	1,000.0	-	
신설	2	문화시설	-	천왕동 14 일원	-	증) 386.6	386.6	-	

■ 건축범위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고
문화시설 ①, 문화시설 ②	60%이하	200%이하	5층이하	제2종일반 주거지역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문화시설	신설 면적 : 1,000㎡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위한 문화시설 신설
2	문화시설	신설 면적 : 386.6㎡	

(9)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10) 방재시설(변경없음)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1)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연립주택용지 (변경없음)

(나) 도시형생활주택용지 (변경없음)

(다)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라)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마) 학교용지 (변경없음)
(바) 공공청사용지 (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합 계		5,556.6	-	-	5,556.6	
변경			4,024.5	-	-	4,024.5	
기정	공공청사	공-1	1,532.1	-	구로구 천왕동 14잡 일원	1,532.1	
변경			-			-	
기정	공공청사	공-2	4,024.5	-	구로구 천왕동 산21-1임 일원	4,024.5	

(사) 사회복지시설용지 (변경없음)
(아) 종교용지 (변경없음)
(자)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차) 문화시설용지 (신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1,386.6	-	1,386.6	
문화시설	문-1	1,000.0	구로구 천왕동 14 일원	1,000.0	
문화시설	문-2	386.6	구로구 천왕동 14 일원	386.6	

(카) 교육시설용지 (변경없음)

(2) 건축물에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연립주택용지 (변경없음)
(나) 도시형생활주택용지 (변경없음)
(다)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라)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마) 학교용지 (변경없음)

(바) 공공청사용지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청사	공-2 (공-1 폐지)	건축물 용 도	•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바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4호의 가목 -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는 제외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5층이하
		형 태	• 민간부문 시행지침 51조 참조 (단, 보안을 요하는 시설일 경우 높이제한이 없고 차폐된 담장설치 가능) • 옥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바닥은 잔디블럭이나 투수성 포장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재료 사용권장
		색 채	• 건축물 외벽 및 지붕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지정 - 대로3-190호선 변 : 건축한계선 3m • 건축선내 보도연계형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사) 문화시설용지 (신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문화시설	문-1, 문-2	건축물 용 도	•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가목(소매점) (1천㎡ 미만)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나목(휴게음식점) (300㎡ 미만)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바목(공공도서관) (1,000㎡ 미만)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4호 가목(공연장) (500㎡ 미만)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2호 가목(청소년문화의집) -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는 제외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5층이하
		형 태	• 민간부문 시행지침 51조 참조 (단, 보안을 요하는 시설일 경우 높이제한이 없고 차폐된 담장설치 가능) • 옥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바닥은 잔디블럭이나 투수성 포장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재료 사용권장
		색 채	• 건축물 외벽 및 지붕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지정 - 대로3-190호선 변 : 건축한계선 3m • 건축선내 보도연계형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아) 사회복지시설용지 (변경없음)
(자) 종교용지 (변경없음)
(차)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카) 교육시설용지 (변경없음)
사.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변경없음) : 생략

3. 기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첨부
가. 개발계획 관련 결정(변경)도
나. 실시계획 관련 결정(변경)도
다. 지형도면

4. 인가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다음의 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고시한 날로부터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 공람기간 : 14일 이상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 02)2133-4647)
  - 구로구청 도시계획과 (☏ 02)860-2944)
  - 서울도시주택공사 택지사업본부 택지계획부 (☏ 02)3410-7596)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87호

도시관리계획(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및 이수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00호(2010.06.03.)로 도시관리계획(이수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특별계획구역 신설 및 세부개발계획)변경결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35호(2015.10.29.)로 변경결정 된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배동 425-2번지 일대 이수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2에 대하여 2017년 제17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7.11.08.)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취지
○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수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2에 대하여 건축계획 등 변화된 여건에 맞춰 지구단위계획 및 세부개발계획을 변경 결정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방배동 444번지 일대	475,540	

[2]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부분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 로 : 변경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2	8~9	국지도로	218 (54)	서초구 방배동 491-2	서초구 방배동 491-2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0-200호 (2010.06.03)	
변경	소로	2	2	8	국지도로	218	서초구 방배동 491-2	서초구 방배동 491-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4	6~7	국지도로	67	서초구 방배동 491-1	서초구 방배동 491-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0-200호 (2010.06.03)	
변경	소로	3	4	6	국지도로	67	서초구 방배동 491-1	서초구 방배동 491-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5	6~7	국지도로	122	서초구 방배동 491-1	서초구 방배동 491-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0-200호 (2010.06.03)	
변경	소로	3	5	6	국지도로	122	서초구 방배동 491-1	서초구 방배동 491-1	일반도로	-		

※ 이수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2외의 도로 결정사항은 변경없음

- 도로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소로2-2	◦ 도로 폭원 변경 - 연장 : 54m - 폭원 : 8m~9m → 8m	◦ 건축계획 축소에 따른 건폐율 완화 불필요 및 도로운영 체계 등을 고려 방주교회 부지 내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한 보도부속형 전면공지(폭 2m)를 조성하고 도로 폭원 축소
변경	소로3-4	◦ 도로 폭원 변경 - 연장 : 67m - 폭원 : 6m~7m → 6m	◦ 건축계획 축소에 따른 건폐율 완화 불필요 및 도로운영 체계 등을 고려 방주교회 부지 내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한 보도부속형 전면공지(폭 2m)를 조성하고 도로 폭원 축소
변경	소로3-5	◦ 도로 폭원 변경 - 연장 : 122m - 폭원 : 6m~7m → 6m	◦ 건축계획 축소에 따른 건폐율 완화 불필요 및 도로운영 체계 등을 고려 방주교회 부지 내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한 보도 및 차도 부속형 전면공지(폭 3m) 조성하고 도로 폭원 축소

2) 주차장 : 변경없음
3) 자동차정류장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라. 방재시설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나.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이수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1 계획지침, 이수1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이수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사당주차장부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사당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 메트로본사부지 특별계획구 역계획지침, 대교부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동작대로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동작대로변1,2,3,4) : 변경없음
○ 이수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2 계획지침 : 변경
- 구역개요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이수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2	서초구 방배동 425-2번지 일대	2,617.2	

- 특별계획구역 지침

구분		계획내용(기정)	계획내용(변경)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공공기여		• 배후주거지 연결도로 : 폭원 1m 도로 (보도)구간 확보 • 신축건축물내 공공시설(지역문화센터) : 204.7㎡, 건축물 1층 위치 - 지상권 설정	• 열린도서관 설치 - 저층부(1층 또는 2층), 면적 250㎡ - 사용권(사용대차계약 등)설정
용도	지정	-	-
	불허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1,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주거복합제외)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 제15호의 숙박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1,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주거복합제외)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 제15호의 숙박시설

구분		계획내용(기정)	계획내용(변경)
용도	불허	- 제16호의 위락시설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제28호의 장례식장	- 제16호의 위락시설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제28호의 장례식장
	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건폐율		·63.35%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건폐율 완화)	·60%이하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300%이하 / 500%이하 / 800%이하	·300%이하 / 500%이하 / 800%이하
높이		·최고높이 40m이하(사선제한 배제)	·최고높이 40m이하(사선제한 배제)
건축선	건축한계선	·남, 북, 동측 1m 지정	·북, 동측 2m, 남측 3m 지정
	벽면한계선	-	-
교통처리계획		·주차출입구 지정	·주차출입구 지정
기타	공개공지	·지상부 전면공지와 연계하여 공개공지 확보	·지상부 전면공지와 연계하여 공개공지 확보
	쌈지형공지	-	·가로변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보행활동 활성화
	전면공지	·가로변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보행활동 활성화	·가로변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보행활동 활성화

※ 쌈지형공지는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00호(2010.6.3.) 결정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35호(2015.10.29.) 변경시 누락에 따른 정정

4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Ⅲ.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이수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2	방배동 425-2번지 일대	2,617.2	-	2,617.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00호 (2010. 6. 3)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2,617.2	-	2,617.2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617.2	-	2,617.2	100.0	

2.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로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2	8~9	국지도로	218 (54)	서초구 방배동 491-2	서초구 방배동 491-2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0-200호 (2010.06.03)	
변경	소로	2	2	8	국지도로	218	서초구 방배동 491-2	서초구 방배동 491-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4	6~7	국지도로	67	서초구 방배동 491-1	서초구 방배동 491-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0-200호 (2010.06.03)	
변경	소로	3	4	6	국지도로	67	서초구 방배동 491-1	서초구 방배동 491-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5	6~7	국지도로	122	서초구 방배동 491-1	서초구 방배동 491-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0-200호 (2010.06.03)	
변경	소로	3	5	6	국지도로	122	서초구 방배동 491-1	서초구 방배동 491-1	일반도로	-		

- 도로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소로2-2	◦ 도로 폭원 변경 - 연장 : 54m - 폭원 : 8m~9m → 8m	◦ 건축계획 축소에 따른 건폐율 완화 불필요 및 도로운영 체계 등을 고려 방주교회 부지 내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한 보도부속형 전면공지(폭 2m)를 조성하고 도로 폭원 축소
변경	소로3-4	◦ 도로 폭원 변경 - 연장 : 67m - 폭원 : 6m~7m → 6m	◦ 건축계획 축소에 따른 건폐율 완화 불필요 및 도로운영 체계 등을 고려 방주교회 부지 내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한 보도부속형 전면공지(폭 2m)를 조성하고 도로 폭원 축소
변경	소로3-5	◦ 도로 폭원 변경 - 연장 : 122m - 폭원 : 6m~7m → 6m	◦ 건축계획 축소에 따른 건폐율 완화 불필요 및 도로운영 체계 등을 고려 방주교회 부지 내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한 보도 및 차도 부속형 전면공지(폭 3m) 조성하고 도로 폭원 축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 및 조성 계획 : 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비 고
기정	-	I	2,617.2	서초구 방배동 425-2번지일대	
변경	A7	A7	2,617.2	서초구 방배동 425-2번지일대	서울시 고시 제2015-335호(2015.10.29.)에 따른 변경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계획 : 변경없음

○ 불허용도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전층 불허 용 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1,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주거복합제외)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 제15호의 숙박시설 - 제16호의 위락시설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제28호의 장례식장	좌동

※ 공동개발이 해제되거나 변경되어 생기는 이면부 필지는 이면부의 용도지침을 따름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4조에 의한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용도제한 규정 준수

※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한 상대정화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동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불허용도는 불허(단,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 제외)

○ 권장용도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전층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좌동

※ 권장용도의 인센티브 :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는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연면적(주차장 제외)이 건축물 전체연면적(주차장 제외)의 2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나. 건축물 건폐율 계획 : 변경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건폐율	63.35% 이하	60% 이하	63.35% 이하	60% 이하	건축규모 축소에 따른 건폐율 변경

○ 기부채납에 따른 건폐율 완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건폐율 완화)

- 기 정

구 분	내 용	비 고
구역면적	2,617.2㎡	-
기부채납(도로)	146.0㎡ (5.6%)	도로(보도)
기부채납후 대지면적	2,471.2㎡	-
기부채납에 따른 건폐율 완화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 60% × (1 + 146.0㎡ / 2,671.2㎡) = 63.35%	

- 변 경 : 건축계획 축소에 따른 폐 지

다. 건축물 용적률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기준용적률	300% 이하	300% 이하
허용용적률	500% 이하	500% 이하
상한용적률	800% 이하	800% 이하

○ 기준용적률의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 폐지

- 기 정

<table>
<tr><th colspan="2">항목</th><th>세분</th><th colspan="2">인센티브 운영기준</th><th>비 고</th></tr>
<tr><td rowspan="8">의무형
(20%
이상)</td><td rowspan="8">환경친화</td><td>자연지반보존</td><td>보존시</td><td>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2이내</td><td>-</td></tr>
<tr><td>옥상녹화</td><td>준수시</td><td>기준용적률 ×
(녹화면적÷대지면적)×0.1이내</td><td>•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td></tr>
<tr><td>녹생주차장,
투수성 포장</td><td>준수시</td><td>기준용적률 ×(설치면적/대지면적)×0.1
으로서 기준용적률×0.05이내</td><td></td></tr>
<tr><td>중수도시설 설치</td><td>준수시</td><td>기준용적률 × 0.04이내</td><td>• 총 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td></tr>
<tr><td>빗물이용시설 설치</td><td>준수시</td><td>기준용적률 × 0.04이내</td><td>• 서울특별시 빗물 저수조 설치지침
(2004.12)에 적합할 경우 적용</td></tr>
<tr><td>신재생에너지 사용</td><td>준수시</td><td>기준용적률 × 0.05이내</td><td>•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
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td></tr>
<tr><td>에너지 절약계획 도입</td><td>준수시</td><td colspan="2">
<table>
<tr><th>구분</th><th>에너지절감율</th><th>에너지성능지표</th><th>친환경건축물인증</th><th>인센티브량</th></tr>
<tr><td>1등급</td><td>33.5%이상</td><td>81점이상</td><td>85점 이상</td><td>기준용적률×0.08이내</td></tr>
<tr><td>2등급</td><td>23.5~33.5%미만</td><td>74~81점 미만</td><td>75~85점 미만</td><td>기준용적률×0.05이내</td></tr>
</table>
</td><td></td></tr>
<tr><td rowspan="13">유도형
(30%
이상)</td><td rowspan="2">공동
개발</td><td>공동개발
(지정/권장)</td><td>준수시</td><td>기준용적률 × α이내</td><td>간선부 / 이면부
• 2필지 : α = 0.3 / • 2필지 : α = 0.2
• 3~4필지: α=0.32 / • 3~4필지: α=0.22
• 5필지 : α = 0.35 / • 5필지 : α = 0.25
※필지간 자율적 공동개발시 부정형이거나 세장비 1:3이상이되는 경우 자율적 공동개발 불허</td></tr>
<tr><td>맞벽건축</td><td></td><td>기준용적률 × 0.1이내</td><td></td></tr>
<tr><td rowspan="2">대지내
공지</td><td>공개공지</td><td>조성형태
및 규모</td><td>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2이내</td><td></td></tr>
<tr><td>쌈지형,
침상형공지</td><td>조성형태
및 규모</td><td>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2이내</td><td></td></tr>
<tr><td rowspan="2">건축물
용도</td><td>지정 또는 권장</td><td>전층권장</td><td>기준용적률× (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1이내</td><td></td></tr>
<tr><td>특정층
(꼭대기층)개방</td><td>특정층
권장</td><td>기준용적률×(설치면적÷해당층
바닥면적)×0.05이내</td><td></td></tr>
<tr><td rowspan="2">도시경관
개선</td><td>지하철 및 지중화
시설 건축물내 설치</td><td>준수시</td><td>기준용적률 × 0.2이내</td><td>• 지하철 및 지중화관련 시설물을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td></tr>
<tr><td>건축물 등 형태</td><td>준수시</td><td>기준용적률 × 0.2이내</td><td></td></tr>
<tr><td>주차계획</td><td>공동주차장</td><td>준수시</td><td>기준용적률 × 0.1이내</td><td></td></tr>
<tr><td>건축물내
공공시설
제공시</td><td>건물내 공공시설 설치</td><td>제공시</td><td>기준용적률 × 0.3이내</td><td>•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td></tr>
<tr><td rowspan="4">규제형
(50%
이내)</td><td>획지
계획</td><td>획지단위개발
(필지교환)</td><td>준수시</td><td>기준용적률 × 0.2이내</td><td></td></tr>
<tr><td>대지내
공지</td><td>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td><td>지침
준수시</td><td>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2.5이내</td><td>• 건축선 준수에 의한 후퇴부분 면적으로 산정</td></tr>
<tr><td>대지내
통로</td><td>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도로)</td><td>준수시</td><td>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α이내</td><td>• 피로티 구조 : α = 1.5
• 개방형 구조 : α = 2</td></tr>
<tr><td>주차계획</td><td>공동주차통로 및
출입구</td><td>준수시</td><td>기준용적률 × 0.1이내</td><td></td></tr>
</table>

- 변경 : 폐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35호(2015.10.29.)의 인센티브 항목 및 기준(유형B) 반영에 따른 폐지

○ 인센티브 항목 및 기준(유형B) : 신설

-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항목	세분	세부계획기준	비 고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권장)	기준용적률 x α	• 2~3필지 : α= 0.3 • 4필지 이상 : α= 0.4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x α}	• 필로티구조 : α= 1.0 • 침상형구조 : α= 1.6 • 개방형구조 : α= 2.0
	쌈지형공지, 침상형공지	기준용적률 x (제공면적 / 대지면적) x α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x (제공면적 / 대지면적) x 2	• 제공면적 산정시 의무면적은 제외함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 / 대지면적) x 1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x (권장용도 면적 / 연면적) x 1	• 20%이상 설치시(주차장 제외)
보행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	기준용적률 x 0.2	•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건축물의 형태/외관	옥외광고물	기준용적률×0.1	• 서울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적용
	야간경관조명	기준용적률×0.1	
건축물 개방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x (제공면적/연면적) x 0.2	•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계획수립시 결정한 시설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자치구 포함)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항목	세분	세부계획기준		비 고
환경친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그린1등급) : 기준용적률 x 0.24 우수(그린2등급) : 기준용적률 x 0.16 우량(그린3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두기준 모두 1등급 만족시 : 기준용적률 x 0.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준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대상 준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 x 0.16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준용적률 x 0.12 에너지 효율 3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중수도 시설설치	기준용적률 x 0.04		• 총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 시설설치	기준용적률 x 0.04		• 빗물저류 · 이용시설용량(ton) 및 빗물 침투시설 - 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면적 x 0.02 이상 설치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x (녹화면적 / 대지면적) x 0.1		• 법적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 면적 30% 까지만 허용
	자연지반 보존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 / 대지면적) x 0.2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 주차장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 / 대지면적) x 0.1		• 기준용적률 x 0.05 이내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35호(2015.10.29.)의 인센티브 항목 및 기준(유형B) 반영

라. 건축물 높이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높 이	40m 이하	좌 동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배치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건축 한계선	◦ 남, 북, 동측 1m 지정	◦ 북, 동측 2m, 남측 3m 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 (폭원 : 1m) -동, 남, 북측도로변	◦ 동, 북측도로변 : 2m (보도) ◦ 남측도로변 : 3m (차도 1m, 보도 2m)	

※ 대상지 남측 사유지(방주교회 소유부지)에 조성되는 차도 및 보도는 토지주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민법 제741조' 등에 의거 도로 점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음

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 주변경관과 시각적인 조화를 이루는 형태조성 및 가로경관의 연속성 배려 ◦ 사선 절제형 건축형태 금지 ◦ 가로변에 면한 옥상부 설비시설이 직접노출되는 것을 금지(실외기, 배관 등)	

3.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 개 공 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유도	◦지상부 전면공지와 연계하여 공개공지 확보	◦ 지상부 전면공지와 연계하여 공개공지 확보 - 1개소 설치 (설치면적 : 317.56㎡)	◦1개소 설치 (설치면적 : 206㎡이상)	
쌈지형 공 지	◦간선도로변내 면하여 선형으로 설치	◦가로변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보행활동 활성화	◦ 가로변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보행활동 활성화 - 1개소 설치 (설치면적 : 88.60㎡)	◦1개소 설치 (설치면적 : 181㎡이상㎡)	
전 면 공 지	◦가로변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보행활동 활성화	◦가로변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보행활동 활성화	-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전면공지 조성 - 동, 북측도로변 : 보도부속형 2m - 남측도로변 : 차도부속형 1m 보도부속형 2m	

※ 쌈지형공지는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00호(2010.6.3.) 결정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35호(2015.10.29.) 변경시 누락에 따른 정정

4. 경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도시이미지 구축방안	도시스카이라인 구축방안	도시이미지 구축방안	도시스카이라인 구축방안
경 관	◦ 일반상업지역내 이면부 이므로 활동적인 도시이미지가 형성되도록 유도	중층화	◦ 건축물의 시각적 상징성 확보 ◦ 건물형태의 특화 유도	◦ 이면부 높이계획에 따른 중층 건축 계획

5.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

○ 기 정

구 분	위 치	적용기준	비 고
일방통행구간	◦ 이면도로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일방통행 시행 등 시행	이면도로

○ 변 경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기 정	변 경
교통처리계획	◦ 주차출입구 지정	-	◦ 대상지 남측에 주차출입구 지정

※ 일방통행구간(이면도로)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일방통행 시행 등

6.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환경친화요소

- 옥상녹화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옥상조경	-	◦ 녹지공간의 확대방안으로 옥상조경 ◦ 친환경적 건축물 유도	-

7. 공공기여 계획 : 변경

○ 기 정

- 토지 기부채납 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2,617.2	100.0	
교회부지		2,471.2	94.40	
기부채납	소 계	146.0	5.60	
	도 로	146.0	5.60	

- 건축물 지상권설정(지상1층부)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교회부지		2,617.2	-	
기부채납	소 계	204.7	8.38	
	지역문화센터	204.7	8.38	◦ 지상1층(구분지상권설정) - 전용면적 : 165.7㎡ - 공용면적 : 39.0㎡

○ 변 경

- 토지 기부채납 계획 : 폐지
  - 폐지사유 : 건축계획 축소에 따른 건폐율 완화 필요성이 없어지고 건축한계선을 통한 보도 및 차도 전면공지 제공에 따라 보행 및 차량 통행이 가능하므로 기부채납 계획 폐지
- 건축물 사용권제공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공공기여	- 열린도서관 설치 · 저층부(1층 또는 2층), 면적 250㎡ · 사용권(사용대차계약 등) 설정	- 위치 : 저층부(1층부 또는 2층부) - 면적 : 250㎡ - 운영주체 : 서초구 - 운영기간 : 건축물이 멸실 될 때까지 - 사업주(방주교회)와 서초구간의 사용권 (사용대차계약 등)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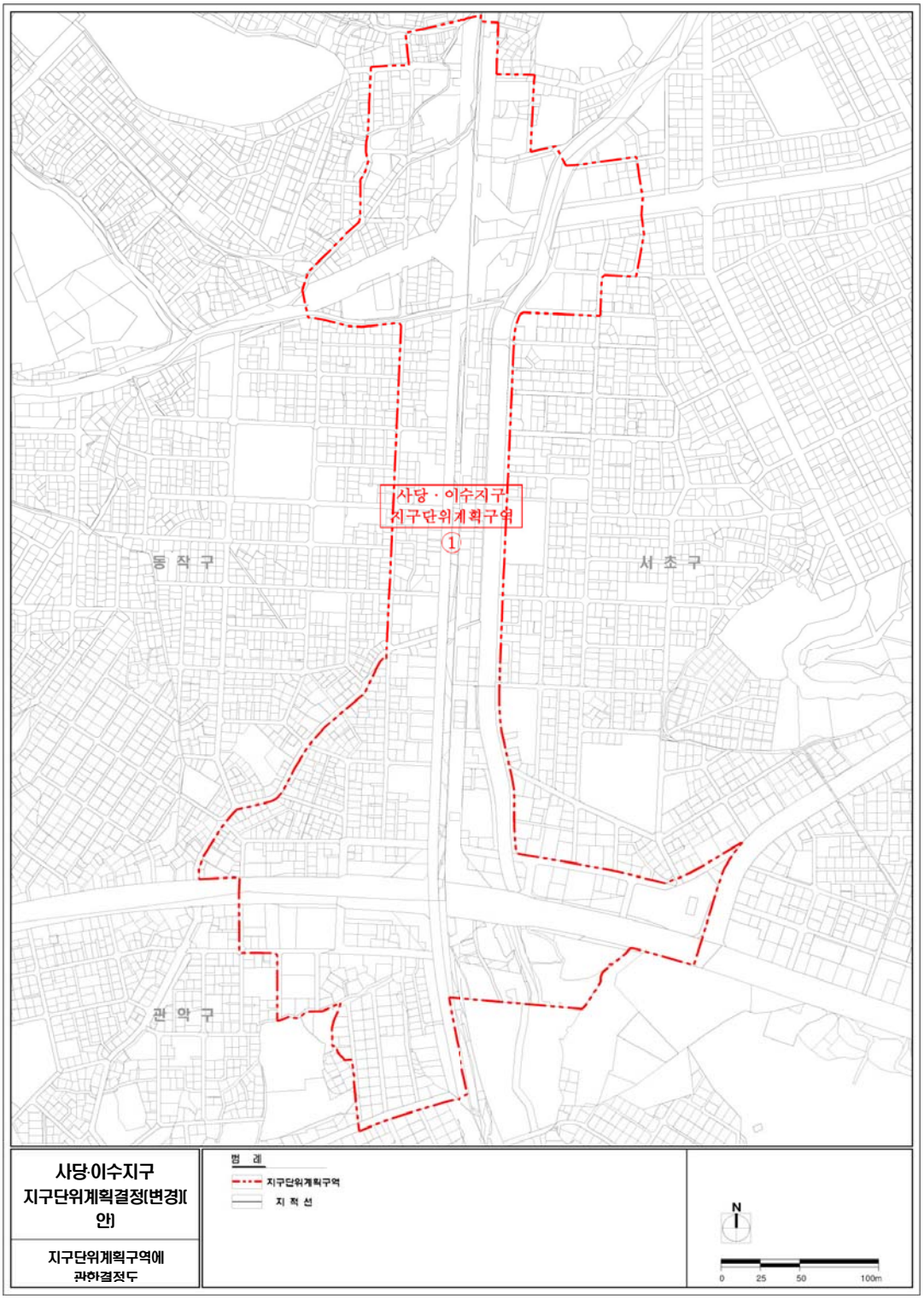
Ⅳ.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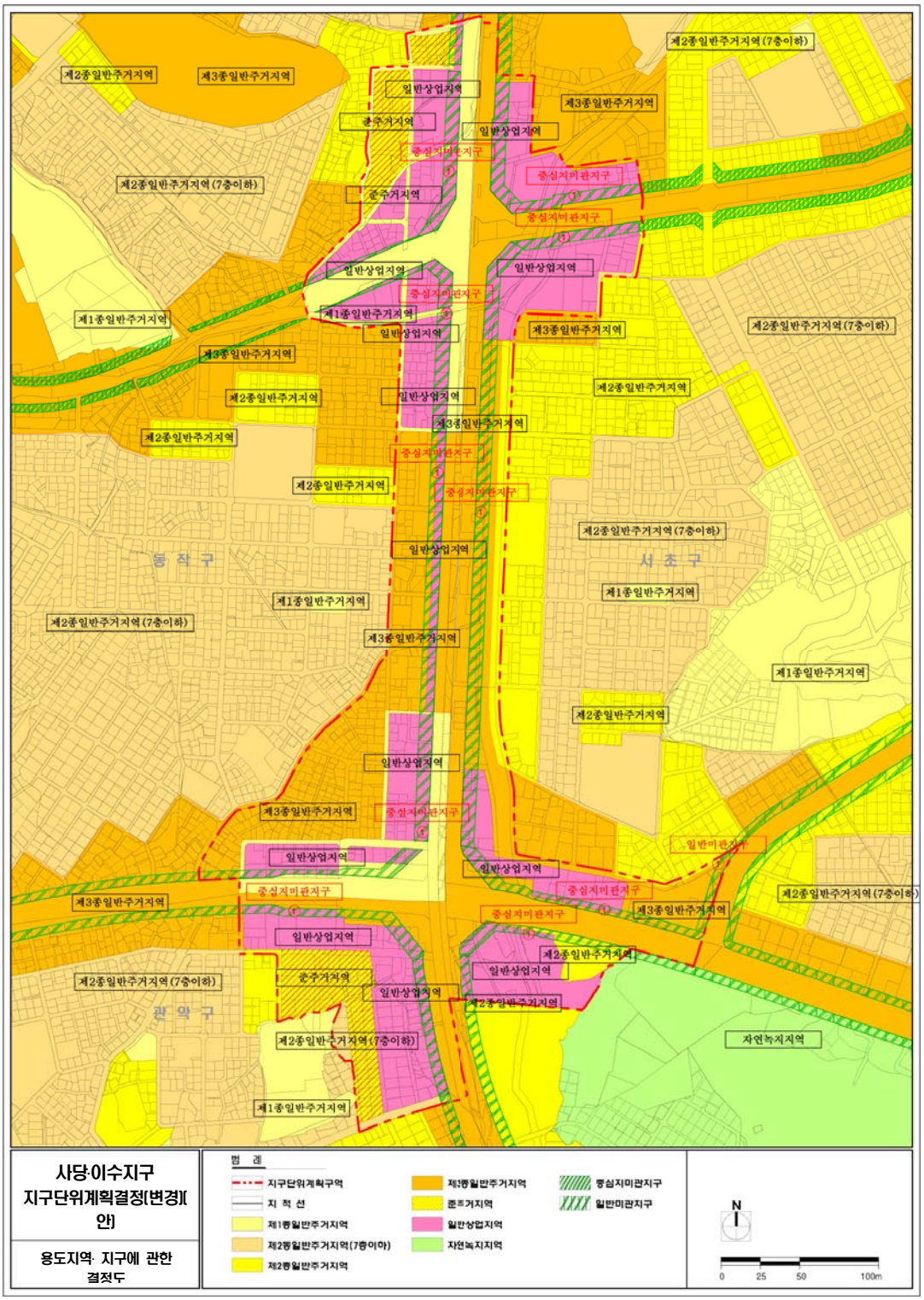
Ⅴ.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8) 및 서초구 균형개발과(☎02-2155-6792)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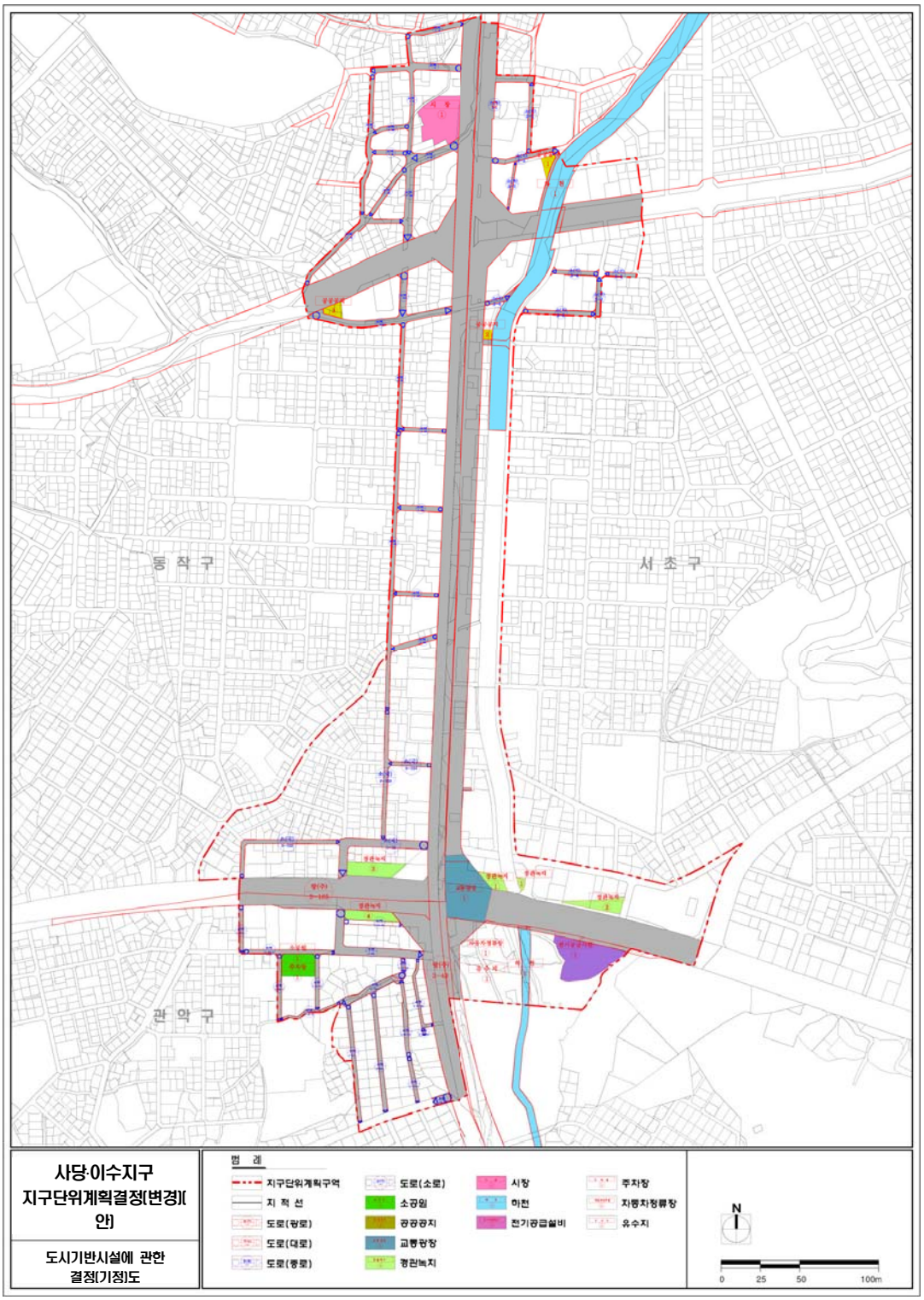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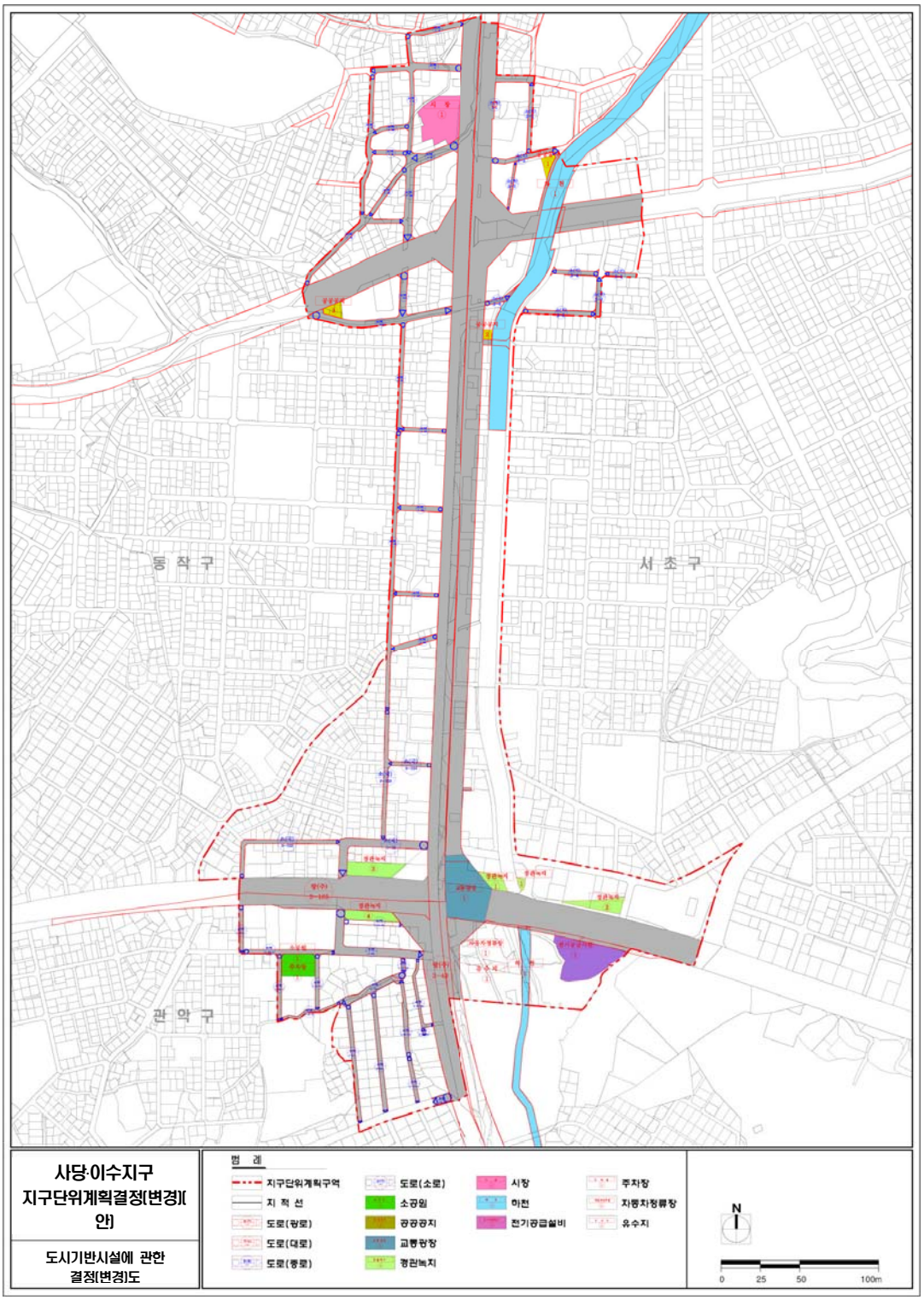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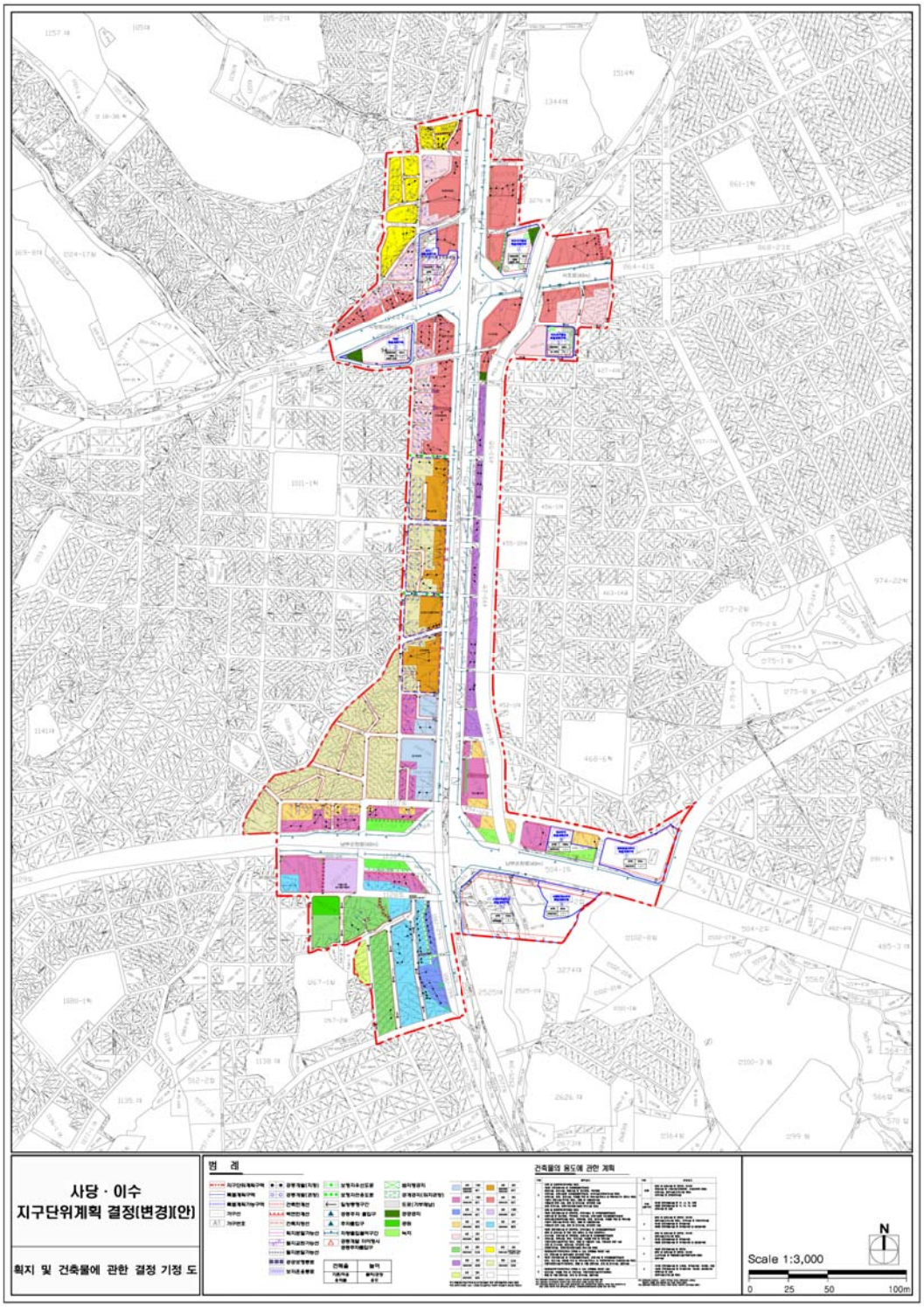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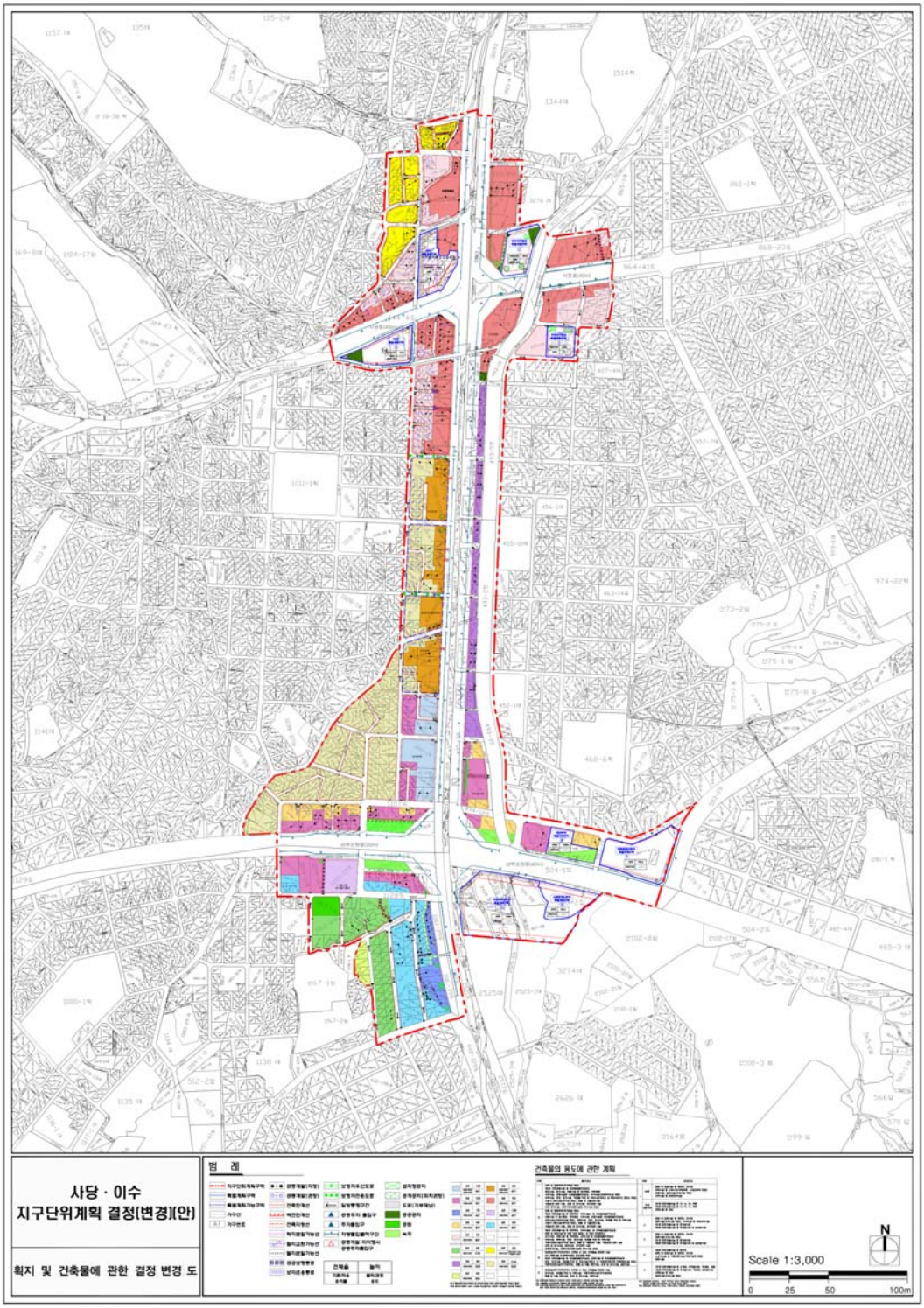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



○ 획지 및 건축물 등의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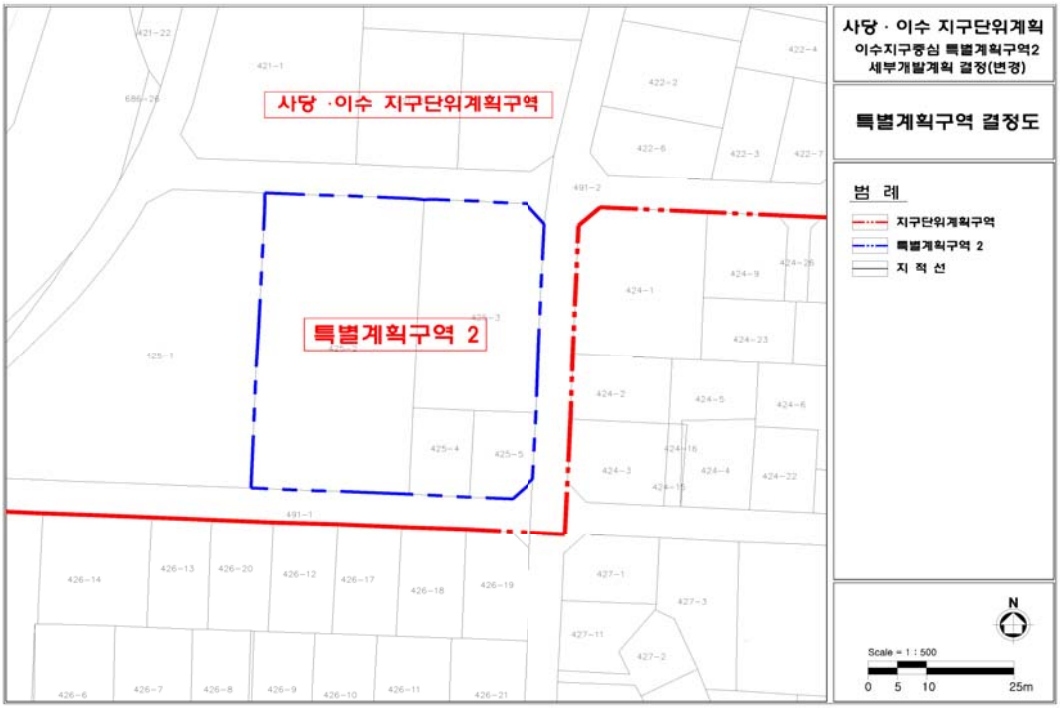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의 관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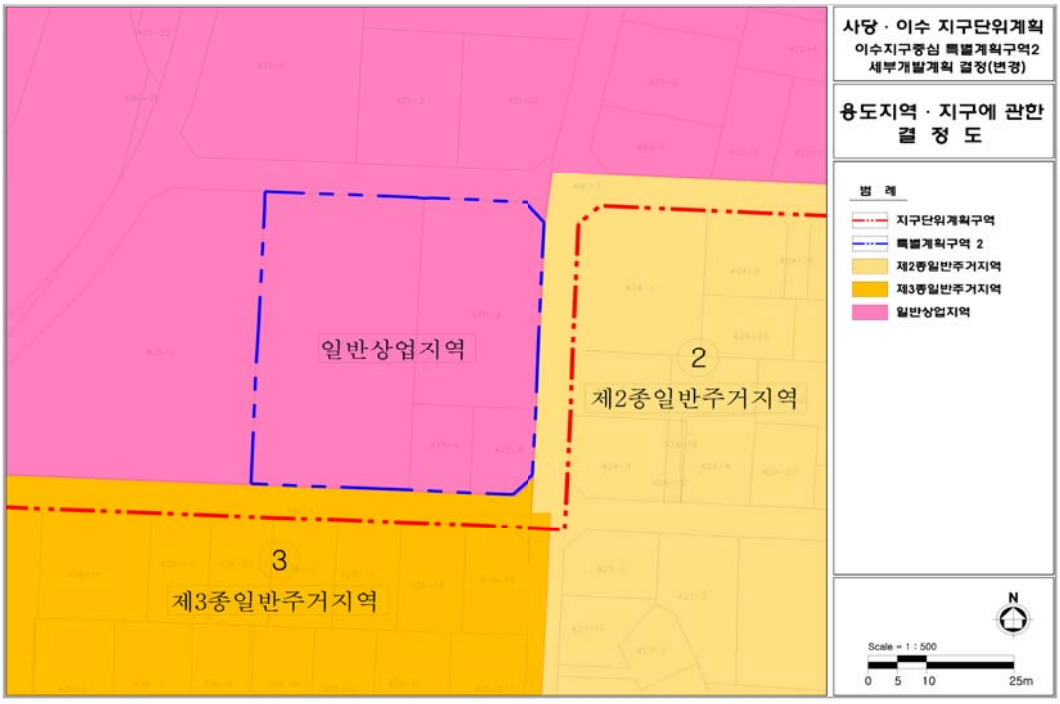


○ 이수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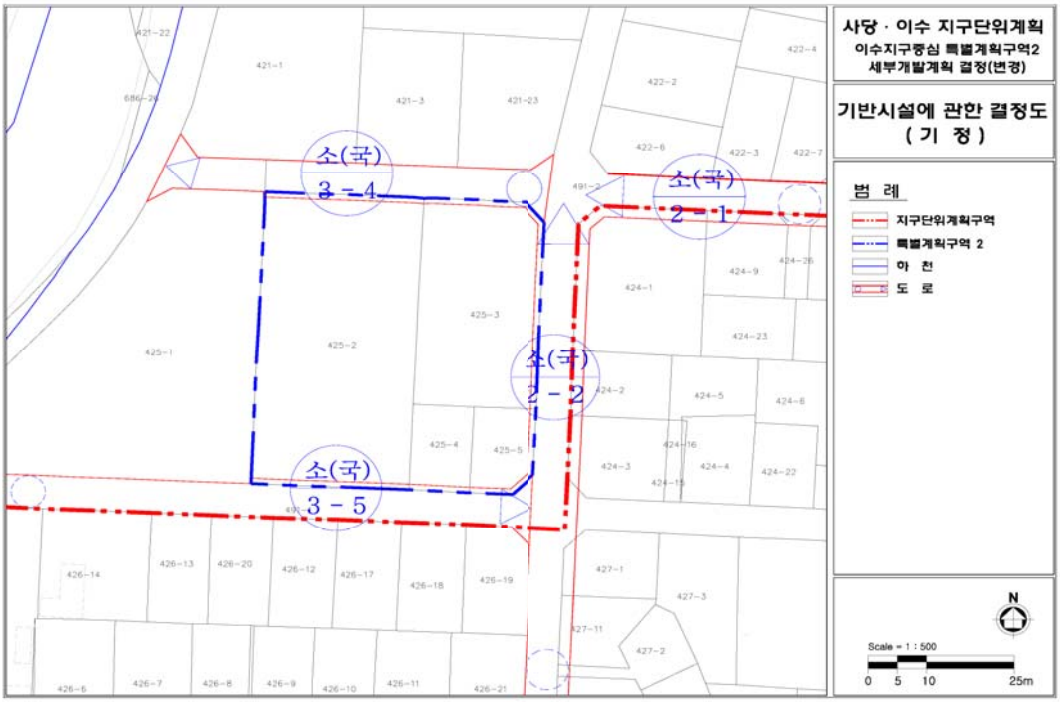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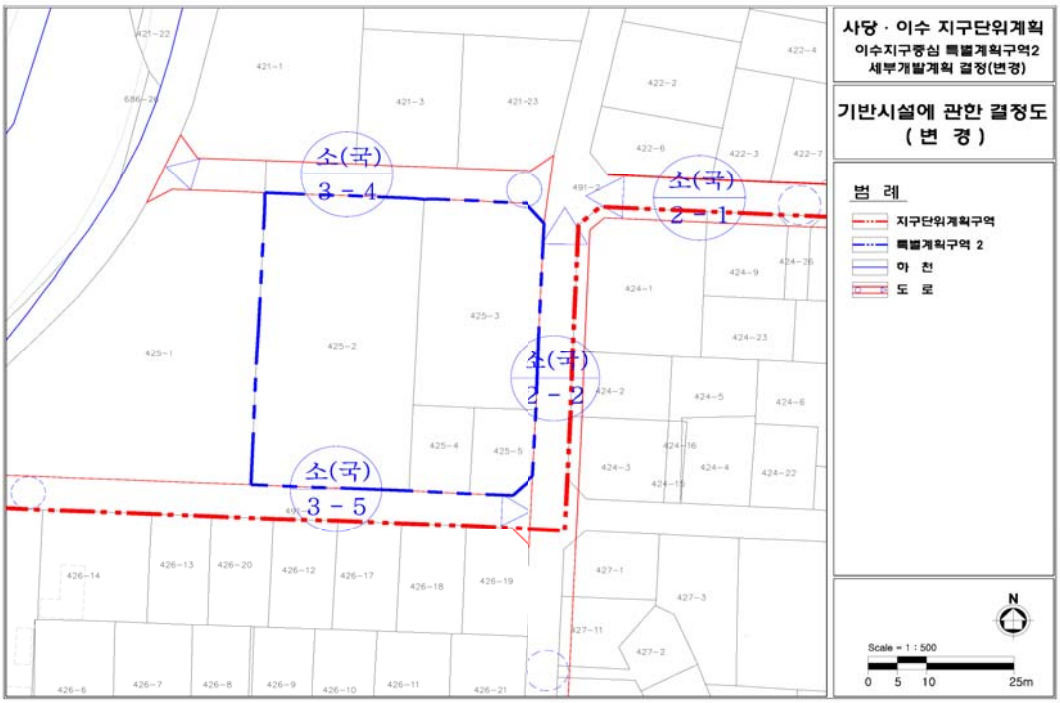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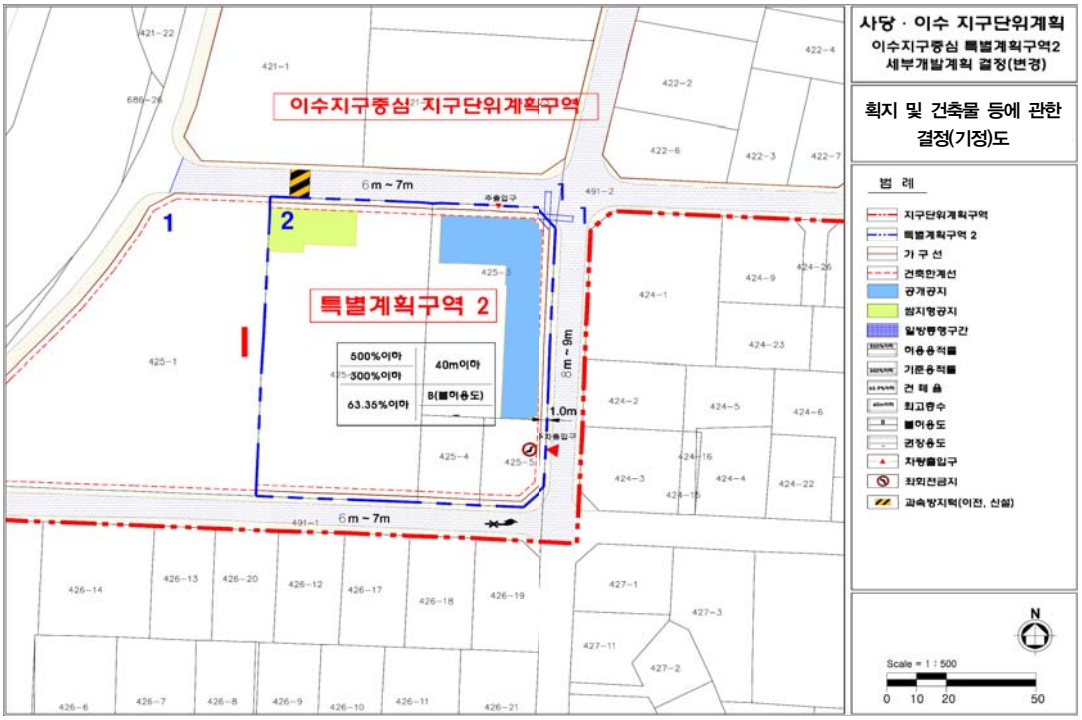
-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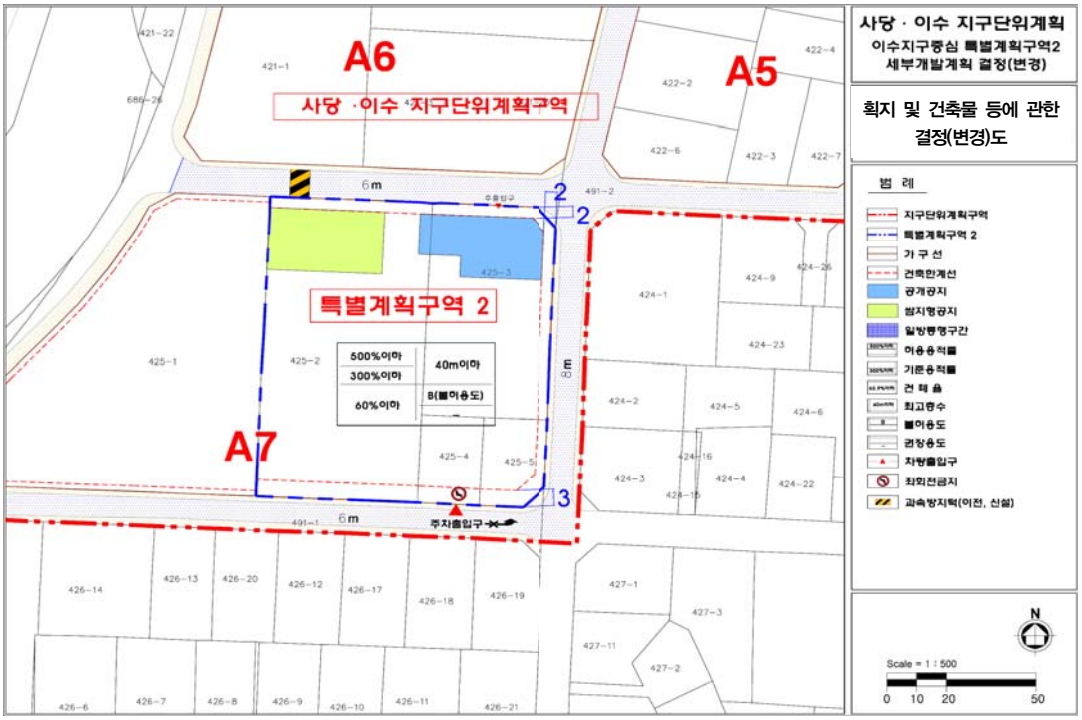
-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88호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2189호(2015.12.10.)로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 공고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현황

가. 지역의 명칭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개요

지역명	유형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도시경제 기반형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405(서울역) 일대	1,670,000	증)285,333	1,955,333	효과적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맥락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경계 확대 조정

다. 사업기간(마중물사업) : 2015년 ~ 2019년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용

가. 계획의 명칭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나. 계획의 비전 및 목표

1) 비 전 :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재생 1번지」

2) 목 표 : 유라시아 철도 시대 국가중앙역으로서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재생특별지역으로 육성

3) 추진전략 : 서울로에 가면 '서울이 있다'

○ 산업경제재생 - 살아나는 지역 경제

○ 보행환경재생 - 걷는 서울의 시작

○ 역사문화재생 - 시민과 만나는 역사·문화

○ 생활환경재생 - 삶터의 재발견

○ 공동체재생 - 주민과 함께하는 서울

다.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1) 도시재생사업 및 재원조달계획

○ 핵심사업 : 5개 부문, 41개 사업

- 기타(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관련용역 추진 등) 7개

부문	사업명	예산유형	주관부서	사업비(억원)				
				계	국비	지방비		민간
						시비	구비	
핵심사업 소계				1,068.3	–	1,038.3	30.0	–
산업경제재생	재미로 가로공간 업그레이드 사업	마중물예산	공공재생과	7.8	–	7.8	–	–
	염천교 수제화 활성화 프로젝트	마중물예산	공공재생과	0.2	–	0.2	–	–
	남대문시장 진입광장 조성사업	마중물예산	중구청	10.0	–	10.0	–	–
	남대문 지하보도 공간 개선사업	마중물예산	중구청	13.0	–	13.0	–	–
	청파로변 활성화사업	마중물예산	공공재생과	3.0	–	3.0	–	–
	wall-toon 캠프 조성사업	마중물예산	공공재생과	8.1	–	8.1	–	–
보행환경재생	중림로 보행문화거리 조성사업 등	마중물예산	공공재생과	45.6	–	45.6	–	–
	성요셉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	마중물예산	공공재생과	19.2	–	19.2	–	–
	국립극단길 조성사업	마중물예산	공공재생과	5.0	–	5.0	–	–
	청파로89길 조성사업	마중물예산	민간	1.0	–	1.0	–	–
	서계 산책로 조성사업	마중물예산	공공재생과	4.8	–	4.8	–	–
	서울로 2단계 보행환경개선 기본구상	마중물예산	공공재생과	5.0	–	5.0	–	–
	남산 옛 길 조성사업(3)	마중물예산	공공재생과	7.0	–	7.0	–	–
	남산 옛 길 조성사업(4~5)	마중물예산	공공재생과	13.0	–	13.0	–	–
	남촌-애니타운 연결가로 조성사업	마중물예산	공공재생과	6.5	–	6.5	–	–
	서울로 7017 프로젝트 조성 등 관련사업	시책사업예산	–	546.0	–	546.0	–	–
	소월로 도로다이어트	지자체협업예산	보행정책과	5.2	–	5.2	–	–
	서울로 연결가로	지자체협업예산	중구청	30.0	–	–	30.0	–
역사문화재생	서울역 · 광장 공간체계개편 기본구상	마중물예산	보행정책과	10.0	–	10.0	–	–
	남촌 탐방로 조성사업	마중물예산	공공재생과	3.1	–	3.1	–	–
	약현성당 명소화	마중물예산	공공재생과	0.2	–	0.2	–	–

부문	사업명	예산유형	주관부서	사업비(억원)				
				계	국비	지방비		민간
						시비	구비	
역사 문화 재생	은행나무 보행광장 명소화	마중물예산	공공재생과	1.0	-	1.0	-	-
	강세황 기념공간 재생	마중물예산	공공재생과	8.9	-	8.9	-	-
	손기정 기념 프로젝트	마중물예산	공공재생과	49.7	-	49.7	-	-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마중물예산	공공재생과	1.2	-	1.2	-	-
	남촌 자산 찾기	마중물예산	공공재생과	1.5	-	1.5	-	-
	계절별 축제	마중물예산	공공재생과	7.8	-	7.8	-	-
	한영 교류 재생프로젝트	마중물예산	공공재생과	1.0	-	1.0	-	-
	청파공원 조성사업(기본구상 수립)	마중물예산	공원조성과	5.0	-	5.0	-	-
생활 환경 재생	우리동네 가꾸기 시범사업(중림동)	마중물예산	공공재생과	8.3	-	8.3	-	-
	우리동네 가꾸기 시범사업(서계동)			7.5	-	7.5	-	-
	우리동네 가꾸기 시범사업(회현동)			7.5	-	7.5	-	-
	청파언덕 명소화 : 전망데크 조성사업	마중물예산	공공재생과	2.9	-	2.9	-	-
	청파언덕 명소화 : 테마계단 조성사업	마중물예산	공공재생과	2.5	-	2.5	-	-
	남촌놀이터 조성사업	마중물예산	공공재생과	5.5	-	5.5	-	-
공동체 재생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마중물예산	공공재생과	19.7	-	19.7	-	-
	주민공모사업(아이디어 공모)	마중물예산	공공재생과	2.2	-	2.2	-	-
	주민공동체 형성사업(공모)	마중물예산	공공재생과	4.2	-	4.2	-	-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사업	마중물예산	공공재생과	135.3	-	135.3	-	-
	지역거점 공간 운영	마중물예산	공공재생과	1.0	-	1.0	-	-
	서계동 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 (기본구상 수립)	마중물예산	주차계획과	5.0	-	5.0	-	-
기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관련 용역(6개) 추진 등	마중물예산	공공재생과	41.8	-	41.8	-	-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시책사업예산	도시관리과	5.1	-	5.1	-	-

※ 향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반사업 : 3개 부문 22개 사업

부분	사업명	예산유형	주관부서	사업비(억원)				
				계	국비	지방비		민간
						시비	구비	
일반사업 소계				1,413.0	288.0	708.9	115.0	301.1
산업경제재생	봉제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지자체협업예산	문화융합경제과	1.0	–	1.0	–	–
	도심형 관광숙박 활성화	지자체협업예산	문화융합경제과	0.5	–	0.5	–	–
	특화브랜드개발 및 on-line지원체계 모색	지자체협업예산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단/ 소상공인지원과	0.5	–	0.5	–	–
	특정업종 DIY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자체협업예산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단/ 소상공인지원과	1.0	–	1.0	–	–
	남대문시장 명물 관광코스화	지자체협업예산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단/ 관광정책과	0.5	–	0.5	–	–
	남대문시장 출입구(Gate)개선사업	지자체협업예산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단/ 중구청	8.8	–	8.8	–	–
	애니타운 마스터플랜 조성사업	지자체협업예산	문화융합경제과	822.0	–	520.9	–	301.1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민간투자예산	–	–	–	–	–	–
	남대문 7-2,9-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민간투자예산	–	–	–	–	–	–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	민간투자예산	–	–	–	–	–	–
	봉래구역 1,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민간투자예산	–	–	–	–	–	–
	양동구역 4-2·7, 4-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민간투자예산	–	–	–	–	–	–
	회현 도시환경정비사업	민간투자예산	–	–	–	–	–	–
	마포로5구역 1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민간투자예산	–	–	–	–	–	–
	서계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서계동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민간투자예산	–	–	–	–	–	–
	만리시장 환경개선 및 봉제산업지원거점 조성사업	민간투자예산	–	–	–	–	–	–
역사문화재생	회현제2시민아파트 예술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	지자체협업예산	문화시설과 공동주택과	0.7	–	0.7	–	–
	남대문시장 축제 정례화	지자체협업예산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단/ 소상공인지원과	2.0	–	2.0	–	–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 조성사업	지자체협업예산	관광정책과	575.0	288.0	172.0	115.0	–
	복합문화거점조성 (국립극단 관광문화거점 육성)	부처협력예산	문체부	–	–	–	–	–
생활환경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지자체협업예산	주거환경개선과	1.0	–	1.0	–	–
	남촌 주택 개량 지원	지자체협업예산	주거환경개선과	–	–	–	–	–

※ 향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파급효과(핵심사업)

부문	사업명	사업내용	파급효과
산업 경제 재생	재미로 가로공간 업그레이드 사업	재미로 컨텐츠 연계 보행중심의 지역 활성화 유도	•애니타운의 재미로 컨텐츠와 결합한 애니타운 대표가로 "재미로" 조성 •명동역~서울애니메이션센터(재건축 중) 연결성 강화
	염천교 수제화 활성화 프로젝트	수제화 장인 육성, 신진인력 유입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	•소규모 영세 봉제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 및 청년 산업 장인 육성, 상품의 고급화
	남대문시장 진입광장 조성사업	광장 조성을 통한 이벤트 및 휴식공간 조성	•방치된 유휴공간 정비를 통해 지역경관 개선 및 여가·문화 공간 확충을 통한 시민들의 생활복지 증대 기여
	남대문 지하보도 공간 개선사업	지하공간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간 마련	•효율적인 공간 활용, 상인지원 공간 및 청년공방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청파로(중림시장) 활성화사업	지역 맞춤형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지원 및 중림시장 보행환경 개선,	•서울로7017 연계 지역상권 활성화 및 도시경관 개선
	wall-toon 캠프 조성사업	애니타운 상상 컨텐츠 활용 창작 거점공간 조성·운영	•애니타운의 신흥 거점으로서 지하보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방문객들로 하여금 다양한 컨텐츠 체험기회 제공
보행 환경 재생	중림로 보행문화거리 조성사업 등	보행환경개선 및 컨텐츠 개발	•보행네트워크 구축, 정비를 통해 매력적이고 활력 있는 거리 조성 및 지역 경쟁력 제고 •지역 정체성·역사성을 알리는 컨텐츠(고산자 김정호)제공을 통한 지역 활성화
	성요셉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	보행친화가로 정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한 다양한 계층의 이용객을 유도하여 상가 활성화 및 가로활력 증대
	국립극단길 조성사업	국립극단과 연계한 문화예술가로 조성	•서울로 7017에서 연결되는 보행네트워크 구축으로 서계지역 활력 제고 및 보행객에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청파로89길 조성사업	서울역~청파로~만리재로 연계 특화가로조성	•7017고가~서울역~국립극단으로 이어지는 관광문화 기능 연결 •특화가로 조성을 통한 안전한 보행권 확보, 상권 활성화 및 지역 활력 제고
	서계 산책로 조성사업	서계동 지역자산 연계 마을 산책로 발굴	•서울로 7017과 연계, 집객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및 골목경제 활성화 유도 •지역자산 홍보 및 대외 이미지 개선
	서울로 2단계 보행환경개선 기본구상	서울로 7017과 연계한 보행친화가로조성	•서울로 7017과 연계하여 지역활성화 도모
	남산 옛 길 조성사업(3)	보행중심가로 조성	•은행나무에서 강세황 기념관 ~ 회현시민아파트 ~ 남촌놀이터 연계동선 구축
	남산 옛 길 조성사업(4~5)	보행중심가로 조성	•회현역에서 회현주민센터 ~ 은행나무와의 연계동선 구축 •남산 옛길의 상징성 제고 및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 확보
	남촌-애니타운 연결가로 조성사업	남촌~애니타운을 연결하는 보행중심 가로조성	•남산3호터널로 인해 단절된 회현동, 명동을 잇는 연결가로로서, 지하보도의 wall-toon과 연계하여 남촌(회현동)~애니타운(명동)을 연계성 강화

부문	사업명	사업내용	파급효과
보행 환경 재생	서울로 7017 프로젝트 조성 등 관련사업	서울로 7017, 만리광장 조성 등 관련 사업 추진	•노후된 고가도로를 보수 · 보강하여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도심경제 활성화 도모
	소월로 도로다이어트	보행환경개선	•보행공간 확충 및 환경개선을 통한 서울로 연결로 정비
	서울로 연결가로	남대문시장~서울로~한양도성을 잇는 보행친화가로조성	•단절되어 있던 도시의 길을 회복하기 위해 각 위치별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보행자 동선 연결
역사 문화 재생	서울역 · 광장 공간체계개편 기본구상	서울역 · 광장 등 발전구상 지명초청공모	•보행네트워크 구축, 정비를 통해 매력적이고 활력 있는 서울역 · 광장 조성
	남촌 탐방로 조성사업	남촌 내 자원들과 연계한 탐방로 조성	•서울역 7017, 명동, 남대문시장, 남산 등 주변 보행 활력을 회현동 내 자원들과 서로 연결시켜 시너지효과를 도모
	약현성당 명소화	기존 전망대를 활용한 포토존 등 지역명소 조성	•약현성당 진입구간 정비를 통한 접근성 제고 •숭례문 조망권 확보 및 포토존 조성을 통한 방문객 유입으로 약현성당 명소화
	은행나무 보행광장 명소화	지명유래가 되는 은행나무 주변 보행광장조성	•회현동을 상징하는 은행나무를 시민의 공간으로 드러냄으로써 남촌의 정체성을 시민들과 공유
	강세황 기념공간 재생	구립경로당 활용, 강세황을 상징하는 기념공간 조성	•숨겨진 강세황의 역사를 기념관으로 조성하여 주민, 일반 시민들이 마을 내에 숨겨진 역사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손기정 기념 프로젝트	손기정 체육공원 리뉴얼	•서울역 일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컨텐츠 발굴 · 기획 · 개발 •민간과 공공의 장점·특징을 살려, 청년 경력에 도움이 되고 창의적인 공공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새로운 민·관 협력 모델 제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근현대 건축자산 보존을 위한 지원	•건축기준 완화, 기반시설 정비 개량비용 지원 등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해 짐으로써 주민주도의 건축자산 보전 ·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옛 골목길, 옛 담장, 옛 건축물 등 옛 회현동의 경관 특화
	남촌 자산 찾기	남촌 브랜드 개발	•남촌의 다양한 스토리와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특화 및 공동체 활동 및 지속가능한 운영 등 재생의 초석으로 활용
	계절별 축제	지역 역사문화자원 활용 축제 정례화	•지역주민의 재생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주체로서의 인식 고취 •지역 브랜드화를 통한 이미지 제고 및 홍보
	한영 교류 재생프로젝트	영국문화원과 연계한 문화 창작 컨텐츠 프로그램 추진	•창의적인 도시 프로젝트 진행 •양국의 예술가 · 창작자 간 새로운 협력 기회 모색
	청파공원 조성사업(기본구상 수립)	문화거점공간 육성을 위한 설계 용역 추진	•국립극단과 연계,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통한 지역활성화 도모 •지역 문화예술인과 젊은 디자이너를 위한 활동공간 마련 •지역주민에 휴게공간 제공

부문	사업명	사업내용	파급효과
생활 환경 재생	우리동네 가꾸기 시범사업(중림동)	지역특성 및 심미성 · 기능성 · 경제성을 고려한 범죄예방환경 설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환경 조성	•주민 생활 및 학생 통학여건 개선 •정주기반 커뮤니티 및 안전성 증진 등 •범죄 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환경 조성
	우리동네 가꾸기 시범사업(서계동)		
	우리동네 가꾸기 시범사업(회현동)		
	청파언덕 명소화 : 전망데크 조성사업	구릉지 사면을 활용한 전망 데크 설치	•자투리 부지 정비를 통한 구릉지 경관 개선 •전망데크를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 개최 가능, 지역 활력 제고
	청파언덕 명소화 : 테마계단 조성사업	계단 정비 및 테마 디자인 적용 다양한 이벤트 개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구릉지 일대의 위험요소인 계단의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지역 명소화를 통한 대외 이미지 개선
	남촌놀이터 조성사업	저활용되고 있는 남산공원을 활용한 놀이공간 조성	•남산에서 남촌으로 진입하는 주요 거점으로서 역할 •유아 ·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운영, 가족단위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으로 체험기회 제공
공동체 재생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실행 기반 마련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 •지속적인 거버넌스 구축
	주민공모사업(아이디어 공모)	주민역량강화 공모사업 추진	•주민 아이디어 실현을 통한 지역 애착도 증가 •주민참여사업 발굴
	주민공동체 형성사업(공모)	주민아이디어 실현 및 주민참여사업 발굴	•공동체 발굴 육성 •지속가능하고 자율적인 주민 공동체 활동의 지속성 보장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의 매개 공간 조성	•방치된 공간을 특색 있게 조성하여 청년창업기회 제공 •지역주민 커뮤니티 형성 및 주민협의체 활성화 지원 공간 활용
	지역거점 공간 운영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커뮤니티 거점 조성을 통한 주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간 확보
	서계동 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사업 (기본구상 수립)	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추진	•주차난 해소 •커뮤니티시설 확충

라.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부문	사업명	내용	비고
공동체 재생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사업	• 서계, 중림, 회현 지역별 조성 • 유휴공간 부지 매입을 통해 지역주민 커뮤니티 및 마을기업 운영 공간 마련 • 청년예술인 창작소 · 문화전시공간 ·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조성	

마. 예산집행계획

○ 핵심사업

- 총사업비 1,068억원(마중물예산 482억원)

사업명		연도 및 사업비(억원)							비고
		계	마중물 예산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1,068.3	482.0	4.0	580.1	244.2	169.4	70.6	
산업 경제 재생	재미로 가로공간 업그레이드 사업	7.8	7.8	-	-	-	-	7.8	
	염천교 수제화 활성화 프로젝트	0.2	0.2	-	0.2	-	-	-	
	남대문시장 진입광장 조성사업	10.0	10.0	-	-	10.0	-	-	
	남대문 지하보도 공간 개선사업	13.0	13.0	-	-	13.0	-	-	
	청파로(중림시장) 활성화사업	3.0	3.0	-	-	-	3.0	-	
	wall-toon 캠프 조성사업	8.1	8.1	-	-	-	-	8.1	
보행 환경 재생	중림로 보행문화거리 조성사업 등	45.6	45.6	-	5.0	40.6	-	-	
	성요셉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	19.2	19.2	-	-	19.2	-	-	
	국립극단길 조성사업	5.0	5.0	-	-	5.0	-	-	
	청파로89길 조성사업	1.0	1.0	-	-	-	1.0	-	
	서계 산책로 조성사업	4.8	4.8	-	-	-	-	4.8	
	서울로 2단계 보행환경개선 기본구상	5.0	5.0	-	-	-	5.0	-	
	남산 옛 길 조성사업(3)	7.0	7.0	-	-	-	7.0	-	
	남산 옛 길 조성사업(4~5)	13.0	13.0	-	-	-	13.0	-	
	남촌-애니타운 연결가로 조성사업	6.5	6.5	-	-	-	-	6.5	
	서울로 7017 프로젝트 조성 등 관련사업	546.0	-	-	546.0	-	-	-	시책사업 예산
	소월로 도로다이어트	5.2	-	-	-	5.2	-	-	지자체 협업예산
	서울로 연결가로	30.0	-	-	-	30.0	-	-	지자체 협업예산
역사 문화 재생	서울역 · 광장 공간체계개편 기본구상	10.0	10.0	-	-	-	10.0	-	
	남촌 탐방로 조성사업	3.1	3.1	-	-	-	3.1	-	
	약현성당 명소화	0.2	0.2	-	-	0.2	-	-	

사업명		연도 및 사업비(억원)							비고
		계	마중물 예산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역사 문화 재생	은행나무 보행광장 명소화	1.0	1.0	-	-	1.0	-	-	
	강세황 기념공간 재생	8.9	8.9	-	-	-	0.5	8.4	
	손기정 기념 프로젝트	49.7	49.7	-	-	2.9	30.0	16.8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1.2	1.2	-	-	1.2	-	-	
	남촌 자산 찾기	1.5	1.5	-	-	-	1.5	-	
	계절별 축제	7.8	7.8	-	-	2.6	2.6	2.6	
	한영 교류 재생프로젝트	1.0	1.0	-	-	1.0	-	-	
	청파공원 조성사업(기본구상 수립)	5.0	5.0	-	-	-	5.0	-	
생활 환경 재생	우리동네 가꾸기 시범사업(중림동)	8.3	8.3	-	-	3.3	2.5	2.5	
	우리동네 가꾸기 시범사업(서계동)	7.5	7.5	-	-	2.5	2.5	2.5	
	우리동네 가꾸기 시범사업(회현동)	7.5	7.5	-	-	-	7.5	-	
	청파언덕 명소화 : 전망데크 조성사업	2.9	2.9	-	-	-	2.9	-	
	청파언덕 명소화 : 테마계단 조성사업	2.5	2.5	-	-	0.5	2.0	-	
	남촌놀이터 조성사업	5.5	5.5	-	-	5.5	-	-	
공동체 재생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9.7	19.7	-	3.6	5.5	5.1	5.5	
	주민공모사업(아이디어 공모)	2.2	2.2	-	1.6	0.2	0.2	0.2	
	주민공동체 형성사업(공모)	4.2	4.2	-	-	1.4	1.4	1.4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135.3	135.3	-	-	80.3	55.0	-	
	지역거점 공간 운영	1.0	1.0	-	-	-	0.5	0.5	
	서계동 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사업 (기본구상 수립)	5.0	5.0	-	-	-	5.0	-	
기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관련 용역(6개) 추진 등	41.8	41.8	4.0	19.0	12.7	3.1	3.0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5.1	-	-	4.7	0.4	-	-	시책사업 예산

※ 향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반사업

사업명		연도 및 사업비(억원)						비고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1,413.0	–	1.0	9.5	693.8	708.7	
산업경제재생	봉제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1.0	–	–	–	–	1.0	지자체 협업예산
	도심형 관광숙박 활성화	0.5	–	–	–	–	0.5	지자체 협업예산
	특화브랜드개발 및 on-line지원체계 모색	0.5	–	0.5	–	–	–	지자체 협업예산
	특정업종 DIY 체험프로그램 운영	1.0	–	–	–	1.0	–	지자체 협업예산
	남대문시장 명물 관광코스화	0.5	–	0.5	–	–	–	지자체 협업예산
	남대문시장 출입구(Gate) 개선사업	8.8	–	–	8.8	–	–	지자체 협업예산
	애니타운 마스터플랜 조성사업	822.0	–	–	–	114.8	707.2	지자체 협업예산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	–	–	–	–	–	민간투자
	남대문 7-2,9-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	–	–	–	–	민간투자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	–	–	–	–	–	–	민간투자
	봉래구역 1,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	–	–	–	–	민간투자
	양동구역 4-2·7, 4-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	–	–	–	–	민간투자
	회현 도시환경정비사업	–	–	–	–	–	–	민간투자
	마포로5구역 1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	–	–	–	–	민간투자
	서계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서계동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	–	–	–	–	–	민간투자
	만리시장 환경개선 및 봉제산업지원거점 조성사업	–	–	–	–	–	–	민간투자
역사문화재생	회현제2시민아파트 예술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	0.7	–	–	0.7	–	–	지자체 협업예산
	남대문시장 축제 정례화	2.0	–	–	–	2.0	–	지자체 협업예산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 조성사업	575.0	–	–	–	575.0	–	지자체 협업예산
	복합문화거점조성 (국립극단 관광문화거점 육성)	–	–	–	–	–	–	부처협력 예산
생활환경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1.0	–	–	–	1.0	–	지자체 협업예산
	남촌 주택 개량 지원	–	–	–	–	–	–	지자체 협업예산

※ 향후 지자체, 민간 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바.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 부문별 평가지표 구분 조사 실시

- 경제적 활력 창출, 물리적 환경 개선, 문화·관광 활성화, 공동체 강화 등의 목표에 대해 신규 사회적 경제조직 수, 방문객 수, 주거환경 만족도 등을 평가지표로 하여 조사 실시

○ 사업추진협의회와 행정지원협의회 등을 통한 평가 및 보완

사.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 해당없음

아.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 조직의 운영

추진주체	역할	운영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기구)	• 사업추진 총괄 운영 • 행정-주민간 협의 주체 • 의견 및 갈등 조정 • 지역내 · 외 네트워크망 구축 • 주민공모사업 기획 및 지원 • 소식지 등 홍보물 발간	• 센터장 1명 및 분야별 · 지역별 코디네이터 7명, 자치구 파견 2명 활동 • 사업별 전문가 자문위원 활동 • 주민협의체, 행정조직 간 협의지원 및 사업실행 지원, 연계사업 요청
주민협의체 (소통기구)	• 주민의견 '소통창구' 및 참여확대 유도 • 지역의 현안 및 과제발굴 • 주민 공동체활동 추진	• 사업별 주민(상인)협의체 및 지역별 주민협의체(중림, 서계, 회현) 조직 운영 •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의 및 주민의견 전달 • 주민공모사업 기획 및 실행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사업추진협의회 (의사결정기구)	• 도시재생사업 의사결정 • 활성화사업 실행계획 협의 결정	•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문가, 전담 조직 담당자, 사업관련 이해관계자, 주민협의체 회원들로 구성 • 사업의 실행 및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행정지원협의회 (행정)	• 사업실행 행정지원	• 서울시 공공재생과(행정전담조직), 용산구, 중구 도시재생 사업 관련 협업 부서 • 도시재생지원센터 행정지원

○ 공동체 활성화 방안

- 도시재생 활동가 육성,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주민참여 및 의사소통 확대 등

3.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공간시설

○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1	어린이공원	문화공원	서계동 224일대	5,879	총독부고시 제208호 (1940.3.12)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문화공원	• 시설 변경 – 어린이공원 →문화공원	• 저이용되는 청파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서울로 7017, 국립극단과 연계한 관광·문화거점에 맞는 공원 성격으로 시설변경

4.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

가. 정비예정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신설	서계동 1 (특별계획구역①)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24-10 일원	3,337	
신설	서계동 2 (특별계획구역②)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20-3 일원	5,142	
신설	서계동 3 (특별계획구역③)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20-5 일원	2,724	
신설	서계동 4 (특별계획구역④)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24-32 일원	2,902	소화병원
신설	서계동 6 (특별계획구역⑥)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47-3 일원	3,666	대한통운주변

나. 정비예정구역 지정 사유서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170호(2017.5.18.)에 따라 결정 고시된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중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해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구분	구역명	면적(㎡)	지정사유
신설	서계동 1 (특별계획구역①)	3,337	• 서울역과 연계한 관광·업무·판매·문화 등 복합용도개발을 통한 역세권 기능 강화 및 7017 서울로, 북부역세권, 국립극단 열린 문화공간 등 주변개발사업과 연계한 서울역 서측의 관광문화 복합거점 형성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신설	서계동 2 (특별계획구역②)	5,142	
신설	서계동 3 (특별계획구역③)	2,724	
신설	서계동 4 (특별계획구역④)	2,902	• 소아아동병원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청파공원 확장조성을 통해 보행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신설	서계동 6 (특별계획구역⑥)	3,666	• 공항철도 전면부로서 청파로변 업무 및 지원기능 도입을 통한 경부선 철도축 재생, 가로변 미관증진 및 보행활성화를 위하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5.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신설	서울역 일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405(서울역) 일대	1,955,333㎡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나.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사유서

구역명	지정사유
서울역 일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 서울역 일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 등에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주택의 노후화 억제 및 성능향상, 주거공간에 대한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지정

6. 관련 도면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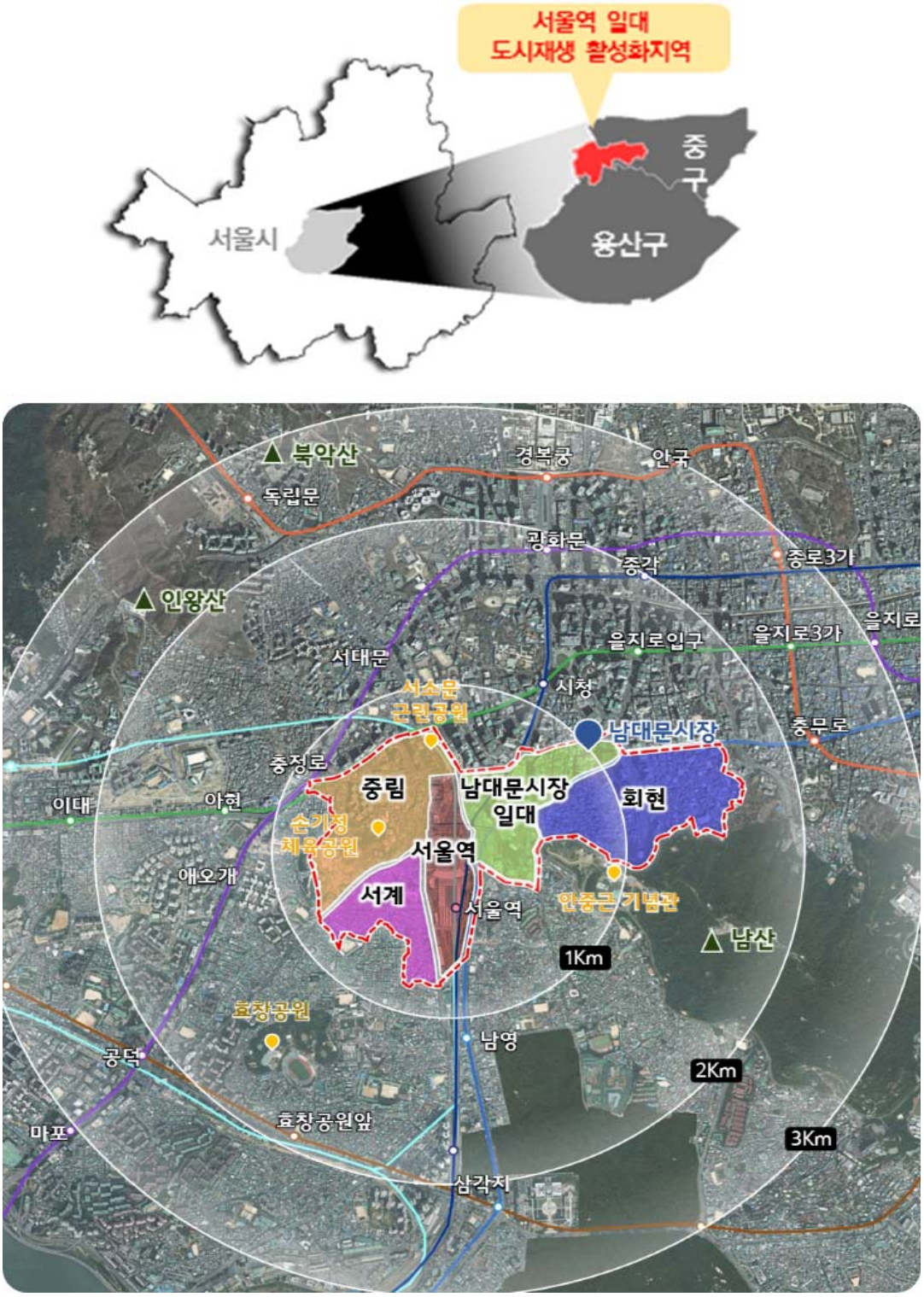
○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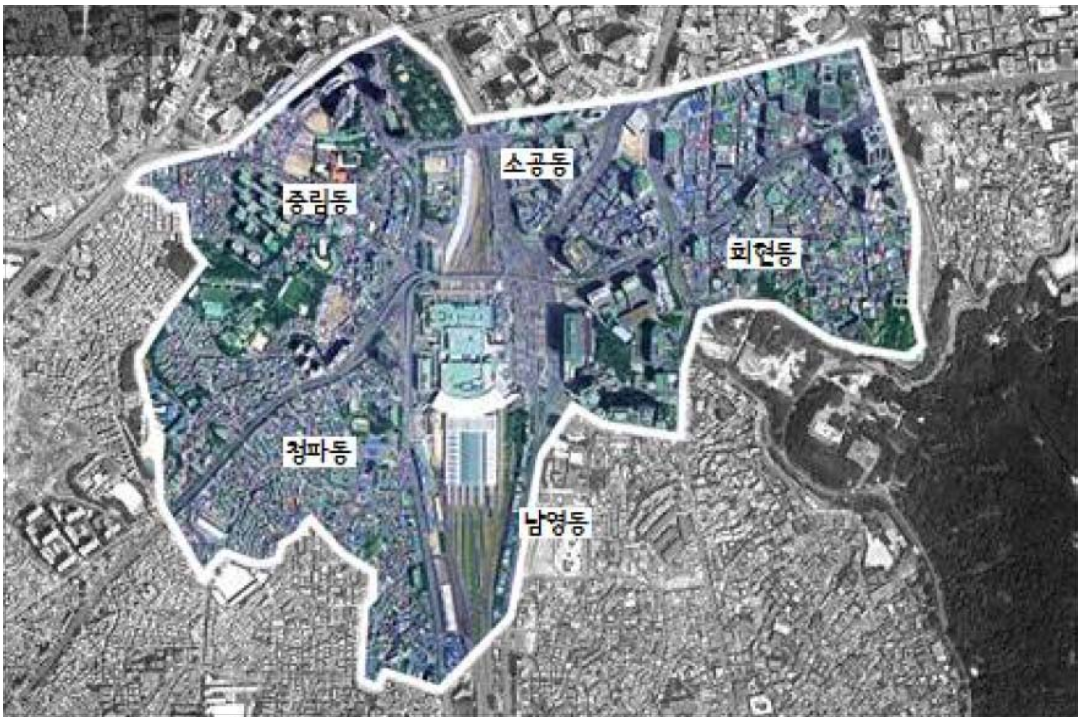
7. 관련서류 열람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02-2133 -8643~6) / 중구 도심재생과(☎02-3396-5753) / 용산구 도시계획과(☎02-2199-7402) / 명동 주민센터(☎02-3396-6562) / 회현동 주민센터(☎02-3396-6532) / 중림동 주민센터(☎02-3396-6922) / 청파동 주민센터(☎02-2199-8464) 및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02-2133-8728~9)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위 치 도】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중구
서울시
용산구
북악산
경복궁
안국
독립문
광화문
종각
종로3가
인왕산
을지로입구
을지로3가
을지로
서대문
시청
서소문
근린공원
남대문시장
충무로
충정로
중림
남대문시장
일대
회현
이대
아현
손기정
체육공원
서울역
애오개
서계
서울역
안중근 기념관
남산
1Km
효창공원
남영
공덕
2Km
효창공원앞
마포
3Km
삼각지

○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지정 경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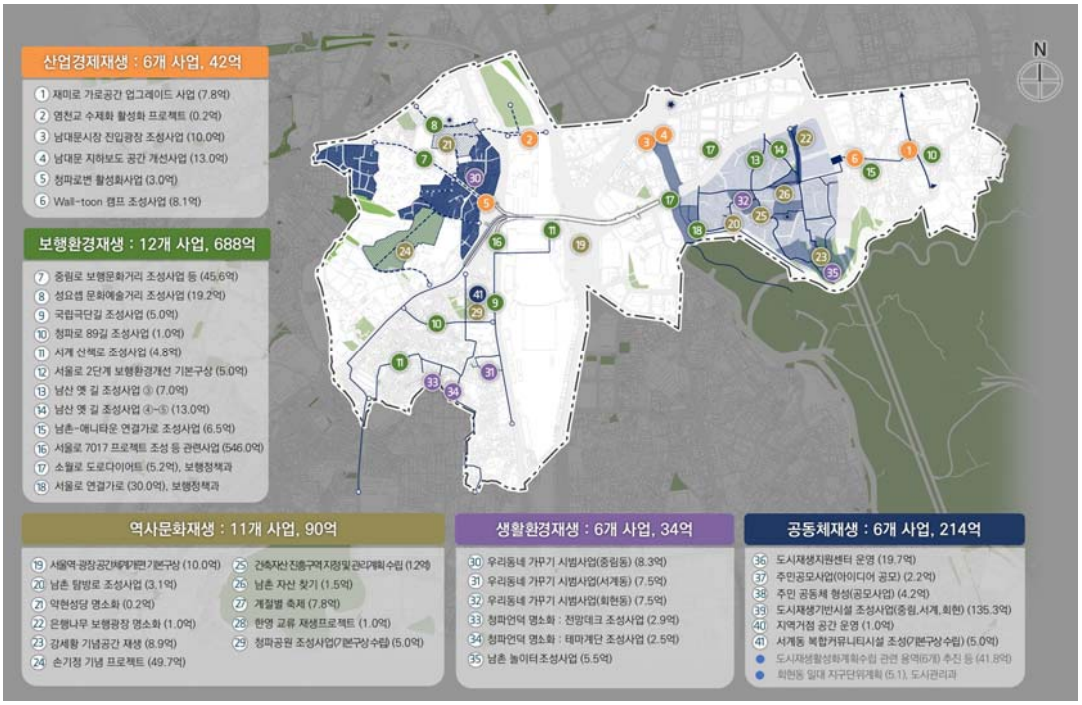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통한 변경 경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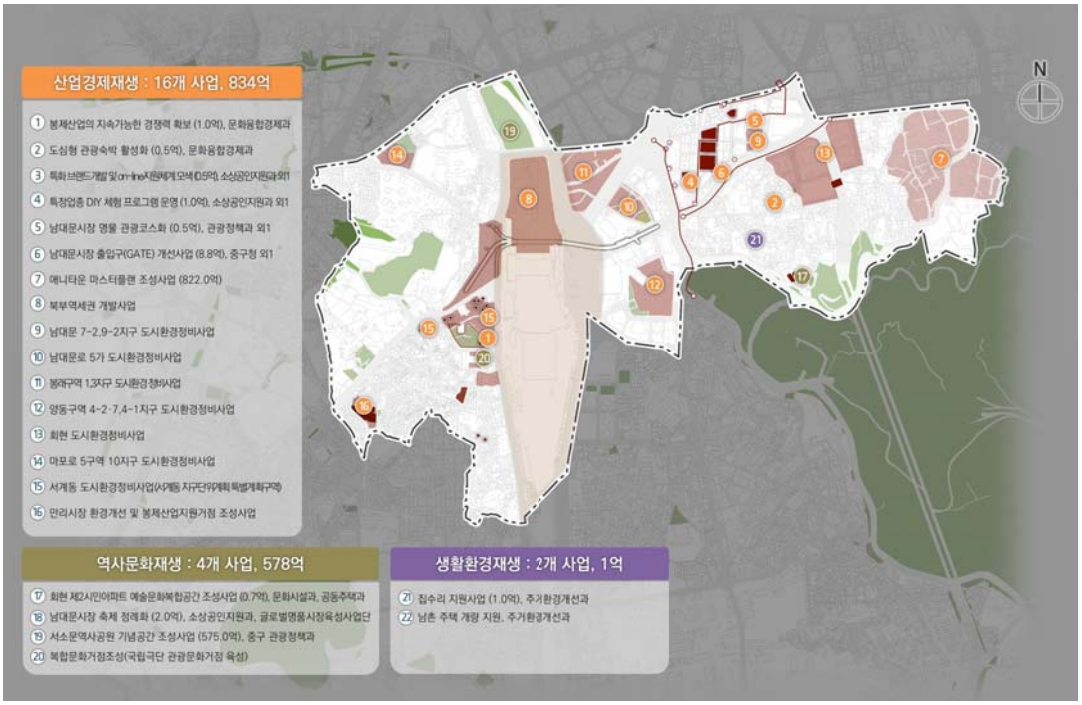


【사업구상도】

○ 핵심사업



○ 일반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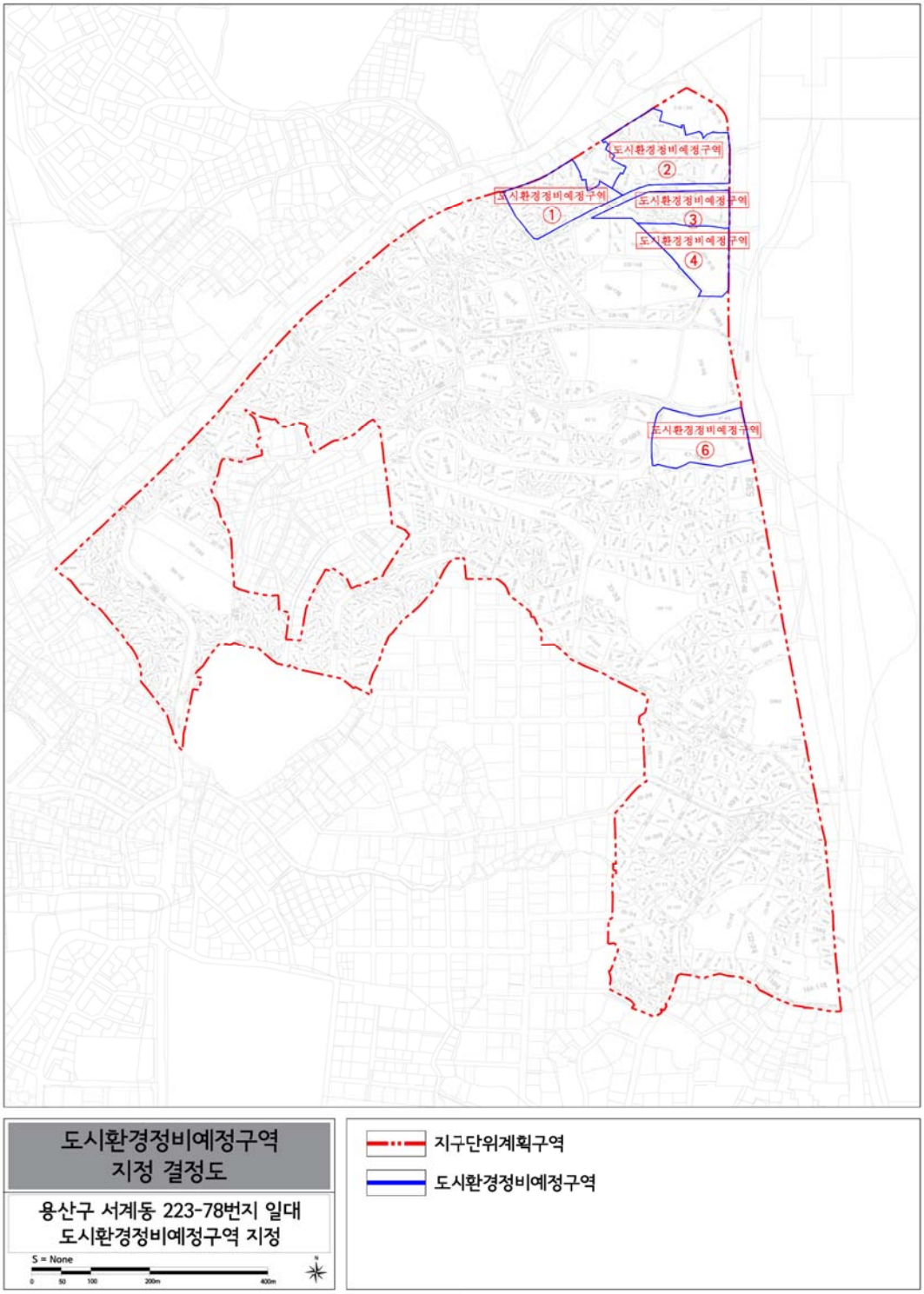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결정도



○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위치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89호

2018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2018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17호) 제9조의2 제6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시도	시군구	단지명	단지 유형	지정계획 면적(천㎡)	산업용지 면적(천㎡)	사업시행자
서울		1개소		78	28	
	강동구	강동일반 산업단지	일반	78	28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특별시 신성장산업과, 담당자 : 이종열(02-2133-4837)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90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특정구역 지정
   가. 붙임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참조
   나. 도면 생략(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와 해당 자치구 광고물 관리부서에 비치함)

2. 특정구역에서의 표시제한 사항
   가.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하려는 네온류와 다른 네온류, 새로 설치하려는 전광류·디지털광고물과 다른 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각각 수평거리 200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도시계획사업·건축공사 등으로 주변 형상의 현저한 변화, 생활환경 침해 민원 발생, 각종 법규·제도의 개정 등 이전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자치구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

-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

나. 자치구별로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후 서울특별시와 협의를 거쳐 자치구에서 공고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청장은 그 심의기준에 따라 네온류, 전광류 및 디지털광고물 등의 신규설치에 관하여 추가적인 제한을 할 수 있다.

3. 부 칙

가. (시행일)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된 광고물등은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 (종전 고시의 폐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81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타사광고)」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82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자사광고)」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붙임>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도로에 접하는 모든 토지·건물에 적용함

연번	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연장(m)	폭(m)	해당 자치구
1	대학로	종로구 종로5가 87-4 (종로 215)	종로구 혜화동 132-1 (청계천로 270)	1,621	40	종로구
2	돈화문로	종로구 장사동 250-1 (청계천로 133)	종로구 와룡동 5-14 (돈화문로97)	1,029	20	종로구
3	북촌로	종로구 재동 104-1 (율곡로 61)	종로구 삼청동 22 (삼청로 132)	1,508	20	종로구
4	사직로	종로구 행촌동 209-35 (사직로 5)	종로구 세종로 1-58 (삼청로 1)	1,871	30	종로구
5	우정국로	종로구 관철동287 (청계천로 49)	종로구 수송동 9-2 (율곡로 4길 2)	740	30	종로구
6	율곡로	종로구 세종로 1-58 (삼청로 1)	종로구 창신동 440-10 (율곡로 309)	3,149	30	종로구
7	자하문로	종로구 적선동 107-1 (사직로 125)	종로구 홍지동 95-1 (세검정로 226)	3,196	27	종로구
8	종로	종로구 종로1가 1 (종로 1)	종로구 숭인동 1252 (종로 413)	4,189	35	종로구
9	평창문화로	종로구 신영동 29-6 (평창문화로 5-1)	종로구 평창동 596 (평창문화로 172)	2,383	22	종로구
10	삼청로	종로구 사간동 (삼청로 4)	종로구삼청동26 (삼청로146)	1,420	14~30	종로구
11	새문안로	종로구 세종로 204-1 (새문안로105)	서대문구 충정로1가 85 (통일로 120)	1,100	40	종로구, 서대문구
12	동호로	종로구 종로5가 182-4 (동호로408)	성동구 옥수동 191-3 (한림말길56)	3,900	35~40	종로구, 중구, 성동구
13	보문로	종로구 숭인동 1242 (보문로 5)	성북구 동소문동5가 3 (동소문로 72)	2,100	25~35	종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14	지봉로	종로구 창신동 436-73 (청계천로 341)	성북구 보문동2가 151 (지봉로 180)	1,800	25	종로구, 성북구
15	세검정로	종로구 신영동 219-4 (세검정로 9길 1)	서대문구 홍제동 294-46 (통일로 484)	2,800	18~36	종로구, 서대문구
16	진흥로	종로구 신영동 214-9 (세검정로 9길 1)	은평구 역촌동 44-28 (연서로 10)	3,400	30~35	종로구, 은평구
17	청계천로	종로구 서린동 159-1 (청계천로 1)	동대문구 답십리동 463-13 (천호대로 177)	5,900	25~60	종로구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18	무교로	종로구 서린동 136 (종로 14)	중구 태평로1가 31 (세종대로 110)	400	20	종로구, 중구
19	수표로	종로구 낙원동 93 (수표로 134)	중구 충무로3가 52-15 (청계천로 165)	1,350	14~20	종로구, 중구
20	세종대로	종로구 세종로 77-6 (세종대로 209)	중구 봉래동2가 122 (청파로 426)	2,240	50~100	종로구, 중구

연번	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연장(m)	폭(m)	해당 자치구
21	남대문로	중구 남대문로 29 (세종대로 40)	중구 다동 85 (중구 남대문로125)	1,349	39	중구
22	마른내로	중구 저동1가 1-2 (삼일대로 340)	중구 광희동1가 194-2 (마른내로 169)	1,744	20	중구
23	소공로	중구 회현동1가 146-1 (소공로 3길 29-8)	중구 태평로2가 23 (소공로 119)	1,286	47	중구
24	소파로	중구 남창동 205-83 (소월로 39-2)	중구 남산동 3가 32-2 (소파로 145)	1,620	34	중구
25	을지로	중구 소공동 91-1 (소공로 116)	중구 을지로 7가 11-4 (을지로 294)	3,018	30	중구
26	칠패로	중구 중림동 10-3 (청파로 450)	중구 봉래동 1가 4-2 (칠패로 46)	565	26	중구
27	퇴계로	중구 남대문로 5가 541(한강대로 416)	중구 황학동 2494 (청계천로 463)	4,709	39	중구
28	장충단로	중구 장충동2가 201 (장춘단로 60)	중구 을지로6가 18-12(장춘단로 275)	2,800	25~40	중구
29	통일로	중구 봉래동 2가 122-28(통일로 1)	은평구 진관동 29 (북한산로 2)	15,000	20~40	중구, 서대문구, 종로구, 은평구
30	창경궁로	중구 충무로5가 19-7 (창경궁로 2)	성북구 삼선동1가 3-3 (창경궁로318)	3,170	25~32	중구, 종로구, 성북구
31	마장로	중구 을지로7가 2-1 (을지로 281)	동대문구 용답동121 (마장로 360)	3,600	20~24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32	만리재로	중구 봉래동2가 122 (청파로 426)	마포구 공덕동 255-9 (만리재로 3)	2,200	28	중구, 용산구, 마포구
33	서소문로	중구 서소문동 12-1 (서소문로 141)	서대문구 충정로3가 368(충정로8)	1,440	30	중구, 서대문구
34	후암로	중구 남대문로5가 581 (후암로 110)	용산구 후암동 194-8 (후암로 1)	1,700	20	중구, 용산구
35	소월로	중구 남창동 51-1 (소월로3)	용산구 한남동 726-74 (소월로 377)	3,800	20	중구,용산구
36	한남대로	용산구 한남동 453-3 (한남대로 12)	용산구 한남동 726-370 (한남대로 204)	2,200	43	용산구
37	서빙고로	용산구 한강로 3가 44-6(한강대로 60)	용산구 한남동 773-1 (유엔빌리지3길 118)	5,645	39	용산구
38	원효로	용산구 청암동 168-24 (원효로 7)	용산구 청파동3가 80-7 (청파로 247)	2,760	27	용산구
39	이촌로	용산구 한강로 3가 16-85(이촌로 1)	용산구 용산동6가 69-165(이촌로 347-11)	3,681	25	용산구
40	효창원로	용산구 청암동 168-24 (원효로 7)	용산구 청파동3가 80-7(청파로 247)	2,160	15~20	용산구
41	이태원로	용산구 한강로1가 20-1 (이태원로 1)	용산구 한남동 727-56(이태원로 294)	3,134	20	용산구
42	녹사평대로	용산구 서빙고동 134 (서빙고로 279)	중구 회현동 산1-16 (소파로57)	4,000	38	용산구, 중구

연번	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연장(m)	폭(m)	해당 자치구
43	청파로	용산구 원효로 4가 118-20(원효로 100-38)	중구 중림동 355 (청파로 464)	4,900	30	용산구, 중구
44	다산로	용산구 한남동 726-180(다산로 8-12)	중구 신당동 217-91 (청계천로 334)	2,800	30	용산구, 중구
45	한강대로	용산구 한강로 3가 65-230(한강대로 26)	중구 봉래동2가 541(한강대로 416)	4,200	40	용산구, 중구
46	삼일대로	용산구 한남동 726-157(소월로 375)	종로구 운니동 114-8(율곡로 64)	4,700	40	용산구, 성동구, 중구, 종로구
47	독서당로	용산구 한남동 557-37 (독서당로 3길 7)	성동구 행당동 344 (독서당로 441)	4,400	25	용산구, 성동구
48	왕십리 광장로	성동구 행당동 147 (왕십리로 280)	성동구 행당동 196-25 (왕십리로 298)	548	33	성동구
49	성수일로	성동구 성수동1가 13-16(광나루로 196)	성동구 성수동1가 656-356(성수일로 1)	1,191	20	성동구
50	성수이로	성동구 성수동 2가 442(성수이로 3)	성동구 성수동2가 289-2(광나루로 254)	1,549	20	성동구
51	마조로	성동구 행당동 26-6(왕십리로 236)	성동구 마장동 774-1(마장로 284-1)	871	20	성동구
52	행당로	성동구 금호동1가 125-1(행당로 1)	성동구 행당동 319-1 (고산자로 203)	940	20	성동구
53	왕십리로	성동구 성수동1가 532-12(왕십리로 14)	중구 신당동 170-30 (왕십리로 415)	3,900	30	성동구,중구
54	뚝섬로	성동구 옥수동 100 (한림말길 50)	광진구 구의동 596-5 (뚝섬로 742)	6,750	15~30	성동구, 광진구
55	광나루로	성동구 성수동1가 683 (고산자로 71)	광진구 구의동 631-1 (광나루로 56길 29)	6,254	25~30	성동구, 광진구
56	아차산로	성동구 성수1가 656-1731(아차산로6)	광진구 광장동 22-1(워커힐로177)	7,500	30~40	성동구, 광진구
57	무학로	성동구 도선동 361(왕십리로 362)	동대문구 제기동 1153-10(무학로 202)	2,040	25	성동구, 동대문구
58	고산자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83(고산자로 71)	동대문구 제기동 1149-8(고산자로 572)	6,200	10~40	성동구, 동대문구
59	동일로	광진구 자양동 210-22(동일로2길 2)	노원구 상계동 1203(동일로 1794)	17,000	30~35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노원구
60	능동로	광진구 자양동 72-1(능동로 5)	광진구 중곡동 169-80(용마산로 171)	4,500	35	광진구
61	자양로	광진구 자양동 690-33(자양로 2길2)	광진구 구의동 143-3(자양로 328)	3,300	25~35	광진구
62	강변역로	광진구 구의동 587(강변역로 2)	광진구 구의동 546-4 (광나루로 56길 85)	1,100	20	광진구
63	구의강변로	광진구 자양동 695(구의강변로 11)	광진구 구의동 199-18 (구의강변로 106)	1,050	20	광진구
64	긴고랑로	광진구 중곡동 238-5(긴고랑로 1)	광진구 중곡동 72-64(긴고랑로 211)	2,100	20	광진구

연번	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연장(m)	폭(m)	해당 자치구
65	자양번영로	광진구 자양동 227-1(아차산로 306)	광진구 자양동 592-14 (자양강변길 297)	900	20	광진구
66	면목로	광진구 군자동 48-24(군자로 141)	중랑구 상봉동 115-1(면목로 495)	5,100	10~20	광진구, 중랑구
67	용마산로	광진구 중곡동 93-11(천호대로 639)	중랑구 신내동 342-6(용마산로 717)	7,303	25	광진구, 중랑구
68	서울시립대로	동대문구 답십리동 464-1(서울시립대로)	동대문구 전농동 152-11 (서울시립대로 164)	1,653	25	동대문구
69	약령시로	동대문구 제기동 148-115(약령시로 2)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6(왕산로 239)	1,694	20	동대문구
70	왕산로	동대문구 신설동 101-6(왕산로 4)	동대문구 휘경동 343-4(왕산로 312)	3,191	32	동대문구
71	이문로	동대문구 이문동 217-8(신이문로 43-1)	동대문구 이문동 255-282(이문로 182)	2,078	29	동대문구
72	장안벚꽃로	동대문구 장안동 465-5(장안벚꽃로 9)	동대문구 휘경동 6-9(한천로 312)	3,443	20	동대문구
73	장한로	동대문구 장안동 416-5(장안로 3)	동대문구 장안동 313-1 (장한로 28가길 129)	2,083	30	동대문구
74	전농로	동대문구 전농동 602-3(왕산로 280)	동대문구 답십리동 492-1 (동대문구 천호대로 313)	2,499	25	동대문구
75	제기로	동대문구 제기동 142-22(안암로 124)	동대문구 청량리동 31 (왕산로 277)	1,663	25	동대문구
76	홍릉로	동대문구 청량리동 749(왕산로 195)	동대문구 청량리동 1-217(회기로 56)	1,264	23	동대문구
77	휘경로	동대문구 이문동 288-12(이문로 112)	동대문구 휘경동 119-21(한천로 373)	800	20	동대문구
78	난계로	동대문구 신설동 117-21(천호대로 2)	성동구 금호동 1가 596-1(난계로3)	2,750	10~25	동대문구, 종로구, 성동구
79	회기로	동대문구 제기동 1149-17(종암로 6)	동대문구 휘경동 183-144(회기로31길 1)	2,036	20	동대문구, 성북구
80	안암로	동대문구 신설동 53-3 (안암로 6)	성북구 종암동 1-2(안암로 145)	1,780	25	동대문구, 성북구
81	한천로	동대문구 장안동 413-1(한천로 4)	강북구 수유동 279-67(한천로 1182)	11,840	18~28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82	답십리로	동대문구 전농동 621-1(완산로 176)	중랑구 면목동 1341-10 (용마산로 193)	4,100	25~30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83	사가정로	동대문구 답십리동 456-6(천호대로 233)	중랑구 면목동 1081-12 (사가정로 71길 7)	4,150	16~23	동대문구, 중랑구
84	겸재로	동대문구 휘경동 49-295(장안벚꽃로 291)	중랑구 면목동 531-41(용마산로 439)	2,700	25	동대문구, 중랑구
85	망우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343-4(왕산로 312)	서울 중랑구 망우동 128-29(망우로 511)	5765	35	동대문구, 중랑구
86	천호대로	동대문구 신설동 117-21(천호대로 2)	강동구 상일동 325-1(천호대로 1477)	15,510	20~40	동대문,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연번	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연장(m)	폭(m)	해당 자치구
87	봉우재로	중랑구 면목동 191-89(봉우재로 1)	중랑구 망우동 465-14(용마산로 501)	2,470	22	중랑구
88	상봉로	중랑구 면목동 67-2(용마산로 381)	중랑구 망우동 564-7(망우로 366)	1,381	24	중랑구
89	신내로	중랑구 망우동 489-1(망우로 403)	중랑구 묵동 6 (신내로23길 36)	2,887	23	중랑구
90	봉화산로	중랑구 신내동 385-7 (봉화산로 250)	중랑구 중화동 330-81(중랑천로 188)	2,600	20	중랑구
91	공릉로	중랑구 묵동 176-35(동일로 900)	노원구 중계동 513 (중계로 208길 19)	3,940	16~25	노원구(중랑구는 제외)
92	성북로	성북구 동소문 1가16(동소문로 1)	성북구 성북동 330-428(대사관로 46)	1,945	20	성북구
93	인촌로	성북구 보문로 1가 127(보문로 116)	성북구 안암동 5가 34-1(안암로 119)	1,214	30	성북구
94	동소문로	성북구 동소문 1가16(동소문로 1)	성북구 하월곡동 196(동소문로 324)	3,324	32	성북구
95	정릉로	성북구 정릉동산 1-1(정릉로 49)	성북구 종암동 3-545(종암로 145)	4,350	25	성북구
96	돌곶이로	성북구 석관동 332-218(돌곶이로 3)	성북구장위동218-32 (월계로 172)	2,340	20	성북구
97	아리랑로	성북구동소문6가133-7(아리랑로3)	성북구정릉동139-58 (정릉로 272)	1,450	25	성북구
98	종암로	성북구 하월곡동 186-1(종암로 214-1)	동대문구 제기동 1149-8(고산자로 572)	2,170	10~40	성북구, 동대문구
99	삼양로	성북구 길음동 1258(삼양로 13)	강북구 우이동 3-1(삼양로 685)	6,700	20~28	성북구, 강북구
100	솔샘로	성북구 정릉동 677-1 (정릉로 175)	강북구 미아동 65-2 (도봉로 87)	3,260	25~35	성북구, 강북구
101	화랑로	성북구 하월곡동 90-225(화랑로 1)	노원구 공릉동 26-19(화랑로 815)	8,600	35	성북구, 노원구
102	도봉로	성북구 길음동 221-1(도봉로 1)	서울구 도봉구 도봉동 354(도봉로 969)	9,840	10~40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103	인수봉로	강북구 미아동 1354-4(솔샘로 177)	강북구 수유동 569-63 (수유동 4.19로 35)	3,202	20	강북구
104	삼각산로	강북구 수유동 522-35(삼각산로 4-5)	강북구 수유동 143(삼각산로 166)	1,678	20	강북구
105	수유로	강북구 수유동 57-16(수유로 2)	강북구 수유동 2-8(수유로 83)	859	25	강북구
106	오현로	강북구 미아동 66-6(도봉로 82)	강북구 번동 237(오현로 208)	2,218	20	강북구
107	월계로	강북구 미아동 42-11(월계로 3)	노원구 월계동 321-7(월계로376)	5,740	25~35	강북구, 성북구,노원구
108	노해로	강북구 수유동 45-1(노해로3)	노원구 상계동 718-2(노해로 527)	5,110	20~35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연번	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연장(m)	폭(m)	해당 자치구
109	덕릉로	강북구 수유동 461-8(덕릉로 2)	노원구 상계동 30-1(덕릉로 894)	8,200	8~25	강북구,도봉구, 노원구
110	방학로	강북구 우이동 265-11 (방학로 384-11)	도봉구 방학동 722-27(방학로 32)	3,650	22~30	강북구, 도봉구
111	도당로	도봉구 쌍문동 20-15(해동로 198)	도붕구 방학동 654-20(도봉로 703)	1,519	20	도봉구
112	도봉산길	도봉구 도봉동 411-1(도봉산실 81)	도봉구 도봉동 559-31(도봉로 927	895	25	도봉구
113	마들로	노원구 월계동 18(마들로 31)	도봉구 도봉동 38-3(도봉로 964-40)	9,100	26	노원구, 도봉구
114	노원로	노원구 공릉동 90-4(노원로 3)	노원구 상계동 664(노원로 586)	6,005	31	노원구
115	섬밭로	노원구 공릉동 609-11(화랑로 405)	노원구 중계동 502-1 (동일로 207길 18)	3,297	20	노원구
116	수락산로	노원구 상계동 172(상계로 193-14)	노원구 상계동 922(수락산로 254)	2,608	20	노원구
117	중계로	노원구 하계동 69-1(노원로 186-7)	노원구 중계동 411-1(중계로 244)	2,487	20	노원구
118	한글비석로	노원구 하계동 357(한글비석로 4)	노원구 상계동 856(한글비석로 585)	5,902	2	노원구
119	불광로	은평구 대조동 26-26 (불광로 1)	은평구 불광동 87-3(연서로 332)	2,040	25	은평구
120	역말로	은평구 역촌동 51-79(갈현로 88)	은평구 대조동 84-115 (통일로 71길 2)	1,800	20	은평구
121	연서로	은평구 응암동 85-41(연서로 1)	은평구 진관동 332-2 (북한산로 228-7)	6,510	35	은평구
122	은평로	은평구 신사동 19-160(은평로 1)	은평구 응암동 15-5(통일로 605)	2,500	25	은평구
123	서오릉로	은평구 구산동 308-182 (서오릉로 277)	은평구 응암동 84-6 (서오릉로 3)	4,100	30	은평구
124	증산로	은평구 응암동 85-41 (증산로 477)	마포구 성산동 24-6(월드컵북로 293)	4,700	30~35	은평구, 마포구
125	가재울로	서대문구 남가좌동 332-19(모래내로 209)	서대문구 남가좌동 215-56(가재울로89)	460	20	서대문구
126	신촌역로	서대문구 창천동 4-77(신촌역로 43)	서대문구 대현동 101-17(신촌로 155)	609	29	서대문구
127	증가로	서대문구 연희동 134-18(연희로 119)	서대문구 북가좌동 343-11(증가로 261)	2,723	23	서대문구
128	홍제천로	서대문구 연희동 446-86(홍제천로 6)	서대문구 연희동 169-14(연희로 251)	2,124	21	서대문구
129	모래내로	서대문구 홍제동 156-1(모래내로 470)	마포구 성산동 592-6(월드컵로 190)	4,900	10~20	서대문구, 마포구
130	연희로	서대문구홍은동217-6 (연희로407)	마포구 동교동 147-4(연희로 3)	4,100	25	서대문구, 마포구

연번	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연장(m)	폭(m)	해당 자치구
131	성산로	서대문구 현저동 104(성산로 701)	마포구 망원동 463-2 (방울내로 11길 181)	6,650	24~40	서대문구, 마포구
132	신촌로	서대문구 북아현동 806(신촌로 325)	마포구 동교동 173-3(신촌로 6)	3,300	30	서대문구, 마포구
133	동교로	서대문구 연희동 218-19(동교로 296)	마포구 망원동 211-42(동교로 7)	2,900	15~22	서대문구, 마포구
134	응암로	서대문구 북가좌동 385-35(수색로 132)	은평구 녹번동 161-1(응암로 379)	4,100	25	서대문구, 은평구
135	가좌로	서대문구 연희동 149(연희로 129)	은평구 신사동 265-4(가좌로 400)	3,500	25	서대문구, 은평구
136	수색로	서대문구 남가좌동 292-3(수색로17)	은평구 수색동 293-50 (수색로408)	4,111	35	서대문구, 은평구
137	새창로	마포구 도화동 566(마포대로 78)	용산구 한강로2가 314-1(한강대로 109)	2,250	20	마포구, 용산구
138	백범로	마포구 노고산동 107-1(서강로 144)	용산구 한강로1가 257-9(백범로 400)	4,150	30	마포구, 용산구
139	마포대로	마포구 마포동 129-1(마포대로 8)	마포구 아현동 267-1(마포대로 249)	2,813	51	마포구
140	홍익로	마포구 서교동 354-1(양화로 136)	마포구 서교동 358-27(홍익로 1)	354	22	마포구
141	월드컵로	마포구 합정동 490(양화로 45)	마포구 상암동 442-3(가양대로 114)	4,958	42	마포구
142	성암로	마포구 성산동 667(모래내로 9길6)	마포구 상암동 1582-1 (월드컵북로 62길21)	3,485	27	마포구
143	상암산로	마포구상암동 1693(월드컵로386)	마포구 상암동 1607(상암산로 82)	927	31	마포구
144	연남로	마포구 연남동 361-1(연남로 98)	마포구연남동358-1 (동교로225)	1,048	24	마포구
145	대흥로	마포구 용강동 484-128(대흥로 14)	마포구 대흥동 12-2(대흥로 193)	1,999	24	마포구
146	서강로	마포구 신정동 101(토정로 158)	마포구 노고산동 57-1(신촌로 94)	1,489	46	마포구
147	토정로	마포구 합정동 376-24(토정로 9)	마포구 마포동 34-1(마포대로 19)	3,289	23	마포구
148	독막로	마포구 합정동 374-16(독막로 4)	마포구 도화동 17-22(마포대로 83)	3,397	31	마포구
149	굴레방로	마포구 아현동 329-1(신촌로 270)	마포구 아현동 270-1(굴레방로 1)	404	22	마포구
150	잔다리로	마포구 서교동 363-2(와우산로 71)	마포구 성산동 294-11(잔다리로 133)	1,379	23	마포구
151	창전로	마포구 신정동 30(창전동 26)	마포구 신수동 68-15(창전로 100)	1,034	22	마포구
152	희우정로	마포구 합정동 396-4(포은로 5)	마포구 망원동 418-22(망원로 22)	1,348	20	마포구

연번	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연장(m)	폭(m)	해당 자치구
153	매봉산로	마포구 상암동 1643(매봉산로 8)	마포구 삼양동 2-243(성암로 229-1)	927	30	마포구
154	양화로	마포구 합정동 380-36(양화로 16)	마포구 동교동 155-27(양화로 183)	2,083	48	마포구
155	월드컵북로	마포구 서교동 353-1(양화로 133)	마포구 상암동 1752(월드컵북로 501)	5,236	34	마포구
156	목동로	양천구 신정동 151-20(목동로 17)	양천구 신정동 898-2(목동로 231)	2750	30~35	양천구
157	목동동로	양천구 신정동 325(목동동로 10)	양천구 목동 911-1(안양천로 1071)	4517	25	양천구
158	목동서로	양천구 목동 909-2(목동서로 13)	양천구 신정동 324(목동서로 411)	4,183	25	양천구
159	목동중앙로	양천구 목동 802-9(국회대로 289)	양천구 목동 900-2 (목동중앙로 212)	2,205	23	양천구
160	신목로	양천구 신정동 334(신목로 9)	양천구 목동 404-3(신목로 120)	1,277	25	양천구
161	신월로	양천구 신월동 1321(이펜1로 99)	양천구 신정동 1007-7(목동로 159)	3,137	30	양천구
162	신정중앙로	양천구 신정동 934-1(신정중앙로 2)	양천구 신정동 900-14(목동로 201)	1,203	20	양천구
163	오목로	양천구 신월동524-1(오목로 2)	양천구 목동 404-5(신목로 2길 68)	3,800	20~40	양천구
164	공항대로	강서구 공항동 73-7(공항대로 6)	강서구 염창동 283-4(공항대로 653)	7,600	40	양천구, 강서구
165	등촌로	양천구 목동 606-1(공항대로 530)	강서구 화곡동 782-5(등촌로 3)	2,400	30~35	양천구, 강서구
166	화곡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39-1(화곡로 6)	강서구 가양동 1475(허준로 139)	6,024	35	양천구, 강서구
167	가로공원로	양천구 신월동 151-1(가로공원로 66)	강서구 화곡동 367-63 (가로공원로 240)	2,405	25	양천구, 강서구
168	국회대로	양천구 신월동 217-21 (곰달래길2길 46)	영등포구 여의도동 13(국회대로 800)	10,200	40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169	강서로	강서구 화곡동 907-3(강서로 5길 26)	강서구 가양동 1456-1(강서로 541)	5,526	30	강서구
170	금낭화로	강서구 방화동 819(금낭화로 167)	강서구 방화동 829-3(금낭화로 127)	2,944	29	강서구
171	방화대로	강서구 외발산동 369-1 (남부순환로 224-80)	강서구 방화동 880 (금낭화로 24가길28)	5,010	38	강서구
172	초원로	강서구 방화동 651-5(초원로 2)	강서구 방화동 247-21(방화대로 303)	1,015	20	강서구
173	개화동로	강서구방화동621-24 (개화동로 565)	강서구 방화동 340-53	2,800	34	강서구
174	양천로	강서구 염창동 259-2(양천로 743)	강서구 방화동 505-6(개화동로437)	7,430	29	강서구

연번	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연장(m)	폭(m)	해당 자치구
175	남부순환로	강서구 공항동 70-129 (남부순환로 19-4)	강남구 일원동 4-1(남부순환로 3318)	32,620	40	강서, 양천, 구로, 금천, 관악, 서초, 강남구
176	개봉로	구로구 개봉동 353-14(경인로 324)	구로구 개봉동 359-1(개봉로 7)	2,216	20	구로구
177	경서로	구로구 개봉동 157-13(경인로 323)	구로구 고척동 50-8(중앙로 69)	915	20	구로구
178	고척로	구로구 오류동 6-309(고척로 1)	구로구 고척동 189(고척로 239)	2,458	20	구로구
179	구로중앙로	구로구 구로동 145-1(도림로 85)	구로구 구로동 614-63(중앙로 237)	2,827	35	구로구
180	구일로	구로구 구로동 700-2(구일로 16)	구로구 구로동 642-62 (구일로 8길147)	1,937	20	구로구
181	신도림로	구로구 신도림동 400-1(신도림로 7)	구로구 신도림동 639(신도림로 105)	1,171	30	구로구
182	구로동로	구로구 가리봉동 124-38(구로동로 2)	구로구 구로동 497-5(구로동로 240)	2,950	20	구로구
183	중앙로	구로구 고척동 76-10(중앙로 10-18)	양천구 신월동 455(중앙로 353)	3,900	30	구로구, 양천구
184	신정로	서울 구로구 궁동 35(오리로 1355-10)	양천구 신정동 1267(신정로 27)	3,433	25~30	구로구, 양천구
185	목동남로	구로구 고척동 186-11(중앙로 102)	양천구 신정동 330-10(목동로 31)	1,140	25~35	구로구, 양천구
186	벚꽃로	구로구 구로동 573 (구로중앙로 152)	금천구 시흥동 1020 (시흥대로 73길 76)	5,200	12~20	구로구, 금천구
187	경인로	구로구 오류동 1-7(경인로 8)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92-2(경인로 114길 2)	2,300	32~34	구로구, 영등포구
188	가산디지털1로	금천구 가산동 691-3 (가산디지털1로1)	금천구 가산동 481-5 (가산디지털로 233)	2,425	20	금천구
189	가산디지털2로	금천구 가산동 327-32 (가산디지털2로 14)	금천구 가산동 533 (가산디지털2로187)	2,010	20	금천구
190	가산로	금천구 독산동 178-7(독산로 271)	금천구 가산동 140-1 (가산디지털로 212)	1,617	20	금천구
191	독산로	금천구 시흥동 936(시흥대로 160)	금천구 독산동 950(독산로 366)	3,723	20	금천구
192	두산로	금천구 독산동 336-1(두산로 1)	금천구 독산동 289-8(시흥대로 403)	916	20	금천구
193	은행나무로	금천구 시흥동 904 (시흥대로 174)	금천구 시흥동 910-24 (은행나무로 51)	579	20	금천구
194	탑골로	금천구 시흥동 1010 (금하로 793)	금천구 시흥동 830-14(탑골로 1)	1,261	20	금천구
195	범안로	금천구 독산동 1001-14(벚꽃로 130)	금천구 독산동 1037-3(범안로 1256)	1,500	20~48	금천구
196	문성로	금천구 독산동 961-16(독산로 332)	관악구 신림동 409-190(문성로 252)	2,500	20	금천구, 관악구

연번	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연장(m)	폭(m)	해당 자치구
197	디지털로	금천구 가산동 550-22(디지털로103)	영등포구 대림동 908-2(신길로 47)	3,510	20~30	금천구, 영등포구
198	가마산로	금천구 가산동 535-5(가마산로 70)	영등포구 신길공 714-1(가마산로 586)	5,150	20~30	금천구, 영등포구
199	시흥대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 979-2(시흥대로 6)	영등포구 대림동 948-1(신길로 1)	6,846	40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영등포구
200	국제금융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국제금융로 10)	영등포구 여의도동 53-22(국제금융로 124)	1,307	35	영등포구
201	당산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8-20(당산로 2)	영등포구 당산동6가 321(당산로 247-1)	2,525	30	영등포구
202	대방천로	영등포구 도림동 820(도영로7길15)	영등포구 신길동 4214 (여의대방로23길2)	2,896	20	영등포구
203	도신로	영등포구 대림동 785 (도신로4길6)	영등포구 신길동 101-21(도신로 258)	2,626	25	영등포구
204	도영로	영등포구 대림동 629-35(도영로 2-11)	영등포구 영등포동 647(도신로 29길28)	1,232	20	영등포구
205	버드나루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45(버드나루로1)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87-1(버나루로155)	1,668	20	영등포구
206	선유동1로	영등포구 양평동1가 28-3(영등포로 85-1)	영등포구 양평동3가 69(선유로 176)	845	21	영등포구
207	신길로	영등포구 대림동 948-1(신길로 1)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97-5(경인로 894)	3,018	20	영등포구
208	신풍로	영등포구 신길동 426-3(신풍로1)	영등포구 신길동 500(신풍로122)	1,290	25	영등포구
209	양평로	영등포구 당산동6가 1 (당산로 54길50)	영등포구 양평동5가 41-1(양평로 153)	1,968	30	영등포구
210	여의나루로	영등포구 여의도동28 (여의나루로 8)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여의나루로121)	1,337	26	영등포구
211	여의대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3(여의대로 8)	영등포구 여의도동 20(여의대로 128)	2,653	40	영등포구
212	여의동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3(여의대로8)	영등포구 여의도동 20(여의대로128)	3,793	20	영등포구
213	영등포로	영등포구 양평동2가 41-12(영등포로 1)	영등포구 신길동 1300(영등포로 422)	4,257	30	영등포구
214	영신로	영등포구 도림동 1-43(영신로 1)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86(영중로 169)	2,785	25	영등포구
215	영중로	영등로구 영등포동4가 425-2(경인로 841)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86(영중로 169)	1,761	30	영등포구
216	은행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은행로14)	영등포구 여의도동 10-1(은행로 64)	715	25	영등포구
217	의사당대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3)	영등포구 여의도동 48-3(의사당대로 162)	1,671	75	영등포구
218	선유로	영등포구 문래동5가 5-8(선유로 1)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9(선유로 278)	4,200	20~30	영등포구

연번	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연장(m)	폭(m)	해당 자치구
219	도림로	영등포구 문래동 4가 9-1(선유로 34)	구로구 구로동 801-51(도림로 6)	4,450	20~25	영등포구, 구로구
220	도림천로	영등포구 문래동5가 27(선유서로 3)	영등포구 대림동 995-1 (도림천로 21길 3)	4,400	20~40	영등포구, 구로구
221	여의대방로	영등포구 대림동 948-1(신길로 1)	영등포구 여의도동 40-3(여의대방로 439)	5,700	30	영등포구, 동작구
222	노들로	영등포구 양평동 6가 99(양평로 30길 51)	동작구 본동 258-1(노량진로 247)	8,640	25~40	영등포구, 동작구
223	대림로	영등포구 대림동 650(대림로 256)	동작구 신대방동 692-63(대림로 8)	2,600	20	영등포구, 동작구
224	노량진로	동작구 대방동 341-3(노량진로 2)	동작구 본동 150-1(노량진동248)	2,599	35	동작구
225	보라매로5길	동작구 신대방동 729-1(보라매로5길1)	동작구 신대방동 395 (여의대방로20길33)	114	25	동작구
226	사당로	동작구 사당동 501-12(사당로 2)	동작구 사당동 147-48(사당로 308)	3,162	20	동작구
227	사당로17길	동작구 사당동 220-102 (사당로13길78)	동작구 사당동 266-1(사당로237)	687	21	동작구
228	사당로23나길	동작구 사당동 708-831 (사당로23길84)	동작구 사당동 129-11 (동작대로27길38)	645	21	동작구
229	상도로	동작구 대방동399-3 (상도로1)	동자구 상도동 126-16 (상도로68길1-20)	4,258	20	동작구
230	상도로53길	동작구 상도동 486-1(상도로347)	동작구 상도동 7-88(흑석로24-1)	963	21	동작구
231	장승배기로	동작구 상동동 208-14(장승배기로 1)	동작구 노량진동 62-11(노량진로 132)	1,778	25	동작구
232	현충로	동작구 본동 46-1(현충로2)	동작구 동작동 41-2(현충로210)	2,773	35	동작구
233	흑석한강로	동작구 흑석동 335-1(흑석로2)	동작구 흑석동 336(흑석로27)	501	20	동작구
234	동작대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3-13(동작대로 7)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160(이촌로 303)	5,071	50	동작구, 용산구
235	봉천로	관악구 신림동 1677-4(신사로 7)	관악구 봉천동 1634-9(봉천로 616)	4,800	20~40	동작구, 관악구
236	보라매로	동작구 대방동 405-11(보라매로 113)	관악구 봉천동 971-4(보라매로 2)	1,200	25~35	동작구, 관악구
237	양녕로	동작구 본동 10-23 (노량진로 32길 10)	관악구 봉천동 912-18 (남부순환로 1761)	4,900	20~40	동작구, 관악구
238	관악로	관악구 신림동 56-1(관악로1)	관악구 봉천동 1000(관악로306)	3,094	35~40	관악구
239	신림로	관악구 신림동 210(신림도23)	관악구 신림동 1429-1(신림로391)	4,090	20~35	관악구
240	난곡로	관악구 신림동 1735-1(난곡로 30)	관악구 신림동 518-1(난곡로 367)	3,739	25	관악구

연번	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연장(m)	폭(m)	해당 자치구
241	은천로	관악구 봉천동 963-7(봉천로309)	관악구 봉천동 42-58(은천로 186)	1,882	20	관악구
242	쑥고개로	관악구 신림동 94-140 (관악구 쑥고개로 1)	관악구 봉천동 1569-4(쑥고개로 139)	1,444	20	관악구
243	낙성대로	관악구 봉천동 1662-35 (남부순환로 1892)	관악구 봉천동 238(낙성대로 101)	1,170	30	관악구
244	관천로	관악구 신림동 1637-11(신림로 299)	관악구 신림동 457-1(관천로 137)	1,363	20	관악구
245	조원중앙로	관악구 신림동 1668-15 (남부순환로 1377)	관악구 신림동 551-8(신사로 54)	743	20	관악구
246	신사로	관악구 신림동 1446-18(봉천로 172)	관악구 신림동 1677-1(신사로 7)	1,900	15~20	관악구
247	호암로	관악구 신림동 316-127(호암로 484)	관악구 신림동 1513-2(호암로 605)	2,350	16~20	관악구
248	과천대로	관악구 남현동 1060-10 (남부순환로 2082-25)	서초구 방배동 3032(방배대로 904	950	50	관악구, 서초구
249	사평대로	서초구 방배동 750-20(사평대로 12)	서초구 반포동 748-16(사평대로 373)	3,823	40	서초구
250	서초대로	서초구 방배동 300-1(동작대로 108)	서초구 서초동 1318-8(강남대로 399	4,268	40	서초구
251	고무래로	서초구 반포동 59-4 (고무래로 6-6)	서초구 서초동 1682 (서초대로65길 13-10)	1,056	26	서초구
252	나루터로	서초구 잠원동 54 (서초구 잠원로 166-4)	서초구 잠원동 13-6(나루터로 83)	897	20	서초구
253	마방로	서초구 양재동 241(마방로 2)	서초구 양재동 275(마방로 68)	766	20	서초구
254	매헌로	서초구 양재동 217-6(양재대로 159)	서초구 양재동 203(매헌로 72)	1,232	20	서초구
255	명달로	서초구 방배동 1006-2(명달로 9)	서초구 서초동 1498-32 (반포대로27길 48)	1,582	22	서초구
256	바우뫼로	서초구 우면동 1(바우뫼로 2)	서초구 양재동 4-3(논현로 139)	2,267	25	서초구
257	방배로	서초구 방배동 1026-14(방배로1길 9)	서초구 방배동 757-1(방배동 285)	2,889	30	서초구
258	방배천로	서초구 방배동 445-1(방배천로 2길2)	서초구 방배동 830-3(방배천로 160)	1,637	39	서초구
259	법원로	서초구 서초동 1705(법원로 15)	서초구 서초동 1717-6(서초대로 265)	216	40	서초구
260	사임당로	서초구 서초동 1582-2(반포대로 72)	서초구 서초동 1329-10 (강남대로 337)	1,887	20	서초구
261	서운로	서초구 서초동 1354(서운로 3)	서초구 서초동 1302(사평대로 350)	2,305	20	서초구
262	서초중앙로	서초구 반포동 57-1(서초중앙로 255)	서초구 서초동 1448-4 (남부순환로 2441)	2,940	30	서초구

연번	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연장(m)	폭(m)	해당 자치구
263	신반포로	서초구 반포동 1130(신반포로 10)	서초구 잠원동 37-9(신반포로 339)	3,472	30	서초구
264	효령로	서초구 방배동 479-5 (남부순환로 2137)	서초구 서초동 1340-6(강남대로 291)	4,395	30	서초구
265	반포대로	서초구 서초동 700(남부순환로 2364)	용산구 서빙고동 134(서빙고로 279)	4,700	40	서초구, 용산구
266	양재천로	서초구 양재동 101 (바우뫼로 18길 14)	강남구 대치동 511(남부순환로 3032)	4,500	20	서초구, 강남구
267	논현로	서초구 양재동 402-6(논현로 1길 23)	강남구 압구정동 436 (압구정로 29길 69)	8,300	30~40	서초구, 강남구
268	강남대로	서초구 양재동 232(강남대로 27)	서초구 잠원동 49-37(잠원로 221-31)	7,820	40	서초구, 강남구
269	언주로	서초구 내곡동 1-593 (신흥말길 130-4)	강남구 압구정동 464 (압구정로 39길 58)	12,080	30~40	서초구, 강남구
270	헌릉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0(청계산로10)	송파구 장지동 596-21(송파대로 6)	8,500	30~51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271	양재대로	서초구 양재동 221 (양재대로 11길 19)	강동구 고덕동 470(양재대로 1716)	17,160	40~50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72	영동대로	강남구 청담동 129(도산대로 551)	강남구 일원동 688(영동대로 4길 10)	5,683	70	강남구
273	도산대로	강남구 논현동 1(강남대로 606)	강남구 청담동 129(도산대로 551)	3,262	50	강남구
274	봉은사로	강남구 역삼동 808(강남대로 470)	강남구 삼성동 110-2(봉은사로 645)	4,070	35	강남구
275	압구정로	강남구 신사동 527-4(압구정로 102)	강남구 청담동 98(도산대로 459)	3,041	30	강남구
276	학동로	강남구 논현동 120(강남대로 548)	강남구 청담동 134-17(학동로 609)	3,755	40	강남구
277	테헤란로	강남구 역삼동 825(강남대로 390)	강남구 삼성동 171-3(테헤란로 629)	3,898	50	강남구
278	역삼로	강남구 역삼동 832(강남대로 334)	강남구 대치동 1004-1(역삼로 607)	3,607	20	강남구
279	개포로	강남구 개포동 1238(개포로 202)	강남구 일원동 639-7(개포로 670)	4,526	20	강남구
280	선릉로	강남구 개포동 141 (선릉로 7)	강남구 압구정동 493(압구정로 347)	6,352	25	강남구
281	삼성로	강남구 개포동 189 (삼성로 14)	강남구 청담동 48(도산대로 502)	5,061	35	강남구
282	광평로	강남구 개포동 산46-16(일원터널)	강남구 수서동 722 (탄천공원)	3,100	30	강남구
283	봉은사로86길, 테헤란로 87길 (구아셈로길)	강남구 삼성동 147-2(봉은사로 516)	강남구 삼성동 158-23(테헤란로 513)	600	30	강남구

연번	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연장(m)	폭(m)	해당 자치구
284	테헤란로8길 역삼로7길 (구특허청길)	강남구 역삼동 823 (테헤란로 124 특허청)	강남구 역삼동 829-15 (역삼로 125 역삼초교사거리)	550	20	강남구
285	역삼로8길 도곡로7길 (구새밝길)	강남구 역삼동 834(역삼로 128)	강남구 역삼동 840-14 (도곡로139)	400	20	강남구
286	일원로	강남구 일원동 615 (개포로110길 15 대청역)	강남구 일원동 717 (일원로 121 일원역)	1,200	25	강남구
287	밤고개로	수서IC	성남시계 (세곡동 사거리)	2,850	30	강남구
288	도곡로	강남구 도곡동 943 (강남대로 292)	송파구 잠실동 86 (올림픽로 4길 15)	4,700	35~40	강남구, 송파구
289	위례성대로	송파구 방이동 44-2(위례성대로 2)	송파구 오금동 99-23 (위례성대로 260)	2,600	70	송파구
290	중대로	송파구 가락동 150-38(중대로 16)	송파구 오금동 95(중대로 322)	3,200	35	송파구
291	문정로	송파구 문정동 55-6(송파대로 180)	송파구 마천동 22-1 (성내천로 23가길 27-1)	3,000	20	송파구
292	석촌호수로	송파구 잠실동 19(올림픽로 99)	송파구 송파동 58-1(석촌호수로 298)	3,000	30	송파구
293	삼학사로	송파구 석촌동 221-15(삼학사로 2)	송파구 잠실동 47(삼학사로 136)	1,400	25	송파구
294	성내천로	송파구 오금동 97-8(성내천로 4)	송파구 마천동 277-21 (성내천로 337-18)	3,400	20	송파구
295	오금로	송파구 신천동 17-4(올림픽로 435)	송파구 거여동 222-2(오금로 569)	5,700	35	송파구
296	백제고분로	송파구 잠실동 19-4(백제고분로 1)	송파구 방이동 180-7(위례성대로 34)	5,100	35	송파구
297	삼전로	송파구 삼전동 341-16(삼전로1길22)	송파구 잠실동 44(석촌호수로 169)	1,500	30	송파구
298	송파대로	송파구 장지동 608-5(송파대로 3)	송파구 잠실동 27(송파대로 567)	7,365	50	송파구
299	올림픽로	송파구 잠실동 10(올림픽로 25)	강동구 암사동 100-3 (올림필로 112길 4)	9,400	25~60	송파구, 강동구
300	강동대로	송파구 풍납동 388(강동대로 13)	강동구 둔촌동 32-1(강동대로 341)	4,725	35~50	송파구, 강동구
301	동남로	송파구 문정동 150 (중대로 124)	강동구 고덕동 555(아리수로 256)	10,000	20~30	송파구, 강동구
302	상암로	강동구 암사동 510 (상암로 2)	강동구 상일동 457-2(천호대로 1461)	4,332	38	강동구
303	성안로	강동구 성내동 448-9(강동대로 205)	강동구 천호동 122-1(성안로 201)	2,082	15~20	강동구

연번	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연장(m)	폭(m)	해당 자치구
304	천중로	강동구 천호동 328(선사로 82)	강동구 길동 28-3(명일로 26길 25)	2,954	20	강동구
305	성내로	강동구 성내동 319-33(올림픽로 552)	강동구 성내동 434-13(성내로 33)	960	25	강동구
306	아리수로	강동구 암사동 440-1(올림픽로836)	강동구 암사동 670 (아리수로 97길 20)	4,400	20~35	강동구
307	고덕로	강동구 암사동 507-4 (고덕로 25)	강동구 고덕동 210-1 (고덕로 397 버스차고지)	4,050	21~29	강동구
308	상일로	강동구 상일동 358-5 (천호대로 1487 가나안신협)	강동구 고덕동 172 (상일로 163)	1,630	25	강동구
309	구천면로	광진구 광장동 313-3 (구천면로 14)	강동구 상일동 124-2 (구천면로 669)	7,050	13~28	광진구,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 및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는 특정구역에서 제외함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92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서초구 서초동 1365-8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에 대하여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7년 제2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7.11.15.) 및 2017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12.13)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5-8번지 외 7필지
- 면 적 : 2,805.10㎡
- 결정 취지 :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함

Ⅱ.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신설)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신설)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서초동 1365-8번지 등 8필지	2,805.1	-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관련 결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면적(㎡)	결정사유
신설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2,805.1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805.1		2,805.1	100.0	서초동 1365-8 일원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805.1	감) 2,805.1	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증) 2,805.1	2,805.1	1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후		
-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2,805.1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번호	도면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비고
신설	A	A-1	서초구 서초동 1365-8번지 외 7필지	2,805.1	-

2.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번호	위치	면적(㎡)	비고
신설	A	서초동, 1365-18, 1365-8,1365-9, 1365-10, 1365-17, 1365-19, 1365-20, 1365-21	2,805.1	공동개발지정

3.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구분		건축물 용도	비고
용도	지정용도(A) (주거부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주1) (주거비율:연면적주2)의 80% 초과 ~ 90% 이하	-
	불허용도(1) (비주거부분)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 •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장례식장/ 위락시설	-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6호의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한함
주2) 연면적에서 주차장면적은 제외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구분	내용	비고
건폐율	• 60%이하	-
용적률	• 680% 이하	「서울특별시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적용
높이	• 80m 이하	주변지역(양재지구단위계획 간선변) 고려한 최고높이 지정 건축법에 따름

■ 결정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건폐율	• 60% 이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에 따른 견폐율 및 용적률 체계를 준용하여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하기 위함
용적률	• 680% 이하	
높이	• 80m 이하	주변지역(양재지구단위계획 간선변)을 고려한 최고높이 지정

• 건축계획 적용기준(신설)

구분		계획기준	계획사항	비고
공공기여율		• 부지면적의 25%이상[주1]	기본용적률 680% 부여	·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비주거비율		• 10%이상~20%미만[주2]		
주택 건설기준	공공 : 민간	• 25% : 75%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건축물 형태	21세기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위한주요 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 이행		
주민 공동시설	커뮤니티 시설	• 주민공동시설 설치대상		

주1) 용도지역 변경 부지면적의 25%이상
주2)「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 2017.11.16)준용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가. 교통에 계획에 관한 사항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남부순환로변	-

나. 공공기여 계획

구분	기본용적률	공공기여율	계 획	비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680%	용도지역 변경 부지면적의 25%이상 주1) (701.28㎡이상)	용도지역 변경 부지면적의 25% (701.36㎡)	-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함.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 2017.11.16.) 3-3-1적용

Ⅲ.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권고사항)

- 2017년 서울시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12 .13.) 권고사항
  - 청년주택 건립 목적을 고려하여 1층 근린생활시설 조정 등을 통해 공공업무시설 및 청년지원시설을 저층 배치하는 것을 검토

Ⅳ. 관계도면 : 붙임 참조(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결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관계서류 열람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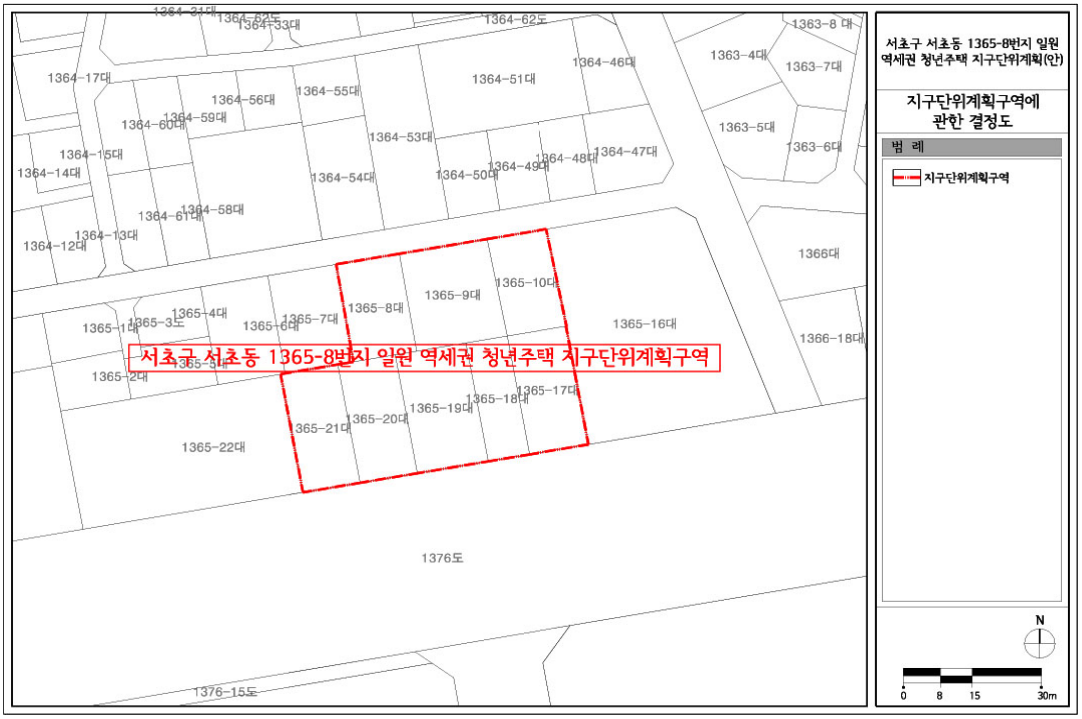
- 서울시청 3층 임대주택과(02-2133-7053)와 서초구청 6층 도시계획과(02-2155-6791)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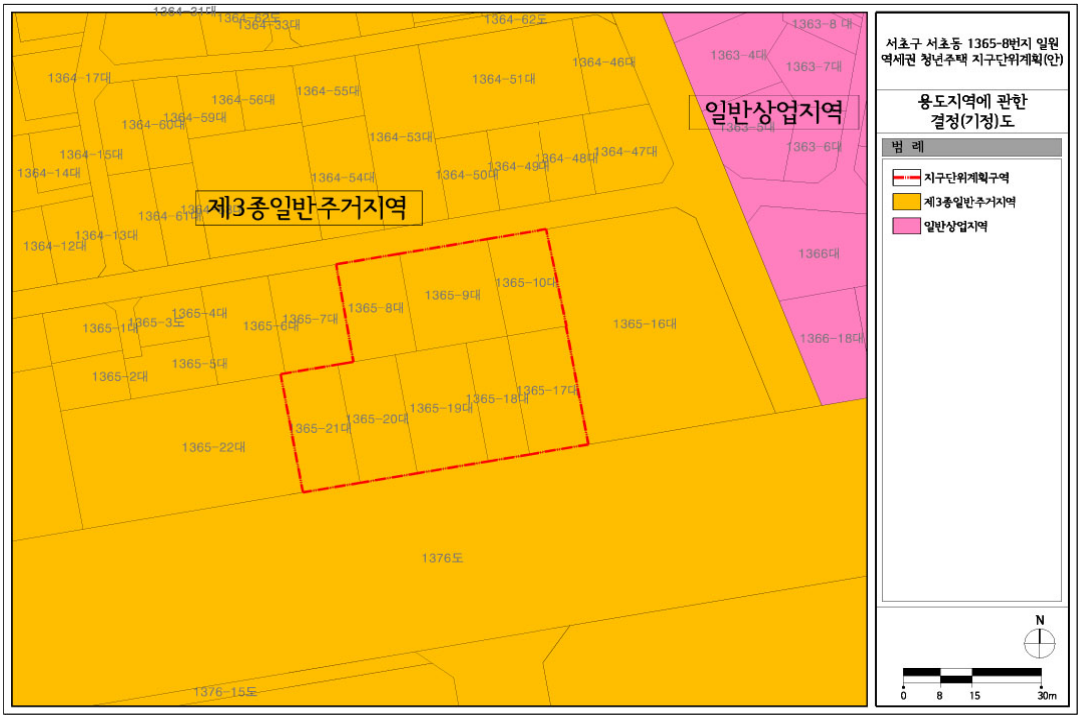
Ⅵ.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임대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표준 협약서”는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전에 서울특별시장과 사업시행자간 협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허가권자(구청장)는 이를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조건으로 부여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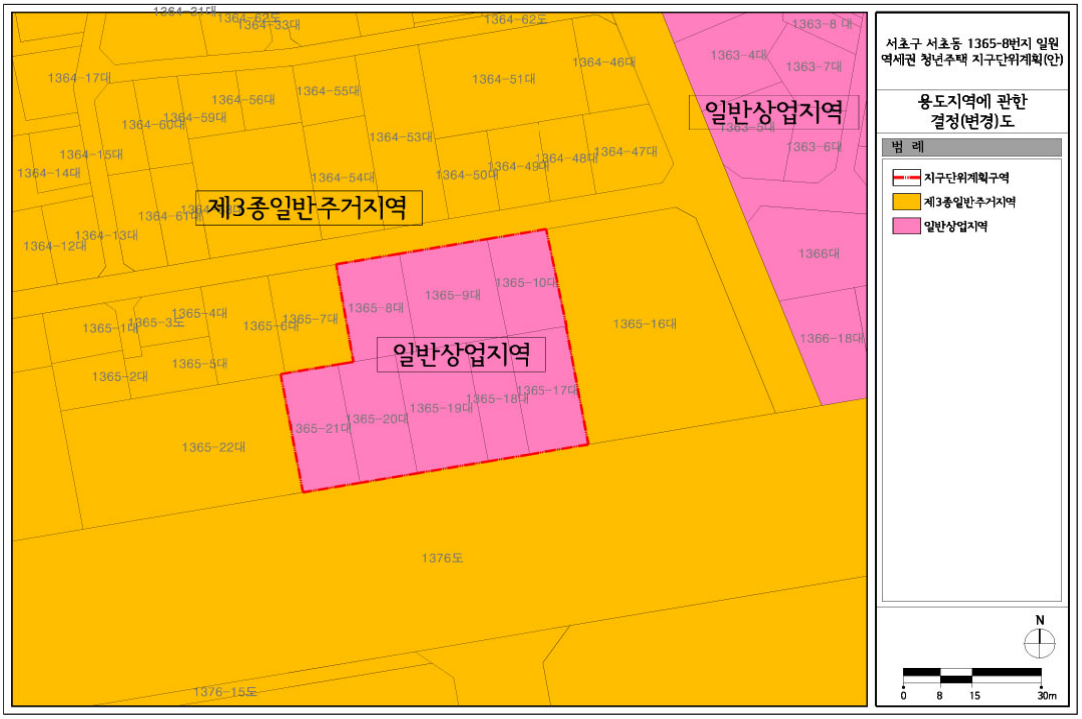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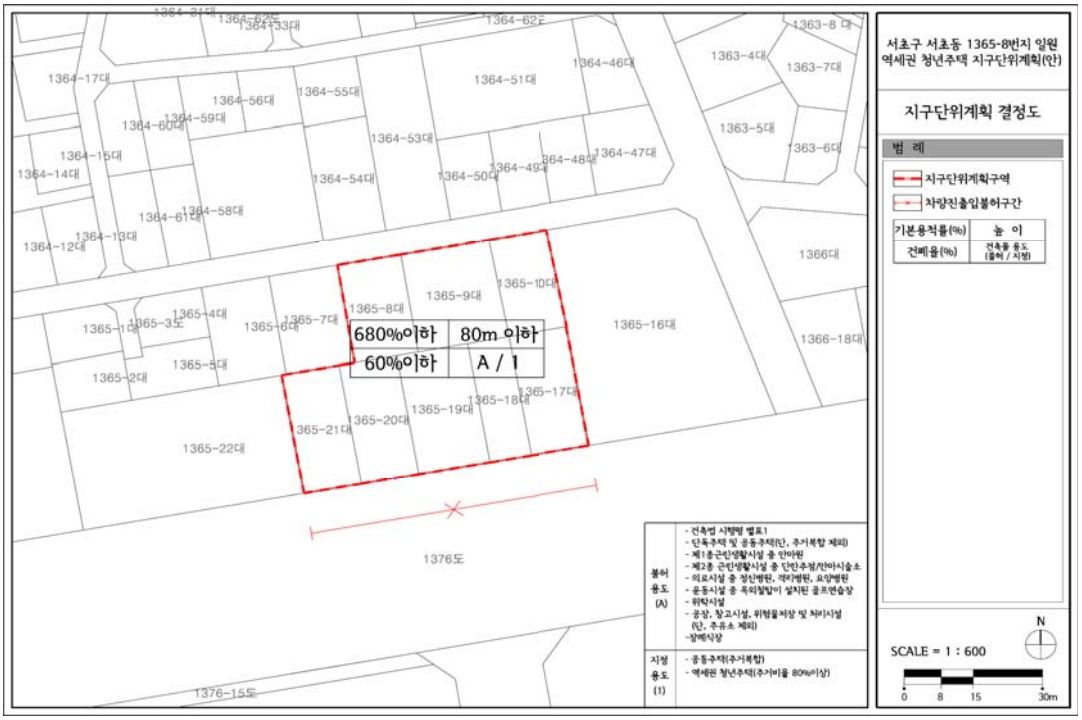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기정)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53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내역 공고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업체명 : 지앤씨엔지니어링(주)

2. 대표자 : 이 규 범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B-709(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 02-2026-0770)

4. 업종 :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수질[제47호]

6. 지정일자 : 2017. 12. 14.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544호

전기사업(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발전사업)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발전사업) 양수 인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 고 명: 전기사업(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2. 공고기간: 2017. 12. 28. ~ 2018. 01. 11.(15일)

3. 양수이유: 대표자 변경에 따른 양도·양수

4. 양수인가 내용: 솔라1,2,3 태양광발전소

<솔라1 태양광발전소>

구 분	양도인	양수인
허가번호	서울-331호(2017-01)	좌동
허가일자	2017. 01. 10.	좌동
발전소명	솔라1 태양광발전소	좌동
대표자	정소영	조영린
설치장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613-71(건축물 옥상)	좌동
설비용량	19.04kW	좌동
양수인가일	2017. 12. 19.	

<솔라2 태양광발전소>

구 분	양도인	양수인
허가번호	서울-354호(2017-05)	좌동
허가일자	2017. 05. 02.	좌동
발전소명	솔라2 태양광발전소	좌동
대표자	정소영	조영린
설치장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137-8(건축물 옥상)	좌동
설비용량	48.96kW	좌동
양수인가일	2017. 12. 19.	

<솔라3 태양광발전소>

구 분	양도인	양수인
허가번호	서울-364호(2017-07)	좌동
허가일자	2017. 07. 17.	좌동
발전소명	솔라3 태양광발전소	좌동
대표자	정소영	조영린
설치장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460-27(건축물 옥상)	좌동
설비용량	30.24kW	좌동
양수인가일	2017. 12. 1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549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 명	주 소		
김대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오리로52번길 *3-*2, *0*호(박달동)	일시 : 2017-08-25 18:56 장소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동남로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29m초과	과태료:30만원
박종남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143번길 8, *1*-**3호(정왕동)	일시 : 2017-10-11 10:48 장소 :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서하남 I.C 내용 : 차량의 축 하중 1.85t 초과	과태료:50만원
이재술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로8번길 ** (신탄진동)	일시 : 2017-10-12 07:14 장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언주로 내용 : 차량의 총중량 3.65t 초과	과태료:50만원
홍성화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6*2, **1호(신읍동)	일시 : 2017-10-13 03:30 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I.C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26m 초과	과태료:30만원
김선우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길 *** (초월읍)	일시 : 2017-10-26 07:40 장소 :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송파대로 내용 : 차량의 축 하중 1.35t 초과	과태료:50만원

나.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 명	주 소		
심현우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하성로**6번길 ** (하성면)	일시 : 2017-08-02 02:51 장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동부간선도로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28m 초과	과태료:30만원
백용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51길 **-* (화곡동)	일시 : 2017-08-22 15:11 장소 :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천호대로 내용 : 차량의 총중량 4.3t 초과	과태료:50만원
이영수	경기도 여주시 어영실로 **-** (천송동)	일시 : 2017-08-24 01:09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율현동 헌릉로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29m 초과	과태료:30만원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납부기한 : 2018. 01.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테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가 도달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문의처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2040-0324, 팩스번호 : 02-2040-030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553호

2021년 수도권(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021년 수도권(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승인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승인일자 : 2017. 12. 19.
2. 관리계획 주요내용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사 업 시행자	위 치	면 적(㎡)		비고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 연면적	
서울 공군 제714사업	국방·군사시설	국방부장관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산6-15번지 일원	11,512.22	2,330.97	신설

3.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2133-2040),
종로구 공원녹지과(2148-2853), 성북구 공원녹지과(2241-3692)
4. 열람기간 : 시보게재 다음일로부터 14일간
5. 관계도서 : 게재생략
6. 공고방법 : 서울시보에 게재하고, 해당 자치구 게시판에 게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555호

동대문구 신설동 72-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72-8 일대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 기간: 2017. 12. 29. ~ 2018. 1. 11.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역세권사업팀
(☎02-2133-4932)
Ⅲ.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동대문구 신설동 72-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신설동 72-8 번지 외 2 필지 (25-41, 25-42)	-	증)570	570	-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70.0	-	570.0	100.0	-
상업지역	소 계	570.0	-	570.0	100.0	-
	일반상업지역	570.0	-	570.0	100.0	-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계획

구분	획지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신설	564.51	신설동 72-8 대	327.51	획지계획
		신설동 25-41 대	145.0	
		신설동 25-42 대	92.0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획지계획 564.51㎡	• 도시계획도로에 일부 저촉되는 부분(신설동 72-8, 면적 5.49㎡) 기부채납으로 획지 제외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 지정용도

구분	지정용도	비고
(A)	공동주택(주거복합)주1)	-

주1) 공동주택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역세권2030 청년주택에 한함(오피스텔 제외)

■ 불허용도

구분	불허용도	비고
(a)	•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장례식장	-

■ 결정사유서

구분	계획내용	결정사유
-	• 지정용도 신설 - 공동주택(주거복합) • 불허용도 신설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지정용도 및 불허용도 계획

나. 건축물 개발밀도 결정조서

1) 건축물의 개발밀도 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 60%이하	-
용적률	• 기본용적률 : 80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정이하	-
최고높이	• 60m 이하	-

※ 상한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내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적용

■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건축물 밀도계획 신설 - 건폐율 : 60%이하 - 용적률 : 800%이하 - 높이 : 60m이하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건축물 밀도계획 수립

■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구분		계획기준	완화내용	비고
공공기여율		• 부지면적의 10% 이상(56.46㎡ 이상)	기본 용적률 800% 적용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비주거 비율		• 10%이상 ~20% 미만 (용적률 기준, 지하2~지상2층 설치)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구조 , 커뮤니티지원 시설의 설치계획 , 에너지 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 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이행		
커뮤니티시설		• 주민공동시설 미대상 규모인 경우에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 주민커뮤니티 설치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건축물의 배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 한빛로(15m) : 3m • 왕산로길(4m) : 1m	

Ⅳ. 관계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556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박경순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서원서로 **-*, ***호 (모충동)	일시: 2017-10-16 16:04 장소: 벌말로 내용: 제한 폭 0.7m 초과	처분일: 2017. 11. 24. 과태료: 100만 원 납기일: 2018. 1. 31.
김태홍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남4길 11, *동 ***호(삼동, ****)	일시: 2017-10-17 14:41 장소: 목동교동측IC 내용: 제한 총중량 4.9톤 초과	처분일: 2017. 11. 24. 과태료: 25만 원 납기일: 2018. 1. 31.
박수일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38길 *-*, ***호 (국우동)	일시: 2017-10-19 20:41 장소: 벌말로 내용: 제한 폭 0.28m 초과	처분일: 2017. 11. 24.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8. 1. 31.
이세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73, ****동 ****호 (삼송동, 삼송2차아이파크)	일시: 2017-10-23 14:44 장소: 행주대교 북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축하중 1.87t 초과	처분일: 2017. 11. 24.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8. 1. 31.
김병덕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권율로 ****(백석읍)	일시: 2017-10-23 22:48 장소: 벌말로 내용: 제한 폭 0.45m 초과	처분일: 2017. 11. 24.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8. 1. 31.
구유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감골로 ***(사동)	일시: 2017-10-24 20:04 장소: 신월IC 내용: 제한 총중량 4.75톤 초과	처분일: 2017. 11. 24.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8. 1. 31.
신학진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47길 **, ***호 (고척동)	일시: 2017-10-26 05:17 장소: 가양대교램프 내용: 제한 축하중 1.2톤 초과	처분일: 2017. 11. 24.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8. 1. 31.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선용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318번길 23, ***동 ****호 (가정동, 하나아파트)	일시: 2017-06-15 05:13 장소: 벌말로 내용: 제한 길이 0.29m 초과	처분일: 2017. 9. 26.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7. 11. 30.
정덕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2길 **, ***호 (와동, *****)	일시: 2017-08-08 05:15 장소: 양평동 내용: 제한 폭 0.18m 초과	처분일: 2017. 9. 26.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7. 11. 30.
이옥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60길 **, ***호 (신월동, ****)	일시: 2017-08-18 00:04 장소: 벌말로 내용: 제한 길이 0.28m 초과	처분일: 2017. 9. 26.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7. 11. 30.
공용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안로156번길 *-**, ***호 (연수동)	일시: 2017-08-22 14:32 장소: 목동교 동측 램프 내용: 제한 총중량 4.4톤 초과	처분일: 2017. 9. 26.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7. 11. 30.
김병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 (상동)	일시: 2017-09-04 06:52 장소: 신월사거리 내용: 제한 폭 0.28m 초과	처분일: 2017. 9. 26.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7. 11. 30.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5. 납부기한: 2018. 1.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5%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559호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시민사회발전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분야 : 12개 사업유형

연번	사업유형	사업내용(예시)
1	문화 · 관광도시	• 서울 관광자원 발굴, 남산 및 한강 관광 코스 탐방활동 • 문화유산 · 문화재 보존활동, 전통문화 계승 · 발전,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 차(茶) 문화체험, 궁궐 순례 프로그램 운영, 생활공간 문화화 등
2	복지 · 인권신장	• 차상위 계층 삶의 질 개선 및 서민주거 안정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복지증진, 양성평등 문화 만들기 • 이생이모작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등 취약계층 식사 무료제공 봉사활동 등
3	아동 · 청소년 지원	• 아동 · 청소년에게 글로벌 문화 경험 및 외국어 교육 기회 제공 • 청소년 자율 봉사조직 구성 지원 • 저소득 가정의 아동 · 청소년에게 무료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등
4	시민의식 개선	• 기초질서 지키기, 공동체 의식함양, 계층간 갈등해소 및 세대간 이해증진 •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 및 도덕성 함양, 세대통합을 위한 예절교육 • 부정부패 감시 등 반부패문화 정착운동 등 • 예산낭비 신고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5	외국인 노동자 · 이주민 지원	•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 및 검사,투약 • 이주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 이주노동자 보호 및 다문화 사회 프로젝트 추진 등
6	NPO활동 지원	• 시민단체 활동가 양성교육, 서울 둘레길 · 숲길 안전보안관 양성 및 활동 • 정부 · 지자체 지원제도 활용 정보제공 등 시민사회 지원활동 • NPO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 등
7	교통 · 안전	• 재해 · 재난 예방활동, 재난구조 활동, 심폐소생술 교육 • 안전사고 예방 활동(학교 · 성 · 가정 및 식품), 안전 불감증 해소 • 안전문화 교육 · 홍보,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사업 등
8	통일 · 안보	• 평화통일 기반 구축 활동, 남북 사회통합 교육활동 • 국가안보 및 나라사랑 활동, 통일 · 안보 체험 교육 및 캠페인 등
9	북한이탈주민 지원	• 탈북청소년 맞춤형 교육활동, 탈북자 정착 대안학교 및 역사문화 체험활동 • 탈북자 맞춤형 심리치료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탈북자 진로교육 등
10	환경보전 · 자원절약	• 자원재활용, 자연생태 체험학습,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 에너지 · 자원절약 생활화, 생활쓰레기 줄이기 등

연번	사업유형	사업내용(예시)
11	도시재생	• 낙후지역 활성화 위한 벽화거리 · 마을 조성사업 • 주변지역 지가하락과 슬럼화를 막기위한 빈집수리 및 활용사업 • 서울 각 지역의 역사 · 문화 컨텐츠 개발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 등
12	기타 공익사업	• 위 사업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 사업유형별 사업내용은 예시이며, 이에 한정된 것은 아님.

2. 신청 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2018.1.26.)까지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3. 사업추진기간 : 2018년 3월 ~ 11월

4. 신청형태 : 1개 단체 1개 사업

5. 지원규모 및 심사·선정 방법

지원사업 분야	지원규모	심사선정방법
12개 사업유형	사업별 3천만원 이하	○ 서류 심사 - 1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별 심사(개별) - 2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사(분야별) - 3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전체회의(최종결정)

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은 대상이 아님)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 1. 15.(월) 09:00 ~ 2018. 1. 26.(금) 18:00까지

※ 마감일(2018.1.26)은 신청 폭주로 인터넷 접속장애 예상되므로 조기신청 접수 요망(18:00이후 접수 자동적 차단)

○ 신청방법 : 인터넷(https://ssd.wooribank.com/seoul) 신청·접수(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불필요)

※ 인터넷 접수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seoul)

➜ 「진행사업 공고」에서 사업신청 클릭 ➜ 지원사업 등록

8.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8. 1. 12.(금) 14:00, 서울시청 다목적홀
○ 설명회 내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사업선정 심사기준·방법 및 결과 발표
○ 심사·선정 :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8조)
※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을 통한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①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주된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을 제출한 경우
②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③ 서울시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법정단체(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등)
○ 결과발표 : 2018. 3. 7.(수) 서울시NGO협력센터(내손안에서울>커뮤니티)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 통지

10.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민간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보조금 지원단체로 지정되면 보조금전용통장(계좌) 사본 및 자부담금 예치통장(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 예치통장에는 지원 보조금의 최소 5%이상을 예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사업기간 동안 분할 교부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11.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 선정된 사업의 경우 사업실행계획서, 최종평가결과, 단체별 최종실적보고서 등을 서울시NGO협력센터 홈페이지(내손안에서울>커뮤니티>서울시NGO협력센터) 등에 게재할 예정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2133-6560, 6562, 6563)으로 문의바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563호

정동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 열람 공고

1. 중구 정동(종로구 신문로1·2가 일대 일부 포함)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4조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구 역 명 : 정동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관련도서 및 도면게재 생략)
2)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내용 : 게재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가. 정동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안)

○ 정동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신설)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정동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정동 (정동, 서소문동, 순화동), 종로구 신문로 1·2가 일대	-	증)508,446.3	508,446.3	-

○ 도시기반시설, 가구 및 획지, 건축물의 용도·밀도(높이) 및 배치·형태, 민간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등에 관한 사항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게재

3) 열람기간 : 열람공고 다음날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중구청 도심재생과, 종로구청 건축과
5) 열람내용 : 정동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6) 관련도서 비치 : 열람장소에 일반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련 도서 및 도면 비치
7) 의견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역사도심재생과(☎02-2133-8497),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82), 종로구청 건축과(☎02-2148-2814)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뉴스·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 -256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76호(2017.10.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

면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밤 고개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 등에 의거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 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열람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밤고개로 확장공사
2.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116-31 ~ 강남구 수서동 729-1
3. 사업의 규모 : 도로확장 폭 8차로, 연장 1.85km (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명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 2019년 12월31일 까지
6.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27	30 (59)	보조 간선 도로	3,750	수서동 142호 광장	세곡동 39호 광장	일반 도로	수서역	건고시 41 (84.2.14)	밤고개로
변경	대로	2	27	30 (59)	보조 간선 도로	3,750	수서동 142호 광장	세곡동 39호 광장	일반 도로	수서역		일부 폭원변경

7. 변경사유
   - 밤고개로 확장공사에 따른 '토지 분할측량 결과 반영'과 '관계부서 협의 의견 및 비탈면 반영'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당초 : 129,830㎡ → 변경 : 131,018㎡)]

8. 열람방법 및 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열람방법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세목조서 별첨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02-3708-2587), 강남구 도로관리과(☎02-3423-6557), 강남구 세곡동주민센터(☎02-3423-8667), 강남구 수서동주민센터(☎02-3423-8555),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02-2133-8087)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2587)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별첨 토지조서
10.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5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도면번호)
	시	구	동						성명	주소	
1	서울	강남	세곡	변경없음	116-31	도	255	110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1
2	서울	강남	세곡	변경없음	122-14	도	4,851	126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2
									서울특별시		
3	서울	강남	세곡	변경없음	116-28	대	3	3	송파단위농업협동조합	서울 강남구 마천동 115-4	3
4	서울	강남	세곡	변경없음	102-33	대	3	3	서울특별시		4
5	서울	강남	세곡	변경없음	98-1	도	3,160	883	서울특별시		5
6	서울	강남	세곡	변경없음	116-2	도	231	231	이우종	광명시 하안동 296 고층주공아파트 607동 204호	6
									이영진	서울 강남구 역삼동 765-31 역삼2차아이파크 102동 1502호	
									정인순	미합중국 2030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시 스코트드라이브 10723	
									이규현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292-11	
									이규선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200 센텀파크1차아파트 109동2404호	
									이규태	미합중국 20155 버지니아주 게인스빌 프래지던트랜닝웨이 14356	
									이민자	미합중국 2030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시 스코트드라이브 10723	

일련번호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도면번호)
	시	구	동						성명	주소	
									이순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98-11	
									안호숙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화주택 에이동 302호	
									이규석	서울 노원구 중계동 590 신안아파트 101동 106호	
									이현순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669 극동아파트 102동 303호	
									최태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490-8	
7	서울	강남	세곡	변경없음	118-1	도	184	184	서울특별시		7
8	서울	강남	세곡	변경없음	97-3	도	3,398	350	서울특별시 강남구		8
9	서울	강남	세곡	변경없음	122-16	도	895	895	서울특별시		9
10	서울	강남	세곡	변경없음	115-2	도	592	592	국토교통부		10
11	서울	강남	세곡	변경없음	115-7	전	383	383	서울특별시		11
12	서울	강남	세곡	변경없음	111-2	도	17	17	이병무	서울 강남구 수서동 514	12
									이병욱	서울 강남구 수서동 514	
									이병대	서울 은평구 수색동 332-1	
									이병석	서울 은평구 수색동 332-1	
									이병의	경남 양산군 응상읍 평산리 163 우선우아아파트 403동 103호	
									이병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27-4	
									이병옥	서울 강동구 암사동 446-19	
									이병화	서울 강동구 상일동 298-2	
									이희순	서울 강동구 상일동 279-6	
									이완희	경기도 광주시 동부읍 덕주리 415-66	
									이미선	서울 강동구 상일동 279-6	
									이진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42-7 삼익빌라 203호	
									윤경미	인천 서구 가좌동 378-7	
13	서울	강남	세곡	변경없음	110-1	도	66	66	서울특별시		13

일련번호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도면번호)
	시	구	동						성명	주소	
14	서울	강남	세곡	변경없음	115-13	도	3,544	573	서울특별시		14
15	서울	강남	세곡	변경없음	115-11	도	418	279	서울특별시 강남구		15
16	서울	강남	세곡	변경없음	115-9	임	5,598	3,129	서울특별시		16
17	서울	강남	세곡	변경없음	115-3	전	334	234	서울특별시		17
18	서울	강남	세곡	변경없음	122-19	임	2,908	1,894	서울특별시		18
19	서울	강남	세곡	변경없음	113	도	4,562	1,752	서울특별시		19
20	서울	강남	세곡	변경없음	115-12	도	187	71	서울특별시 강남구		20
21	서울	강남	세곡	당초	산21	임	5,110	28	김종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518 우성아파트 207동 902호	21
									권혁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32-29	
									오영배	서울 반포동 242-1 한양아파트 1동 909호	
									심재석	서울 도봉구 월계동 534-141	
									권쾌혁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16동 805호	
									박운환	서울 송파구 석촌동 291-14	
									김용석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03 봉천동아아파트 103동 103호	
									김용진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03 봉천동아아파트 103동 102호	
									김용재	서울 관악구 봉천동 1000 봉천동아아파트 112동 1303호	
				변경	산21-2	임	4	4	김종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518 우성아파트 207동 902호	
									권혁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32-29	
									오영배	서울 반포동 242-1 한양아파트 1동 909호	
									심재석	서울 도봉구 월계동 534-141	
									권쾌혁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16동 805호	
									박운환	서울 송파구 석촌동 291-14	
									김용석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03 봉천동아아파트 103동 103호	
									김용진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03 봉천동아아파트 103동 102호	
									김용재	서울 관악구 봉천동 1000 봉천동아아파트 112동 1303호	
22	서울	강남	율현	변경없음	산28-4	임	2,012	2,012	서울특별시		1

일련번호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도면번호)
	시	구	동						성명	주소	
23	서울	강남	율현	변경없음	277-2	도	13	13	서울특별시		2
24	서울	강남	율현	변경없음	265-4	도	8,943	8,943	서울특별시		3
25	서울	강남	율현	변경없음	265-5	도	7,329	7,329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4
									서울특별시		
26	서울	강남	율현	변경없음	277-3	도	256	256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5
									서울특별시		
27	서울	강남	율현	변경없음	266-5	잡	39	39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6
28	서울	강남	율현	변경없음	265-1	도	154	154	서울특별시		7
29	서울	강남	율현	당초	산23-5	임	992	6	신승복	서울 강남구 일원동 646-8	8
				변경	산23-8	임	6	6	신승복	서울 강남구 일원동 646-8	
30	서울	강남	율현	당초	산22	임	2,182	63	성기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15동 508호	9
									전형팔	서울 강남구 삼설동 47-18 삼성동드림하우스 203호	
				변경	산22-1	임	63	63	성기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15동 508호	
									전형팔	서울 강남구 삼설동 47-18 삼성동드림하우스 203호	
31	서울	강남	율현	당초	275-2	전	111	84	김계수	서울 서초구 방배동 999-2 현대빌라트 801호	10
				변경	275-7	전	84	84	김계수	서울 서초구 방배동 999-2 현대빌라트 801호	
32	서울	강남	율현	당초	275-4	전	217	100	김계수	서울 서초구 방배동 999-2 현대빌라트 801호	11
				변경	275-8	전	100	100	김계수	서울 서초구 방배동 999-2 현대빌라트 801호	
33	서울	강남	율현	당초	275-5	전	617	179	김계수	서울 서초구 방배동 999-2 현대빌라트 801호	12
				변경	275-10	전	39	39	김계수	서울 서초구 방배동 999-2 현대빌라트 801호	
34	서울	강남	율현	변경	275-9	전	140	140	김계수	서울 서초구 방배동 999-2 현대빌라트 801호	13
35	서울	강남	율현	당초	276-2	전	369	182	재단법인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서울 중구 명동2가 1	14

일련번호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도면번호)
	시	구	동						성명	주소	
				변경	276-4	전	182	182	재단법인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서울 중구 명동2가 1	
36	서울	강남	율현	당초	276-1	도	142	31	최규달	서울 성동구 군자동 335-4 대일연립 다동 302호	15
				변경	276-3	도	31	31	최규달	서울 성동구 군자동 335-4 대일연립 다동 302호	
37	서울	강남	율현	당초	277-8	도	1,307	49	서울특별시		16
				변경	277-8	도	1,307	146	서울특별시		
38	서울	강남	율현	당초	277-5	전	169	96	재단법인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서울 중구 명동2가 1	17
				변경	277-16	전	96	96	재단법인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서울 중구 명동2가 1	
39	서울	강남	율현	당초	269-2	답	531	177	재단법인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서울 중구 명동2가 1	18
				변경	269-5	답	177	177	재단법인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서울 중구 명동2가 1	
40	서울	강남	율현	변경없음	258-2	도	258	258	서울특별시		19
41	서울	강남	율현	변경없음	242-6	도	5,508	5,508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20
									서울특별시		
42	서울	강남	율현	변경없음	242	도	7,803	7,803	서울특별시		21
43	서울	강남	율현	변경없음	242-3	도	41	41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22
44	서울	강남	율현	변경없음	240-7	도	22	22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45	서울	강남	율현	변경없음	240-8	도	11	11	서울특별시		24
46	서울	강남	율현	변경없음	240-6	도	2	2	서울특별시 강남구		25
47	서울	강남	율현	변경없음	240-1	도	46	46	서울특별시 강남구		26
48	서울	강남	율현	변경없음	244-10	도	1	1	서울특별시 강남구		27
49	서울	강남	율현	변경없음	260-1	도	86	86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28
									서울특별시		

일련번호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도면번호)
	시	구	동						성명	주소	
50	서울	강남	율현	변경없음	260-2	도	218	218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29
									서울특별시		
51	서울	강남	율현	변경없음	192-9	도	94	94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30
									서울특별시 강남구		
52	서울	강남	율현	변경없음	259-8	도	4	4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31
53	서울	강남	율현	변경없음	259-7	도	4	4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32
54	서울	강남	율현	변경없음	259-6	잡	11	11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33
55	서울	강남	율현	변경없음	257-1	도	89	89	기획재정부		34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56	서울	강남	율현	변경없음	254-13	잡	5	5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35
57	서울	강남	율현	변경없음	254-8	도	3	3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36
58	서울	강남	율현	당초	산28-1	임	5,516	1,232	백동환	인천 남동구 간석동 495-5 금호맨션 4동 310호	37
									권 혁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32-29	
									전용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74-16	
									심재석	서울 도봉구 월계동 534-141	
									권쾌혁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16동 805호	
									김용석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03 봉천동아아파트 103동 103호	
									김용진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03 봉천동아아파트 103동 102호	
									김용재	서울 관악구 봉천동 1000 관악현대아파트 112동 1303호	
									이진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63번길 13, 613동 1104호	
									이성섭	서울 관악구 심림동 1575-2	
				변경	산28-8	임	1,168	1,168	백동환	인천 남동구 간석동 495-5 금호맨션 4동 310호	
									권 혁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32-29	
									전용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74-16	
									심재석	서울 도봉구 월계동 534-141	

일련번호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도면번호)
	시	구	동						성명	주소	
									권쾌혁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16동 805호	
									김용석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03 봉천동아아파트 103동 103호	
									김용진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03 봉천동아아파트 103동 102호	
									김용재	서울 관악구 봉천동 1000 관악현대아파트 112동 1303호	
									이진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63번길 13, 613동 1104호	
									이성섭	서울 관악구 심림동 1575-2	
59	서울	강남	율현	당초	산25	임	1,190	81	노유성	서울 강서구 공항동 15-5	38
				변경	산25-1	임	52	52	노유성	서울 강서구 공항동 15-5	
60	서울	강남	율현	당초	277-1	전	1,184	423	재단법인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서울 중구 명동2가 1	39
				변경	277-15	전	431	431	재단법인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서울 중구 명동2가 1	
61	서울	강남	율현	당초	272-1	답	641	347	재단법인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서울 중구 명동2가 1	40
				변경	272-7	답	359	359	재단법인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서울 중구 명동2가 1	
62	서울	강남	율현	변경없음	270	답	135	135	재단법인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서울 중구 명동2가 1	41
63	서울	강남	율현	당초	283	전	1,871	319	이제호	서울 광진구 뚝섬로35길 32, 307동 505호	42
				변경	283-1	전	325	325	이제호	서울 광진구 뚝섬로35길 32, 307동 505호	
64	서울	강남	율현	변경없음	269-4	답	99	99	재단법인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서울 중구 명동2가 1	43
65	서울	강남	율현	변경없음	268	답	50	50	김분영	서울 성동구 구의동 227-43	44
66	서울	강남	율현	당초	272-4	답	1,839	382	재단법인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서울 중구 명동2가 1	45
				변경	272-8	답	380	380	재단법인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서울 중구 명동2가 1	
67	서울	강남	율현	당초	270-2	답	721	330	재단법인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서울 중구 명동2가 1	46
				변경	270-5	답	331	331	재단법인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서울 중구 명동2가 1	

일련번호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도면번호)
	시	구	동						성명	주소	
68	서울	강남	율현	당초	산28-5	임	819	72	백동환	인천 남동구 간석동 495-5 금호맨션 4동 310호	47
									권 혁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32-29	
									전용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74-16	
									심재석	서울 도봉구 월계동 534-141	
									권쾌혁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은마아파트 16동 805호	
									김용석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03 봉천동아아파트 103동 103호	
									김용진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03 봉천동아아파트 103동 102호	
									김용재	서울 관악구 봉천동 1000 관악현대아파트 112동 1303호	
									이진영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397, 312동 1101호	
				변경	산28-9	임	52	52	백동환	인천 남동구 간석동 495-5 금호맨션 4동 310호	
									권 혁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32-29	
									전용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74-16	
									심재석	서울 도봉구 월계동 534-141	
									권쾌혁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은마아파트 16동 805호	
									김용석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03 봉천동아아파트 103동 103호	
									김용진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03 봉천동아아파트 103동 102호	
									김용재	서울 관악구 봉천동 1000 관악현대아파트 112동 1303호	
									이진영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397, 312동 1101호	
69	서울	강남	율현	당초	산24	임	496	74	권 혁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32-29	48
				변경	산24-1	임	60	60	권 혁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32-29	
70	서울	강남	율현	신설	268-2	답	276	276	지선림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23길 14-34, 지하동 2호	49
71	서울	강남	율현	신설	266-2	전	249	126	국토교통부		50
72	서울	강남	율현	신설	266-1	전	784	181	조세묵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3-11 역삼아이파크 202-703	51

일련번호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도면번호)
	시	구	동						성명	주소	
73	서울	강남	율현	신설	261-1	전	1,097	368	박진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2길 32-14,101동 3502호	52
74	서울	강남	율현	신설	254-3	답	3,592	333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53
75	서울	강남	율현	신설	253-1	전	517	55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54
76	서울	강남	율현	신설	247-5	도	579	10	서울시 강남구		55
77	서울	강남	율현	신설	247	답	806	126	김홍량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양동 2-45	56
78	서울	강남	율현	신설	246	답	476	30	이태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반포동 주공A. 228동 405호	57
79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343-9	도	4	4	서울특별시		1
80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367-6	도	109	109	국토교통부		2
81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626	도	43,064	1,31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82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355-1	도	4,828	4,828	서울특별시		4
83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343-8	도	47	47	서울특별시		5
84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343-7	도	17	17	서울특별시		6
85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343-6	도	42	42	서울특별시		7
86	서울	강남	자곡	당초	344-7	도	12,340	12,340	서울특별시		8
				변경	344-7	도	12,340	12,196	서울특별시		
87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56-109	도	25	25	서울특별시		9
88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56-106	구	8	8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10
									서울특별시		
89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56-104	도	400	4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90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363-2	도	1	1	서울특별시		12
91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353-3	도	7,028	407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3
92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367-4	도	33	33	서울특별시		14
93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367-3	도	261	261	서울특별시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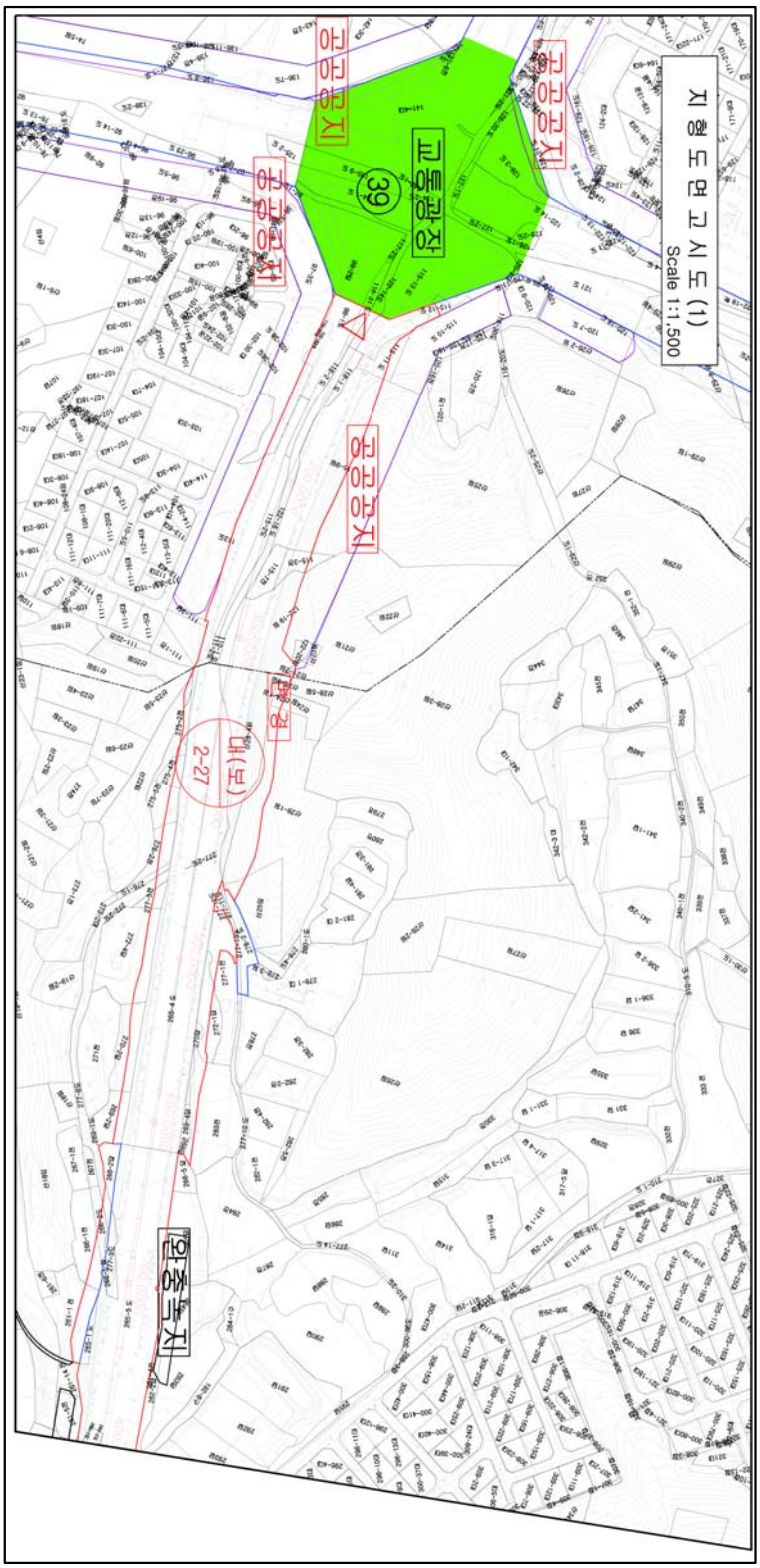
일련번호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도면번호)
	시	구	동						성명	주소	
94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366-4	도	44	44	서울특별시		16
95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365-7	도	170	170	서울특별시		17
96	서울	강남	자곡	당초	332	답	933	12	박우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32길 8, 3동 1502호	18
				변경	332-4	답	12	12	박우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32길 8, 3동 1502호	
97	서울	강남	자곡	당초	331-1	답	1,440	4	김희선	서울 양천구 목동 901 목동 신시가지A. 101동 301호	19
				변경	331-7	답	4	4	김희선	서울 양천구 목동 901 목동 신시가지A. 101동 301호	
98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320-3	도	86	86	서울특별시		20
99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323-4	도	221	221	국토교통부		21
100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320	도	1,625	1,625	서울특별시		22
101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304-4	도	1,988	1,988	서울특별시		23
102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320-2	도	48	48	서울특별시		24
103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196-1	도	2,818	2,532	서울특별시		25
104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313-1	도	2,933	2,933	서울특별시		26
105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203-1	도	4,160	4,160	서울특별시		27
106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205-9	도	209	209	서울특별시		28
107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205-15	도	253	253	서울특별시		29
108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211-1	도	3,480	3,480	서울특별시		30
109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211	도	699	70	서울특별시 강남구		31
110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205-13	도	108	108	서울특별시		32
111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205-12	도	277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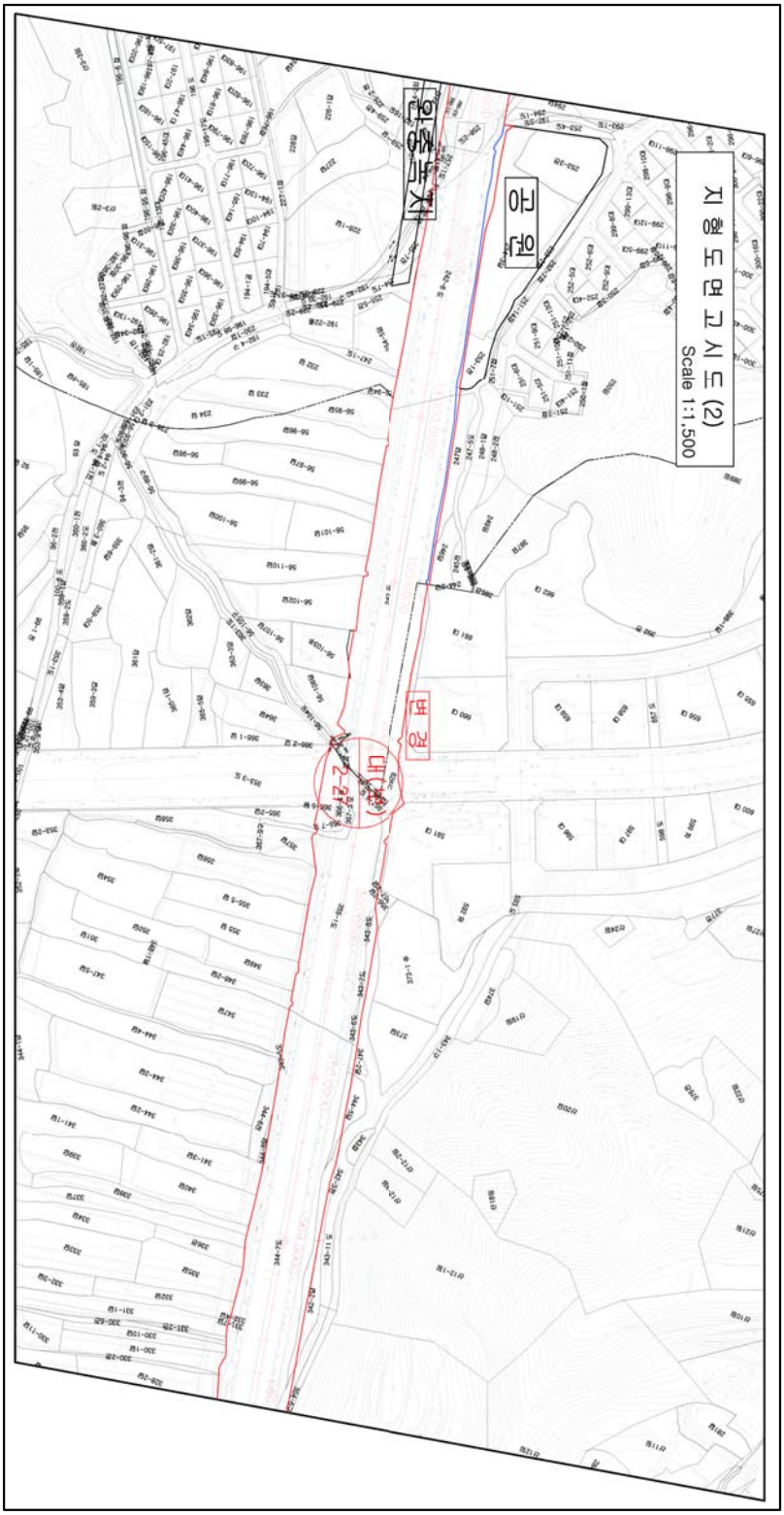
일련번호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도면번호)
	시	구	동						성명	주소	
112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210-3	도	18	18	서울특별시		34
113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207-6	도	6,408	6,408	서울특별시		35
114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206-1	도	169	133	국토교통부		36
115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207-3	답	7	7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 동구 신안동 264	37
116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207-2	도	27	27	국토교통부		38
117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208-5	답	32	32	국토교통부		39
118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205-3	도	233	233	서울특별시		40
119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207-12	임	634	629	서울특별시		41
120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207-1	도	47	47	국토교통부		42
121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산1-10	임	364	102	국토교통부		43
122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199-1	답	32	32	서울특별시		44
123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200-3	답	86	86	국토교통부		45
124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201-2	도	484	484	서울특별시		46
125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201-4	답	161	161	국토교통부		47
126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201-3	답	27	27	국토교통부		48
127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202-1	답	24	24	서울특별시		49
128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202-2	답	831	617	국토교통부		50
129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304-5	구	28	28	서울특별시		51
130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205-11	도	102	102	서울특별시		52
131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194-10	도	1,101	180	서울특별시 강남구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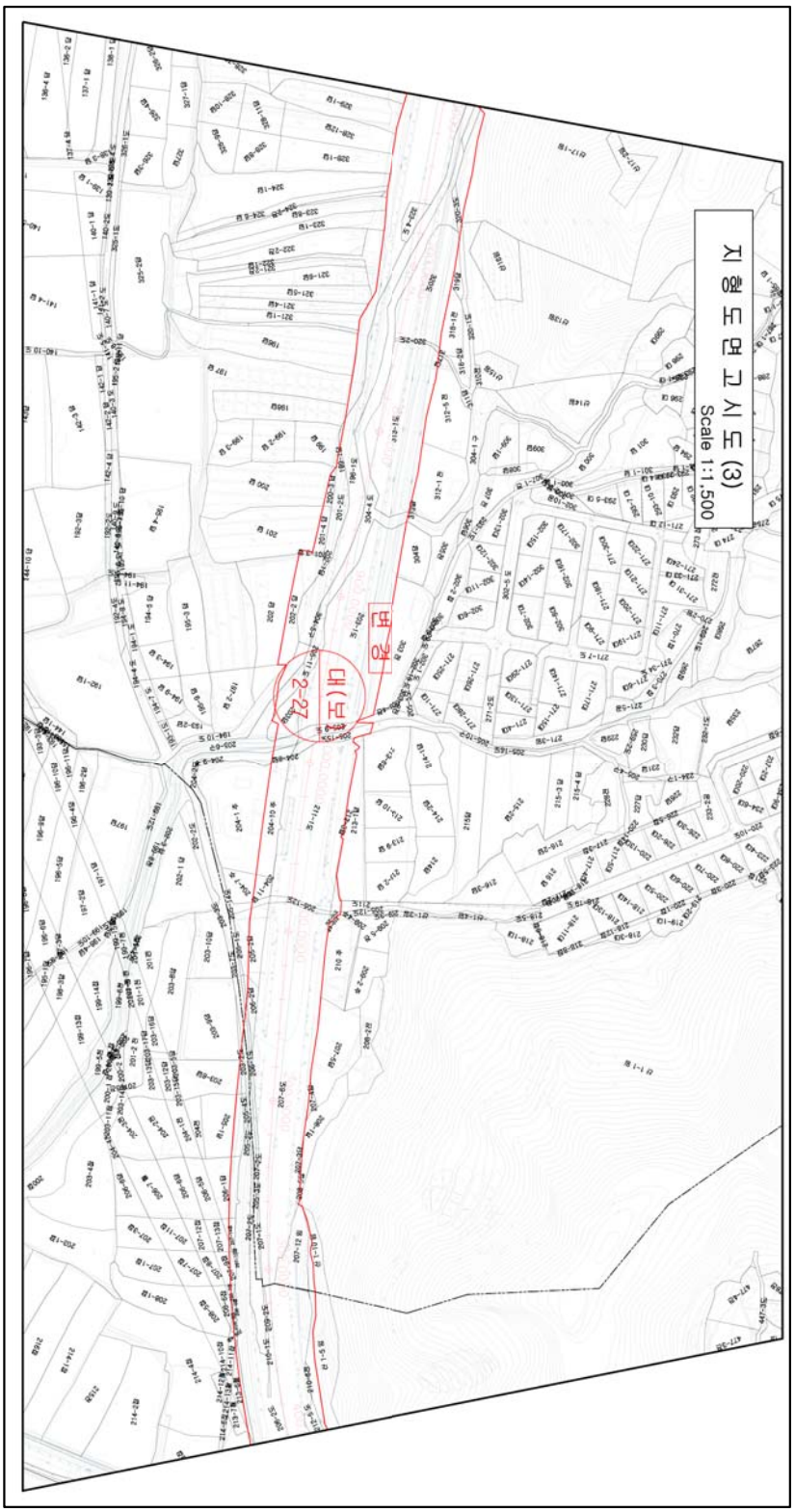
일련번호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도면번호)
	시	구	동						성명	주소	
132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205-6	구	967	258	서울특별시 강남구		54
133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203	답	397	341	서울특별시		55
134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205-14	도	905	170	서울특별시 강남구		56
135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204-8	답	9	9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 동구 신안동 264	57
136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204-10	주	694	694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 동구 신안동 264	58
137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204-11	답	135	135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 동구 신안동 264	59
138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205-2	답	616	384	국토교통부		60
139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206-2	답	198	164	국토교통부		61
140	서울	강남	자곡	당초	347-2	답	130	43	강민철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길 35	62
				변경	347-6	답	47	47	강민철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길 35	
141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343-11	도	2,803	303	서울특별시 강남구		63
142	서울	강남	자곡	당초	344-5	답	458	183	채홍수	서울 강남구 반포동 23-4	64
				변경	344-14	답	182	182	채홍수	서울 강남구 반포동 23-4	
143	서울	강남	자곡	당초	342-3	전	362	213	정성옥	서울 서초구 잠원동 157 동아아파트 101동 505호	65
				변경	342-8	전	219	219	정성옥	서울 서초구 잠원동 157 동아아파트 101동 505호	
144	서울	강남	자곡	당초	342-2	답	638	271	박민숙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230, 7동 407호	66
				변경	342-7	답	273	273	박민숙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230, 7동 407호	
145	서울	강남	자곡	변경없음	304-6	구	356	104	서울특별시		67
146	서울	강남	자곡	당초	산17-1	임	13,289	353	이겸순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13, 41동 1303호	68
				변경	산17-3	임	198	198	이겸순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13, 41동 1303호	
147	서울	강남	수서	변경없음	209-2	도	51	51	국토교통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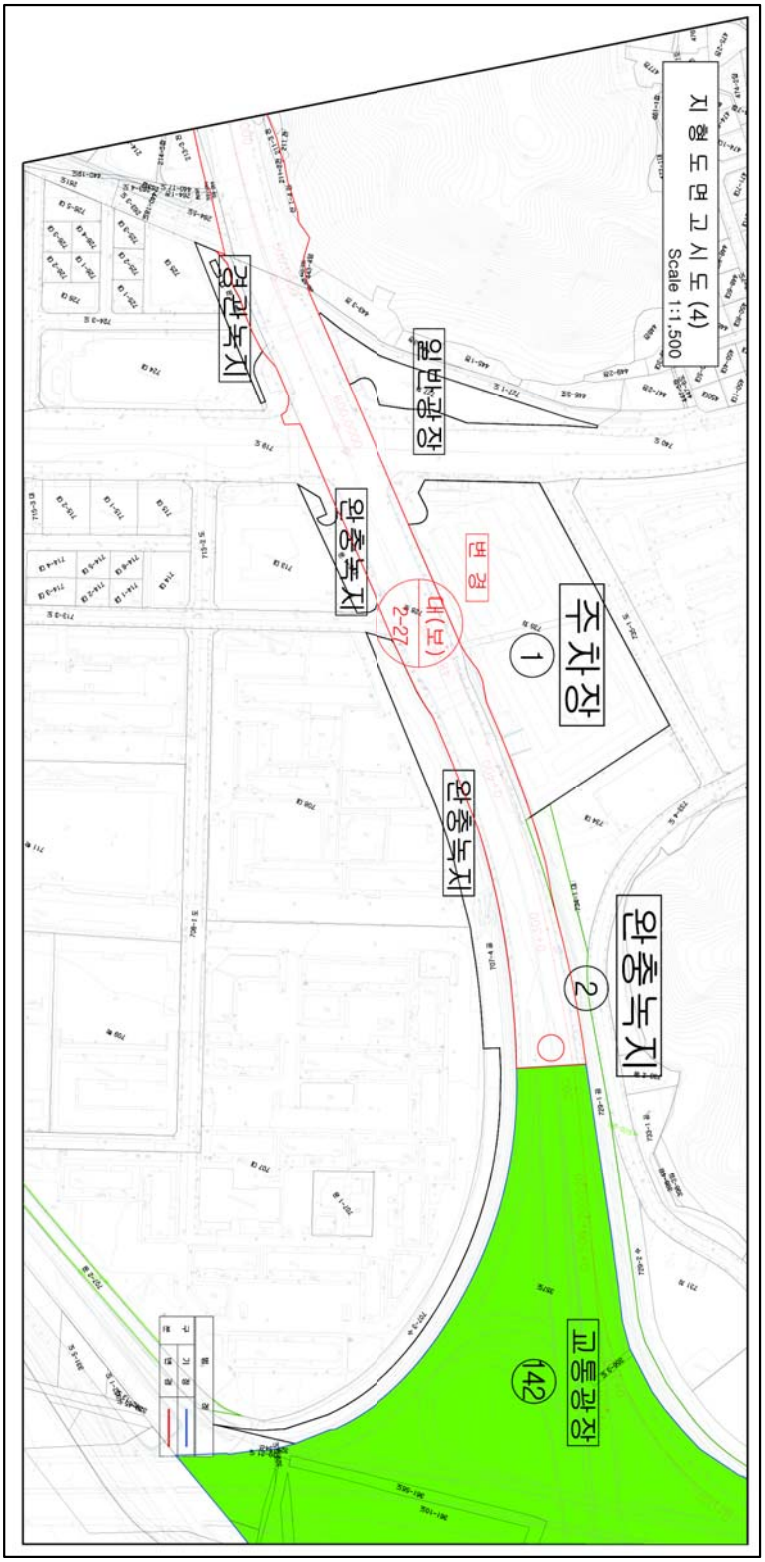
일련번호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도면번호)
	시	구	동						성명	주소	
148	서울	강남	수서	변경없음	206-2	도	7,817	7,817	서울특별시		2
149	서울	강남	수서	변경없음	210-1	도	47	47	국토교통부		3
150	서울	강남	수서	변경없음	산1-5	임	1,253	291	국토교통부		4
151	서울	강남	수서	변경없음	210-6	전	35	35	국토교통부		5
152	서울	강남	수서	변경없음	212-5	도	148	148	서울특별시		6
153	서울	강남	수서	변경없음	203-2	도	104	61	국토교통부		7
154	서울	강남	수서	변경없음	203-6	답	786	29	국토교통부		8
155	서울	강남	수서	변경없음	205-4	도	57	57	국토교통부		9
156	서울	강남	수서	변경없음	205-1	답	913	202	국토교통부		10
157	서울	강남	수서	변경없음	205-2	도	49	49	국토교통부		11
158	서울	강남	수서	변경없음	206-1	답	555	169	국토교통부		12
159	서울	강남	수서	변경없음	203-7	도	1,207	586	서울특별시 강남구		13
160	서울	강남	수서	변경없음	207-2	도	13	13	국토교통부		14
161	서울	강남	수서	변경없음	207-14	잡	102	64	국토교통부		15
162	서울	강남	수서	변경없음	207-13	잡	207	5	국토교통부		16
163	서울	강남	수서	변경없음	207-10	잡	15	15	국토교통부		17
164	서울	강남	수서	변경없음	207-9	잡	175	61	국토교통부		18
165	서울	강남	수서	변경없음	208-7	잡	44	19	국토교통부		19
166	서울	강남	수서	변경없음	208-9	잡	23	23	국토교통부		20
167	서울	강남	수서	변경없음	208-8	잡	28	23	국토교통부		21

일련번호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도면번호)
	시	구	동						성명	주소	
168	서울	강남	수서	변경없음	208-4	잡	20	10	국토교통부		22
169	서울	강남	수서	변경없음	214-11	잡	117	4	국토교통부		23
170	서울	강남	수서	변경없음	213-6	철	233	105	국토교통부		24
171	서울	강남	수서	변경없음	211-3	전	220	148	국토교통부		25
172	서울	강남	수서	변경없음	211-2	전	3	3	국토교통부		26
173	서울	강남	수서	변경없음	산1-4	임	150	150	국토교통부		27
174	서울	강남	수서	변경없음	443-9	임	35	35	국토교통부		28
175	서울	강남	수서	변경없음	443-8	전	11	11	국토교통부		29
176	서울	강남	수서	변경없음	728	도	18,547	18,547	서울특별시		30
177	서울	강남	수서	변경없음	213-3	전	1,095	152	국토교통부		31
178	서울	강남	수서	변경없음	440-9	도	11	11	서울특별시		32
179	서울	강남	수서	변경없음	284-5	도	1,219	190	서울특별시		33
180	서울	강남	수서	변경없음	724-4	공	1,316	274	서울특별시		34
181	서울	강남	수서	변경없음	719	도	17,277	126	서울특별시		35
182	서울	강남	수서	변경없음	735	차	18,002	489	서울특별시		36
183	서울	강남	수서	변경없음	729-1	공	6,874	146	서울특별시		37
합계				당초				129,830			
				변경				131,018			


지형도면고시도(1)
Scale 1:1,500
교통광장
(39)
공공공지
공공공지
공공공지
공공공지
대(로)
2-27
완충녹지


지형도면고시도(2)
Scale 1:1,500
한국은행
은행
보행로
대(보행로)


지형도면고시도(3)
Scale 1:1,500
대로2-22
보정


지형도면고시도(4)
Scale 1:1,500
경관녹지
일반광장
완충녹지
변경
대(보)
2-27
주차장
①
완충녹지
②
완충녹지
교통광장
142

서울시교육청고시

◈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17-14호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고시

제27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2017.12.15.)에서 의결된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세입예산

(단위:천원)

과 목		2018 본예산	2017 본예산	증감	증감률
장	관				
합 계		9,151,267,311	8,147,724,724	1,003,542,587	12.3%
이전수입	소계	8,347,415,941	7,403,238,029	944,177,912	12.8%
	중앙정부이전수입	5,225,011,904	4,484,597,540	740,414,364	16.5%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100,278,373	2,914,634,149	185,644,224	6.4%
	기타이전수입	22,125,664	4,006,340	18,119,324	452.3%
자체수입	소계	163,638,836	162,106,993	1,531,843	0.9%
	교수-학습활동수입	112,553,646	122,641,861	△10,088,215	△8.2%
	행정활동수입	5,453,099	5,175,636	277,463	5.4%
	자산수입	26,417,910	13,718,516	12,699,394	92.6%
	이자수입	4,108,476	4,065,975	42,501	1.0%
	금융자산회수	0	0	0	0.0%
	기타수입	15,105,705	16,505,005	△1,399,300	△8.5%
차입	소계	133,440,376	270,516,002	△137,075,626	△50.7%
	지방교육채	133,440,376	270,516,002	△137,075,626	△50.7%
기타	소계	506,772,158	311,863,700	194,908,458	62.5%
	전년도이월금	506,772,158	311,863,700	194,908,458	62.5%

□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2018 본예산	2017 본예산	증감	증감률
합 계	9,151,267,311	8,147,724,724	1,003,542,587	12.3%
1. 유아및초중등교육	8,744,341,802	7,782,061,941	962,279,861	12.4%
가. 인적자원운용	4,396,199,944	4,285,829,479	110,370,465	2.6%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447,673,237	340,322,841	107,350,396	31.5%
다. 교육복지지원	1,262,434,963	903,735,074	358,699,889	39.7%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97,133,841	42,399,806	54,734,035	129.1%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1,920,401,415	1,804,885,071	115,516,344	6.4%
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620,498,402	404,889,670	215,608,732	53.3%
2. 평생 · 직업교육	25,872,372	24,270,505	1,601,867	6.6%
가. 평생교육	25,170,054	23,357,205	1,812,849	7.8%
나. 직업교육	702,318	913,300	△210,982	△23.1%
3. 교육일반	381,053,137	341,392,278	39,660,859	11.6%
가. 교육행정일반	168,498,180	88,624,211	79,873,969	90.1%
나. 기관운영관리	58,251,853	50,325,287	7,926,566	15.8%
다. 지방채상환및리스료	143,523,402	186,120,580	△42,597,178	△22.9%
라. 예비비및기타	10,779,702	16,322,200	△5,542,498	△34.0%

구 고 시

◈ 중구고시 제2017-122호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61호(2011.12.1.)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5-90호(2015.11.9.)로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지정된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중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중구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원	13,763.1	감)31.50	13,731.60	

※ 구역계 변경없이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의 변경 사항임.

다. 도시환경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3,763.10	감)31.50	13,731.60	100.00	
정비기반시설	소 계	5,397.20	감)17.40	5,379.80	39.18	
	도 로	3,789.60	증)14.00	3,803.60	27.70	
	공 원	1,607.60	감)31.40	1,576.20	11.48	
획 지		8,365.90	감)14.10	8,351.80	60.82	

※ 구역계 및 정비기반시설의 변경없이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의 변경 사항임.

2)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3,763.10	감)31.50	13,731.60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3,763.10	감)31.50	13,731.60	100.0	

※ 측량면적에 따른 편입면적의 변경 사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은 없음

3)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도 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4	50 (53)	주간선 도로	1,500 (74)	세종로광장	서울역앞	일반 도로	-	1962.12.08	건설부고시 제177호
기정	소로	1		10	집산 도로	167	남대문로5가 260	남대문로5가 84-15	일반 도로	-	2011.12.01	서울시고시 제2011-361호
기정	소로	1		10	집산 도로	184	남대문로5가 84-15	남대문로5가 280	일반 도로	-	2011.12.01	서울시고시 제2011-361호
폐지	소로	-	-	4~10	-	면 적 3,899.40㎡	-	-	-	-	1965.12.30	서울시공고 제180호

※ 폐지되는 소로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180호(1965.12.30.)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되었음. 다만 등급, 류별, 번호 등은 기록되어 있지 않음

나) 공 원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원	문화공원	남대문로5가 255번지 일대	1,607.60	증)31.40	1,576.20	2011.12.1	서울시고시 제2011-361호

※ 정비기반시설의 변경없이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의 변경 사항임.

4)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

구분	구역명	시행면적(㎡)	대지면적(㎡)	정비기반시설면적(㎡)			대지내 공공용지(㎡)	부담률(%)
				소계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계획 공공용지내 기존 공공용지		
기정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구역	13,763.10	8,365.90	5,397.20	2,783.40	2,613.80	1,285.60	15.18
변경		13,731.60	8,351.80	5,379.80	2,766.00	2,613.80	1,285.60	15.06

※ 측량 결과에 의한 면적변경과 이에 따른 부담률 변경

5) 정비기반시설 설치(확보)계획

가)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연번	지번	지목	도로			공원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1	12-1	대	17.80	-	17.80			
2	12-2	대	71.80	-	71.80			
3	12-3	대	21.30	-	21.30			
4	12-4	대	26.80	-	26.80			
5	12-5	대	51.40	-	51.40			
6	12-6	대	12.40	-	12.40			
7	12-7	대	13.20	-	13.20			
8	12-8	대	40.50	-	40.50			
9	12-16	대	43.70		43.70			
10	12-18	대	32.40	-	32.40			
11	12-29	대	53.40	-	53.40			
12	12-37	대	15.40	-	15.40			
13	12-38	대	19.20	-	19.20			
14	12-41	대	26.20	-	26.20			
15	12-45	도	8.80	-	8.80			
16	12-46	대	26.90	-	26.90			
17	12-47	대	55.90	-	55.90			
18	14-1	대	67.20	-	67.20			
19	14-2	대	65.50	-	65.50			

연번	지번	지목	도로			공원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20	14-3	대	1.40	-	1.40			
21	14-5	대	6.10	-	6.10			
22	43-1	대	4.40	-	4.40			
23	43-2	대	4.00	-	4.00			
24	209	대	92.70	-	92.70			
25	217	대	28.50	-	28.50			
26	218	대	0.20	-	0.20			
27	227	대	154.10	-	154.10	2.00	-	2.00
28	229	대	16.40	-	16.40			
29	230	대	16.10	-	16.10			
30	231	대	10.50	-	10.50			
31	232	대	9.10	-	9.10			
32	234	대	1.60	-	1.60			
33	236	대	17.50	-	17.50			
34	243	대	53.10	-	53.10	103.80	-	103.80
35	244	대	48.10	-	48.10	94.30	-	94.30
36	246	차	123.80	-	123.80	302.10	-	302.10
37	251	대	26.00	-	26.00	42.50	-	42.50
38	253	대	44.90	-	44.90	758.70	-	758.70
39	255	대	1.00	-	1.00	81.60	-	81.60
40	265	대	31.70	-	31.70	37.40	-	37.40
계			1,361.00	-	1,361.00	1,422.40	-	1,422.40

나) 계획공공용지 내 기존 공공용지 부담면적

구역명	위 치	시설 종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남대문로5가 12-14	도로	9.20	-	9.20	
	남대문로5가 41-6		1.10	-	1.10	
	남대문로5가 84-13		1,341.60	-	1,341.60	
	남대문로5가 261		1,076.70	-	1,076.70	
	소계		2,428.60	-	2,428.60	
	남대문로5가 261	공원	185.20	-	185.20	
	소계		185.20	-	185.20	
계			2,613.80	-	2,613.80	

다)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구역명	위 치	시설 종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남대문로5가 12-14	-	124.00	-	124.00	
	남대문로5가 84-13		544.10	-	544.10	
	남대문로5가 211		183.80	-	183.80	
	남대문로5가 261		433.70	-	433.70	
계			1,285.60	-	1,285.60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 정비구역	13,763.10	획지	8,365.90	남대문로5가 253번지일대	72	-	-	72	-	측량성과에 의한 면적변경
변경		13,731.60	획지	8,351.80		72	-	-	72	-	

7)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 (m)	비고
	명 칭	면 적(㎡)	명칭	면 적(㎡)						
기정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 구역	13,763.10	획지	8,365.90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원	업무 시설	60이하	1,000이하	125m이하	
변경		13,731.60		8,351.80			60이하	1,000이하	125m이하	

심의 완화사항	공공기여 시설	목적	인센티브 대상	요건	완화량	대상지계획
		도심 활성화	가로활성화용도 (저층부상업용도)	1,2층 바닥면적의 1/2이상 설치시 (1층 1/2설치 의무)	25%p	지하1~지상2층 각 1/2이상 설치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상 전문회의시설, 준회의시설, 전시시설	25%p	지상3층 전시실 1개소, 회의실 5개소 설치
		친환경 개발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총건축비 또는 총재생에너지 사용량의 1%를 신재생에너지 사용	25%p	총건축비의 2%이상을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비용으로 사용
			녹색건축 인증	녹색건축 인증(85점이상) (단 녹색건축인증 점수 75점 및 에너지 성능지표(EPI) 74점 의무	25%p	에너지성능지표 86점 이상,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2등급 이상, 건축물 에너지 총량제 대상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구 역 구 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 치</th><th rowspan="2">주된
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rowspan="2">용적율
(%)</th><th rowspan="2">높이
(m)</th><th rowspan="2">비고</th></tr>
<tr><th>명 칭</th><th>면 적(㎡)</th><th>명칭</th><th>면 적(㎡)</th></tr>
<tr><td>심의 완화사항</td><td colspan="2">공공시설부지 및 공개공지 제공</td><td colspan="6">■상한용적률 및 최고 높이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B타입: 700%) + (A + B) = 1,001.30% ⇛ 1,000% 이하 적용
공공시설: 1.3 × 공공시설 부지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 700%
= 1.3 ×(1,480.400㎡ / 8,351.80㎡) × 700% = 161.30%
공개공지: {공개공지등 면적 / 대지면적} × 700%
= {2,267.51㎡/8,351.80㎡} × 700% = 190.05% ⇛ 140.00%적용
• 최고높이 = 도심부발전계획높이(90m)+10m(B타입)+(A+B)=128.63m ⇛ 125m 이하 적용
공공시설: 기준높이 ×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당초대지면적
= 100m × 1,480.40㎡ / (13,731.60㎡ − 3,899.40㎡) = 15.06m
공개공지: 기준높이 × 공개공지등 면적 절반 / 대지면적
= 100m × (2,267.51㎡ / 2) / 8,351.80㎡ = 13.57m</td></tr>
<tr><td colspan="3">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6">• 건축한계선 : 태평로변 10m, 도로변 3m
• 고층부 벽면한계선: 태평로변 고층부(6층 이상) 10m 계획</td></tr>
</table>

2. 변경사유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감 31.50㎡)과 이에 따른 건축시설계획 변경
3. 관계도서 : 중구청 도심재생과 비치도서와 같음(생략)
4.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73)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5. 기타사항
   ○ 상기 변경지정 사항은 정비구역 및 정비기반시설 지정선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61호(2011.12.1)로 고시된 지형도면으로 갈음

◈ 광진구고시 제2017-147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09-70호(2009.10.22.)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1호(2009.11.26.)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60호(2010.2.25.)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65호(2014.5.1.)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 광진구고시 제2017-38호(2017.4.27.)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

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된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 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변경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광진구청 교통지도과(☏450-795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2월 28일
광 진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광진구 광장동 307-3호 외 12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2) 사업의 명칭 :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
다. 사업 시행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1) 면적 : 4,913㎡
  2) 규모 : 자주식 주차장 217면(지하1~2층)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2)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17(자양동 777)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 초) 작성고시일 ~ 2017.12.31.
  (변 경) 작성고시일 ~ 2019.12.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생략(변경없음)
사. 변경사유 : 사업 지연에 따른 준공예정일 변경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450-79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대문구고시 제2017-9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78-467호(1978.09.12.)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78-690호(1978.12.30.)로 지형도면 승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공고 제2017-1097호(2017.11.30.)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건물,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동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94-19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 업 명 : 사가정로23길 도로개설공사
라.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폭 10m, 연장 35m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바. 사업착공 및 준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도로과(☎2127-48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사가정로23길 도로개설공사]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장안동 94-19	전	147	117.2478/147	신봉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133-9				
			9.9174/147	김성춘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51(중곡동)				
			9.9174/147	최희열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259, 101동 1010호(면목동, 삼호아파트)				
			9.9174/147	김진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로 171, 105동 302호(구미동, 현대노블리스)				

◈ 서대문구고시 제2017-18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폐지)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49-1~연희동 148-8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결정 취지

○ 우리 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중 사업시행의 가능성 및 도로 개설의 효용성이 낮은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변경(폐지) 결정하고자 함

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폐지	소로	2류	-	8	국지 도로	14	연희동 149-1	연희동 148-8	-	-	1979.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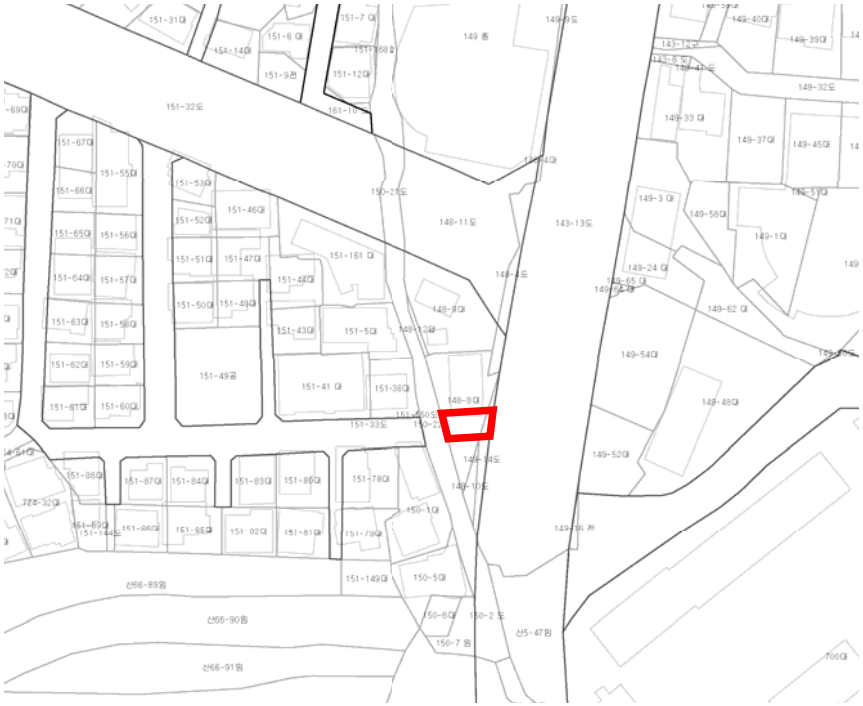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연희동 149-1~연희동148-8	-	폐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중 사업시행의 가능성 및 도로개설의 효용성이 낮음

다. 관계도면 : 붙임도면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열람장소 : 서대문구 도시관리과(☎ 330-1644)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폐지)결정 지형도면

(연희동 149-1~연희동 148-8)

범 례

	폐지선

구분	입안 및 결정권자		
	작성자	1차확인자	2차확인자
소속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
직위	담당자	도시계획팀장	도시관리과장
직명	시설9급	시설6급	시설5급
성명	정 은 철	서 재 영	조 용 기
확인인			

S = 1:1,000

◈ 마포구고시 제2017-186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1. 마포구 망원동 439-17 외 1필지 김현재 외 45인이 시행하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단지형다세대 40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5조에 의거 사업계획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건축과(☏02-3153-9405)에서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2월 28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 업 명 : 망원동 439-17 외 1필지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대세대) 신축
나. (공동)사업주체 : 김현재 외 45인
- 대표자 성명 : 김현재[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9안길 64 101-702호 (망원동,한강월드컵아파트)]
다.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39-17 외 1필지
라. 대지면적 : 662.4㎡
마. 사업규모 : 지상 6층, 연면적 1,318.42㎡(2개동)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 40세대)
바. 사업시행기간 : 2018. 02. 01. ~ 2018. 12. 30.
사. 사업계획승인일 : 2017. 12. 22.
아. 의제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등
자. 관련도면 : 마포구청 도시환경국 건축과 비치도면과 같음(문의: ☎02-3153-9405)

◈ 마포구고시 제2017-187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229(1983.7.6.)로 시설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91호(2016.12.1.)호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마포구 신수동 1-1 일대 서강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54)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2월 28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1-1번지 일대(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서강대학교 경제관 증축공사

다.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사업시행 면적 : 158,029㎡
○ 규 모 :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7,890.57㎡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대표 박문수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1-1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금회 변경)
○ 기 정 : 인가일로부터 ~ 2017. 12. 31.
○ 변 경 : 인가일로부터 ~ 2018. 03.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변경없음)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도시계획과(☎3153-93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 리	
1	신수동 1-1	학	63,935	63,550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1				
2	신수동 81-28	대	17	17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1				
3	신수동 81-29	학	26	26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1				
4	신수동 81-80	도	17	17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1				
5	신수동 82-11	대	73	73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1				
6	신수동 82-13	전	23	23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1				
7	신수동 82-15	대	106	106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1				
8	신수동 82-23	대	79	79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1				
9	신수동 82-24	대	76	76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1				
10	신수동 82-28	대	26	26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1				
11	신수동 82-31	도	131	40	서 울 특 별 시					
12	신수동 산1-1	임	17,554	337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1				
13	대흥동 22-60	학	64,813	64,601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1				
14	대흥동 22-182	학	176	176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1				
15	대흥동 22-178	임	1,917	1,917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1				
16	대흥동 40-3	잡	400	388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1				
17	대흥동 40-5	임	526	526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1				
18	대흥동 40-6	임	366	306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1				
19	대흥동 42-2	대	69	69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1				
20	대흥동 43-6	잡	2,255	2,255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1				
21	대흥동 43-7	잡	1,071	1,071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1				
22	대흥동 43-30	대	17	17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1				
이하계속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 리	
23	대흥동 43-32	대	36	36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1				
24	대흥동 64-1	대	110	110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1				
25	대흥동 65-2	대	73	73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1				
26	대흥동 65-3	대	216	216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1				
27	대흥동 69-2	대	131	131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1				
28	대흥동 69-5	임	389	389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1				
29	대흥동 72	대	26	26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1				
30	대흥동 90-29	도	62	62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1				
31	대흥동 산1-30	임	37,361	21,061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1				
32	대흥동 산1-231	임	229	229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1				
합계			192,306	158,029						

◈ 강서구고시 제2017-131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22호(2006.12.14.)로 결정된 강서구 까치산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강 서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 획지단위 공동개발(변경)

가구번호	지번	면적(㎡)	내용		비 고
			기정	변경	
C35 (화곡동)	935-15대	331.6	단독개발	공동개발	인접필지와 자발적 공동개발로 지정
	935-20대	478.5	단독개발		

2. 지구단위계획결정도(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서구 도시계획과(☏ 02-2600-665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구로구고시 제2017-20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373호(1978.07.27)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18호(1978.08.17)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지형도면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 제1996-78호(1996.11.19)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적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 제2002-61호(2002.06.12)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2호(2007.12.06)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일괄 결정된 구로구 고척동 129-3번지 일원 서울고척초등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면적 및 건축범위를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구 로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개봉동(한일시멘트) 및 고척동(서울남부교정시설) 대규모 이적지 개발사업으로 증가되는 학생 수용을 위해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의 면적 및 건축범위를 결정(변경)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학교	초등학교	구로구 고척동 129-3번지 일원	12,356	증)542	12,898	1978.07.27 (서울특별시고시 제373호)	부지면적 5% 미만의 경미한 변경

2) 건축범위 결정(변경)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0 이하	35이하	120이하	130이하	5층이하 (높이제한완화)	5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3)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학교	- 면 적 : 12,356㎡→12,898㎡ - 건폐율 : 30%이하→35%이하 - 용적률 : 120%이하→130%이하	- 개봉동(한일시멘트) 및 고척동(서울남부교정시설) 대규모 이적지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고척초등학교 증가학생 수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학교) 면적 및 건축범위 변경

3. 지형도면의 작성

구로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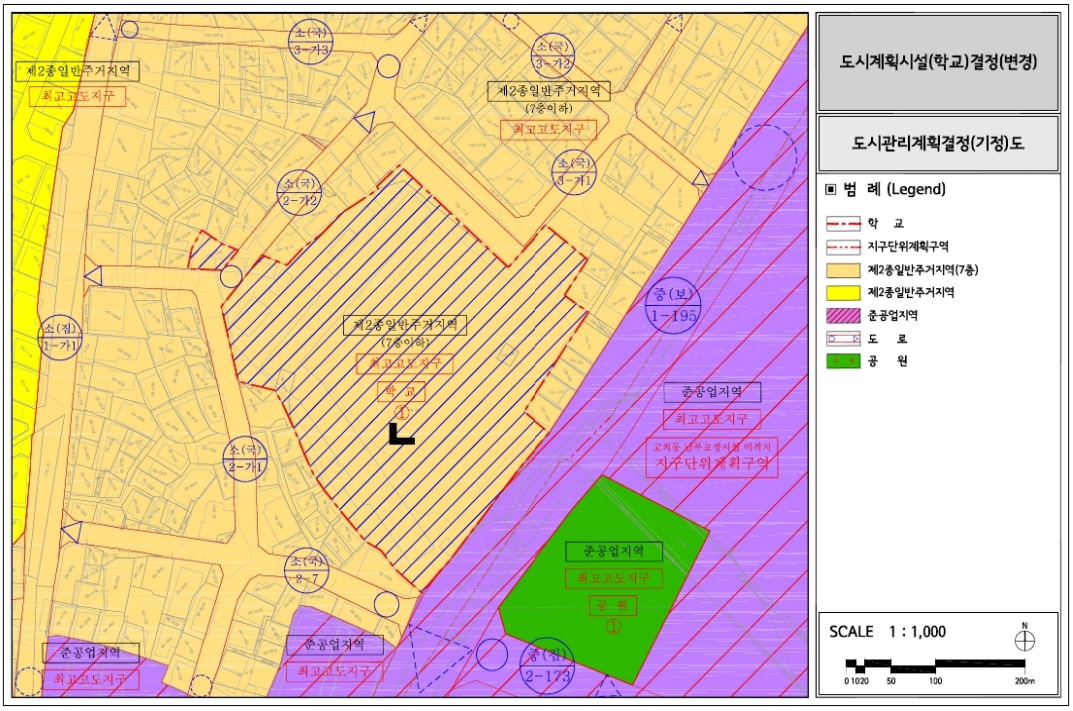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관련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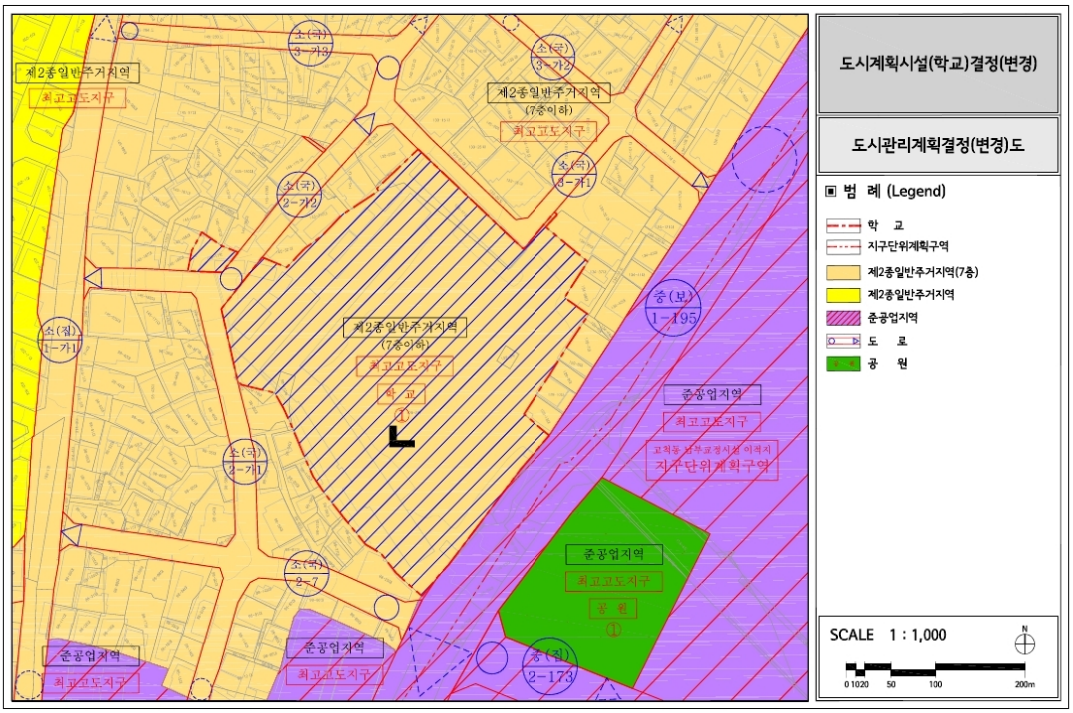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구로구 도시계획과(☎860-294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기정)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금천구고시 제2017-117호

도시계획시설(문화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71호(2013.08.22.)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문화체육시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공고 제2017-1372호(2017.12.4.)로 도시계획시설(문화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문화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금 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148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문화체육시설)사업
- ○ 명 칭 : 금천구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다. 사업의 규모
- ○ 부지면적 : 2,627㎡
- ○ 사업규모 : 지상4층/지하2층, 연면적 8,332.63㎡
- ○ 사업내용 : 수영장, 대체육관, 체력단련장, 다목적문화룸, 북카페 등 부대시설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성 명 : 금천구청장
-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19. 8. 31.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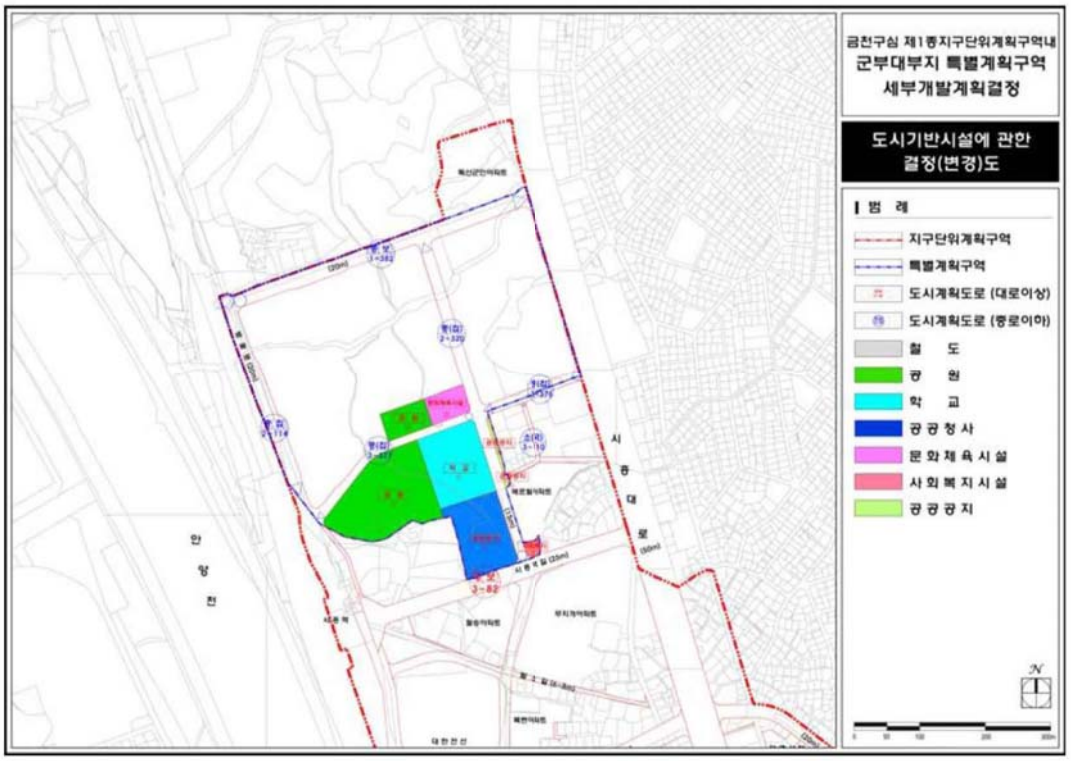
바.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열람장소 : 금천구청 문화체육과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문화체육과(☎02-2627-14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치 도


독산역
금천구청역
예정부지
금나래초등학교
금천구청
금천구청 벚꽃길
롯데캐슬골드파크4차 (2019년3월예정)
롯데캐슬골드파크3차 (2018년10월예정)
롯데캐슬골드파크2차 (2017년9월예정)
롯데캐슬골드파크 1차아파트
이랜드8가든 아파트
대우그린빌라
호정타워 아파트
옥계어린이집
위너스 골프연습장
GS백운 주유소
안성공업
시흥베르빌 아파트
산돌어린이 도서관
산돌교회
금천구청입구 상거리
무지개 종합상가
힐탑아파트
필승아파트
수협
금천IC
안양천
안양천고속
경부고속도로
계림정공
시흥대로73길


금천구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범 례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도시계획도로 (대로이상)
도시계획도로 (중로이하)
철 도
공 원
학 교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공지
N

조 감 도



◈ 강남구고시 제2017-168호

대치동구마을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85호(2013.11.21.)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 강남구고시 제2015-33호(2015.3.19.)로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된 대치동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경미한 사항)변경하고, 같은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강 남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없음)
 1) 정비사업의 명칭 :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강남구 대치동 964번지 일대	14,833.7	-

2. 정비계획 변경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주거지역	소계	14,833.7	100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14,833.7	100	

2)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 고
합 계		14,833.70	100.00	
정비 기반 시설 등	소 계	2,290.51	15.44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제공 ※공원 : 소공원
	도 로	1,737.21	11.71	
	공 원	553.30	3.73	
택 지	소 계	12,543.19	84.56	
	택 지1	12,543.19	84.56	공동주택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227.4 (99)	대치동 1012-56 (대치동 965)	대치동 1012-68 (대치동 964-9)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1-99호 (2011.4.21)	
기정	중로	3	4	12	국지도로	136.4	대치동 1012-68	대치동 1012-68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1-99호 (2011.4.21)	
기정	중로	3	5	12	국지도로	383.6 (162)	대치동 1012-57 (대치동 965-16)	대치동 1012-81 (대치동 965-34)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1-99호 (2011.4.21)	

주) ( )는 정비구역 내 구간임

나) 공 원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명 칭	세분류				
기정	공원	소공원	강남구 대치동 965-34 일대	553.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85호(2013.11.21.)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시설의 종류	시 설 기 준	면 적 (㎡)	비 고
어린이놀이터	• 150세대 이상 경우 필수 주민공동시설	250.00	-
경 로 당	• 150세대 이상 경우 필수 주민공동시설 : 50㎡에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115.21	-
작은도서관	• 300세대 이상 경우 필수 주민공동시설	133.02	-
주민운동시설	• 500세대 이상 경우 필수 주민공동시설	412.51	-
합계	• 100~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를 더한 면적 × 1.25㎡	910.74	-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변경)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비 개량 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4,833.7	강남구 대치동 964번지 일대	46	-	-	46	-	-

나)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예정 법적상한	
기정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4,833.7	택지	12,543.19	대치동 964번지 일대	공동주택	60% 이하	200.07% 이하	249.95% 이하	57m이하, 최고16층 (전용주거지역 경계50m 이외 지역:평균13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정	• 주택공급계획(세대수)

구 분	세 대 수	비 고
합 계	273세대 (100.00%)	-
전용 60㎡ 이하	78세대 (28.57%)	임대 39포함
전용 60~85㎡이하	133세대 (48.72%)	-
전용 85㎡초과	62세대 (22.71%)	-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비율 : 77.29%

<table>
<tr><td rowspan="2">결정
구분</td><td colspan="2">구역구분</td><td colspan="2">가구 또는 획지구분</td><td rowspan="2">위치</td><td rowspan="2">주된
용도</td><td rowspan="2">건폐율
(%)</td><td colspan="2">용적률(%)</td><td rowspan="2">높이(m)
최고층수</td></tr>
<tr><td>명칭</td><td>면적(㎡)</td><td>명칭</td><td>면적(㎡)</td><td>정비계획</td><td>예정
법적상한</td></tr>
<tr><td colspan="2">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10">변경
• 주택공급계획 (세대수)
<table><tr><th>구 분</th><th>세 대 수</th><th>비 고</th></tr><tr><td>합 계</td><td>283세대 (100.00%)</td><td>-</td></tr><tr><td>전용 60㎡ 이하</td><td>102세대 (36.04%)</td><td>임대 39포함</td></tr><tr><td>전용 60~85㎡이하</td><td>148세대 (52.30%)</td><td>-</td></tr><tr><td>전용 85㎡초과</td><td>33세대 (11.66%)</td><td>-</td></tr></table>•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비율 : 88.34%</td></tr>
<tr><td colspan="2">심의완화사항</td><td colspan="10">• 층수완화
- 전용주거지역 경계 50m이외 지역 : 7층 → 평균 13층 이하
• 용적률 완화(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 정비계획용적률(200.07%) → 예정 법적상한용적률(249.95%)</td></tr>
<tr><td colspan="2">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0">• 역삼로변 : 건축한계선 4m
•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 3m</td></tr>
<tr><td colspan="2">기타사항</td><td colspan="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td></tr>
<tr><td colspan="1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2013.9.13) : 수정가결
• 건축계획시 다음 사항을 반영 검토
- 투수성포장, 보도블럭, 트렌치 설치 시 보행 및 자전거 주행 안전을 위한 미끄럼 방지 재질 등 사용 고려
- 우수시 빗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배수펌프, 저류용량 및 시간 등 방재대책 수립</td></tr>
</table>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변경없음)

<table>
<tr><td>구분</td><td colspan="5">산 정 내 용</td></tr>
<tr><td rowspan="2">토지이용
계획</td><td>구역면적</td><td>획지
(공동주택)</td><td>신설
정비기반시설</td><td>신설 정비기반시설내 기존
국·공유지</td><td>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td></tr>
<tr><td>14,833.7㎡</td><td>12,543.19㎡</td><td>2,290.51㎡</td><td>87.35㎡</td><td>1,245.45㎡</td></tr>
<tr><td>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면적)</td><td colspan="5">•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 2,290.51㎡ - 87.35㎡ - 1,245.45㎡ = 957.71㎡ (층수완화 대상면적 대비 10.48%)
* 전용주거지역 경계 50m이외 지역(9,141.4㎡)</td></tr>
<tr><td>개발가능
용 적 률</td><td colspan="2">•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a)
= 182% × (1 + 1.3 × 0.076)
= 200.07%
• 정비계획 용적률 : 200.07%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249.95%</td><td colspan="3">*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957.71 / 12,543.19 = 0.076353
* 허용용적률
= 170% + 12%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친환경·신재생에너지설계) (향후 허용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td></tr>
</table>

※ 상기 개발가능용적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및 귀속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임

※ 건축시설계획은 향후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재건축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계획(변경)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면적)	비고 (공급면적)
기정	대치동 964번지 일원	-	-	39세대	59.98㎡	3,168.35㎡
변경	대치동 964번지 일원	-	-	35세대	59.96㎡	3,128.74㎡
				4세대	59.98㎡	

□ 증가용적률에 대한 소형주택 건설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법적상한 및 정비계획용적률 산정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49.95%	
		정비계획용적률	200.07%	
증가된 용적률의 50%		• 소형주택 건설규모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249.95% - 200.07%) × 50% = 24.94% 이상		
연면적 환산		• 연면적 = 24.94% × 대지면적 = 24.94% × 12,543.19㎡ = 3,128.27㎡ 이상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계획	기정	• 계획 소형주택 공급면적 = 3,168.35㎡ (81.24㎡ × 39세대) • 세대수 = 39세대 (14.29%), 전용면적 60㎡ 이하		
	변경	• 계획 소형주택 공급면적 = 3,128.74㎡ ((80.15㎡×35세대) +(80.87㎡×4세대)) • 세대수 = 39세대 (13.78%), 전용면적 60㎡ 이하		

7)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정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대치동구마을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기존 : 142세대 • 계획 : 273세대 • 증가 : 131세대	
변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대치동구마을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기존 : 142세대 • 계획 : 283세대 • 증가 : 141세대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남구청 주택과 (☎02-3423-6072)에 관련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비계획 결정도>



※ 세대수 등의 변경으로 도면상의 변경은 없음

◈ 강남구고시 제2017-169호

도시계획시설사업(세곡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건설교통부고시 제465호(1971.8.7)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138호(1977.7.9)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8호(2015.2.12.)로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91호(2011.7.1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84호(2017.3.9.)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세곡근린공원)에 대하여 강남구 공고 제2017-2174호(2017.12.7.)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한 강남구 자곡동 산48-15번지 일대 세곡근린공원 조성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산48-15번지 등 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사업의 명칭 : 세곡근린공원 조성(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훼손지복구사업 2단계, 토지보상)

다.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공원면적 103,449㎡ 중 1,93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논현동, 서울지역본부)

마.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 예정일

○ 당 초 : 실시계획인가일(2017.9.7.)로부터 2017.12.31.까지

○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2017.9.7.)로부터 2018.06.30.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 등 권리명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계				8,235	1,936		
1	자곡동	산48-15	임	1,911㎡	1,911㎡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동대문구 이문동 207-1
2	자곡동	574-4	잡	23㎡	23㎡		
3	세곡동	산50-16	임	6,301㎡	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공원녹지과(☎3423-62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남구고시 제2017-170호

도시계획시설사업(봉은역사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16호(2009.5.2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근린→역사),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21호(2016.4.21.)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봉은역사공원)에 대하여 강남구 고시 제2016-57호(2016. 5.4.)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봉은역사공원) 사업시행자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분할시행)·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3243-624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2월 28일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 명 칭 : 봉은역사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공원면적 75,405㎡ 중 968.03㎡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대표 주지 원명(김종민)]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
마.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 등 권리명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사용(사업) 부지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3	종	968.03㎡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531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강동구고시 제2017-22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변경)하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강 동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사항으로 중앙보훈병원 일원에 보행자의 안전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구간을 확폭하고, 현재 운영 중인 현황도로(완화차선)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함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69	25~36	보조간선	5,973	송파구 오금동 (대2-67)	강동구 암사동 (중2-134)	일반 도로	-	건고198 ('71.4.7)	-
변경	대로	3	69	25~36	보조간선	5,973	송파구 오금동 (대2-67)	강동구 암사동 (중2-134)	일반 도로	-	-	일부구간 확폭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69	대로 3-69	- 일부구간 변경(L=457m) • 보훈병원 북측도로(사유지): 연장 87m (폭 25.0m → 28.5m) • 보훈병원 앞 현황도로(공유지): 연장 370m (폭 25.3m~28.8m → 26.7m~30.0m)	• 원활한 보행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일부구간 도로(보도) 확폭 • 현재 운영 중인 보훈병원 앞 완화차로 및 잔여토지 도시관리계획 반영

다.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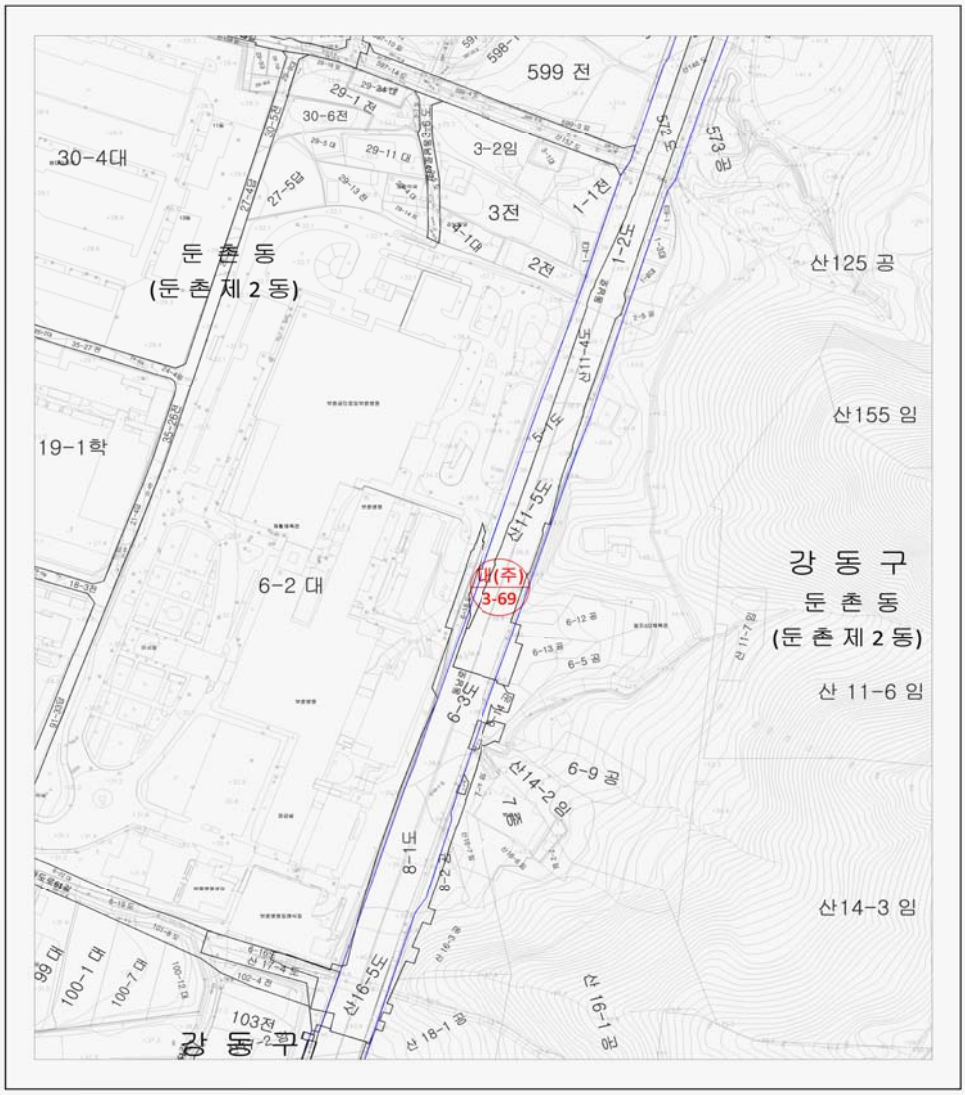
라.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강동구청 도시계획과(02-3425-6022) 및 강동구청 도로과(02-3425-632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붙임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기정)



범 례

기 정

SCALE = 1: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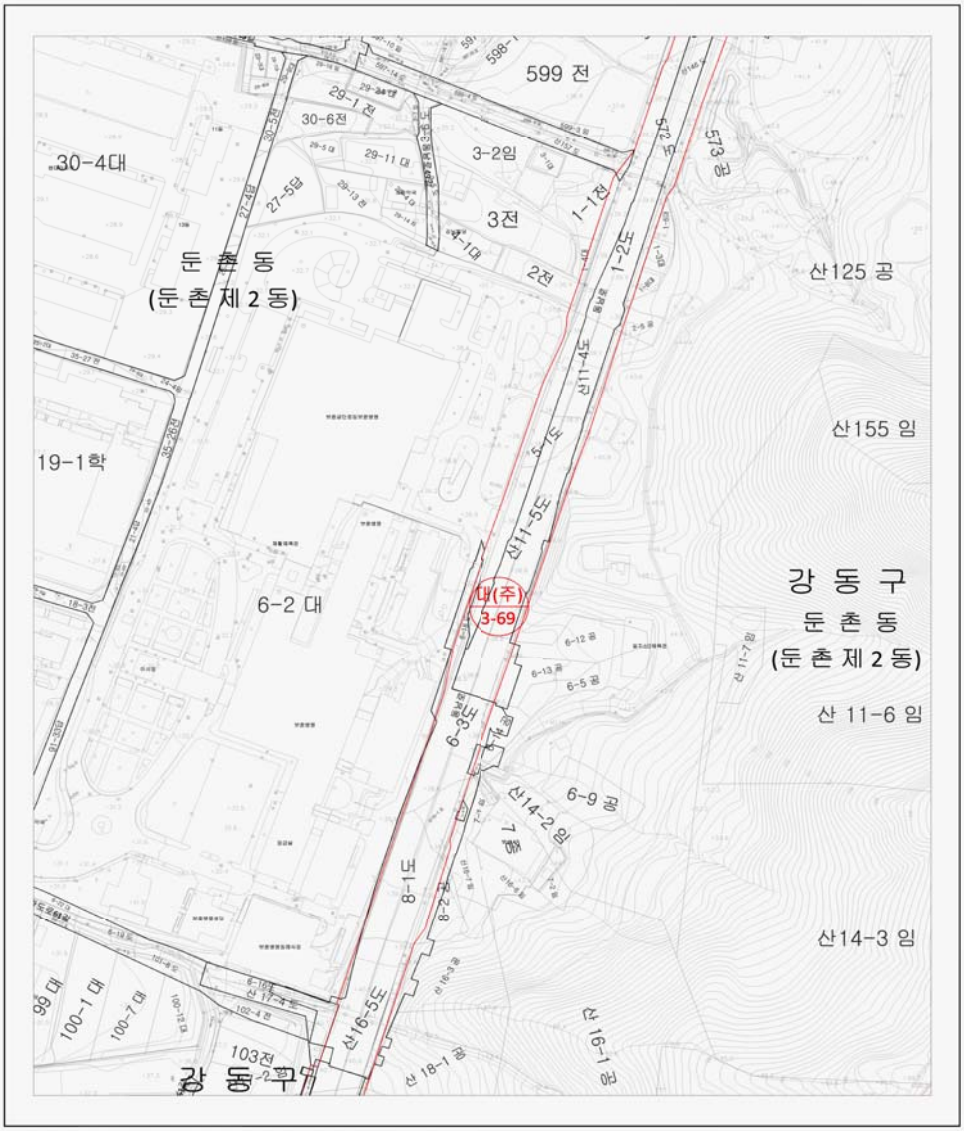
N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69	25	보조간선도로	5,973	송파구 오금동 (대2-67)	강동구 암사동 (한2-134)	일반도로	-	건설부고시 제1198호 (1971.04.07.)	
변경	대로	3	69	25 ~ 36	보조간선도로	5,973	송파구 오금동 (대2-67)	강동구 암사동 (한2-134)	일반도로	-	건설부고시 제1198호 (1971.04.07.)	입부구간 확폭

구 분	입안 및 결정권자		
	작 성 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직 위	주 무 관	도시계획 팀장	도시계획 과장
직 명	지방시설 주사보	지방시설 주사	지방시설 사무관
성 명	이 명 만	이 선 형	정 한 영
확인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변경)



범 례

변 경

SCALE = 1:1,000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구분	규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대로	3	69	25	보조 간선 도로	5,973	송파구 오금동 (대2-67)	강동구 암사동 (한2-134)	일반 도로	-	건설부고시 제198호 (1971.04.07.)	
변경	대로	3	69	25 ~ 36	보조 간선 도로	5,973	송파구 오금동 (대2-67)	강동구 암사동 (한2-134)	일반 도로	-	건설부고시 제198호 (1971.04.07.)	입부구간 확폭

구 분	입안 및 결정권자		
	작 성 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직 위	주 무 관	도시계획 팀장	도시계획 과장
직 명	지방시설 주사보	지방시설 주사	지방시설 사무관
성 명	이 병 만	이 선 형	정 한 영
확인인			

구 공 고

◈ 광진구공고 제2017-1147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73호(2017.10.26.)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자양유수지 복합문화시설 건립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진구청 공공청사기획단에 비치하고 열람기간 동안 일반인에게 열람하며 본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사업시행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공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8일
광 진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594번지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다. 사업의 명칭 : 자양유수지 복합문화시설 건립공사
라. 사업의 규모 : 문화시설 3,500㎡
마. 사업시행자 : 광진구청장(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바.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로부터 2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첨(토지조서 참고)
자.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차. 열람장소 : 광진구청 공공청사기획단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공공청사기획단(☎02-450-70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북구공고 제2017-1544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

성북구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5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성 북 구 청 장

□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시설별	시 행 기 간												비고
	계			1단계(1~3년차)			2-1단계(4~5년차)			2-2단계(6년차 이후)			
	건수	면적(㎡)	사업비(백만원)	건수	면적(㎡)	사업비(백만원)	건수	면적(㎡)	사업비(백만원)	건수	면적(㎡)	사업비(백만원)	
계	104	158,066	238,739	4	4,781	9,569	7	22,817	14,839	93	130,468	214,331	
도로	103	157,867	237,839	4	4,781	9,569	6	22,618	13,939	93	130,468	214,331	
사회복지시설	1	199	900	-	-	-	1	199	900	-	-	-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단위 : 백만원)

사업·시설 부문	사업명(위치)	우선순위	사업기간	사업개요	총사업비	계획기간중 사업비												실효시기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도비	시군비			민간투자	공공기여	'1년~'3년차	'4년~'5년차	'6년차 이후	
도로	동소문동7가5~동소문동7가7-1	1	2017.1~	B=15m L=35m	1,300	1,300		1,300		1,300					○			2030.6
도로	하월곡동 73-21~73-83	2	2020.1~	B=8m L=130m	570	570		570		570					○			2020.7
도로	하월곡동 80-72~81-92	3	2020.1~	B=6m L=306m	6,428	6,428		6,428		6,428					○			2020.7
도로	월곡동 150 ~ 191	4	2022.1~	B=6m L=230m	1,271	1,271		1,271		1,271					○			2020.7
도로	석관동 324-172~252-1	5	2017.1~	B=6m L=150m	2,280	2,280		2,280		2,280						○		2020.7
도로	하월곡동 27-99~96-125	6	2017.1~	B=6m L=233m	1,150	1,150		1,150		1,150						○		2022.5
도로	동소문동4가 271~278-1	7	2020.1~	B=15m L=260m	2,266	2,266		2,266		2,266						○		2020.7
도로	석관동 189-6~206-7	8	2020.1~	B=6m L=199m	1,100	1,100		1,100		1,100						○		2022.6
도로	하월곡동 96-8~22-10	9	2020.1~	B=8m L=522m	1,772	1,772		1,772		1,772						○		2020.7
도로	미아리고개~안암동5가 산1-37	10	2020.1~	B=7~23m L=650m	5,371	5,371		5,371		5,371						○		2020.7
도로	정릉동 365-4~404-3	11	2022.1~	B=10m L=380m	4,069	4,069		4,069		4,069							○	2020.7
도로	길음동 1142 ~ 1153-4	12	2022.1~	B=4m L=116m	712	712		712		712							○	2022.6

사업·시설부문	사업명(위치)	우선순위	사업기간	사업개요	총사업비	계획기간중 사업비												실효시기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도비	시군비			민간투자	공공기여	'1년~'3년차	'4년~'5년차	'6년차 이후	
도로	길음동 1153-3 ~ 1094	13	2022.1 ~	B=6m L=47m	412	412		412		412							○	2022.6
도로	길음동 1157 ~ 1090-1	14	2022.1 ~	B=6m L=47m	412	412		412		412							○	2022.6
도로	길음동 1163 ~ 918-8	15	2022.1 ~	B=10m L=49m	1,679	1,679		1,679		1,679							○	2022.6
도로	길음동 21-34 ~ 864-18	16	2022.1 ~	B=6m L=41m	304	304		304		304							○	2022.6
도로	길음동 21-46 ~ 489-50	17	2022.1 ~	B=8m L=128m	1,213	1,213		1,213		1,213							○	2022.6
도로	길음동 25-7 ~ 489-49	18	2022.1 ~	B=8m L=69m	716	716		716		716							○	2022.6
도로	길음동 489-42 ~ 25-7	19	2022.1 ~	B=6m L=43m	334	334		334		334							○	2022.6
도로	길음동 535-8 ~ 877-255	20	2022.1 ~	B=8m L=70m	4,932	4,932		4,932		4,932							○	2020.7
도로	삼선동1가 282-8 ~ 283	21	2022.1 ~	B=8m L=80m	839	839		839		839							○	2020.7
도로	동선동1가 94 ~ 92-22	22	2022.1 ~	B=6m L=75m	584	584		584		584							○	2020.7
도로	동선동4가 38 ~ 33	23	2022.1 ~	B=6m L=50m	389	389		389		389							○	2020.7
도로	동선동4가 83 ~ 86	24	2022.1 ~	B=6m L=55m	426	426		426		426							○	2020.7
도로	동선동4가 91 ~ 95-3	25	2022.1 ~	B=8m L=45m	467	467		467		467							○	2020.7

사업·시설 부문	사업명(위치)	우선순위	사업기간	사업개요	총사업비	계획기간중 사업비													실효시기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도비	시군비			민간투자	공공기여	'1년~'3년차	'4년~'5년차	'6년차 이후		
도로	석관동 168-15 ~ 384-1	26	2022.1~	B=12m L=14m	197	197		197		197							○		2022.6
도로	석관동 179-22 ~ 129-5	27	2022.1~	B=6m L=132m	937	937		937		937							○		2022.6
도로	석관동 384-4 ~ 384-4	28	2022.1~	B=6m L=12m	90	90		90		90							○		2022.6
도로	석관동 391-1 ~ 206-1	29	2022.1~	B=6m L=25m	176	176		176		176							○		2022.6
도로	성북동 236-2 ~ 293-4	30	2022.1~	B=6m L=305m	2,365	2,365		2,365		2,365							○		2020.7
도로	장위동 45-8 ~ 45-13	31	2022.1~	B=10m L=58m	742	742		742		742							○		2022.6
도로	장위동 64-101 ~ 64-95	32	2022.1~	B=10m L=46m	806	806		806		806							○		2022.6
도로	장위동 50-17 ~ 42-23	33	2022.1~	B=10m L=101m	1,179	1,179		1,179		1,179							○		2022.6
도로	장위동 50-17 ~ 63-61	34	2022.1~	B=10m L=227m	3,030	3,030		3,030		3,030							○		2022.6
도로	장위동 63-59 ~ 63-60	35	2022.1~	B=6m L=36m	281	281		281		281							○		2022.6
도로	정릉동 779 ~ 807	36	2022.1~	B=6m L=198m	175	175		175		175							○		2020.7
도로	종암동 3-551 ~ 69-6	37	2022.1~	B=6m L=486m	9,533	9,533		9,533		9,533							○		2020.7
도로	종암동 81-7 ~ 81-210	38	2022.1~	B=6m L=349m	4,788	4,788		4,788		4,788							○		2020.7

사업·시설부문	사업명(위치)	우선순위	사업기간	사업개요	총사업비	계획기간중 사업비												실효시기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도비	시군비			민간투자	공공기여	'1년~'3년차	'4년~'5년차	'6년차이후	
도로	하월곡동 16-13 ~ 26-13	39	2022.1~	B=16m L=72m	1,494	1,494		1,494		1,494							○	2022.6
도로	하월곡동 198 ~ 216	40	2022.1~	B=10m L=93m	1,360	1,360		1,360		1,360							○	2022.6
도로	하월곡동 27-117 ~ 27-95	41	2022.1~	B=6m L=88m	774	774		774		774							○	2022.6
도로	하월곡동 29-64 ~ 29-73	42	2022.1~	B=6m L=100m	880	880		880		880							○	2022.6
도로	하월곡동 64-13 ~ 50-2	43	2022.1~	B=8~10m L=164m	2,117	2,117		2,117		2,117							○	2022.6
도로	하월곡동 70-129 ~ 70-33	44	2022.1~	B=6m L=365m	3,245	3,245		3,245		3,245							○	2020.7
도로	하월곡동 73-34 ~ 22-10	45	2022.1~	B=8m L=320m	712	712		712		712							○	2020.7
도로	하월곡동 82-230 ~ 77-239	46	2022.1~	B=6m L=254m	687	687		687		687							○	2020.7
도로	하월곡동 88-65 ~ 88-493	47	2022.1~	B=12m L=172m	3,040	3,040		3,040		3,040							○	2022.6
도로	석관동 123-1 ~ 89	48	2022.1~	B=8m L=269m	5,387	5,387		5,387		5,387							○	2020.7
도로	석관동 124-4 ~ 77-5	49	2022.1~	B=8~10m L=312m	1,030	1,030		1,030		1,030							○	2020.7
도로	석관동 179-22 ~ 129-5	50	2022.1~	B=6m L=158m	937	937		937		937							○	2020.7
도로	석관동 176-74 ~ 384	51	2022.1~	B=8~12m L=250m	2,345	2,345		2,345		2,345							○	2020.7

사업·시설부문	사업명(위치)	우선순위	사업기간	사업개요	총사업비	계획기간중 사업비												실효시기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도비	시군비			민간투자	공공기여	'1년~'3년차	'4년~'5년차	'6년차 이후	
도로	석관동 184-2 ~ 278	52	2022.1~	B=8m L=214m	2,951	2,951		2,951		2,951							○	2020.7
도로	석관동 220-25 ~ 220-18	53	2022.1~	B=6m L=35m	248	248		248		248							○	2022.6
도로	석관동 236-1 ~ 197-17	54	2022.1~	B=8m L=170m	1,590	1,590		1,590		1,590							○	2020.7
도로	석관동 241-8 ~ 215-10	55	2022.1~	B=6~10m L=163m	1,590	1,590		1,590		1,590							○	2020.7
도로	석관동 343-9 ~ 261-259	56	2022.1~	B=8m L=604m	5,667	5,667		5,667		5,667							○	2020.7
도로	석관동 72-1 ~ 301-1	57	2022.1~	B=8m L=392m	8,982	8,982		8,982		8,982							○	2020.7
도로	안암동5가 156-3 ~ 163-1	58	2022.1~	B=6m L=155m	4,934	4,934		4,934		4,934							○	2020.7
도로	월곡동 90-1977 ~ 90-907	59	2022.1~	B=8m L=306m	3,245	3,245		3,245		3,245							○	2020.7
도로	정릉동 223 ~ 410-1	60	2022.1~	B=6m L=56m	268	268		268		268							○	2020.7
도로	정릉동 771-46 ~ 966-1	61	2022.1~	B=10m L=65m	1,158	1,158		1,158		1,158							○	2020.7
도로	정릉동 848-10 ~ 846-2	62	2022.1~	B=10m L=90m	515	515		515		515							○	2020.7
도로	종암동 45-30 ~ 46-3	63	2022.1~	B=6m L=144m	474	474		474		474							○	2020.7
도로	길음동 21-69 ~ 486-7	64	2022.1~	B=12m L=406m	7,174	7,174		7,174		7,174							○	2022.6

사업·시설부문	사업명(위치)	우선순위	사업기간	사업개요	총사업비	계획기간중 사업비												실효시기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도비	시군비			민간투자	공공기여	'1년~'3년차	'4년~'5년차	'6년차 이후	
도로	석관동 245-11 ~ 236-7	65	2022.1~	B=6m L=206m	1,604	1,604		1,604		1,604							○	2022.6
도로	성북동45-14 ~ 37-1	66	2022.1~	B=15m L=101m	1,133	1,133		1,133		1,133							○	2020.7
도로	장위동 43-3 ~ 월계동 492-11	67	2022.1~	B=12m L=54m	805	805		805		805							○	2020.7
도로	장위동 50-64 ~ 50-64	68	2022.1~	B=10m L=54m	554	554		554		554							○	2022.6
도로	장위동 63-127 ~ 63-118	69	2022.1~	B=6m L=56m	398	398		398		398							○	2022.6
도로	장위동 63-77 ~ 63-117	70	2022.1~	B=10~11m L=47m	665	665		665		665							○	2022.6
도로	장위동 63-89 ~ 55-38	71	2022.1~	B=6m L=144m	1,114	1,114		1,114		1,114							○	2022.6
도로	장위동 64-103 ~ 64-101	72	2022.1~	B=8~9m L=26m	286	286		286		286							○	2022.6
도로	장위동 65-27 ~ 66-44	73	2022.1~	B=10m L=92m	1,179	1,179		1,179		1,179							○	2022.6
도로	장위동 8-2 ~ 8-3	74	2022.1~	B=10m L=103m	1,828	1,828		1,828		1,828							○	2022.6
도로	장위동 60-2 ~ 50-27	75	2022.1~	B=15m L=167m	9,412	9,412		9,412		9,412							○	2022.6
도로	장위동 93-4 ~ 62-1	76	2022.1~	B=20m L=232m	29,462	29,462		29,462		29,462							○	2022.6
도로	정릉동 567-1 ~ 돈암동 584-2	77	2022.1~	B=6~12m L=350m	1,360	1,360		1,360		1,360							○	2020.7

사업·시설부문	사업명(위치)	우선순위	사업기간	사업개요	총사업비	계획기간중 사업비												실효시기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도비	시군비			민간투자	공공기여	'1년~'3년차	'4년~'5년차	'6년차 이후	
도로	하월곡동 46-43 ~ 47-42	78	2022.1~	B=6m L=61m	536	536		536		536							○	2022.5
도로	하월곡동 46-59 ~ 47-50	79	2022.1~	B=8m L=155m	1,807	1,807		1,807		1,807							○	2022.5
도로	하월곡동 47-31 ~ 47-56	80	2022.1~	B=4m L=45m	275	275		275		275							○	2022.5
도로	정릉동 1002 ~ 873	81	2022.1~	B=6~8m L=50m	273	273		273		273							○	2023.1
도로	장위동55-25~ 55-21	82	2022.1~	B=12m L=26m	402	402		402		402							○	2028.4
도로	하월곡동 53-9~22-34	83	2022.1~	B=6m L=115m	2,200	2,200		2,200		2,200							○	2029.1
도로	정릉동 416-10~416-27	84	2022.1~	B=6m L=38m	410	410		410		410							○	2026.10
도로	성북동101~73-1	85	2022.1~	B=12m L=105m	4,000	4,000		4,000		4,000							○	2033.11
도로	안암동5가126-1~ 산1-29	86	2022.1~	B=10m L=690m	6,500	6,500		6,500		6,500							○	2020.7
도로	정릉동 183-13~966-95	87	2022.1~	B=8m L=95m	1,236	1,236		1,236		1,236							○	2026.10
도로	안암동3가132-2~ 133-48	88	2022.1~	B=6~7m L=320m	2,112	2,112		2,112		2,112							○	2028.8
도로	성북동산7-54~ 7-23	89	2022.1~	B=6m L=131m	387	387		387		387							○	2020.7
도로	정릉동 164-53~980-3	90	2022.1~	B=9m L=47m	450	450		450		450							○	2026.10

사업·시설 부문	사업명(위치)	우선순위	사업기간	사업개요	총사업비	계획기간중 사업비												실효시기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도비	시군비			민간투자	공공기여	'1년~'3년차	'4년~'5년차	'6년차 이후	
도로	동소문동5가55-2~67-5	91	2022.1~	B=12m L=93m	1,756	1,756		1,756		1,756							○	2027.2
도로	동소문동6가116~116	92	2022.1~	B=6m L=7m	54	54		54		54							○	2027.2
도로	하월곡동18-49~28-45	93	2022.1~	B=17m L=585m	12,782	12,782		12,782		12,782							○	2029.1
도로	하월곡동75-54~20	94	2022.1~	B=10m L=149m	1,900	1,900		1,900		1,900							○	2029.1
도로	성북동246~303	95	2022.1~	B=8m L=293m	3,040	3,040		3,040		3,040							○	2030.10
도로	하월곡동88-16~88-389	96	2022.1~	B=20m L=274m	7,102	7,102		7,102		7,102							○	2030.7
도로	하월곡동104-5~88-909	97	2022.1~	B=15m L=185m	3,584	3,584		3,584		3,584							○	2027-6
도로	하월곡동104-90~88-421	98	2022.1~	B=15m L=45m	849	849		849		849							○	2020.7
도로	정릉동416-14~416-21	99	2022.1~	B=4m L=90m	1,200	1,200		1,200		1,200							○	2020.7
도로	장위동63-75~43-6	100	2022.1~	B=12m L=355m	3,343	3,343		3,343		3,343							○	2020.7
도로	정릉동640-1~640-47	101	2022.1~	B=6m L=120m	450	450		450		450							○	2020.7
도로	정릉동893-1~산87-7	102	2022.1~	B=6m L=190m	1,240	1,240		1,240		1,240							○	2020.7
도로	돈암동509-35~509-38	103	2022.1~	B=8m L=85m	677	677		677		677							○	2020.7

사업·시설 부문	사업명(위치)	우선순위	사업기간	사업개요	총사업비	계획기간중 사업비												실효시기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도비	시군비			민간투자	공공기여	'1년~'3년차	'4년~'5년차	'6년차 이후	
사회복지시설	석관동336-14	104	2020.1~	A=199㎡	900	900		900		900						○		2022.6

◈ 도봉구공고 제2017-1317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

1. 우리구 관내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계획과(☏2091-3553) 및 사업시행부서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2월 28일
도 봉 구 청 장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조서
   가.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시설별	시행기간												비고
	계			1단계(1~3년차)			2단계(4~5년차)			2단계(5년차 이후)			
	건수	면적(㎡)	사업비(단위:백만원)	건수	면적(㎡)	사업비(단위:백만원)	건수	면적(㎡)	사업비(단위:백만원)	건수	면적(㎡)	사업비(단위:백만원)	
계	66	118,371	151,289	59	113,474	119,155	7	4,897	32,134				
도로	60	111,317	96,535	56	109,083	93,875	4	2,234	2,660				
공원	1	450	380	1	450	380	-	-	-				
공공공지	3	4,065	25,350	2	3.941	24.900	1	124	450				
문화시설	2	2,539	29,024	-	-	-	2	2,539	29,024				

나.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시설	우선순위	사업개요			계획 기간중 사업비													비고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집행계획						
		위 치	사업기간	기 타 주요내용	총계	재정적 집행시설						1단계			2-1 단계		2-2 단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18	'19	'20	'21	'22	'23년 이후	
							계	시비	구비									
도로	1	창동338~창동330	2018	B= 4m L= 45m A= 180㎡	280		280		280			280						
도로	2	창동328-1~창동331-2	2018	B= 2m L= 3m A= 6㎡	20		20		20			20						
도로	3	도봉2동58-3~51-8	2018	B= 8m L= 180m A= 1,440㎡	1,100		1,100		1,100			1,100						
도로	4	도봉2동625-16~623-66	2018~2019	B= 6~15m L= 793m A= 5,947㎡	4,800		4,800		4,800			2,000	2,800					
도로	5	방학1동622~713-10	2018~2019	B= 12m L= 920m A= 1,140㎡	9,170		9,170		9,170			3,000	6,170					
도로	6	도봉1동353-1~384-4	2018	B= 6m L= 302m A= 1,812㎡	570		570		570			570						
도로	7	도봉1동384-4~352-25	2018	B= 6m L= 302m A= 1,812㎡	1,770		1,770		1,770			1,770						
도로	8	창5동270-2~269-4	2018	B= 8~12m L= 376m A= 3,712㎡	1,150		1,150		1,150			1,150						
도로	9	도봉1동378-5~352-8	2018	B= 6m L= 40m A= 240㎡	370		370		370			370						
도로	10	쌍문1동448-3~416-35	2018	B= 6m L= 50m A= 300㎡	30		30		30			30						
도로	11	창5동286-23~253-1	2018	B= 8~12m L= 376m A= 4,512㎡	1,160		1,160		1,160			1,160						
도로	12	방학1동713-29~713-40	2019	B= 6m L= 105m A= 630㎡	1,970		1,970		1,970				1,970					
도로	13	방학1동713-3~715-9	2019	B= 6m L= 340m A= 2,040㎡	1,630		1,630		1,630				1,630					
도로	14	도봉2동629-11~629-12	2019	B= 6m L= 31m A= 186㎡	150		150		150				150					
도로	15	우이동5-1~쌍문동494-1	2019	B= 6m L= 295m A= 1,770㎡	3,050		3,050		3,050				3,050					
도로	16	방학1동705-9~705-10	2019	B= 8m L= 39m A= 312㎡	2,630		2,630		2,630				2,630					
도로	17	쌍문2동19-9~31-48	2019	B= 6m L= 336m A= 2,016㎡	930		930		930				930					

시설	우선순위	사업개요			계획 기간중 사업비														비고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집행계획							
		위 치	사업기간	기 타 주요내용	총계	재정적 집행시설						1단계			2-1 단계		2-2 단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18	'19	'20	'21	'22	'23년 이후	
							계	시비	구비									
도로	18	쌍문1동414-51 ~산273-1	2019	B= 6m L= 140m A= 840㎡	880		880		880				880					
도로	19	창1동662-41 ~662-68	2019	B= 4m L= 52m A= 208㎡	890		890		890				890					
도로	20	방학동 415 ~602-1	2019	B= 8m L= 310m A= 2,480㎡	660		660		660				660					
도로	21	창5동715-14 ~728-3	2019	B= 10m L= 237m A= 2,370㎡	3,030		3,030		3,030				3,030					
도로	22	쌍문1동520-47 ~524-9	2019	B= 6m L= 260m A= 1,560㎡	1,100		1,100		1,100				1,100					
도로	23	방학1동705-20 ~717-15	2019	B= 25m L= 225m A= 5,625㎡	13,960		13,960		13,960				13,960					
도로	24	방학1동719-12 ~719-25	2019	B= 25~30m L= 70m A= 2,100㎡	670		670		670				670					
도로	25	쌍문3동88-1 ~88-2	2019	B= 25~30m L= 65m A= 2,275㎡	2,780		2,780		2,780				2,780					
도로	26	창5동731-1 ~731-3	2019	B= 6m L= 88m A= 528㎡	1,020		1,020		1,020				1,020					
도로	27	쌍문1동494-22 ~414-235	2019	B= 6m L= 1,488m A= 8,928㎡	1,080		1,080		1,080				1,080					
도로	28	방학1동707 ~715-12	2019	B= 20m L= 252m A= 5,040㎡	10,440		10,440		10,440				10,440					
도로	29	쌍문1동산307-1 ~산293-1	2019	B= 8m L= 446m A= 3,568㎡	1,020		1,020		1,020				1,020					
도로	30	쌍문1동481 ~산283-14	2019	B= 4m L= 258m A= 1,032㎡	1,020		1,020		1,020				1,020					
도로	31	도봉2동625-12 ~625-29	2019	B= 4~8m L= 145m A= 1,060㎡	2,150		2,150		2,150				2,150					
도로	32	쌍문1동532-30 ~산304-1	2018	B= 8m L= 112m A= 896㎡	1,680		1,680		1,680				1,680					
도로	33	쌍문3동343-9 ~315-345	2019	B= 6m L= 300m A= 1,800㎡	750		750		750				750					
도로	34	쌍문동477-2 ~478-39	2019	B= 4m L= 122m A= 488㎡	580		580		580				580					

시설	우선순위	사업개요			계획 기간중 사업비													비고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집행계획						
		위 치	사업기간	기 타 주요내용	총계	재정적 집행시설				지방채	공기업	1단계			2-1 단계		2-2 단계	
						국비	지방비					'18	'19	'20	'21	'22	'23년 이후	
							계	시비	구비									
도로	35	도봉1동 630-6 ~637-86	2019	B= 4~9m L= 679m A= 4,753㎡	580		580		580				580					
도로	36	쌍문3동 315-66 ~315-109	2019	B= 6m L= 465m A= 2,790㎡	370		370		370				370					
도로	37	방학1동 263-3 ~쌍문2동 45-26	2019	B= 8~10m L= 470m A= 2,100㎡	1,020		1,020		1,020				1,020					
도로	38	쌍문1동 산291-1 ~ 산281-1	2019	B= 6m L= 368m A= 2,208㎡	460		460		460				460					
도로	39	쌍21동 710 ~711-31	2019	B= 6m L= 302m A= 1,812㎡	450		450		450				450					
도로	40	도봉2동626-11 ~637-71	2019	B= 8m L= 71m A= 568㎡	150		150		150				150					
도로	41	도봉2동626-100 ~626-115	2019	B= 4~9m L= 80m A= 445㎡	70		70		70				70					
도로	42	쌍문2동47-7 ~43-3	2020	B= 8m L= 175m A= 1,400㎡	2,520		2,520		2,520					2,520				
도로	43	창5동135-15 ~75-4	2020	B= 6m L= 142m A= 1,812㎡	370		370		370					370				
도로	44	도봉2동625-30 ~625-22	2020	B= 6m L= 74m A= 444㎡	60		60		60					60				
도로	45	쌍문1동509-3 ~422-29	2020	B= 6m L= 534m A= 3,204㎡	930		930		930					930				
도로	46	쌍문1동277-4 ~281-1	2020	B= 6m L= 12m A= 72㎡	170		170		170					170				
도로	47	쌍문동 304 ~산244-1	2020	B= 6m L= 237m A= 1,442㎡	2,215		2,215		2,215					2,215				
도로	48	도봉2동62-4 ~62-1	2020	B= 12m L= 200m A= 2,400㎡	1,490		1,490		1,490					1,490				
도로	49	도봉2동63 ~75-5	2020	B= 12m L= 375m A= 4,500㎡	3,730		3,730		3,730					3,730				
도로	50	방학4동567 ~546	2020	B= 6m L= 123m A= 738㎡	200		200		200					200				

시설	우선순위	사업개요			계획 기간중 사업비													비고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집행계획						
		위 치	사업기간	기 타 주요내용	총계	재정적 집행시설						1단계			2-1 단계		2-2 단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18	'19	'20	'21	'22	'23년 이후	
							계	시비	구비									
도로	51	쌍문1동 276-3 ~363-1	2020	B= 8m L= 120m A= 960㎡	1,560		1,560		1,560					1,560				
도로	52	창4동762 ~801	2020	B= 10m L= 259m A= 2,590㎡	1,170		1,170		1,170					1,170				
도로	53	쌍문1동산227 ~산83-3	2020	B= 8m L= 230m A= 1,840㎡	130		130		130					130				
도로	54	도봉1동 341-31 ~343-2	2020	B= 6m L= 302m A= 1,812㎡	140		140		140					140				
도로	55	쌍문2동21-29 ~28-4	2020	B= 6m L= 200m A= 1,200㎡	950		950		950					950				
도로	56	쌍문동 431-3 ~산 281-1	2020	B= 6m L= 190m A= 1,140㎡	650		650		650					650				
도로	57	도봉2동288-1 ~294-3	2021	B= 8m L= 112m A= 896㎡	500		500		500						500			
도로	58	창5동269-4~ 271	2021	B= 4m L= 110m A= 440㎡	560		560		560						560			
도로	59	도봉2동 626-115 ~626-87	2021	B= 4m L= 83m A= 332㎡	540		540		540						540			
도로	60	도봉2동 625-32 ~625-58	2021	B= 4~6.5m L= 132m A= 566㎡	1,060		1,060		1,060						1,060			

시설	우선순위	사업개요			계획 기간중 사업비													비고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집행계획							
		위 치	사업기간	기 타 주요내용	총계	재정적 집행시설					1단계			2-1 단계		2-2 단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18	'19	'20	'21	'22	'23년 이후	
							계	시비	구비									
공원	1	도봉동630	2019	A= 450㎡	380		380		380				380					
공공공지	1	쌍문동 443-15 일원	2020	A=2,360㎡	8,300		8,300		8,300					8,300				
공공공지	2	방학동 709-15, 706-1 일원	2020	A=1,581㎡	16,600		16,600		16,600					16,600				
공공공지	3	방학동 446-2	2021	A=124㎡	450		450		450						450			
문화시설	1	창동 643-8 일원	2021	A=1,854㎡	21,298		21,298		21,298						21,298			
문화시설	2	쌍문동 103-66 일원	2021	A=684.5㎡	7,726		7,726		7,726						7,726			

◈ 노원구공고 제2017-1092호

도시계획시설사업(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활용홍보전시관 건립)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17-100호(2017.9.21.)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노원구고시 제2017-111호(2017.10.26.)로 실시계획 인가고시된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활용홍보전시관 건립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3. 관련 내용은 노원구청 체육청소년과 및 자원순환과에 비치하여 토지·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공고 기간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8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35-3, 1035-9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다. 사업의 명칭
○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립사업
○ 재활용홍보전시관 건립사업
라. 사업의 내용
○ 부지면적 : 939㎡
○ 사업규모
-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529㎡(연면적 1,327㎡, 지하 1층, 지상 4층)
- 재활용홍보전시관 410㎡(연면적 675㎡, 지상3층)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변경사항 : 사업부지 면적 5㎡ 증가, 토지조서, 물건조서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물건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따로붙임
아. 열람기간 : 공고일(서울시보, 노원구보)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자. 열람장소 : 노원구청 체육청소년과 (☎ 02-2116-3188), 자원순환과 (☎ 02-2116-3810)
차. 공고방법 : 서울시보 및 노원구보 게재
카. 토지·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관련도서는 노원구청 체육청소년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재활용홍보전시관 건립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지목	실제 이용 상황	지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기정	변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 내용	
1	상계동 1035-3	토지	전	·	934	934	934	홍경모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3, 104-0000(도곡동, 삼성래미안(아))				사유지
2	상계동 1035-9	토지	전	·	5	·	5	홍경모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3, 104-0000(도곡동, 삼성래미안(아))				사유지 추가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재활용홍보전시관 건립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면적㎡)	권리의 종류와내용	
1	상계동 1035-3	영업손실	소백자원	1식		임경순 (소백자원)	상계동 963-5				추가
2	상계동 1035-3	재활용품 선별라인	철재	1식		임경순 (소백자원)	상계동 963-5				
3	상계동 1035-3	재활용품 분류칸막이	철재 4 x 4m,7EA Channel 8 x 30m	1식	선별기계	임경순 (소백자원)	상계동 963-5				
4	상계동 1035-3	경계담	철재 EGI 25m x 5H	1식	경계담	임경순 (소백자원)	상계동 963-5				
5	상계동 1035-3	바닥	콘크리트 240㎡	1식		임경순 (소백자원)	상계동 963-5				추가

◈ 노원구공고 제2017-1096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공고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관리과(☎: 2116-38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2월 28일
노 원 구 청 장

가.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시설별	시행기간								비고
	계		1단계(1~3년차)		2단계(4~5년차)		2단계(6년차이후)		
	건수	면적(㎡) 사업비(백만원)	건수	면적(㎡) 사업비(백만원)	건수	면적(㎡) 사업비(백만원)	건수	면적(㎡) 사업비(백만원)	
총계	18	202,921 60,810	5	10,939 5,700	7	12,644 30,440	6	179,338 24,670	
도로	12	30,678 38,160	3	10,351 5,450	7	12,644 30,440	2	7,683 2,270	
유원지	1	161,245 11,380					1	161,245 11,380	해제 진행중
공공공지	2	588 250	2	588 250					
기타시설	3	10,410 11,020					3	10,410 11,020	

나.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사업·시설 부문	우선순위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2018~2027)															실효시기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사업명	사업기간	기타 주요내용	총사업비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투자	공공기여	'18	'19	'20	'21	'22	'23년 이후	
								계	도비	시군비											
도로	1	상계동 134-10~ 상계동 155-12	'18~'20	L: 520m, B: 8m	2,500	2,500		2,500		2,500					830	830	840				2020
	2	월계동 285 ~ 월계동 271	'18~'20	L: 534m, B: 10m	2,350	2,350		2,350		2,350					780	780	790				2020
	3	월계동 656-19 ~ 271-1	'18~'20	L: 236m, B: 8m	600	600		600		600					200	200	200				2020
	4	상계동 155-5 ~ 상계동 138-206	'21~'22	L: 300m, B: 8m	1,100	1,100		1,100		1,100								1,100			2020
	5	상계동 616 ~ 상계동334간	'21~'22	L: 66m, B: 6m	3,800	3,800		3,800		3,800								1,900	1,900		2020
	6	상계동 91-69~140-268	'21~'22	L: 200m, B: 6~7m	640	640		640		640								320	320		2020
	7	상계동 330-33~ 상계동 336-13	'21~'22	L: 85m, B: 6m	1,750	1,750		1,750		1,750								1,750			2020
	8	상계동 349-27~ 상계동 616-5	'21~'22	L: 290m, B: 6m	11,500	11,500		11,500		11,500								5,750	5,750		2020
	9	상계동 144-1 ~ 상계동 155-9	'21~'22	L: 281m, B: 8m	3,200	3,200		3,200		3,200								1,600	1,600		2020
	10	쌍문동(대3-37) ~중계동(대2-26)	'21~'22	L: 270m, B: 15m	8,450	8,450		8,450		8,450								8,450			2020
	11	상계동 358-7 ~ 363-1	'23년이후	L: 141m, B: 8m	270	270		270		270										270	2021
	12	월계동 781-564	'23년이후	L 437m, B: 15m	2,000	2,000		2,000		2,000										2,000	2026

사업·시설 부문	우선순위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2018~2027)															실효시기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사업명	사업기간	기타 주요내용	총사업비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투자	공공기여	'18	'19	'20	'21	'22	'23년 이후	
								계	도비	시군비											
유원지	1	상계동 산24-3일대	'23년이후	A: 161,245㎡	11,380	11,380							11,380							11,380	해제 진행중
공공공지	1	상계동 330-1 일대	'18~'20	A: 375㎡	150	150		150		150					50	50	50				2020
	2	상계동 372-1 일대	'18~'20	A: 213㎡	100	100		100		100					30	30	40				2020
주차장	1	공릉동610-1(공릉초교)	'23년이후	A: 4,750㎡	4,270	4,270		4,270		4,270										4,270	2025
체육시설	2	공릉동610-1(공릉초교)	'23년이후	A: 2,970㎡	5,100	5,100		5,100		5,100										5,100	2025
유수지	3	공릉동610-1(공릉초교)	'23년이후	A: 2,690㎡	1,650	1,650				1,650										1,650	2025

다. 관련도면 : 도면생략.

◈ 금천구공고 제2017-1476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금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금 천 구 청 장

1.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사업개요			계획기간 중 사업비(2018~2027)											
	건수	사업규모(㎡)	총사업비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시비	구비	민간투자	공공기여	'18	'19	'20	'21	'22	'23년 이후
총계	12	38,317.9	145,002	145,002	4,500	53,157	10,427	-	76,918	3,618	12,514	127,960	850	60	-
도로	9	33,420	128,790	128,790	-	49,217	2,765	-	76,808	12	818	127,960	-	-	-
녹지	1	2,146	410	410	-	-	300	-	110	-	-	-	410	-	-
공공공지	1	124.9	500	500	-	-	500	-	-	-	-	-	440	60	-
문화체육시설	1	2,627	15,302	15,302	4,500	3,940	6,862	-	-	3,606	11,696	-	-	-	-

2.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 별첨
3. 관계도면 : 생략
4. 관계서류는 금천구 도시계획과(☎2627-1553), 도로과(☎2627-1826), 건축과(☎2627-2162), 공원녹지과(☎2627-1673), 문화체육과(☎2627-14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우선순위	사업개요						총사업비	계획기간 중 사업비													실효시기	사업시행시기
					사업규모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사업명	사업기간	위치	폭(m)	연장(m)(총연장)	면적(㎡)(총면적)		총계	국비	지방비				'18	'19	'20	'21	'22	'23년이후			
											계	시비	구비	민간투자	공공기여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이후		
총 계							38,317.9	145,002	145,002	4,500	63,584	53,157	10,427	-	76,918	3,618	12,514	127,960	850	60	-		
도로		계					33,420	128,790	128,790	-	51,982	49,217	2,765	-	76,808	12	818	127,960	-	-	-		
	1	소로 3류	2018 ~2021	시흥동 248 ~시흥동 228-34	6	372	2,232	1,000	1,000	-	1,000	-	1,000	-	-	-	-	1,000	-	-	-	2020	2020
	2	소로 3류	2018 ~2020	가산동 64-3 ~가산동 82	6	48	288	112	112	-	-	-	-	-	112	-	-	112	-	-	-	2020	2020
	3	소로 2류	2018 ~2020	독산동 산6-1	8	70	560	689	689	-	689	-	689	-	-	-	-	689	-	-	-	2020	2020
	4	중로 3류	2018 ~2021	시흥동 113-119 ~시흥동 982-21	12 ~20	1,910 (2,110)	27,720 (30,120)	125,558	125,558	-	49,205	49,205	-	-	76,353	-	818	124,740	-	-	-	2020	2020
	5	소로 2류	2018 ~2020	시흥동 982 ~시흥동 982	8	110	880	343	343	-	-	-	-	-	343	-	-	343	-	-	-	2020	2020
	6	소로 3류	2018 ~2020	시흥동 202 ~시흥동 203	6	32	192	255	255	-	255	-	255	-	-	-	-	255	-	-	-	2020	2020
	7	소로 3류	2018 ~2020	시흥동 220-2 ~시흥동 204-1	6	104	624	694	694	-	694	-	694	-	-	-	-	694	-	-	-	2020	2020
	8	소로 3류	2018 ~2020	시흥동 212-5 ~시흥동 214-12	6	140	840	127	127	-	127	-	127	-	-	-	-	127	-	-	-	2020	2020
	9	소로 2류	2018	독산동 1126	8	10	84	12	12	-	12	12	-	-	-	12	-	-	-	-	-	2037	2018
녹지	1	완충 녹지	2021	시흥동 1000-88일대	-	-	2,146	410	410	-	300	-	300	-	110	-	-	-	410	-	-	2026	2021
공공공지	1	공공 공지	2021 ~2022	시흥동 789-32	-	-	124.9	500	500	-	500	-	500	-	-	-	-	-	440	60	-	2026	2021
문화체육시설	1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2018 ~2019	독산동 441-6 (독산동 1148)	-	-	2,627	15,302	15,302	4,500	10,802	3,940	6,862	-	-	3,606	11,696	-	-	-	-	2033	2018

◈ 강남구공고 제2017-2341호

도시계획시설(봉은역사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열람 공고

1. 건교부 고시 제465호(1971. 08. 07)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16호(2009. 05. 28)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 시설:공원) 변경결정(근린공원→역사공원)된 봉은역사공원에 대한 조성계획(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조성계획(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8일
강 남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시보 게재일로 부터 15일간

나. 열람장소 : 강남구청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3423-6243)

다. 열람내용

1) 사업시행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 명 칭 : 봉은역사공원 조성계획

3) 사업의 규모 및 내용

- 면 적 : 75,405.0㎡
- 내 용 : 공원조성(시설물 및 수목식재)

4) 조성계획결정 시설별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시설면적 증감)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계	75,405.00	33,632.76	7,356.20	26,414.62	130	75,405.00	33,613.54	7,365.00	27,378.41	130	감)19.22
기반시설	11,818.23	11,818.23				11,553.59	11,553.59				감)264.64
조경시설	1,943.19	1,943.19				1,943.19	1,943.19				
휴양시설					100					100	
운동시설	2,768.05	2,768.05	54.00	54.00		2,768.05	2,768.05	54.00	54.00		
교양시설	3,714.25	3,714.25	3,477.75	18,730.87		3,714.25	3,714.25	3,477.75	18,730.87		
편익시설	5,006.69	5,006.69				5,006.69	5,006.69				
관리시설	-	-	-	-	30	-	-	-	-	30	
그밖에시설 (전통사찰)	8,382.35	8,382.35	3,824.45	7,629.75		8,627.77	8,627.77	3,833.25	8,593.54		증)245.42
녹 지	41,772.24					41,791.46					증)19.22
시설율	33,632.76 ÷ 75,405.00 × 100 =44.60%					33,613.54 ÷ 75,405.00 × 100 =44.58%					(법정 제한없음)
건폐율	7,356.20(바닥면적) ÷ 75,405.00 × 100 = 9.76%					7,365.00(바닥면적) ÷ 75,405.00 × 100 = 9.77%					(법정 20%이하)

5) 관련도서 : 별첨(열람장소에 비치)

6) 의견제출 및 처리계획

- 조성계획(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열람기간내 강남구청 공원녹지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은역사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75,405.00	33,632.76	26	7,356.20	26,414.62	130	75,405.00	33,613.54	26	7,365.00	27,378.41	130	감) 19.22㎡
기반시설	소계	11,818.23	11,818.23	–	–	–	–	11,844.45	11,553.59	–	–	–	–	감) 264.64㎡
	도로	5,741.00	5,741.00	–	–	–	–	5,754.50	5,754.50	–	–	–	–	증) 13.50㎡
	광장	6,077.23	6,077.23	–	–	–	–	6,089.95	5,799.09	–	–	–	–	감) 278.14㎡
조경시설		1,943.19	1,943.19	–	–	–	–	1,943.19	1,943.19	–	–	–	–	
휴양시설		–	–	–	–	–	100	–	–	–	–	–	100	
운동시설		2,768.05	2,768.05	1	54.00	54.00	–	2,768.05	2,768.05	1	54.00	54.00	–	
교양시설		3,714.25	3,714.25	1	3,477.75	18,730.87	–	3,714.25	3,714.25	1	3,477.75	18,730.87	–	
편익시설		5,006.69	5,006.69	–	–	–	–	5,006.69	5,006.69	–	–	–	–	
관리시설		–	–	–	–	–	30	–	–	–	–	–	30	
그밖에 시설 (전통사찰)		8,382.35	8,382.35	24	3,824.45	7,629.75	–	8,627.77	8,627.77	24	3,833.25	8,593.54	–	증) 245.42㎡
녹지 및 기타		41,772.24	–	–	–	–	–	41,791.46	–	–	–	–	–	증) 19.22㎡
시설율		33,653.76 ÷ 75,405.00 × 100 = 44.63% (법정 제한없음)						33,613.54 ÷ 75,405.00 × 100 =44.58% (법정 제한없음)						감) 0.02%
건폐율		7,356.20(바닥면적) ÷ 75,405.00 × 100 = 9.76% (법정 20%이하)						7,365.00(바닥면적) ÷ 75,405.00 × 100 = 9.77%(법정 20%이하)						증) 0.01%

2. 시설조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75,405.00	33,632.76	-	26	7,356.20	26,414.62	130			75.405.00	33,613.54	-	26	7,365.00	27,378.41	130	감)19.22㎡
기반 시설	소계			11,818.23	11,818.23	-	-	-	-	-			11,844.45	11,553.59	-	-	-	-	-	감)264.64㎡
	도로		전지역	5,741.00	5,741.00	-	-	-	-	-		전지역	5,754.50	5,754.50	-	-	-	-	-	증)13.50㎡
	광장	가	(6개소)	6,077.23	6,077.23	-	-	-	-	-	가	(6개소)	6,089.95	5,799.09	-	-	-	-	-	감)278.14㎡
	광장 1	가-1	삼성73	940.53	940.53	-	-	-	-	-	가-1	삼성73	814.43	814.43	-	-	-	-	-	감)126.10㎡
	광장 2	가-2	삼성73	806.88	806.88	-	-	-	-	-	가-2	삼성73	806.88	806.88	-	-	-	-	-	
	광장 3	가-3	삼성73	1,485.45	1,485.45	-	-	-	-	-	가-3	삼성73	1,485.45	1,485.45	-	-	-	-	-	
	광장 4	가-4	삼성73	1,360.58	1,360.58	-	-	-	-	-	가-4	삼성73	1,360.58	1,360.58	-	-	-	-	-	
	광장 5	가-5	삼성73	1,000.53	1,000.53	-	-	-	-	-	가-5	삼성73	1,000.53	1,000.53	-	-	-	-	-	
	광장 6	가-6	삼성73	483.26	483.26	-	-	-	-	-	가-6	삼성73	331.22	331.22	-	-	-	-	-	감)152.04㎡
조경 시설	소계			1,943.19	1,943.19	-	-	-	-	-			1,943.19	1,943.19	-	-	-	-	-	
	연못	나	삼성73	282.00	282.00	-	-	-	-	-	나	삼성73	282.00	282.00	-	-	-	-	-	
	휴게소 1	나-1	삼성75	639.07	639.07	-	-	-	-	-	나-1	삼성75	639.07	639.07	-	-	-	-	-	
	휴게소 2	나-2	삼성73	650.95	650.95	-	-	-	-	-	나-2	삼성73	650.95	650.95	-	-	-	-	-	
	실개천	1	삼성73	371.17	371.17	-	-	-	-	-	1	삼성73	371.17	371.17	-	-	-	-	-	
휴양 시설	소계			-	-	-	-	-	-	100			-	-	-	-	-	-	100	
	장의자		전지역	-	-	-	-	-	-	100		전지역	-	-	-	-	-	-	100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시설	소계			2,768.05	2,768.05	-	1	54.00	54.00	-			2,768.05	2,768.05	-	1	54.00	54.00	-	
	테니스장	다	삼성75	2,146.22	2,146.22	조적조	지상1	54.00 (탈의동)	54.00 (탈의동)	-	다	삼성75	2,146.22	2,146.22	조적조	지상1	54.00 (탈의동)	54.00 (탈의동)	-	
	배드민턴장	라	삼성75	621.83	621.83	-	-	-	-	-	라	삼성75	621.83	621.83	-	-	-	-	-	
교양시설	소계			3,714.25	3,714.25	-	1	3,477.75	18,730.87	-			3,714.25	3,714.25	-	1	3,477.75	18,730.87	-	
	문화회관	2	삼성73	3,714.25	3,714.25	R.C조	(지상3) (지하4)	3,477.75	18,730.87	-	2	삼성73	3,714.25	3,714.25	R.C조	(지상3) (지하4)	3,477.75	18,730.87	-	
편익시설	소계			5,006.69	5,006.69	-	-	-	-	-			5,006.69	5,006.69	-	-	-	-	-	
	주차장	마	(2개소)	5,006.69	5,006.69	-	-	-	-	-	마	(2개소)	5,006.69	5,006.69	-	-	-	-	-	
	주차장-1	마-1	삼성73	3,634.00	3,634.00	-	-	-	-	-	마-1	삼성73	3,634.00	3,634.00	-	-	-	-	-	
	주차장-2	마-2	삼성75	1,372.69	1,372.69	-	-	-	-	-	마-2	삼성75	1,372.69	1,372.69	-	-	-	-	-	
관리시설	소계			-	-	-	-	-	-	30			-	-	-	-	-	-	30	
	안내판		삼성73	-	-	-	-	-	-	1		삼성73	-	-	-	-	-	-	1	
	표지판		전지역	-	-	-	-	-	-	1		전지역	-	-	-	-	-	-	1	
	휴지통		전지역	-	-	-	-	-	-	15		전지역	-	-	-	-	-	-	15	
	외등시설		전지역	-	-	-	-	-	-	13		전지역	-	-	-	-	-	-	13	
	하수도		전지역	-	-	-	1,600 (1식)	-	-	-		전지역	-	-	-	1,600 (1식)	-	-	-	

구 분		변경 전 (근린공원)									변경 후 (역사공원)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그밖에 시설 (전통사찰)	소계		-	8,382.35	8,382.35		24	3,824.45	7,629.75	-		-	8,627.77	8,627.77		24	3,833.25	8,593.54	-	증)245.42㎡
	미륵불 봉안지	바-1	삼성73	1,671.11	1,671.11	-	-	-	-	-	바-1	삼성73	1,890.53	1,890.53	-	-	-	-	-	증)219.42㎡
	진여문	바-2	삼성73	114.22	114.22	한식 목구조	지상1	114.22	114.22	-	바-2	삼성73	114.22	114.22	한식 목구조	지상1	114.22	114.22	-	
	매 점	바-3	삼성73	154.70	154.70	한식 목구조	지상1	103.68	103.68	-	-	-	-	-	-	-	-	-	-	감)154.70㎡ (폐지)
	응향각	-	-	-	-	-	-	-	-	-	바-3	삼성73	280.80	280.80	한식 목구조	(지상1) (지상2) (지하1)	183.60	762.35 (183.60) (146.87) (431.88)	-	증)280.80㎡ (신설)
	지장전	바-4	삼성73	299.55	299.55	한식 목구조	지상1	134.02	134.02	-	바-4	삼성73	299.55	299.55	한식 목구조	지상1	134.02	134.02	-	
	선불당	바-5	삼성73	272.01	272.01	한식 목구조	지상1	195.00	195.00	-	바-5	삼성73	272.01	272.01	한식 목구조	지상1	195.00	195.00	-	
	심검당	바-6	삼성73	137.10	137.10	한식 목구조	지상1	85.40	85.40	-	바-6	삼성73	137.10	137.10	한식 목구조	지상1	85.40	85.40	-	
	미륵전	바-7	삼성73	180.29	180.29	한식 목구조	지상1	91.12	91.12	-	바-7	삼성73	180.29	180.29	한식 목구조	지상1	91.12	91.12	-	
	판 전	바-8	삼성73	190.55	190.55	한식 목구조	지상1	117.60	117.60	-	바-8	삼성73	190.55	190.55	한식 목구조	지상1	117.60	117.60	-	
	영산전	바-9	삼성73	50.10	50.10	한식 목구조	지상1	29.20	29.20	-	바-9	삼성73	50.10	50.10	한식 목구조	지상1	29.20	29.20	-	
	북극보전	바-10	삼성73	34.89	34.89	한식 목구조	지상1	18.56	18.56	-	바-10	삼성73	34.89	34.89	한식 목구조	지상1	18.56	18.56	-	
	운하당	바-11	삼성73	44.31	44.31	한식 목구조	지상1	30.10	30.10	-	바-11	삼성73	44.31	44.31	한식 목구조	지상1	30.10	30.10	-	
	범종각	바-12	삼성73	15.21	15.21	한식 목구조	지상1	7.84	7.84	-	바-12	삼성73	15.21	15.21	한식 목구조	지상1	7.84	7.84	-	
	다래헌	바-13	삼성73	251.19	251.19	한식 목구조	지상1	150.66	150.66	-	바-13	삼성73	251.19	251.19	한식 목구조	지상1	150.66	150.66	-	
	대웅전	바-14	삼성73	472.20	472.20	한식 목구조	지상1	243.00	243.00	-	바-14	삼성73	472.20	472.20	한식 목구조	지상1	243.00	243.00	-	

구 분		변경 전 (근린공원)									변경 후 (역사공원)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그밖에 시설 (전통사찰)	법왕루	바-15	삼성73	831.02	831.02	한식 목구조	지상1	476.28	927.54	-	바-15	삼성73	831.02	831.02	한식 목구조	지상1	476.28	927.54	-	
	보우당	바-16	삼성73	1,722.79	1,722.79	한식 목구조	지상2	805.02	2,068.15	-	바-16	삼성73	1,722.79	1,722.79	한식 목구조	지상2	805.02	2,068.15	-	
	화장실	바-17	삼성73	104.69	104.69	한식 목구조	지상1	52.67	52.67	-	바-17	삼성73	-	-	R.C조	지하1	-	315.49	-	감)104.69㎡
	영 각	바-18	삼성73	78.50	78.50	한식 목구조	지상1	45.10	45.10	-	바-18	삼성73	78.50	78.50	한식 목구조	지상1	45.10	45.10	-	
	차문화 체험관	바-19	삼성73	213.45	213.45	한식 목구조	지상1	128.86	208.05 (113.01) (95.04)	-	바-19	삼성73	213.45	213.45	한식 목구조	지상1	128.86	208.05 (113.01) (95.04)	-	
	전통문화 체험관1 (봉향당)	바-20	삼성73	442.80	442.80	한식 목구조	(지상1) (지상2) (지하1) (지하2)	274.50	1,340.86 (274.50) (126.00) (492.16) (448.20)	-	바-20	삼성73	442.80	442.80	한식 목구조	(지상1) (지상2) (지하1) (지하2)	274.50	1,340.86 (274.50) (126.00) (492.16) (448.20)	-	
	전통문화 체험관2 (육화원)	바-21	삼성73	395.55	395.55	한식 목구조	(지상1) (지상2) (지하1) (지하2)	243.00	1,062.00 (243.00) (117.00) (351.00) (351.00)	-	바-21	삼성73	395.55	395.55	한식 목구조	(지상1) (지상2) (지하1) (지하2)	243.00	1,062.00 (243.00) (117.00) (351.00) (351.00)	-	
	전통문화 체험관3 (비향원)	바-22	삼성73	298.62	298.62	한식 목구조	(지상1) (지하1)	214.92	341.28 (175.32) (165.96)	-	바-22	삼성73	298.62	298.62	한식 목구조	(지상1) (지하1)	214.92	341.28 (214.92) (126.36)	-	오기수정
	신종루	바-23	삼성73	62.26	62.26	한식 목구조	지상2	54.00	54.00 (54.00)	-	바-23	삼성73	62.26	62.26	한식 목구조	지상1	54.00	54.00	-	문화재현상변경 심의에 의한 층수조정
	운하당 요사채	바-24	삼성73	125.82	125.82	한식 목구조	지상1	88.20	88.20	-	바-24	삼성73	186.12	186.12	한식 목구조	지상1	109.44	109.44	-	증)60.30㎡
	회랑	바-25	삼성73	219.42	219.42	한식 목구조	지상1	121.50	121.50	-	바-25	삼성73	-	-	-	-	-	-	-	감)219.42㎡ (폐지)
	매화당	-	-	-	-	-	-	-	-	-	바-25	삼성73	163.71	163.71	한식 목구조	(지상1) (지하1)	81.81	142.56 (81.81) (60.75)	-	증)163.71㎡ (신설)
녹지 및 기타				41,772.24									41,791.46							증)19.22㎡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1,580.50	5,741.00				증13.5
변경					1,583.50	5,754.50				
당초	중로	소 계			94.00	1,335.00				
당초	중로	2	1	15.0	69.00	1,035.00	보조진입로	후문	광장 가-3	
당초	중로	2	2	12.0	25.00	300.00	보조진입로	남측 구역계	주차장 마-1	
당초	소로	소 계			1,486.50	4,406.00				증13.5
변경					1,489.50	4,419.50				
당초	소로	2	2	8.0	81.00	648.00	진입로	진여문	법왕루	
당초		3	1	4.0	17.00	68.00	산책로	광장 가-4	광장 가-5	
당초		3	2	3.0	79.00	237.00	산책로	영각	지장전	
당초		3	3	3.5	61.00	213.50	산책로	소 3-2	소3-20	
당초		3	4	2.5	64.00	160.00	산책로	소 3-8	소 3-3	
당초		3	5	3.0	45.00	135.00	산책로	광장 가-5	문화회관	
당초		3	6	3.0	36.00	108.00	산책로	소 3-5	전통문화체험관3	
당초		3	7	2.0	140.00	280.00	산책로	소 3-8	소 3-6	
당초		3	8	4.0	19.00	76.00	산책로	광장 가-5	소 3-7	
당초		3	9	4.0	129.00	516.00	산책로	소 2-2	광장 가-4	
당초		3	10	4.0	25.00	100.00	소방도로	소 2-2	광장 가-6	
당초		3	11	6.0	67.00	402.00	산책로	소 3-9	소 3-9	
당초		3	12	5.5	36.00	198.00	진입로	중 2-1	주차장 마-1	
당초		3	13	4.5	50.00	225.00	산책로	광장 가-6	지장전 바-4	
변경		3	13	4.5	53.00	238.50	산책로	광장 가-6	지장전 바-4	증)13.5
당초		3	14							
당초		3	15	1.5	332.00	498.00	산책로	소 3-24	광장 가-6	
당초		3	16	3.0	23.00	69.00	산책로	소 3-13	광장 가-2	
당초		3	17	2.5	8.00	20.00	산책로	소 3-13	전통문화체험관2	
당초		3	18	2.0	11.50	23.00	산책로	지장전 바-4	전통문화체험관1	
당초		3	19	1.5	10.00	15.00	산책로	소 3-7	전통문화체험관3	
당초		3	20	2.0	70.00	140.00	산책로	소 3-3	소 3-15	
당초	소로	3	21	1.5	14.00	21.00	산책로	소 3-24	소 3-15	
당초		3	22	1.5	31.00	46.50	산책로	소 3-4	소 3-24	
당초		3	23	1.5	5.00	7.50	산책로	소 3-3	소 3-22	
당초		3	24	1.5	133.00	199.50	산책로	소 3-17	소 3-20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22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201-11	한강	총 600㎡ - 망원 150㎡ 이촌 150㎡ 뚝섬 150㎡ 광나루150㎡	경찰정 계류	2018. 1. 1 ~ 2018.12.31	2017. 12.20.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시민소통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41 **문의 : ☎120**